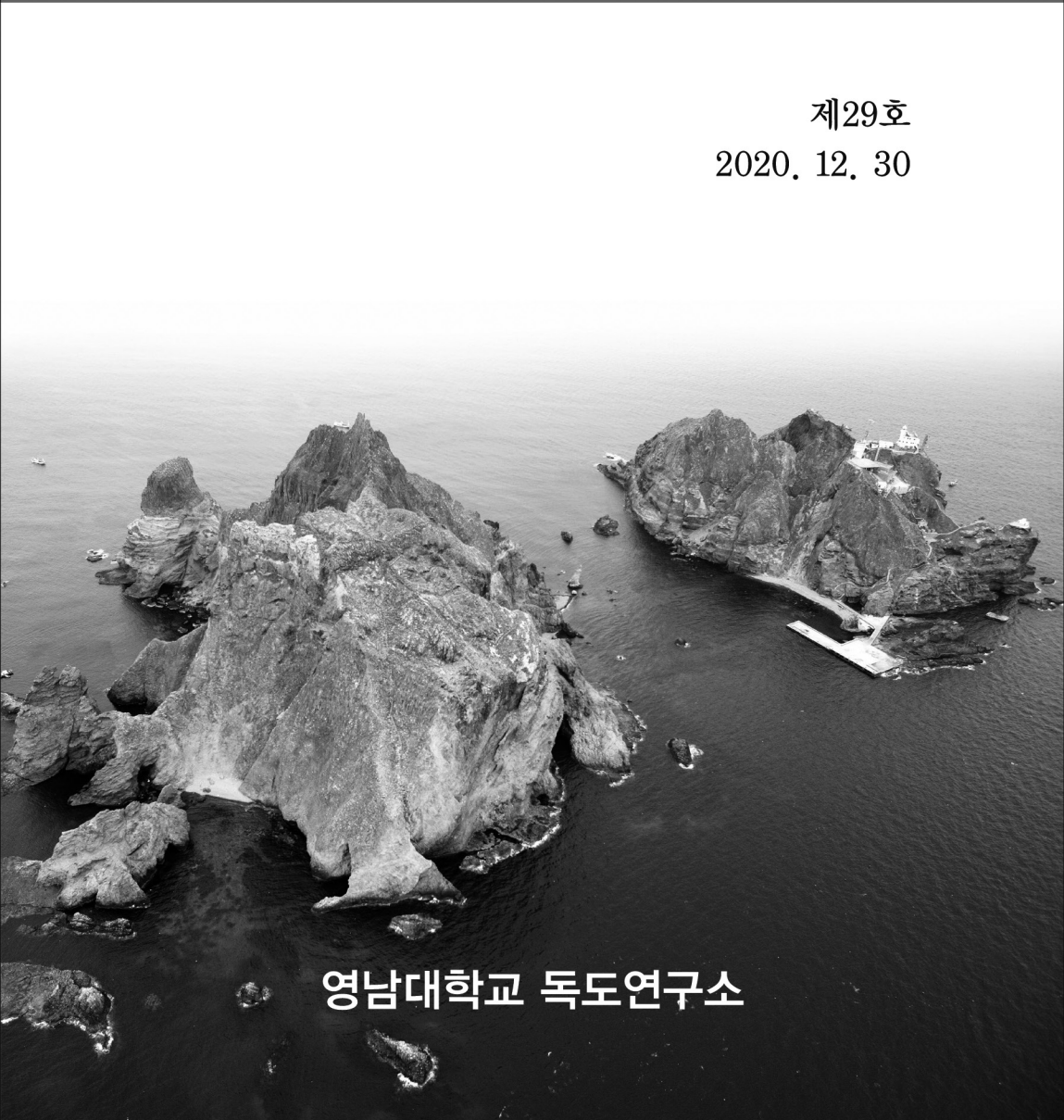


ISSN 1975-390X

獨島研究

제29호
2020. 12. 3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차 례

일반논문

- 일본의 독도편입과 한국의 항의 부존재에 관한 검토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내장화하는 한일의 '외교」에 대한 반론」 | 이성환 7
- 2000년 이후 독도/竹島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 박병섭 43
- 2000년 이후 독도관련 역사학 분야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송휘영 87
- 조선 후기 주기적 울릉도 수토와 울릉도 인식 양상에 대한 연구 | 백인기 127
-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에 관한 연구 | 김명기 173
-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권원을 중심으로 | 도시환 205
- 일본정부의 안용복 공적 날조에 대한 비판
외무성과 내각관방부의 '안용복 폄훼'를 중심으로 | 최장근 243
- 독도 관련 고지도의 현황과 특징 분석
영남대 소장 고지도를 중심으로 | 김도은·이태우·최재묵 273
-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연구
2020년도 검정통과본 내용 분석과 기술 배경 검토를 중심으로 | 엄태봉 30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 전기석·박경근	329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심정보	359
『독도연구』 제29호 편집위원회	383
논문투고규정	384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388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391

일반논문



일본의 독도편입과 한국의 항의 부존재에 관한 검토*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내정화하는 한일의 ‘외교」¹⁾에 대한 반론

이 성 환**

〈목 차〉

1. 머리말
2. 나가시마 논문의 요약과 논점
3. 나가시마의 논지에 대한 평가
4. 영유권 문제에서의 항의의 부존재에 대하여
5. 일본의 독도편입과 그 후의 조치에 대한 평가
6. 맺음말

〈국문초록〉

나가시마 히로키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나가시마는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무적인 서류 왕래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하고, 외교의 내정화는 한일 정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한국정부의 의사표출을 쉽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는 오히려 일본의 한국 ‘예속화’를 심화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 5B8A02103036).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일본학전공 교수

1) 永島広紀(2020), 『『内政』化する日韓の外交—公文書の往来状況に見る統監府「保護」下の大韓帝国—』, 『第4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93~106쪽.

설령 나가시마의 주장대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의 정당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인지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새로운 권원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의 실효적 지배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견해이다.

주제어 : 항의의 부존재, 독도 영유권, 통감부 통치, 시효취득, 일본의 독도 편입, 묵인.

1. 머리말

한일 간의 독도 연구에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며, 공방도 치열하다.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씨(이하 경칭 생략)의 「내정·화하는 일한의 ‘외교’-공문서의 왕래 상황에서 보는 통감부 ‘보호’하의 대한제국-」이라는 논문은 여러 쟁점 가운데, 일본의 독도 편입 후 한국(당시의 국호는 대한제국이나 편의상 한국이라 함)이 일본에 항의(protest)를 할 수 없었던, 또는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면서 한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편입이 당시 양국의 힘의 관계로 봤을 때 한국의 입장에는 동정(同情)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1905년 2월 이후 일본의 행위에 대해 (한국이) 항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 편입이) 무효가 되거나” 한국의 묵인(acquiesce)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²⁾ 즉 일본은 당시의 한일관계는 무시한 채 한국의 침묵을

2) 太壽堂 (1998), 『領土歸屬の國際法』, 東信堂, 45쪽.

목인 내지는 묵시적 승인(implicit recognition)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가시마 논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은 통감부 지배 하에서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감부 통치하에서 한국 정부와 통감부 사이의 문서 왕래 상태를 검토하여, 당시 한국은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항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나가시마의 논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째, 일본이 독도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의 유무를 문제 삼는 것은 그 이전 1905년 2월의 일본의 독도 편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보면, 독도 편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먼저 따진 후, 그 이후에 항의의 존부(存否)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측면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나가시마가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를 논하는 데에는, 독도편입에 대해 한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한국이 일본의 독도편입을 목인 내지는 승인(approval)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나아가 소급하여 일본의 독도 편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치열한 국제법적인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나가시마 논문은 독도편입에 대한 법적인 결함이나 무효(defective or invalid)를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absence of protest)를 통해 치유하려는 목적 의식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말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³⁾ 독도 편입 조치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의 불법/부당성을 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나가시마 논문이 한국이 항의를 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일본의 독도편입과 함께 그 이후의 실행 조치

3) 中野澈也(2012),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學性格」, 『関西大学法學論集』 61(5), 關西大學法學會, 56쪽.

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가 독도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1905년 이후의 일본의 조치가 한국의 주권을 제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⁴⁾ 독도편입에 대한 불완정성도 제거되지 않는다. 즉 독도 편입 조치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일본이 취한 조치도 독도에 대한 정당한 관할권 행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905년 한국이 형식적으로는 외교권이 박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일 간에는 자유로운 접촉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1905년 이후의 일본의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이 문제는 통감부 통치에 대한 평가에도 직결된다. 나가시마의 주장이 성립하면, 통감부의 한국 지배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선의의 ‘보호’ 정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즉 통감부의 한국지배는 식민지화를 지향하는 억압체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것이다.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이집트나 인도 지배에서 보듯이, 당시 제국주의시대에서 타국에 대한 선의의 보호정치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전제로 해서 본고에서는 나가시마의 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항의 부존재가 독도문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나가시마 논문의 요약과 논점

나가시마 논문의 내용과 논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1906년

4) 中野澈也(2012), 위의 논문, 62쪽.

7월 13일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잡보(雜報)란에는 '울도군(鬱島群, 울릉군)의 배치 전말'과 '이케다 공함(池田公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각 실려 있다. 《황성신문》의 기사는 통감부가 한국의 내부(內部)에 울도군의 설치 시기와 관할 도서에 대해 조회를 하고, 내부가 회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기사는 통감부의 통신관리국장 이케다 주사부로(池田十三郎)가 “강원도 삼척군으로부터 분설한 울도군의 면명(面名)과 동호(洞號) 및 설치 연월일을 소상(하계) 녹교(錄交)하라”고 조회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내부의 회답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두 신문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통신관리국장 이케다 주사부(池田十三郎)가 울도군의 설립 시기와 관할 도서를 조회하고, 이에 대해 내부가 답을 했다는 것이다. 《황성신문》 기사에는 통감부의 조회에 대해 내부가 울도군의 관할 도서를 “죽도 석도”로 회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내부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회답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나가시마는 《황성신문》 기사에 있는 석도가 어느 섬인가, 즉 독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93, 본문 괄호 안의 숫자는 나가시마 논문의 페이지), 더 이상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 그 직전에 심홍택이 ‘본군 소속 독도’라고 정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아니고 석도가 왜 다시 등장하느냐라는 의문과 함께 칙령 41호의 석도와 독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통감부가 울도군의 설립 시기와 관할 도서를 공식 조회한 데 대해 내부는 공식적인 칙령 41호로 답을 한 것인데, 만약 내부가 관할도서를 ‘죽도 석도’라 하지 않고 ‘죽도 독도’라 했으면, 칙령41호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가시마는 이 신문 기사가 시기적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지한 심홍택의 보고를 받은 이명래 강원도 관찰사 서리가 1906년 4월 29일 정부에 보고한 사실이 1906년 5월 9일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보도된 직후에 나왔다는 점을 들어, 기사가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정하고 있다(97~

98). 즉,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통감부가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울릉군의 설치시기 및 관할 범위 등을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독도 편입을 정식으로 통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지적대로,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의 반응을 탐색하려 했다면, 일본 정부(통감부)의 이러한 태도는 부적절하다.

독도는 낙도(落島)이기 때문에 통신 관련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감부가 독도를 염두에 두고 통신 관련 업무를 위해 울릉군의 설립 시기 및 관할 범위를 문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통신 관련 업무를 빙자하여 울릉군의 관할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국령인 독도를 편입한 데 대한 한국의 반응에 일종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만약에 이러한 탐색을 통해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항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탐지되면, 한국정부의 항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논문에서 나가시마의 관심은, 당시 통감부 통신관리국장인 이케다 주사 부로가, 울릉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조회한 사실을 단서로 하여, 당시 보호국 하의 대한제국과 통감부(일본 정부)의 교섭 상태를 검증하려는 데 있다. 검증 목적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할 수 없었다는 한국 측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다. 이를 위해 나가시마는 1905년 4월 1일 조인된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결정서(取極書)’에 의해 한국의 통신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통감부 외국(外局)인 통신관리국의 조직과 운영을 분석한다. 통신관리국이 관할하는 지방의 우체소(郵便所)는 한국의 지방관리들이 운영과 관리의 주체였으며, 그 관리들은 한국 정부(내부)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관리국을 비롯한 통감부 외국(外局)은 “독자적인 카운트파트

(한국의 내부·인용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청 간의 사무 연락에 관한 것은 반드시 통감부 본부(本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담판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96).

이어서 그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보호국 하에서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상투적인' 주장은 "실체와는 완전히 정반대이며, 오히려 카운트파트끼리는 더욱더 긴밀한 연락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96) 다소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통감부 본부 외에도 통신관리국과 같은 다양한 연락 루트가 있었는데, 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지 못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96) "사료적인 근거도 결여된 매우 궁색한 변명임이 분명하다"(103)고 단정짓고 있다.

이를 전제로 나가시마는 그 이후의 기술에서, 규장각 소장의 『통감부래안(統監府來案)』(목록번호: 奎17849)과 『통감부래거안(統監府來去案)』(목록번호: 奎17850)을 사용하여 양국 정부의 기관 간 "긴밀한 연락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예를 제시한다. 『통감부래안(統監府來案)』과 『통감부래거안(統監府來去案)』에는 1906~1908년경에 통감부 총무장관과 한국 정부의 내부 사이의 왕복 문서 파일이 있다.

우선 그는 문서 파일에는 "적어도 통감부 본청(나가시마는 本廳과 本府를 혼용하고 있음)과 한국의 의정부(내각) 사이에 영토문제로서 울릉도나 독도를 논의한 흔적은 없다"(99)고 지적한다. 그리고 통감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많은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국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토문제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통감부의 총무장관과 한국 정부의 내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내정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며, 영토 문제에 대한 항의 등 외교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감부래안』이나 『통감부래거안』은 대부분 한국 통치 즉 내정에 관련된 비정치

적이고 기술적, 실무적인 내용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 하나는 을사조약의 강압적 체결 등의 예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의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통감부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토문제를 제기하여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영토문제가 쉽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었거나 그러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없을 만큼 통감부의 한국 지배가 위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한국에게는 독도문제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였으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한국을 대리하여 중국과 치열하게 외교 교섭을 벌이고 있던 간도 영유권문제에 대해서도 통감부와 한국정부가 상의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덧붙이면, 통감부와 한국 정부사이의 간도문제 관해서는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 기록과⁵⁾ 『구한국외교문서 부속문서 8 간도안』⁶⁾ 등에 남아 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통감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간도의 한인 정황을 알리는 간도파출소의 보고서 등이 대부분이며, 영유권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심지어 통감부는 1909년 9월 4일에 체결된 간도협약을 약 2개월이 지난 11월 1일에, 협약체결에 대한 경위 설명도 없이, 조선정부(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에 통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당시 한국의 영토문제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외교’행위라는 이유로 한국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한국 정부와 많은 문서를 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편입 사실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왜 알리지 않았는가, 간도 영유권 문제를 왜 긴밀히 협의하지 않았는가 등에 대한 의문도 있다. 나가시마의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통감부(일본정부)가 울릉군의 관할 범위 즉 독도가 한국령인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내정’의

5) 金正明編(1967), 『日韓外交資料集成』 第5, 6卷, 巖南堂書店.

6) 아세아문제연구소(1972), 『舊韓外交關係附屬文書. 第8卷: 間島案』, 高麗大學校出版部.

일환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충분히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논문에서는, 하와이에서 한국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감부는 주 호놀룰루 영사관을 통해 피의자 감형을 위해 애썼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보호국으로 한 이상 일본은 방인(邦人, 한국인) 보호라는 국제법적 책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주장하는 ‘외교권 상실’은 실은 대외적인 방인(邦人) 보호 의무와 그 이행 의무가 이관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고(99) 기술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다. 나가시마 논문의 전체 논지로 봤을 때, 일본 정부(통감부)는 이렇게 ‘친절하고 충실하게’ 또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외교권을 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친절하고 선의를 가진’ 통감부에 대해 왜 독도 문제를 항의하지 않았느냐를 말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일본의 “방인(邦人, 한국인) 보호”는 국제법적 책무라기보다는 을사조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해외 한인의 보호 조치는,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대해 한국의 외교권이나 보호권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수 있다. 한국의 보호국화를 국제적(표면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시 일본의 한국 지배정책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비롯한 일본 정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⁷⁾ 이를 독도 편입에 대한 항의문제로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7) 이토는 보호정치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의식하여 1906년에 영자신문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를 매수하여 통감부 기관지로 만들었다. 『서울 프레스(Seoul Press)』는 국제적으로 친일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李修京·朴仁植(2008),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と朝鮮植民地統治政策の一考察』, 『東京学芸大学紀要』、社会科学系I, 59호, 東京学芸大学. 그리고 통감부는 1907년부터 한국개혁에 대한 영문 보고서(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를 작성해서 서구의 공사관에 배포하고 있었다.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문서 왕복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로서 한국의 법부(法部)가 강원도 평창군의 우체소 주사를 겸한 향장을 체포한 데 대해 통감부가 항의한 문서를 예로 들고 있다. 통감부의 통신관리국장이 한국정부의 법부 대신에게 우체소의 한국인 관리를 체포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사전에 통고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항의를 나가시마는 “일본 측이 한국 관리의(를) 보호”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103). 이는 한국 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나가시마도 적고 있듯이, 한국인 직원의 체포로 우체소의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 실무적인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 또 “일본 측이 한국 관리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시 통감부가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통감부 외국(外局)이 통감부 본부(本府)를 통하지 않고 법부대신에게 직접 항의 공문을 보내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 통감부와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위계를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나가시마는 『덕수궁 이태왕 실기(德壽宮李太王實紀)』에 나오는 고종의 외국 사절(일본 공사, 통감 등 포함)접견 기록을 이용하여 고종의 ‘활발한’ 황실 외교를 소개하고 있다.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고종은 통감, 일본 공사를 빈번히 접견하고 있었으며, 미국 및 독일 공사, 전 청국 공사, 이탈리아 함장 등도 접견하면서 다양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나가시마는 “대한제국의 ‘외교권 상실’은 일본정부 또는 제3국에 대한 연락 루트가 두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일본 뿐만 아니라 각국사절 등에 대해 황제(황실)은 빈번하게 알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묘사하고 있다(103). 즉 일본을 비롯해 공사관은 철수했지만 영사를 존치하고 있는 외국과의 연락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독도문제를 비롯해 한국이 외교적 항의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었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고종은 이지용(내부대신), 이재완(完順君) 등을 일본 황실에 특사로 파견

3하는 등 황실 간에도 다양한 루트가 있었다는 지적도 한다. 이를 나가시마는 “일본 측, 특히 메이지천황은 한국의 황실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황실 간 외교’라는 면을 고려하면, 보호국화로 일한(日韓) 간의 연락 파이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외교가 ‘내정’화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평가한다(103). 메이지 천황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황실은 자유로이 일본 황실에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항의를 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함의이다. 나가시마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위와 같은 고종의 활발한 외교활동에 비추어 보면, 고종은 한국 정부(내각)의 의지 또는 통상적인 외교루트를 통하지 않고도 황실 “외교가 가능”했기(100, 103) 때문에, 고종이 의지만 있었다면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3. 나가시마의 논지에 대한 평가

나가시마의 논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감부 통치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나가시마는 “통감부가 어떠한 인적 규모를 가지고 어떠한 업무를 행했는가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통감부시대를 총독부시대의 전사(前史)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94). 한국과 일본에서의 연구가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에 집중되어 있다는 나가시마의 지적에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이는 또 다른 의미로는 통감부 시대나 총독부 시대에 있어서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사(前史)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치하고, 통감부와 총독부 시대에 대한 평가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양국에서의 평가가 상징하듯이, 양국의 견해차이가 현격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단 논지 전개
를 위해 통감부 통치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해
다음의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둔다.

우선 러일전쟁 직후인 당시 한국은 거의 일본의 전시군사체제 하에 있었
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러일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
주둔군을 더욱 강화했다. 1905년 10월에는 종래 후비병 위주의 조선주차군
을 철수하고, 전시 중 새로 편성한 13사단과 15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함흥과 평양에 각각 사령부를 설치한다.⁸⁾ 그리고 전시 중에 실시된 군율도
계속 유지한다.⁹⁾ 한국은 러일전쟁기의 전시체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은 1905년 11월 강압적으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보호국화했다. 일본군에 의한 전시체
제 하에서 한국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감부 시대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만을 박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을사조약 제3조에는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한다고 통감과 통감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가시마 논문에서 통감부의 통신관리국이 한국의 통신 업무
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감부는 한국의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도 외교에 관련이 있다는 논리로 실질적으로 내정까지 장악하고 있었
다.¹⁰⁾ ‘통감부 및 이사청 관계’(1905. 12. 20. 칙령 제267호)에는, 통감은
외교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 수비군의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중앙정부의 외교권만을 대리하기

8) 金正明(1967), 『朝鮮駐劄軍歷史：日韓外交資料集成、別冊 1』, 巖南堂書店, 87~96쪽.
大江 志乃夫(2001), 『世界史としての日露戦争』, 立風書房, 701~702쪽.

9) 서민교(2018), 「일제강점기 용산기지의 군사전략적 기능에 대하여-1904년 러일전
쟁에서 1930년대 만주사변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기능-」, 『서울과 역사』98호,
서울역사편찬원, 241쪽.

10) 外務省編(1958), 『日本外交文書』, 日本國際聯合會, 506, 517쪽; 이성환·이토 유키오
(2010),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38쪽.

위해서는, 각 지방의 이사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사청은 외교와 전혀 관계 없는 일본군의 출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청령을 발표하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통감부 및 이사청 관계 제25조). 이는 이사청이 실질적인 지방 통치기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1906년 6월부터 시작된 제1기 경찰 강화정책을 통해 13도 관찰부 소재지에 경무(警務)고문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 26곳에 분견소, 122곳에 분파소를 설치했다.¹²⁾ 이는 규모는 다소 적으나 한국의 경찰과 같은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실질적으로 한국 경찰을 ‘지도’ 감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토 통감이 한국의 각의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지도’”하고 있었으며,¹³⁾ 통감 관사에서는 한국의 각부 대신이 참여하는 ‘한국 시정 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고 있었다.¹⁴⁾ 이토 히로부미가 재임하는 3년 6개월 동안 77회의 시정개선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한 달에 두 번 꼴이다. 이토 히로부미 자신도 1905년 11월과 12월의 연설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외교권 및 국방권을 일본에 ‘양보’하도록 하여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공언하고 있다.¹⁵⁾ 통감부에 외교와 관련이 없는 총무장관, 농상공무총장, 경무총장 등을 두고 있었던 것은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고종에 대해서는, 기무라 칸(木村 幹)이 지적하듯이,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의 외국공사와의 접견에 하세가와 요시미치 한국주재 군 사령관의 배석을 요구했으며, 왕궁의 경비도 일본의 고문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
- 11) 한지현(2017), 「1906-1910년 통감부 이사청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2) 金正明(1964), 『日韓外交資料集成』제8권, 巖南堂書店, 137~139, 145쪽; 松田利彦(2009),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校倉書房(이종민, 이형식, 김현 옮김 [2020]),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경인문화사).
 13) 기무라 칸(김세덕 옮김, 2017), 『대한제국의 패망과 그림자』, 제이앤씨, 381쪽.
 14) 伊藤之雄(2010), 「이토 히로부미와 한국통치」, 이성환·이토 유키오(2010), 앞의 책, 32쪽.
 15) 博文館編集部編(1910), 『伊藤博文演全集』, 博文館, 277-281쪽.

있었다.¹⁶⁾ 1906년 7월 7일에는 궁금령(宮禁令)을 내려 궁궐의 육문(六門)에 일본인 순사를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했다.¹⁷⁾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 15일 을사조약체결을 위한 특사로 한국에 왔을 때 고종에게 반일 성향의 유학자와의 접근을 경고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일본군이 탐지하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상황은 고종이 상시적으로 일본의 감시와 위협 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가시마가 말하는 자율적인 황실외교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한국이 일본 정부(통감부)를 향해 자율로 항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을사조약 체결 당시 한구설 등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위압적으로 조약을 성립시켰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항의를 하여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리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처럼 위압적인 상황을 조성해놓고 한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가시마의 분석은 통감부 통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형식만을 보고 실질적 의미를 외면한 일방적 해석에서 오는 오류로 보인다. 2008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페드라 브라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 판결에서 영국의 피보호령이었던 말레시아가 영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¹⁹⁾

통감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왕복문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통감부 통치=

16) 기무라 간(2017), 앞의 책, 380~381쪽.

17) 金正明(1964), 『日韓外交資料集成』 제6권(상), 巖南堂書店, 242~244쪽; 같은 책 8권 123~133쪽.

18) 春敝公追頌會(1940), 『伊藤博文傳 <下卷>』, 春敝公追頌會, 689쪽; 伊藤之雄(2010), 앞의 논문, 33쪽.

19) The Pedra Branca Case, Declaration of Judge Ranjeva. para. 2.; 김용환(2008), “페드라 브라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ICJ 판례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53(2), 대한국제법학회, 25쪽, 재인용.

보호 정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당시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문명화’를 위해서라며,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추진한 것과 같은 이율배반적인 논리이다. 통감부와 한국정부 사이에 왕복문서가 있었다는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현상을 가지고 통감부 통치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의 오류로 보인다. 이는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방식이며, 표면적 형식적인 것으로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부분의 합이 반드시 전체를 규정하지 않으며, 형식과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론을 벗어난 과도한 해석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전제로 나가시마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그가 지적하고 있는 고종의 외교활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통감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의례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황실 방문 등에는 이토 히로부미 등 일본 측 인사가 동행하고 있었다. (나가시마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 황실의 특사 파견은 대부분이 독도 편입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독도 편입과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항의 등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 고종의 지위마저 위협받았을 것이다. 나가시마는 1907년의 헤이그 밀사사건을 고종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예로 들고 있으나,⁽¹⁰²⁾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를 당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전에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이 왕위 퇴위로 연결되는 상황에서²⁰⁾ 자유로운 외교활동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시간차는 있지만, 헤이그 밀사 사건에 비추어 보면, 독도편입에 대한 항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인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 한성민(2015), 「제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特使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 연구』51, 한일관계사학회, 366~368쪽.

나가시마는 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보호국이 된 후에는 관청 간의 연락관계와 일본과 한국 왕실의 관계는 오히려 밀접해졌으며 (나가시마가 말하는 ‘황실 간 외교’), 이러한 측면에서 보호국 하에서 한일 간의 연락 통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한다. 또 “메이지천황의 한국 황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언급하고 있다. ‘연락 통로의 강화’와 ‘각별한 배려’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의아스럽다. 예를 들면 한일병합조약 제3조와 제4조에는 일본 황제는 한국 황제와 황족들에게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각별한 배려”로 보고, 한일병합 후 한국 황실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일본 궁내성 관할 하에 이왕직(李王職)을 설치한 것을 ‘연락 통로의 강화’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연락 통로의 강화’와 ‘각별한 배려’가 자유로운 의사 표출과 전달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넌센스이다. 각별한 배려는 회유책의 일환이었으며, 이왕직의 설치는 한국왕실에 대한 통제기구였을 뿐이다.

나가시마는 외교권 박탈 이전의 한국의 외교가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 (일본의) 내정으로 흡수됨으로써 한일 간의 외교는 ‘내정화(內政化)’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외교의 내정화는 국가 간의 의례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국가 간의 외교문제를 소통이 훨씬 쉬운 내정문제로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독도 편입문제도 자유롭게 취급되고 한국의 항의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에 항의할 수 있는 기회와 루트는 훨씬 많아지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능한 이야기인가.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진 식민지 하에서는 모든 것이 제국의 ‘내정’으로 수렴되고 접촉과 소통의 기회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피식민국의 항의가 훨씬 쉬워진다는 논리와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정반대이다. 나가시마의 표현에 의하면 외교가 내정화함으로써 “연락 파이프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은(103), 실질적으로는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수직적 연락 파이프가 긴밀해졌다는 의미이다. 나가시

마가 주장하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는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한국 ‘예속화(隸屬化)’일 뿐이다. 따라서 외교의 내정화가 결코 원활한 항의나 수평적 소통의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정화는 지배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지배체제 강화는 억압의 상시화를 초래해 소통과 항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합성이 있다.

나가시마의 논문에 따라 그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통감부를 통하지 않고 카운트파트인 내부와 사무연락 등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서,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성립하지 않는다는(96) 그의 논법은 비약이다. 통신관리국이 한국 정부의 내부(內部)와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도편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또는 내부(內部)는 일본 정부에 충분히 항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인 듯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연락’ 등은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결정서(取極書)’에 근거한 통신 업무에 관련된 실무나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긴밀한 연락을 통해 일본은 통감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 업무를 더욱 원활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신 업무에 관련된 실무나 기술적인 연락이 가능했다고 해서,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해 외교적 항의가 가능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추론이다.

실무나 기술적 업무를 위한 연락과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외교적 항의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사항을 같은 수준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총독부 내의 한국인 공무원이 총독부의 일본인 직원과 업무 연락이 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국인 공무원이 총독부의 일본인 직원이나 총독부를 향해 한국의 독립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나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과 같다. 현실적이지 않다. 총독부 하에서는 한일 간의 내정화가 더 강화되었는데, 왜 한국은 일본에 자유롭게 독립요구를 하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영유권 문제에서의 항의의 부재에 대하여

주관적인 추론을 다소 가미하여, 나가시마 논문의 논지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통감부 통치는 한일 간의 외교를 내정화하여 정부 간 연락 통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의사가 일본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오히려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에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가시마의 논문의 요지이다. 나가시마는 한국이 항의를 하지 않은 또는 항의를 못한 ‘침묵’을 ‘묵인’으로 치환하고 있다. 침묵과 묵인의 법적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침묵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묵인은 암묵적 승인을 의미한다.

나가시마의 논지는, 당시 일본의 독도 편입 상황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출발한 것이다. 그의 논지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일행은 독도 조사를 위해 1906년 3월 26일 오키(隱岐)를 출발하였다. 그리고 독도 조사를 마친 후 풍랑을 만나 ‘우연히’ 3월 27일 울릉도에 도착한다.²¹⁾ 일행은 다음날 심흥택 울릉군수를 방문하여 일본 영토가 된 독도를 시찰하고 여기에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이를 전해들은 심흥택은 다음날, 진자이 일행이 와서 “독도가 일본 영지로 되었다(獨島가 今爲日本領地)”고 하기에, 이를 보고하니 살펴주기 바란다고 이명래 강원도 관찰사 서리에게 보고하였다.²²⁾ 이명래의 보고(5월 7일 접수 제325호)를 받은 참정대신 박제순은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로 “독도 영지설(領地說)은 전혀 근거 없으니, 해도(該島, 독도)의 형

21) 《山陰新聞》1906년 4월 1일.

22) <http://blog.naver.com/isoword/110140364870>(검색일: 2020.10.23.).

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來報閱悉이고 獨島領地之說은全屬無根하나, 該島形便과日人如何行動을更爲査報할 사)고 지시한다.²³⁾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홍택이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독도 시찰을 나온 진자이 일행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독도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심홍택도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박제순이 독도영지설(領地說)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정하고 사실 조사를 지시했으나, 일본 정부에 공식항의를 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추론을 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은 조선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확정적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설’(獨島領地之說)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을 잘 살펴 보고하라”고 했다. 조선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확인하고 항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나아가면 항의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감부 하에서 조성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일본은 편입 사실을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는 등 편입에 대한 공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알지 못하게 편입을 했다는 점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무주지선점의 경우에 주변국 또는 관련국에 대한 통고 의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것처럼, 독도가 한국의 영토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인접 국가인 한국에

23) 엄찬호(2007), 「개화기 독도의 연구 성과와 쟁점」, 『한국사학보』28, 고려사학회, 310쪽; 『各觀察道案』第1册, 光武10年4月29日條, 「報告書號外에 대한 指令 第3號」.

대해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일본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연구자들 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다.²⁴⁾ 이를 나가시마의 논문과 관련하면 말하면, 한일 간의 외교가 내정화한 통감부 하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독도편 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직선기선 문제를 다룬 1951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보듯이, 묵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공연성)”이어야 하는데,²⁵⁾ 박제순의 지시로 봤을 때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직접 통고하지도 않았고, 한국이 우연히 알게 된 사항을 두고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은 정식으로 통고할 의사가 없었지만 충분하지도 않고 우연하게라도 인지를 하게 된 한국은 즉시 항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우연’에 편승하여 영토 편입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정식으로 통고를 하고 주권이 제약되어 있지 않았다면, 한국이 항의를 했을 것이라는 점은, 박제순의 지령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 정식으로 통고를 했다면, 진자이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독도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나가시마를 비롯해 일본 측이 한국의 침묵을 문제 삼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영토문제에서 침묵이나 묵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선점과 시효취득(acquisitive prescription)에서이다. 선점의 경우에는 선점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핵심이며, 묵인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요소로서 법적 권리 주장을 위한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경우는 점유가 평화적으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이 권원 주장을 위한 불가결의 핵심 요소이다. 묵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²⁶⁾

24) 濱田太郎(1997), 「竹島(獨島) 紛争の再検討—竹島(獨島) 紛争と國際法、國際政治—(二)」, 『法學研究論集』, 亜細亜大学大学院法學研究科, 135~136쪽.

25) <http://m.blog.daum.net/1life1love/2038100>(검색일: 2020. 11.03)

26) 김석현(2012), 「시효에 의한 영유권 취득」, 『국제법학회논총』57(4), 대한국제법학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독도 편입이 무주지 선점인가, 시효 취득인가이다. 일본은 독도편입을 위한 각의결정에서는 무주지 선점을 표방했으나, 그 후 일본 정부는, 고유영토론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1950, 60년대 초에 한국정부에 보낸 구상서 등에서 공식적으로는 무주지 선점(occup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²⁷⁾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염두에 둔 것이며, 묵인을 중시하는 것 역시 시효취득을 상정한 논의로 봐야한다. 일본이 시효취득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항의 부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며, 각의 결정에서의 무주지 선점론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고유영토론과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무주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면 일본 땅, 즉 둘 중의 하나이거나 한일 공동소유라는 뜻이다. 어느 경우든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다.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의 항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역사적 권원을 강화하거나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영유의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1905년의 편입조치를 통해 보다 확실한 근대국제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한다면,²⁸⁾ 한국의 항의 여부는 2차적인 것이다. 그 대신 일본은 역사적 권원이나 편입의 합법성에 대한 완결성을 입증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회, 47쪽.

27) 이춘선(2018), 「국가행위로서 항의(protest)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63(3), 대한국제법학회, 35쪽.

28) 朴培根(2006), 「日本による島嶼先占の諸先例-竹島/独島に対する領域権原を中心として」, 『国際法外交雑誌』105(2), 일본 國際法學會, 35쪽; 皆川洗(1963), 「竹島紛争と國際判例」, 前原光雄教授還曆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編『國際法學の諸問題』, 慶応通信, 363쪽.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고 한국의 영토였음을 시사하는 일본 기록들도 존재한다. 일본의 독도 편입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나가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일본 정부의 알선을 받아 대한제국 정부에 독도 어업 독점권을 청원하려는 사실이 있으며,²⁹⁾ 또 한국령일 가능성이 있는 독도를 편입할 경우 다른 나라가 “한국 병탄(併呑)의 야심이 있다”고 의심할 것을 우려해 내무성이 영토 편입을 반대한 기록도 있다.³⁰⁾ 내무성은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기 28년 전인 1877년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천명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태정관지령을 발한 주체이기도 하다.³¹⁾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물론 일본의 각의 결정대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더라도 한국의 침묵이나 묵인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점유의 대상이 무주지인가, 타국의 영토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³²⁾ 국내법상에서 선점은 일회적 점유로 완성될 수 있으나, 영토취득에서의 선점은 상당 기간에 걸친 평온한 점유의 지속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취득) 시효와의 구별이 모호해진다. 시효는 본질적으로 원 소유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선점보다는 더 엄격하고 오랜 기간의 점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³³⁾ 일정 기간의 실효 점유를 요한다는 점에서 선점과 시효는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면 나가시마가 강조하듯이, 한국이 (자의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이 확인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29) 中井養三郎(1909), 『事業經營概要』; 김수희(2014), 「일본의 독도강점을 ‘기록화’한 『나가이 요자부로 문서』 해제와 자료 소개」, 『독도연구』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414, 416쪽.

30) 위의 자료 및 김수희(2014), 415, 416쪽.

31) 이성환 외(2016),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지성인, 참조.

32) M. Shaw(2003), *International Law*, 7th ed. (Cambridge Univ. press), 426.

33) 이춘선(2018), 앞의 논문, 29쪽. D.H. N. Johnson(1952), “Acquisitive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The British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349.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져야 한다. 첫째, 나가시마 논문과 같은 취지로, 일본 정부는 1953년 7월 13일 한국에 보낸 구상서에서 “한국이 독도에 대해 역사적이고 행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일본이 주장하듯이, 당시 한국은 아무런 방해나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 항의를 하지 않았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대로이다.

둘째, 영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평온한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일정 기간 항의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는 항의의 존부(存否)만을 따지고, ‘일정 기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항의를 하지 않거나 침묵을 하면 그것이 묵인 또는 승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그 이유는 항의의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확립된 이론이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나,³⁵⁾ 묵인을 추정할 만한 충분한 장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³⁶⁾

위의 첫째와 둘째의 사항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불완전하게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인지한, (적어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고한 적은 없고, 울릉군수 심홍택의 보고로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1906년 5월 이후부터 1910년 8월 한일병합 때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항의를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연하면, 심홍택의 보고 직후 참정대신 박제순이 곧바로 내린 지령 제3호에서

34) Korean Government's Refu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s concerning Dokdo(Takeshima) dated July 13, 1953.(September 9. 1953).

35) E. de Vattel, The Law of Nations or Principles of Natural Law Applied to the Conducted and to the Affairs of Nations and Sovereign, vol. III, translation of the Edition of 1758 by Charles G. Fenwick (Washington, Carnegie of Washington, 1916) pp.156, 158~159; 김석현(2012), 앞의 논문, 15쪽, 재인용.

36) 시효의 완성 기간에 대해서는 100년, 80년, 50년, 30년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김석현(2012), 위의 논문, 50쪽.

보듯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편입을 부인하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주권이 제한 또는 박탈당한 상태에서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침묵한 사실을 가지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앞서 반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은 외교와 내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해 놓고 즉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독도영유권 획득의 재로 삼으려는 발상은 합당하지 않다.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도 가능하다. 1945년 해방 후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는 SCAPIN 677호(1946년 1월)와 1033호(1946년 6월)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그 이후 독도는 줄곧 한국의 관할 하에 있었다. 적어도 1952년 평화선이 공포되기 이전까지의 약 7년간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외무성의 팸플릿이나 시볼드의 의견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의를 표했지만) 한국의 독도관할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화하여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후 한국의 독도 관할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항의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방 후 일본이 한국의 독도 관할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 또는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항의 부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통감부지배나 GHQ 점령 하의 일본이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일본의 독도편입과 그 후의 조치에 대한 평가

이어서 다음과 같은 논의도 필요하다. 필자는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도해금지령)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을 근거로 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법적권원에 대해 강조했다.³⁷⁾ 울릉도쟁계합의는 17세기 말 울릉도쟁계(일

본에서는 竹島一件이라 함)를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독도와 울릉도의 조선 영유를 합의한 외교문서를 말한다. 울릉도쟁계합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일본에서는 울릉도쟁계합의는 울릉도의 영유권만을 취급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울릉도 도해는 금지했으나 독도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³⁸⁾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다수 연구에서 울릉도쟁계합의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³⁹⁾ 즉 일본정부 (막부) 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도해를 금지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일본인의 독도 도해는 없었다.

태정관지령은 1877년 일본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한다고 천명한 문서이다. 태정관지령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당시 일본의 공식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임은 분명하며, 태정관지령이 울릉도쟁계합의를 승계했다는 점에서는 일방적 행위로서의 국제법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⁴⁰⁾ 태정관지령은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쟁계합의를 승계하여 국내적으로 전환한 국내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 행위로서의 국제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⁴¹⁾ 일방적 행위란 국가의 대외적 선언을 통해 스스로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타 법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37) 이성환(2017),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62(3), 대한국제법학회; 이성환(2019), 「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에 대한 반론」 『국제법학회논총』64(2), 대한국제법학회.

38)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takeshima_point.pdf(검색일: 2020.1 0.13.)

39) 内藤正中(2011),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34,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6~8쪽;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30쪽; 박지영(2017), 「일본 산인(山陰)지방민과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에 대하여」, 『독도연구』2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384~385쪽.

40) 이성환(2019), 앞의 논문, 149쪽.

41) 이성환(2019), 앞의 논문, 149쪽.

말한다.⁴²⁾ 태정관지령이 대외적 선언에 해당하느냐의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⁴³⁾ 일본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천명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망끼에 에글레오 케이스(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당국자 간에 왕래한 내부 문서에서 망끼에제도가 영국령이라고 인정한 사실을 프랑스의 공식적 입장으로 인정하다.⁴⁴⁾

필자는, 다른 글에서,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을 합쳐 조일/한일 국경체제라 명명했다.⁴⁵⁾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은 그 이후 효력을 정지하거나 소멸시키는 조치가 취해진 흔적이 없고,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1905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한 시점에서도 울릉도 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1881년 11월 12일 시마네 현 지사가 제출한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을 접수한 내무성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울릉도쟁계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외무성에 국경관련 문제로 조선정부와 교섭이 있었는가를 조회한다. 울릉도쟁계 관련 문서를 첨부한 것은, 울릉도쟁계 이후 영유권과 관련하여 조선정부와 새로운 교섭이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 1일 외무성은 “조선국 울릉도 즉 죽도와 송도(朝鮮國鬱陵島即竹島松島,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특별한 변경”이 없다고 회신한다. 이를 기초로 내무성은 1882년 1월

42) 김석현(2006),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지위-UN국제법위원회의 작업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23호, 국제법평론학회, 108~110쪽.

43) 이에 대해서도, 태정관지령은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했을 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태정관지령이 전적으로 울릉도쟁계합의를 승계한 것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간과한 해석이다. 또 태정관지령이 울릉도와 독도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독도와 울릉도의 귀속처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44) 김석현(2012), 앞의 논문, 43쪽.

45) 이성환(2017), 「朝日/韓日 국경조약체제와 독도」, 『독도연구』23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31일자로 “최전지령(最前指令, 1877년의 태정관지령-인용자)과 같이 죽도와 송도(울릉도와 독도)는 본방(本邦)과 관계가 없으므로 개척원의 건은 허가할 수 없다”고 각하한다.⁴⁶⁾ 내무성의 이러한 조치는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와 그것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이 일본정부에 의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일 정부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울릉도에 도해하고 있는 일본인의 철수를 위해 울릉도에 파견된 야마구치 현의 관헌인 야마모토 오사미(山本修身)가 외무성에 올린 북명서(1883년 9월)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북명서에는 퇴거를 요구하는 조선 관헌에게 일본인들이 “울릉도는 귀국(조선-인용자)의 땅이라는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의 조약(條約)이 있으므로”라고 말하면서 부득이하게 철수하는 기록이 있다.⁴⁷⁾ 여기에서 ‘조약’은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를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울릉도영유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라 부를만한 것은 울릉도쟁계합의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울릉도에 도해한 일본인들이 ‘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울릉도에 도해하는 일본인들이 1699년의 울릉도쟁계합의를 근대 국제법상의 (국경)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일본은 울릉도쟁계합의나 태정관지령을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번 합의되면, 국경은 지속된다”(Once agreed, the boundary stands)는 국경신성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었으므로 울릉도쟁계합의는 지속되는 것이다. 국경조약의 성격을 감안하면 지금도 울릉도쟁계합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법적 권원도 유효하

46) 杉原隆(2011), 「明治10年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關係無之をめぐる諸問題」,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平成23年2月)」, 竹島問題研究会. 15~16쪽.

47) 木京陸人「明治十六年『蔚陵島一件』, 『山口県地方史研究』第88号 2002年10月, 山口県地方史学会. 81쪽.

다. 이처럼 1905년 시점에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한국의 법적 권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편입하고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어업권을 허가하는 등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해 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선의 법적 권원 위에 행사된 일시적 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울릉도쟁계합의라는 일종의 국경조약에 의해 확립된 조선의 법적 권원과 일본의 실효적 점유 지배 (effective possession)가 상충하게 된 것일 뿐이다. 이럴 경우 문제는 일본의 행위가 새로운 권원을 창설할 수 있는가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나이 지리아와 카메룬의 분쟁에서 새로운 실효적 행위가 이미 존재하는 법적 권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⁴⁸⁾ 일본의 편입이 정당한 권원의 창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간 영토 및 국경획정 사건에서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카메룬의 조약상의 권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이지리아가 주장하는 약 20년 간의 실효지배는 “어떤 경우에도 너무 짧은 기간(20년)”(in any event far too short, even according to the theory relied on by it)이라며 카메룬의 조약상의 권원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⁴⁹⁾ 이를 원용하면,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비록 한국의 항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독도 편입과 그 이후의 실효지배가 있어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법적(조약상의) 권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의 법적 권원은 창설되지 않는다.

나아가 일본이 1699년 이후 줄곧 독도의 한국 영유를 승인한 이상, 1905년 이후 1910년까지의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실효지배만으로는, 역사적 응고 (historical consolidation), 즉 취득시효를 원용하지 못한다.⁵⁰⁾ 오히려 응고이론

48) 김채형(2009),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분쟁해결의 분석 및 평가」, 『국제법학회논총』54(3), 대한국제법학회, 391쪽; 許淑娟(2012), 『領域權原論－領域支配の実効性と正当性』, 東京大学出版会, 257쪽.

49) 박현진(2016), 『독도영토주권연구』, 경인문화사, 122, 324쪽.

50)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련하여서는 김석현(2012), 앞의 논문, 참조.

을 적용한다면, 1699년 이래 약 200년 이상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온 일본의 행위는 독도에 대한 권원을 자발적으로 유기 또는 포기(abandonment, dereliction, renunciation)한 것에 해당된다. 반대로 일본의 승인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원이 역사적으로 응고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이 유효한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새로운 권원은 창설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과 그 이후의 행위는 위법한 정복 내지는 불법 점거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새로운 권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 측면에 비추어 보면, 나가시마가 입증하고자 한 통감부체제 하의 한국의 항의 부존재는 독도영유권 문제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6. 맺음말

나가시마의 논문은 통감부 체제하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한국의 항의 부존재가 일본의 독도 편입을 묵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가시마는 통감부 시대에서의 한일 외교의 ‘내정화’를 통해 한일 간의 연락(소통)구조가 강화되었으며, 그러한 구조 하에서 한국은 충분히 (자유로이) 일본의 편입 조치에 대해 항의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의를 할 수 없었다는 한국의 ‘상투적’ 주장은 “실체의 상황(實態)과는 정반대이다.”고 단정한다.(96)

이러한 인식은, 비록 한일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감부 통치의 본질이나 실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감부가 한국의 내정을 거의 대부분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905년 11월의 일본의 강압적인 을사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서 보듯이, 한국의 항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따라서 나가시마의 논문은 통감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관련한 서류 왕래가 있었다는 점을 (자유로운) 연락 구조의 강화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분석이라 하겠다. 통감부체제라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체제하에서의 연락 구조의 강화가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키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쉽게 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일반론을 벗어난 것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나가시마는 연락 구조의 강화를 한일 간 외교의 ‘내정화’라 정의했으나, 그가 이야기하는 ‘내정화’는 일본의 한국 ‘예속화’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나가시마가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일본의 독도편입을 묵인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간접적이거나 우연히 한국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인정한 1906년 5월 이후부터 한국의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는 1910년 8월까지의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이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독도에 새로운 권원을 창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항의의 부존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여의 짧은 기간만으로 일본이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가시마의 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아세아문제연구소(1972),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第8卷：間島案』, 高麗大學校 出版部.
- 서민교(2018), 일제강점기 용산기지의 군사전략적 기능에 대하여－1904년 러일전쟁에서 1930년대 만주사변기의 ‘조선군’의 역할과 기능－, 『서울과 역사』 98호, 서울역사편찬원.
- 이성환·이토 유키오(2010),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 한지현(2017), 「1906~1910년 통감부 이사청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기무라 간(김세덕 옮김, 2017), 『대한제국의 패망과 그림자』, 제이앤씨.
- 伊藤之雄(2010), 「이토 히로부미와 한국통치」, 이성환 외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출판.
- 한성민(2015), 「제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特使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51, 한일관계사학회.
- 엄찬호(2007), 「개화기 독도의 연구 성과와 쟁점」, 『한국사학보』28, 고려사학회. 『各觀察道案』 第1冊, 光武10年4月29日條, 「報告書號外에 대한 指令 第3號」.
- 김석현(2012), 「시효에 의한 영유권 취득」, 『국제법학회논총』57(4), 대한국제법학회.
- 이춘선(2018), 「국가행위로서 항의(protest)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63(3), 대한국제법학회.
- 김수희(2014), 「일본의 독도강점을 ‘기록화’한 ‘나카이 요자부로 문서’ 해제와 자료 소개」, 『독도연구』17,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이성환 외(2016),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지성인.
- 이성환(2017),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62(3), 대한국제법학회.
- 이성환(2019), 「태정관 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 유미림,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검토”에 대한 반론」, 『국제법학회논총』64(2), 대한국제법학회.
- 이성환(2017), 「朝日/韓日국경조약체제와 독도」, 『독도연구』23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김석현(2006),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법적 지위-UN국제법위원회의의 작업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23호, 국제법평론학회.
- 김채형(2009), 「카메룬과 나이지리아간 Bakassi반도의 주권에 관한 분쟁해결의 분석 및 평가」, 『국제법학회논총』54(3), 대한국제법학회.

- 박지영(2017), 「일본 산인(山陰)지방민과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에 대하여」, 『독도 연구』 2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384~385쪽.
- 박현진(2016), 『독도영토주권연구』, 경인문화사.
-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 永島広紀(2020), 「『内政』化する日韓の外交—公文書の往来状況に見る統監府『保護』下の大韓帝国—」, 『第4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 太壽堂 (1998), 『領土歸屬の國際法』, 東信堂.
- 許淑娟(2012), 『領域權原論—領域支配の実効性と正当性』, 東京大学出版会.
- 中野澈也(2012),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學性格」, 『関西大学法學論集』61(5), 關西大學法學會.
- 金正明編(1967), 『日韓外交資料集成』第5, 6, 8卷, 巖南堂書店.
- 金正明(1967), 『朝鮮駐日軍歷史：日韓外交資料集成、別冊1』, 巖南堂書店.
- 李修京·朴仁植(2008),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と朝鮮植民地統治政策の一考察」, 『東京学芸大学紀要』, 社会科学系I, 59호, 東京学芸大学.
- 大江 志乃夫(2001), 『世界史としての日露戦争』, 立風書房.
- 外務省編(1958), 『日本外交文書』, 日本國際聯合會.
- 松田利彦(2009),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校倉書房(이종민, 이형식, 김현 옮김 [2020]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경인문화사).
- 博文館編集局編(1910), 『伊藤博文演全集』, 博文館.
- 春畝公追頌会(1940), 『伊藤博文伝 <下巻>』, 春畝公追頌会.
- 濱田太郎(1997), 「竹島(独島) 紛争の再検討—竹島(独島) 紛争と國際法、國際政治—(二)」, 『法學研究論集』, 亜細亜大学大学院法學研究科.
- 朴培根(2006), 「日本による島嶼先占の諸先例-竹島/独島に対する領域權原を中心として」, 『國際法外交雜誌』105(2), 일본 國際法學會.
- 皆川洗(1963), 「竹島紛争と國際判例」前原光雄教授還曆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編 『國際法學の諸問題』, 慶応通信.
- 中井養三郎(1909), 『事業經營概要』.
- 内藤正中(2011), 「1905年の竹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34,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
- 杉原隆(2011), 「明治10年太政官指令-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關係無之をめぐる諸問題」, 『第2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平成23年2月)』, 竹島問題研究会.

木京睦人 「明治十六年『蔚陵島一件』」, 『山口県地方史研究』第88号 2002年10月, 山口県地方史学会.

《山陰新聞》1906년 4월 1일.

M. Shaw(2003), *International Law*, 7th ed. Cambridge Univ. press.

D.H. N. Johnson(1952), “Acquisitive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Korean Government’s Refut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s concerning Dokdo(Takeshima) dated July 13, 1953.(September 9. 1953).

E. de Vattel, *The Law of Nations or Principles of Natural Law Applied to the Conducted and to the Affairs of Nations and Sovereign*, vol. III, translation of the Edition of 1758 by Charles G. Fenwick (Washington, Carnegie of Washington, 1916).

<Abstract>

Review of Japan's annexation of Dokdo and the absence of protest from Korea

Refutation of Nagashima Hiroki's argument fo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ed as Internal Affairs”

Lee, Sunghwan

Nagashima Hiroki's study attempts to prove that Korea's failure to protest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under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system indicates that it condoned(acquiesced) or approved of the incorporation. Nagashima defined that diplomatic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treated as internal affairs” since diplomatic correspondence was carried on at working level between the Korea government and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and deduced that such internalization of diplomacy would have made it easier for the Korea government to express its intentions by ma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 and Japanese governments closer. In fact, the strengthening of the liaison structure under the vertical and coercive governance system of the Residency-General system was merely a reinforcement of Korea's subordination to Japan. Considering this aspect, his argument is a false judgment resulting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r substance of the governance of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Even if it can be proven that there was no protest from Korea, as Nagashima

claimed, this fact cannot be pointed to as a justification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Japan cannot establish a new legal title for Dokdo, simply because Korea was silent for four years, from April and May of 1906, when Korea realized Japan had incorporated Dokdo, to August 1910, when Korea's sovereignty was completely lost. It is the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at in the absence of any abandonment or transfer of sovereignty, even if there is no protest, a short period of four years of effective rule cannot establish a new legal title.

Key words: Japanese Resident-General system, absence of protest,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acquisitive prescription, acquiescence or approval.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000년 이후 독도/竹島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
3. '마쓰시마 도해허가'설
4.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
5. 지사부교(寺社奉行)의 마쓰시마 인식
6. '텐포(天保)다케시마 일건'
7. 1877년 태정관 지령
8. 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9. SCAPIN-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0. 맺음말

〈국문초록〉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

* 본고는 2020년 11월 20일에 열린 한국영토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중 <10. 맺음말> 등을 개정한 것임

** 일본 竹島=독도 연구넷

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사부교(寺社奉行)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지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텐포(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の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の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점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태정관 지령, 독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우티 포씨디티스

1. 머리말

일본에서 독도/竹島 문제를 둘러싼 연구자 간 논쟁은 치열하며 서로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한다. 예를 들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竹島문제연구회가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된 것이 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씨에 의한 일련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관한 연구다”라고 말한 다음, 이케우치의 해석을 가리켜 “초보적인 미스”라고 주장했다.¹⁾ 이에 대하여 이케우치는 하나하나씩 실증적으로 반론하고, 시모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감정론에 불과

1)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3-4쪽.

하다”라고 반박했다.²⁾ 이들의 연구를 주시하고 있던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는 시모조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훗날 주장을 바꾸어 이케우치의 견해를 지지했다.³⁾

시모조는 나이토에 대하여, “나이토의 竹島[독도] 연구는 竹島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왜곡해 왔다. 곡학아세(曲學阿世), 나이토 씨의 竹島 연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라고 비판했다.⁴⁾ 그는 나이토가 세상에 아첨하여 학문을 왜곡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주장은 비판이 아니라 중상이라고 할 만하다. 시모조의 말버릇은 최근에도 여전하다. 그는 박병섭이 『조선사연구회 회보(朝鮮史研究会會報)』에서 이케우치는 1900년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石島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다고 쓴 기사에 대해, “박병섭 씨는 『조선사연구회 회보』의 서평란을 이용하여 “칙령의 石島는 竹島=독도”라는 프로파간다를 행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⁵⁾

최근에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에 대한 이케우치의 비판이 주목된다. 이케우치는 쓰카모토의 ‘마쓰시마(松島) 도해면허’설에 대해, “무리한 주장”, “이런 공소(空疎)한 사료 해석으로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穴埋め)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⁶⁾라고 엄히 비판했다. 또한 쓰카모토의 1877년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케우치는, “무리한 논증”, “이런 논증은 학문적 영위(營爲)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전후 관계를 무시해 제멋대로 상상을 부풀리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다.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⁷⁾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아직 없는 듯하다.

2)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103쪽.

3) 内藤正中·金柄烈, 『史的檢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2007, 22쪽.

4) 下條正男,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2005a, 7/8月号, 21쪽.

5) 下條正男, 「実事求是 第51回, 慶尚北道独島史料研究会編 『竹島問題100問100答批判2』 に対する批判(1)」, 2017年12月21日掲載.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jitsuji-51.html>)

6) 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63쪽.

7) 池内敏, 위의 책, 120-122쪽.

한편, 이케우치의 연구에 대해서는 정치학자 기무라 간(木村幹)이 비판했다. 기무라는 이케우치의 저서 『다케시마 문제란 무엇인가(竹島問題とは何か)』에 대한 서평에서, “한국 측 사료는 그 태반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이며 특별히 새로운 사료가 없다. 오히려 이에 관한 저자의 분석은 한국 측 문헌이나 그 해석의 신빙성을 일본 측 사료로써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사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 근대에 관련된 분석에서는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료를 이용한, 사료 간 상호 검증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20세기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미 알려진 한정된 몇 가지 사료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을 뿐이며 표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⁸⁾ 이케우치는 이런 비판을 거의 무시하고, 그 후의 저서 『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무라의 비판을 참고로 하여 박병섭은 이케우치의 후자의 저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⁹⁾ 이런 비판을 들었는지 이케우치는 앞으로의 연구는 자기 전문인 현대 이전 일본 역사에 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¹⁰⁾

이케우치 외에도 연구자들은 연구 발표에 신중하게 된 영향도 있었는지 일본어로 발표된 독도에 관한 논문 수는 2017년부터 <그림 1>과 같이 줄어 2019년에는 7편 정도에 머물렀다.¹¹⁾ 본고는 일본어로 발표된 논문 가운데 특히 쟁점이 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이슈는 ①17세기 독도 영유권, ②‘마쓰시마 도해허가’설, ③‘다케시마 도해금지령’, ④지샤부교(寺社奉行)의 마쓰시마 인식, ⑤‘덴포(天保)다케사마일건’, ⑥1877년 태정관 지령,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⑧SCAPIN-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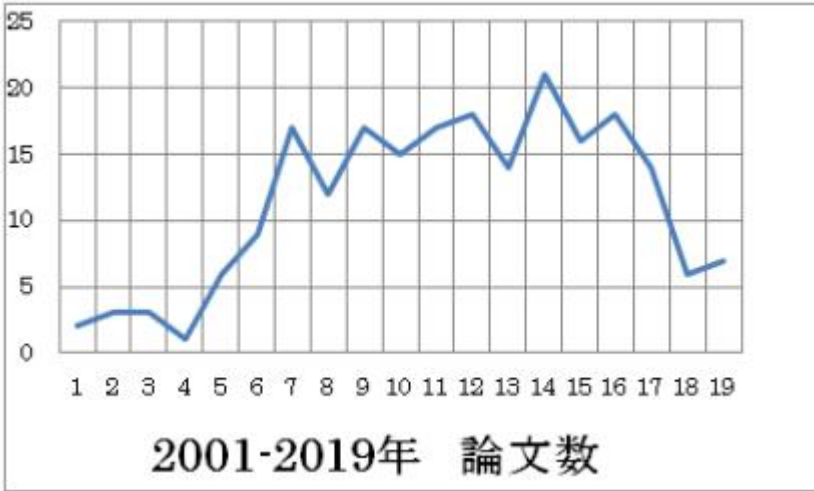
8) 木村幹,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2014, 663쪽.

9) 朴炳涉, 「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獨島研究』 第20号, 2016b, 282쪽.

10) 朝鮮史研究会月例会(2017.5.20)에서의 이케우치 사토시 발언.

11) 출처: 아래 사이트 <竹島=獨島論争(資料集)>, ‘論文·研究書一覽表’를 바탕으로 작성함. <http://www.kr-jp.net/toshokan/zasshi.html>

본고에서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호칭에 따라 기본적으로 울릉도를 가리키며,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다케시마가 독도를 가리킬 때는 竹島[독도]라고 표기한다. 또한 인용문에서 () 안은 원문대로이며, [] 안은 필자의 주기다.



<그림 1> 2001-2019년에 발표된 일본어 논문 수

2. 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

2008년 일본 외무성은 팸플릿 『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에서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竹島[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에 발행한 『竹島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도 똑같다. 그러나 이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다.

시모조 마사오는 외무성의 주장을 비판하기를, “시마네(島根)현이 2월 22일을 ‘竹島[독도]의 날’로 삼은 것은 메이지(明治) 38년(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에서 ‘무주지’였던 무인도를 竹島라고 명명하여 이를 선점(先占)하고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했기 때문이다. 외무성 팸플릿이 주장하듯이 에도시대(江戸時代)에 竹島[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메이지시대에 이를 재확인했다는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¹²⁾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외무성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외무성과 달리, “고유영토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해 지배당한 일이 없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며, 竹島[독도]는 1905년부터 일본의 실효 지배 하에 있었다. 무주지를 편입했던 일본은 竹島[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¹³⁾라는 것이다. 시모조는 자주 자기 견해를 아무 설명도 없이 변경하지만 이 견해만은 흔들림이 없다.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쓰카모토 다카시는 2010년에는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竹島[독도]는 일본에 의한 편입 조치 시점에서 일·한 어느 쪽 나라에서도 ‘고래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혹은 다른 나라)에 의한 선점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무주지였다고 할 수 있다”¹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쓰카모토는 2017년에는 앞의 주장을 잊은 듯이 견해를 바꾸어 일본은 17세기에 竹島[독도]에 대해 역사적 권원을 가졌으나 영유권까지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 권원은 그 후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경합하는 타국에 영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 12) 下條正男, 「歴史認識問題としての竹島問題を何故、解決できないのか」, 『歴史認識問題研究』 4号, 2019, 111쪽.
 13) 下條正男, 「実事求是、第20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愚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9年度, 2011, 34쪽.
 14)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2000, 89쪽.

17세기 일본인이 竹島[독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것에 관해 말하자면, 민간인이 단지 섬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국가의 영유권원이 발생하지 않으나,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가 활동한 경우는 정부가 특별히 허가했으므로 당해 허가를 국가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의 겐로쿠(元祿)기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일·조 교섭에 관련하여 행해진 막부(幕府)의 조회에 대해 돛토리(鳥取)번이 마쓰시마(오늘날의 竹島[독도])는 (돛토리번이 다스리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 양국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회답한 기록이 있으므로 일본의 영유의사가 얼마나 공고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울릉도 도항 금지 후에도 오늘날의 竹島[독도]로의 도항이 금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울릉도로 갈 일이 없어졌던 결과(오늘날의 竹島[독도]도 해만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그 후 200년에 걸쳐 竹島[독도]에서 정부가 공인한 어업의 기록이 없다…[중략]

일본의 竹島[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만약 실질적 점유에 의한 영토 주장이 생긴다면 이것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경합하는 주장이 없을 경우 영유권을 확립하기에 충분하더라도, 분쟁이 생길 경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근대적인 권원에 의해 치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¹⁵⁾

이처럼 쓰카모토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권원이 지속적이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에 근대적인 권원으로 치환되고서야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케우치는, “늦어도 17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일본]의 竹島[독도] 영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팸플릿이 말하는 견해는 성립되지 않는다”¹⁶⁾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① 1696년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독도)가 돛토리(鳥取)번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돛토리번의 회답서를 바탕으로 하여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금지령은 마쓰시마 도해 금지를 함의한다, ②

15) 塚本孝, 「国際法的見地から見た竹島問題」、『不条理とたたかう』, 拓殖大学, 2017, 141-142쪽. 인용문에서 쓰카모토의 주기는 생략했음.

16) 池内敏, 앞의 책, 2016, 81쪽.

다케시마 도해가 금지되었다면 마쓰시마의 활용은 경제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었다.

3. ‘마쓰시마 도해허가’설

일본에서 둘째 쟁점은 쓰카모토 다카시가 주장하는 ‘마쓰시마 도해허가’ 설이다. 만약 마쓰시마(독도)에서의 어렵이 막부의 허가 아래 행해졌다면, 막부는 마쓰시마에 대해 영유사 혹은 탈취 의도를 가지고 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일찍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막부가 17세기 중엽에 ‘마쓰시마 도해 면허’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¹⁷⁾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외무성은 한국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 4」(1962.7.)에서 처음으로 竹島[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면허의 존재를 최초로 부정한 자가 바로 쓰카모토 다카시다.¹⁸⁾ 그러나 쓰카모토는 2011년에는 도해면허 대신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을 주장했다.¹⁹⁾ 그 근거는 일찍이 가와카미가 도해면허설 근거의 하나로 삼았던 가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의 서장이다. 쓰카모토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와 막부 사이를 중개하고 있던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라는 막부 관료(旗本)의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이 오야 규에몬 가쓰자네(大谷九右衛門勝實)에게 보낸 서간(1660)에서 내년부터 오야의 배가 마쓰시마로 도해할 일에 대해 시로고로가 로주(老中)²⁰⁾의 내의(內意)를 얻었다고 했으므로 기록상 1661년 이후에는 오늘날의 竹島[독도]에 대해서도 막부

17)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73쪽.

18)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 244号, 1994, 1쪽; 同第2版(289号), 1996, 2쪽; 同第3版(701号), 2011, 2쪽.

19) 위의 책 제3판의 주기6(2쪽)에, “정식으로 [마쓰시마 도해가] 허가된 시기는 寛文元(1661)년쯤이라고 고증되고 있다. 川上, 前掲書, 73-83쪽” 이라는 글이 있다.

20) 로주는 평상시 막부의 최고 집권자들이며, 3-4명으로 구성된다.

의 공인 하에 도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라고 주장했다.

이 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이름도 분명치 않은 모 로주의 ‘내의’를 가지고 ‘막부의 공인’, ‘막부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폭론이다. 더구나 이 사료가 말한 ‘내의’ 그 자체가 아베 시로고로 마사유키의 재량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인, 가공의 작위 가능성조차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가와카미 자신이 말하고 있다. 이런 공소(空疎)한 자료 해석으로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穴埋め)’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²²⁾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케우치는, “[쓰카모토는] 마쓰시마 도해에도 막부의 허락·공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어이 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 같다. 그러나 역사 사실은 사료로부터 구축해야 한다”²³⁾고 주장하면서 ‘로주의 내의’를 철저히 규명했다. 이케우치는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 문구는 호주가 바뀌어 얼마 되지 않은 아베 가문이 종래대로 오야·무라카와 양가를 조율하는 지위에 머물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로주의 권위를 이용한 장식 문구에 불과하다, ‘로주의 내의’를 역사적 사실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²⁴⁾ 이에 대한 쓰카모토의 반론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로주의 내의’에 관한 가메야마 서장의 글은, “내년부터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당신의 배가 건너가게 될 일에 관해 선년에 시로고로가 로주님의 내의를 얻었습니다”²⁵⁾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막부 관료나 도해 당사자들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안에 있는 섬, 즉 다케시마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서장 외에도 오야 가문의 기록에 마쓰

21)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2014, 142쪽.

22) 池内敏, 2016, 앞의 책, 366쪽.

23) 池内敏, 「17世紀竹島漁業史のために」, 『名古屋大学人文学研究論集』 第2号, 2019a, 16쪽.

24) 池内敏, 「老中の内意」考, 『日本史研究』 682号, 2019b, 67쪽.

25) 원문은, “来年より竹嶋之内松嶋へ貴様舟御渡之筈ニ御座候旨 先年四郎五郎御老中様へ得御内意申候”이다. 가메야마 서장은 東京大学史料編纂소가 소장하는 『大谷氏舊記』 三에 사본이 게재되어 있다.

시마는 “다케시마 도해 항로에 있는 마쓰시마(竹嶋渡海筋松嶋)”, “다케시마 근처의 소도(竹嶋近所之小嶋)” 등으로 기록되어 왔다. 따라서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가진 어민들이 다케시마의 부속 섬, 혹은 길목에 있는 마쓰시마로 도해하는 것은 막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무라카와 가문은 아무 허가 없이 마쓰시마로 도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메야마 서장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카와가 아베 및 그 가신을 움직여 오야 가문을 마쓰시마 도해 사업에 끌어들이려 한 것은 제약이 많은 마쓰시마 어렵이 오야 가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오야 가문도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렵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가메야마의 설득을 받아들여 마쓰시마에서의 어렵을 1661년부터 시작한 것이다.²⁶⁾

4.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

일본에서 셋째 쟁점은 1696년(元祿 9년) 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막부는 ‘다케시마 일건’(울릉도쟁계)의 결과 돗토리번에 다케시마로의 도해를 금지하고, 이를 알리는 외교문서를 쓰시마번으로 하여금 조선 정부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의 이름이 없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는지 여부가 일본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 외무성 팸플릿의 견해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위의 [1699년 조선에 전달한] 구상지각(口上之覺)에 있듯이 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것은 “근래 조선인도 도해하고 (양국 어민들이) 섞였던” 것이

26) 朴炳洙, 「江戸時代の竹島=獨島での漁業と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12, 24-25쪽.

문제였기 때문이며, 오늘날의 竹島[독도]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도해 금지의 대상은 과거의 다케시마(울릉도)이며, [외교부 팸플릿 주장처럼] 울릉도 (방면)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竹島[독도]를 포함시킬 수 없다.²⁷⁾

이에 대해 이케우치는 도해금지령이 돗토리번의 회답, 즉 다케시마·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 영지가 아니라는 회답에 근거하여 내려졌으므로 금지령의 글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금지령은 마쓰시마로의 도해금지를 함의한다고 주장했다.²⁸⁾ 이케우치가 말하는 회답서는 『다케시마 문서(竹嶋之書附)』에 기록된 돗토리번의 첫째 회답서다. 돗토리번은 로주의 하문에 대해 겐로쿠 8년(1695) 12월 25일, “다케시마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의 부속이 아닙니다…다케시마·마쓰시마, 그 외 양국[이나바국 및 호키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²⁹⁾라고 회답한 것이다.

이 회답서에 등장한 마쓰시마에 관해 로주는 돗토리번에 두 번째 하문을 했는데 이 회답서에 대한 이케우치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 이 회답서는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³⁰⁾라고 썼는데, 이케우치는 ‘어느 나라’를 이나바국과 호키국이라고 좁게 해석하고, 돗토리번은 “마쓰시마는 이나바·호키, 어느 쪽 나라에도 부속된 것이 아닙니다”³¹⁾라고 회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어느 나라’는 이나바·호키 양국이나, 혹은 앞의 「회답서」에서 마쓰시마에 관한 단정적인 대답 형식과의 차이로 보아 일본의 다른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27) 塚本孝, 「竹島領有權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 52号, 2016, 74(85)쪽.

28) 池内敏, 2016, 앞의 책, 75-76쪽.

29) 『竹嶋之書附』(鳥取縣立博物館所藏)의 原文은, 「竹嶋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竹嶋松嶋其外両国え附屬の嶋無御座候事」。

30) 원문은, “松島は何れの国え付候島にても無御座由承候” 이 글은 『竹嶋之書附』, 「元禄九年正月廿八日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및 『磯竹島覺書』, 松平伯耆守의 「覺」에 기록되고 있다.

31)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27쪽; 池内敏, 2016, 앞의 책, 75쪽.

는 뜻을 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하고³²⁾ 확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는 돗토리번은 자기 영지에 관해서는 첫 번째 회답서처럼 단정적으로 회답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회답서는 돗토리번 외 영지에 관한 것이므로 전문(伝聞)식으로 회답했다고 보아야 하며, ‘어느 나라’는 ‘일본의 어느 나라’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³³⁾ 이처럼 돗토리번의 두 번째 회답서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가장 잘 아는 돗토리번이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힌 자료다. 이들 돗토리번의 두 회답서를 바탕으로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금지령에는 마쓰시마도 함의되고 있는 것이다.

쓰카모토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다는 것은 다음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도해금지령 직후 가령 오야 등이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돗토리번 혹은 막부에 신청했다면 허가될 것인가? 돗토리번은 마쓰시마가 돗토리번은커녕 일본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고 막부에 보고했으므로, 그렇다면 돗토리번 혹은 막부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쓰카모토의 주장은 너무 무리한 듯하다.

5. 지사부교(寺社奉行)의 마쓰시마 인식

막부의 마쓰시마(독도) 인식을 직접 드러내는 자료는 17세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18세기에는 존재한다. 그것은 이케우치가 2015년에 발굴한 『무

32) 塚本孝,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 411号, 1985, 87쪽. 다만 쓰카모토는 다음 논문에서 ‘어느 나라[지방]’를 아나바·호키 두 나라라고 해석했는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塚本孝, 「元祿竹島一件をめぐっ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 2卷2号, 2013, 43쪽.

33) 竹内猛, 『竹島=独島問題: 「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前編, 報光社, 2010, 45쪽.

라카와가 문서(村川家文書)』³⁴⁾이다. 이 자료를 둘러싸고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으로 인해 생업을 잃은 오야 가문은 이를 대신할 이권을 얻으려고 1740년 에도로 가서 지사부교에게 탄원했다. 막부의 3대 부교의 하나인 지사부교는 사찰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간쥬부교(勘定奉行), 에도마치부교(江戸町奉行)들과 더불어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評定所)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고위 직함이다.

『무라카와가 문서』에 따르면, 1740년(元文5년) 오야는 지사부교 전원(4명)이 모인 회의에서 다케시마를 대신할 이권으로서 ‘오사카 회미(大坂廻米)’와 나가사키(長崎) ‘관물할부연중(貫物割符連中)’³⁵⁾에 참여하고 싶다고 청원했다. 이에 대해 지사부교 일동은 오야 가문이 대대로 다케시마를 지배해온 것은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가 명해진 이후는 돗토리번 요나고(米子) 가로(家老)³⁶⁾로부터 녹봉이라도 받아 왔는가?”³⁷⁾를 오야 가쓰후사(大谷勝房)에게 질문했다. 또한 지사부교로부터 에도에 근무하는 나가사키 부교를 찾도록 지시받은 오야는 나가사키 부교를 찾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를 말하고, 그 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케우치는 이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막부의 최고 행정기관(幕閣)과 오야 가쓰후사는 모두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금제’로 이해했던 것이라고

34) 「延享元年子五月於江戸表奉願上候一件」, 『村川家文書』(写), 米子市立圖書館所蔵, 43-5 5丁.

35) ‘관물할부연중’은 아래 문헌에 따르면 청국에 수출하는 건물(마른 전복, 해삼, 상어 지느러미 등 소위 다와라모노(俵物))의 집하 등을 독점적으로 허가받은 상인 조직을 가리킨다. 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136쪽.

36) 가로는 각 번의 최고 집권자이며 3-6명 정도로 구성된다. 돗토리번의 경우 가로의 한사람 아라오(荒尾)씨가 요나고 성에 상주하여 자주적인 정치(自分手政治)를 행했다.

37) 원문은, “次ニ御尋之趣 竹嶋松嶋兩嶋渡海禁制ニ被仰出候以後ハ伯州米子之御城主ヨリ 御憐憫ヲ以世仕罷在候由願書ニ書記シ候段 然者扶持杯請申候哉ト御意被成候”. 池内敏, 2015, 「「国境」未滿」, 『日本史研究』 630号, 16-18쪽.

주장했다.³⁸⁾

이에 대해 쓰카모토는 지사부교의 발언은, “원서에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가 내려진 후는 하쿠슈(伯州, 호키국) 요나고 성주가 도와 주셔서 살아 왔습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녹봉이라도 청원했느냐”는 뜻이며,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는 글은 지사부교가 오야의 탄원서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³⁹⁾

쓰카모토의 이의에 대해 이케우치는 오야의 청원서 원문을 살펴보고, 원문에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라는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사부교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로 인식하여 말한 것이며, 쓰카모토의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카모토는 자료에서 “녹봉이라도 청원했느냐”라고 해석했으나, 이는 “녹봉이라도 받았느냐”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케우치는 지적했다.⁴⁰⁾

이 반론에 대해 쓰카모토는 녹봉에 관해서는 ‘청원했느냐’를 ‘받았느냐’로 바꾸었으나, 지사부교의 인식에 관해서는, “문서 전체를 통독하면 부교쇼는 [오야가 제출한] 유서(由緒)의 확인을 위해 과거 쇼군(將軍)님을 배알한 기록을 조사한 것(A12) 이외는 특별히 독자적인 정보를 쓴 것이 아니며, 오야 규에몬 가쓰후사(大谷九右衛門勝房)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한 것처럼 보인다.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가 막부의 인식을 나타내는지, 또한 역사 사실로서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는지는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⁴¹⁾라고 주장했다.

지사부교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라는 발언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이를 드러내는 사료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사부

38) 池内敏, 「国境」未滿, 『日本史研究』 630号, 2015, 16-18쪽.

39) 塚本孝, 2016, 앞의 글, 73(86)-72(87)쪽.

40) 池内敏, 「日本と韓国の「固有領土」論, 『第1回 芳村獨島研究会 國際學術會議論文集』 2018, 122-124쪽.

41) 塚本孝, 「大谷家文書「乍恐申上候口上之覚一兩島渡海禁制に關連して」, 『第4期「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 2020, 56쪽.

교는 늦어도 오야를 만났을 때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지”라는 인식을 가졌음은 확실하다. 또한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는지 여부를 문제시하고 있으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의 이름이 없어도 금지령이 마쓰시마로의 도해금지를 함의하고 있음은 이케우치가 지적한 대로다.

6. ‘덴포(天保) 다케시마 일건’

일본에서 다섯째 쟁점은 ‘덴포 다케시마 일건’을 둘러싼 문제다. 쓰카모토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후도 마쓰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는 근거로써 이 사건을 인용했다.

‘덴포 다케시마 일건’, 일명 ‘하치에몬 일건’이란 덴포 기 이와미국(石見國) 하마다(濱田)에서 회선업(廻船業)을 경영하는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⁴² 등이 다케시마(울릉도)로 밀항하여 벌목 등을 하여 밀매한 사건이다. 1836년 막부는 하치에몬 등을 체포해 처형하고 다음해에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시 내렸다. 하치에몬은 오사카마치부교쇼(大坂町奉行所)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하마다번(濱田藩) 가로의 가신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의 시사대로 다케시마로 도향한 것이 아니라 마쓰시마로 도향한 것이었다고 발뺌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재판 판결문에서 특히 마쓰시마가 언급되어,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에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가고”라고 기록되었다.

이 문구에 주목한 일본 정부는 일찍이 한국 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3」

42) 하치에몬의 옥호(屋號)는 자료에 따라서는 아이즈야(會津屋)라고 하지만, 하치에몬은 공술조서 『다케시마 도해일건기』에서 스스로를 이마즈야(今津屋)라고 칭했다. 이를 포함하여 여러 사료를 고려하면 이마즈야가 맞다. 자세한 것은, 森須和男, “天保竹島一件顛末,” 『郷土石見』 102号, 2016, 33쪽.

(1956.9.20)에서 이 판결문을 인용하여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마쓰시마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고유영토론의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외무성은 일본에 유리할 터인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 대해 침묵한 채 아무 말이 없다. 대신 외무성 견해를 이어받은 연구자가 쓰카모토다. 그는 판결문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가고” 운운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다케시마(울릉도)와의 대비에서 마쓰시마가 본방에 소속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증거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했다.⁴³⁾

쓰카모토의 견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계속해 일본인의 마쓰시마 도해가 금지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하치에몬이 처형당한 사실은 하시모토의 시사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⁴⁴⁾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하치에몬이 처형당한 이유는 다케시마로의 밀항 때문이며 마쓰시마의 소속 문제와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이케우치의 반론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는지, 쓰카모토는 여전히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겐로쿠 기] 울릉도로의 도해금지 후로도 오늘날의 竹島[독도]로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일본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⁴⁵⁾라고 주장했다.

이케우치는 이번 도해금지령이 겐로쿠 기의 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거는 금지령의 문구에 있다. 금지령은, “위의 섬[다케시마]은 과거 하쿠슈(伯州) 요나고 사람들이 도해하여 어럽 등을 했는데, 겐로쿠 기 [쇼군이] 조선국에 건네주셨던 이후 도해 정지를 명한 곳이다. 이국으로의 도해는 모두 중대한 금제다. 금후 위의 섬도 똑같이 명심하여

43) 塚本孝, 1994, 앞의 책, 3쪽; 同 第2版(289号), 1996, 4쪽; 同 第3版(701号), 2011, 3쪽.

44) 池内敏, 2016, 앞의 책, 106-107쪽.

45) 塚本孝, 2017, 앞의 글, 141쪽.

도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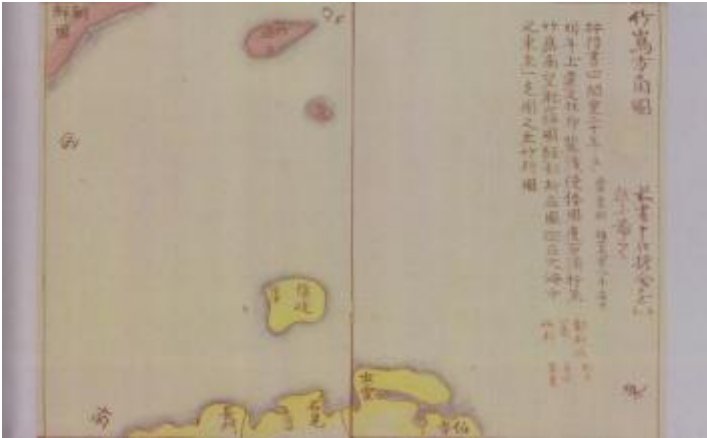
그런데 이 문언에서는 덴포 기 막부는 겐로쿠 이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였다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막부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오해한 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따라서 덴포 기 막부는 마쓰시마에 대한 겐로쿠 기 막부의 인식을 반드시 올바르게 이어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⁴⁶⁾ 그렇다면 겐로쿠 기 막부의 마쓰시마 인식을 덴포 기 막부가 올바르게 이어받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 케우치의 반론은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해 박병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⁴⁷⁾ 하치에몬이 ‘마쓰시마로 도향했다고 진술했으므로 막부는 마쓰시마의 소속을 판단해야 했으며,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하치에몬 등을 취조한 오사카마치 부교쇼는 다케시마·마쓰시마 두 섬을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이를 표시하는 지도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그림 2>를 시험적으로 작성하고 하치에몬의 공술조서 『다케시마 도해 일건기(竹嶋渡海一件記)』에 첨부했다.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이 붉은 색으로 채색하여 일본 영토와 구별했다. 부교쇼는 하치에몬이 가령 마쓰시마로 도향했더라도 거기 도 조선 영토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음에 하치에몬을 취조한 평정소는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쓰시마번에게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 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조선 강원도 울진현 동해 가운데 울릉도라는 낙도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중략] 마쓰시마는 겐로쿠 연간에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老中阿部豊後守)님이 하문하셨을 때 ‘다케

46) 오해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이케우치는 1740년대 오야 가문이 막부에 생업 보장을 청원한 데 있다고 보았으나, 박병섭은 아래 논문에서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朴炳涉, 「天保竹島一件における松島(独島)に対する日本の領有權論争」, 『韓日關係史研究』 67輯, 2020, 254-256쪽.

47) 朴炳涉, 「元祿・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号, 2015, 36-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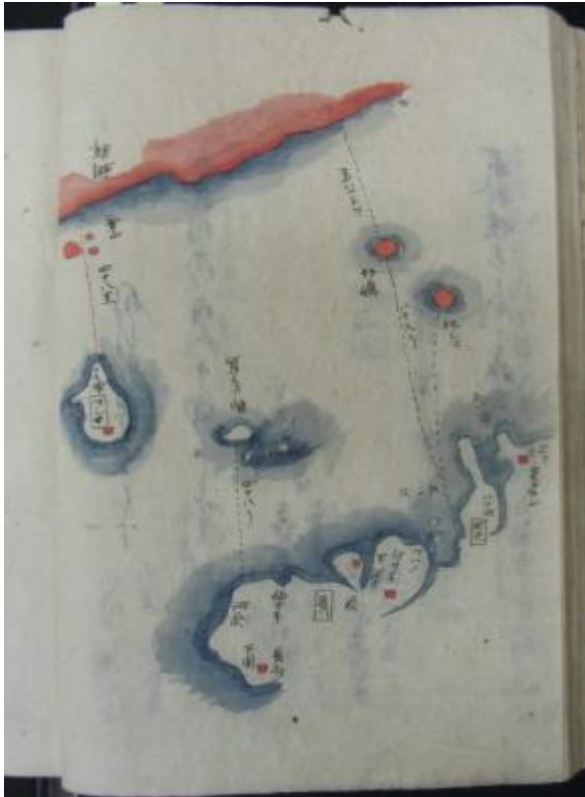


<그림 2> 오사카마치부교쇼가 작성한 「다케시마 방각도」

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으며, 거기에도 일본인들이 건너가 어렵을 한다고 아랫것들의 풍설로 듣고 있습니다'라고 아뢰는 것이 기록에 보입니다, 다케시마처럼 일본인이 건너가서 어렵을 하는 것이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되지만 단정적으로 회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지도를 가지고 생각하면 울릉·우산 두 섬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의 다케시마로 저쪽 나라 어민들이 건너가고 목재가 많은 섬이라고 들었고, 배를 만들기 위해 건너간다는 것이며,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⁴⁸⁾라고 회답했다. 이 회답으로 인해 평정소는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했을 것이다.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 방각도」를 바탕으로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린 지도<그림 3>를 작성해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嶋渡航始末記)』에 첨부했다. 이 지도도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이 붉은 색으로 채색하여 일본 영토와 구별했다.

이들 지도 2장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일본인 연구

48) 「대마도 증가문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4013; 池内敏, 「一七~一九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学研究』 756号, 2001, 30쪽; 池内敏, 2012, 앞의 책, 69쪽.



<그림 3>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 부속 지도

자들은 아무도 지도의 채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박병섭이 채색을 언급한⁴⁹⁾ 후 비로소 다케우치 다케시가 2014년에 이를 확인하고 논문에서 언급했다.⁵⁰⁾ 이들 자료로 인해 덴포기 막부가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했음이 확실하므로 쓰카모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49)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12, 28쪽.

50) 竹内猛, 「竹島」編入当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 『郷土石見』, 95号 2014, 45-46쪽. 이 논문 53쪽에는 컬러 지도가 게재되어 있다.

7. 1877년 태정관 지령

일본에서 여섯째 쟁점은 메이지 시대 태정관 지령에 관한 문제로 논쟁이 가장 치열하다. 1877(明治 10)년 3월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이 제출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日本海内竹島他一島地籍編纂方伺)」에 대해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에 있는 ‘다케시마 외 일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시모조 마사오는 자기주장을 아무 설명도 없이 자주 바꾸었다. 그는 ① 2004년 ‘외 일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불명이라고 말했으나, ② 2006년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竹島[독도]라고 말했다. 그런데 ③ 2007년 3월 그는 시마네현이 인식한 ‘외 일도’는 竹島[독도]이지만 태정관이 인식한 ‘외 일도’는 울릉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④ 같은 해 7월에는 시마네현도 태정관도 ‘외 일도’를 울릉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⁵¹⁾ ⑤ 최근 시모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태정관 지령을 문헌 비판 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에 그려진 이소타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 竹島[독도])가 된다. 그런데 “당시 외래 지도 및 해도에는 竹島(아르고노트 섬)와 마쓰시마(울릉도)를 그린 것과,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양쿠르 열암(오늘날의 竹島[독도])를 그린 것 등 두 종류가 있었다. 이 사실은 태정관이 전자의 지도 및 해도에 의거하여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일도(마쓰시마)는 울릉도가 된다”⁵²⁾는 것이다. 이처럼 시모조는 주장에 네 번이나 바꾸었으며 정견이 없다. 또한 변경의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당초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오늘날의 竹島(독도)를

51) 朴炳涉,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研究』 第4号, 2008, 89-90쪽.

52) 下條正男, 『韓国の竹島教育の現状とその問題点』,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8, 59-64쪽.

가리키며, 마쓰시마도 형식적으로 일본과 관계없는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⁵³⁾ 그러나 최근에는 견해를 바꾸어,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질문서에 기록된 ‘외 일도’는 마쓰시마를 가리키지만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외 일도’는 울릉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내무성이 태정관에 제출한 질문서에 첨부된 서류는 17세기 말의 일조 왕복 문서 등이며 오늘날의 竹島[독도]를 언급한 것이 없었다. 질문서 자체가 다케시마(현재 울릉도) 관할에 관해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의 질문서가 있어서 조사한바 운운이라고 하고 있다. 즉 “내무성은 시마네현 질문서 표제의 ‘외 일도’나 설명 자료에 있는 ‘마쓰시마’의 기사를 무시하고 있다.” 한편 그 당시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도 울릉도를 가리켰으며, 1881년에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일본해 내 마쓰시마 개간의 일에 관한 질문서(日本海内松島開墾之儀に付伺)」에 대한 외무성 의견서에 “조선국 울릉도 즉 다케시마 마쓰시마”라고 기재되었다. 또한 다음해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회답서에 “서면 마쓰시마의 건은 최근 지령대로 본방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기재되었다. 이처럼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다케시마(현재 울릉도) 및 명칭 상 또 하나의 섬(마쓰시마, 이것도 울릉도)에 관해 본방과 무관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카모토는 주장했다.⁵⁴⁾

쓰카모토는, “내무성은 시마네현 질문서 표제의 ‘외 일도’나 설명 자료에 있는 ‘마쓰시마’의 기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의문이다. 태정관 기록인 『태정류전(太政類典)』 제2편 제96권에 기록된 문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함(日本海内竹島外一島を版圖外と定む)」을 보면 거기에는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질문서 전체가 필사되어 있다. 따라서 내무성이 시마네현 질문서 전체를 첨부문서로 제출한 것이 분명하다. 태정관은 시마네현 질문서를 필사한 가운데 마쓰시마에

53) 塚本孝, 1994, 앞의 글, 5쪽.

54)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191-192쪽.

관해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위 30정[3.3km] 정도이며 죽목(竹木)이 드물다. 또한 물고기와 짐승이 난다”라고 『태정류전』에 기록했다. 따라서 내무성 및 태정관은 마쓰시마에 관한 위의 설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명한 것이 확실하며, 쓰카모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다.

쓰카모토의 견해에 대해 이케우치가 철저히 반론했다. 이케우치는 내무성 질문서에 첨부된 일련의 문서와 지도에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묶어 질문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내무성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라는 제목의 질문서가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케우치는 일본 정부가 마쓰시마를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무성 지리국(地理局)이 작성한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거론하여 반론했다. 이 문서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계기가 된 돗토리번 회답서 등을 수록하고,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무성은 마쓰시마에 관해서도 분명히 조사를 했으며, 중앙 정부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주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⁵⁵⁾

그러나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소타케시마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확실히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문서를 제출한 3월 17일 이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케우치의 약점을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가 인용한 문헌은 표지에는 ‘磯竹島覺書/地理局’이라고 쓰고 있으나, 이런 문서의 표지는 허물어지면 수리할 때 바뀌기 때문에 안의 표지(內表紙)가 더 중요하다. 안의 표지는 ‘磯竹島覺書 劄’이라고 쓰고 옆에 주인(朱印) ‘지리료인(地理寮印)’이 찍혀 있다. 지리료는 1877년 1월 11일에 이름을 지리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리국의 『이소타케시마 각서』는 내무성이 질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므로 이케우

55) 池内敏, 2016, 앞의 책, 112-114쪽.

치의 주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⁵⁶⁾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자료는 같은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한 또 하나의 『이소타케시마 각서 완(磯竹島覺書完)』이다.⁵⁷⁾ 이 자료에는 안의 표지가 없으며 책 마지막에 ‘明治八[1875]年八月八日 中邨元起’라고 쓰고 주인(朱印) ‘元起’가 찍혀 있다. 이 외의 내용은 지리국의 『이소타케시마 각서』와 거의 같다. 나카무라 겐키(中邨元起)는 내무성 지리료 지지과에서 일본 지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소타케시마 각서 완』을 편찬한 것이다. 그런데 지리료 가운데 나카무라가 속한 지지과만은 1875년 9월 태정관 정원 수사국(正院修史局)으로 옮기고 지지과(地誌掛)가 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 9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한 문외가 내무성에 제출되었다. 이를 심사할 때 내무성 지리료는 태정관에 있는 『이소타케시마 각서 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그 사본 『磯竹島覺書全』(표지는 『磯竹島覺書地理局』)을 작성했다고 보인다. 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 일도’ 즉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질문서를 태정관에 제출했다. 쓰카모토는 “태정관이 내무성의 판단과 따로 독자적인 조사를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썼으나,⁵⁸⁾ 내무성 지리과를 받아들이고 『이소타케시마 각서 완』을 보유한 태정관이야말로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가장 잘 아는 기관이었다. 이로 인해 태정관은 내무성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에 대해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3일 만에 신속히 ‘다케시마 외 일도’를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결국 내무성 및 태정관 등 일본의 중앙정부는 주체적으로 마쓰시마(독도)의 소속을 판단하여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케우치는 태정관 등이 주체적으로 마쓰시마를 판단했음을 드러내는 자료로 『지학잡지』를 들었다. 즉 그는 1905년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

56) 朴炳涉, 2016b, 앞의 글, 305쪽.

57) 朴炳涉,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調査」,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1号, 2016a, 55-56쪽.

58) 塚本孝, 2013, 앞의 글, 50쪽.

마로(田中阿歌麻呂)가 학술지 『지학잡지』에 쓴 기사를 제시했다. 이 내용은, “메이지 초년에 [태정관] 정원 지리과[지지과의 잘못]에서 그것(竹島 [독도])이 본방의 영유임을 완전히 부인했으므로 그 후 출판된 많은 지도는 그 소재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케우치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의 해석과 평가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⁵⁹⁾

결국 쓰카모토의 견해, 즉 내무성이 시마네현 질문서에 있는 마쓰시마를 무시했다거나, 태정관은 독자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견해는 완전히 부인된다. 이런 쓰카모토의 자세를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쓰카모토의 ‘논증’의 문제점은 먼저 다케시마, 마쓰시마의 중대한 대치(代置)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시대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 확정을 피하고 후대의 사료를 원용해서 잘못된 추리를 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케우치는, “쓰카모토는 자기의 논증 과정을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사료를 자의적으로 잘라내고 그러모아 하나로 만듦으로써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증’은 학문적인 영위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생기(生起)한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상상을 부풀린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다.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의논의 현장에 가져온 것뿐이다”⁶⁰⁾라고 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쓰카모토의 반론은 아직 없는 것 같다.

8. 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일본에서 일곱째 쟁점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石島다.

59) 池内敏, 2016, 앞의 책, 117쪽.

60) 池内敏, 2016, 앞의 책, 120-122쪽.

이 칙령은 울도군을 신설하고, 그 범위를 울릉전도, 죽도, 石島로 규정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이 칙령의 의의를 시모조 마사오는, “만약 이 石島가 한국 측 주장대로 竹島[독도]라면 竹島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1905년에 앞서 竹島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竹島[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한국 측 주장대로 위법 행위가 된다”⁶¹⁾라고 주장했다. 또한 쓰카모토 다카시도 칙령이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면, “일본이 竹島[독도]를 영토로 편입해서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 1905년보다 앞서 이 섬을 울도군 관할 구역으로 한 것이 된다”⁶²⁾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石島가 독도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은 石島를 독도라고 보았다.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⁶³⁾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⁶⁴⁾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⁶⁵⁾ 등이 그러하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2000년에는 石島를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와 관련시켜, “군수가 해도(該島[독도])를 ‘본군 소속’이라고 쓴 것은 앞의 칙령 제2조에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石島를 관할할 사’라고 정한 것에 있다(石을 방언으로 독이라고 하므로 獨과 통한다고 한다)고 생각된다”⁶⁶⁾라고 주장하고 石島를 독도라고 보았다. 그러나 2016년 쓰카모토는 이 논문을 읽은 듯이, “[칙령 제41호] 원문에 기록된 것은 ‘石島’이며, 이를 독도(竹島)와 관련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음운(音韻)변화설은 칙령에서 ‘石島’라고 기록한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竹島[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가 아니었던가”⁶⁷⁾라고

61) 下條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b, 98쪽.

62)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194쪽.

63) 梶村秀樹, 「竹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号, 1978, 23쪽.

64)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3, 72쪽.

65)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多賀出版, 2000, 177쪽.

66)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第3号, 2000, 89쪽.

쓰고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과거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다.

한편, 시모조는 石島에 대한 주장을 몇 번이나 바꾸었다. 그는 ①1999년에는 한국인은 독도를 몰랐으며 石島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가, ②2004년에는 石島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③2006년에는 다시 石島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⁶⁸⁾ 그러다가 ④2009년에는 石島를 ‘쌍항초(雙項礁)’로 보았다. 그러나 ‘쌍항초’는 관음도 동쪽에 있는 쌍정초(雙頂礁)의 오독이다. 이는 암초(暗礁)이며 石島가 아니다.⁶⁹⁾ 시모조는 이 오류를 알았는지, ⑤최근에는 石島를 다시 관음도로 보았다.⁷⁰⁾ 이처럼 시모조는 네 번이나 주장을 바꾸어 정견이 없다. 또한 주장을 바꾼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는 石島를 관음도라고 주장했다. 그 논증법이 독특하다. 후나스기는 관광유람선을 타고 울릉도 주위를 일주한 결과, “울릉도 주변에는 바위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결과 섬은 죽서(竹嶼), 관음도 외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릉도 주변에서는 섬과 바위가 구별이 안 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분명히 틀린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石島는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밝혀졌다”⁷¹⁾라고 주장했다. 학술적으로는 石島의 비정은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는 관광유람선에서 관찰한 것으로 石島를 비정했다. 후나스기의 주장은 학술적인 연구와는 무관할 것이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2012년, “石島가 다케시마[독도]와 일치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증명된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石島는 독도에 알맞다고

67) 塚本孝, 2016, 앞의 글, 68(91)쪽.

68) 朴炳涉,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研究』 第4号, 2008, 81-83쪽.

69) 朴炳涉,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研究』 第7号, 2009, 104쪽(일본어), 132-136쪽(한국어).

70) 下條正男, 『韓国竹島教育の現状とその問題点』,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8, 73-74쪽.

71) 船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II)」,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172쪽.

하는 발상은 1900년 당시에는 볼 수 없다⁷²⁾라고 하여 ‘石島=獨島’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유론(謬論)”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6년 이케우치는 『민국일보』(1962.3.19)⁷³⁾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김윤삼 노인이 돌섬에서 강치잡이를 1894년경부터 했다는 회상은 자료적 가치가 반드시 높지는 않지만 칙령이 말하는 石島가 독도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⁷⁴⁾ 문제점은 ①대한제국 학부가 발행한 지도에 보이는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면 칙령 제41호는 왜 ‘우산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는가? ②1906년 심홍택 보고서 등은 왜 칙령 제41호에 있는 石島 이름을 쓰지 않고 공문서에 ‘독도’ 이름을 썼는지, 그 경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관해 박병섭은 2010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⁷⁵⁾ 石島와 돌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은 한국 각지에 있는 石島의 당시 호칭이다. 일본 수로부가 발행한 『조선수로지』 제2개판(1907) 및 『일본수로지』 제6권(1911) 등에는 한국 각지의 石島가 7개소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중 5개소 石島에 일본어 후리가나가 달려 있어 당시의 호칭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 비인만에 있는 石島 2개소에는 ‘トルソム’(도루소무)와 ‘マクソム’(마쿠소무), 경기도 한강구의 石島는 ‘トルソム’(도루소무), 황해북도 대동만의 石島는 ‘トリソム’(도리소무), 전라남도 소안군도의 石島는 ‘ト、クソム’(도토쿠소무)라고 후리가나가 달려 있다. 이처럼 ‘石島’는 모두 ‘석도’라고 음독(音讀)된 것이 아니라, 훈독(訓讀)되었다. 위에서 ‘도루소무’(トルソム)나 ‘도리소무’(トリソム)는 ‘돌섬’의 일본어 표기다. ‘마쿠소무’(マクソム)는 말단에 있는 섬이

72) 池内敏, 2012, 앞의 책, 304쪽 및 244쪽.

73) 기사의 날짜를 20일로 보는 논문도 있지만, 이케우치의 검토에 의하면 19일이 옳다고 한다. 池内敏, 2012, 앞의 책, 371쪽, 주기 (7).

74) 池内敏, 2016, 앞의 책, 184-185쪽.

75) 朴炳涉,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 45-54쪽.

라는 뜻인 ‘막섬’의 일본어 표기인 것 같다. 이는 같은 비인만에 있는 ‘도루소무’(トルソム)와 구별하기 위해 이런 호칭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도 있는 ‘도토쿠소무’(ト、クソム)는 ‘독섬’의 일본어 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 섬은 『한국지명총람(韓國地名總覽)』(1984)에도 ‘독섬(石島)’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돌섬 혹은 독섬의 한자 표기는 ‘石島’다. 이런 관행을 고려하면 칙령 제41호의 ‘石島’의 호칭은 혼독된 것으로, 주로 울릉도민의 다수를 차지한 전라도 사람들의 사투리로 ‘독섬’, 때로는 표준어로 ‘돌섬’으로 호칭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광복 직후의 언론 보도에 오늘날의 독도를 ‘독섬(獨島)’이라고 표기한 예가 다수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 자료 『다케시마 어업의 변천(竹島漁業の變遷)』에 기록된 오쿠무라 료(奥村亮)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은 랑코도(竹島[독도])를 ‘獨島(トクソン[도쿠손])’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내지인(内地人)과 대화할 때는 ‘랑코도’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トクソン’[도쿠손]은 독섬의 일본어 표기로 볼 수 있다. 오쿠무라 료 및 부친 헤이타로(平太郎)는 1921년경부터 조선인을 주력으로 하여 랑코도에 출어해 전복 등을 채취했던 어업자다. 오쿠무라 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랑코도=獨島(도쿠손)=독섬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도쿠손’은 ‘독섬’에 직결된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바위섬의 뜻으로 불렸던 ‘독섬’ 혹은 ‘돌섬’이 칙령 제41호에 ‘石島’로 한자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울릉도에서는 전라도 이외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독섬을 ‘石島’라고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외면되었는지, 한자 표기가 ‘獨島’로 변한 것 같다. ‘獨島’의 표기는 「군함 니타카 행동 일지」(軍艦新高行動日誌, 1904)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비롯해서,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 보고서 및 이에 대한 참정대신 박제순의 지령 3호 등에서 볼 수 있다.⁷⁶⁾

한편, 칙령 제41호에 왜 우산도 이름이 없었는지 라는 의문에 대해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⁷⁷⁾ 우산도는 ‘울릉도 쟁계’(젠로쿠 다케시마

76) 위의 글, 45-46쪽.

77) 위의 글, 53-54쪽.

일건) 이후 해금·수토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위치나 존재가 점점 모호해졌다.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왕명을 받아 우산도를 탐색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울릉도민으로부터 우산도나 송죽도(松竹島)는 근방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만 듣고, 배로 울릉도를 일주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 주위를 바라보았지만 우산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竹島(뎃섬)와 島項(섬목, 관음도)을 확인했을 뿐이다. 또한 울릉도에 사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1900년경 공동으로 우산도를 탐색했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1913년에도 우산도 탐색 계획이 있었으나 앞의 우산도 탐색이 실패했던 것이 드러나서 계획이 중지되었다. 이처럼 관찬서에 자주 기재된 우산도는 대한제국 시대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소재를 알 수 없는 우산도는 칙령 등 법령에 게재할 수 없었다. 대신에 실재가 확인된 독섬이 칙령에 石島 표기로 기재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증을 고려했는지 이케우치는, ‘石島=獨島’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유론”이라는 견해를 수정했다. 그는 “돌섬(石島) - 독섬(石島/獨島) - 독도(獨島)라는 음운(音韻)변화설은 객관적이고 문헌적인 방증⁷⁸⁾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케우치가 거론한 문헌은 오쿠무라 료(奥村亮)의 증언을 기록한 위의 『다케시마 어업의 변천』이다.

또한, 이케우치는 “칙령 제41호의 石島는 어느 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竹島[독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⁷⁹⁾ 이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케우치는 독도 문제에서 영향력이 큰 역사학자이므로 이 소식은 주목을 받았다. 시모조 마사오는 이 소식을 ‘한국 측의 숨은 선전 공작’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78) 池内敏, 『日本人の朝鮮觀(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242쪽; 池内敏, 「竹島(獨島)の活用実態と領有權」, 『獨島研究』 23号, 2017, 278쪽.

79) 朴炳涉, 「【書評】 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朝鮮史研究会会報』, 209号, 2017b, 23-24쪽.

한국 측의 숨은 선전 공작만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케우치의 2016년 서적에 대한]서평을 쓴 박병섭 씨는 조선사연구회 5월 월례회(2017.5.20)에서 이케우치 씨에게 “칙령 제41호의 石島는 어느 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라고 질문하자, 이케우치 씨는 “칙령의 石島는 竹島=독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회답했다고 서평의 마지막에 특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케우치 씨다운 회답이며, 石島는 島項(관음도)이지 독도는 아니다. 박병섭 씨는 『조선사연구회 회보』의 서평란을 이용해 “칙령의 石島는 竹島=독도”라는 프로파간다를 행한 것이다.⁸⁰⁾

일찍이 이케우치는 “1900년 10월 시점에 대한제국 정부로서 竹島/독도에 대한 영유의사가 명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竹島/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 한국 측 어느 주장도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⁸¹⁾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나카노 테쓰야(中野徹也)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했다.⁸²⁾ 그런데 바탕으로 되는 이케우치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바뀌었다면 나카노의 검토는 헛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케우치의 변화가 일본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9. SCAPIN-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9.1. SCAPIN-677에 관한 논쟁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 주변의

80) 下條正男, 「実事求是 第51回, 慶尚北道独島史料研究会編『竹島問題100問100答批判2』に対する批判(1)」, 2017年12月21日掲載.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jitsuji-51.html>

81) 池内敏, 「竹島 / 独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第733号, 2011, 26쪽 및 31쪽.

82) 中野徹也,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61卷 5号, 2012, 144-156쪽.

약간 지역을 정치적 및 행정적으로 분리하는 지령 SCAPIN-677을 일본 정부에 내렸다. 이 지령 3조에서 리앙쿠르 암(독도), 쿠릴(치시마 千島) 제도, 소쿠릴(하보마이, 시코탄)제도 등을 ‘일본국’이라는 정의에서 제외하였다.

이 SCAPIN-677에 대해 일본에서는 오해가 많은데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⁸³⁾ 이케우치 사토시는 이 지령으로 말미암아 “일본 영역의 특정 지역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정치적 혹은 행정상 권력 행사 내지 행사 기도가 정지되었다. 이 특정 지역 안에 竹島[독도]가 포함되어 있다”⁸⁴⁾고 적었다. 이 견해는 가와카미 겐조의 견해와 똑같다⁸⁵⁾. 그러나 SCAPIN-677은 ‘일본 영역의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 외의 지역’에 적용된다고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케우치나 가와카미는 제1조부터 오해하고 있다. 또한 이케우치나 가와카미는 竹島[독도]를 ‘일본 영역의 특정 지역’으로 보았지만, 독도는 제3조에서 일본국이라는 정의에서 제외된 섬이므로 ‘일본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의 해석은 오류다.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한국 측의 ‘연합국군 총사령부 각서로 말미암아 竹島[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주장은 오류다”⁸⁶⁾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독도가 SCAPIN에 의해 ‘일본국’이라는 정의에서 제외되었다면 일본 영토가 아니며, 실제로 SCAPIN-677에서 규정된 일본국의 범위를 나타내는 SCAP 작성 지도 「SCAP 관할 구역, 일본과 남부 코리아(South Korea)」 <그림 4>에서 ‘TAKE’(독도)는 ‘남부 코리아(South Korea)’의 구역으로 포함되었다고 반론했다.⁸⁷⁾ 다만 SCAPIN-677은 제6조에서, “이 지령 중 조항은 어느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한 소도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83) 朴炳涉, 2016b, 앞의 글, 316-317쪽.

84) 池内敏, 2016, 앞의 책, 191쪽.

85)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249쪽.

86)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98쪽.

87) 朴炳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8号, 2014, 45-47쪽.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은 대일 평화조약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SCAPIN은 그때까지 유효한 지령이다.

9.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관한 논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조약에 관해 이케우치는, “조약에서 竹島[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은 미국의 설명에도 있듯이 아주 명쾌하다”고 주장했다.⁸⁸⁾ 그가 말하는 미국의 설명은 ‘러스크 서한’(1951.8.10.)과 ‘밴 플리트 보고서’(1954)를 가리킨다. ‘러스크 서한’은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이 대일 평화조약 초안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독도를 명기하도록 요청한 것을 거부한 미국 국무차관보 러스크(Dean Rusk)의 서한이다. 이케우치는 러스크의 판단이 그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밴 플리트 보고서’는 독도(Dokto Island)에 관해, “합중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분쟁에 대한 개입은 거부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이케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⁸⁹⁾ 이케우치는 1951년 6월 영·미 양국이 대일 평화조약의 공동 초안을 작성한 후는 미국만이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에 드러난 미국의 독도 인식이 그대로 조약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분명히 오해다. 영·미 양국은 6월 후에도 긴밀히 협의했으며, 미국은 공동 초안을 수정할 때 반드시 영국의 동의를 얻고 최종 초안을 작성했다. 그런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미국 견해는 1953년 12월 9일자 ‘텔레스 전문(電文)’이 밝혔던 바와 같이 많은 조약 서명국 가운

88) 池内敏, 2016, 앞의 책, 229쪽.

89) 朴炳涉, 2016b, 앞의 글, 320쪽.

데 미국 일국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공동 초안의 작성 당사자인 영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판단하여 독자적인 최종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려면 영·미 양국이 협의하여 공동 초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은 없었으며, 영·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생각이 엇갈린 채 조약이 조인되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이 합의되고 있다는 이케우치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쓰카모토 다카시도 ‘리스크 서한’을 근거로, “일본 영토로서의 竹島[독도] 지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도 변동이 없었다”⁹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쓰카모토는 독도가 SCAPIN-677에 따라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된 것을 무시하지만, 독도의 지위에는 변동이 있었다. 또한 쓰카모토는 ‘리스크 서한’에 반론한 ‘변영태 서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변영태 서한’을 인용하여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⁹¹⁾ 한국은 ‘리스크 서한’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물론 이에 반론했다. 1951년 9월 21일자 ‘변영태 서한’은 한국의 독도 영유의 정당성을 미국 정부에 주장했다. 이처럼 독도에 관한 한·미 협의는 진행 중이었으며, 그 사이 미국은 독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물론 최종 공동초안 작성에서도 영국과 독도에 관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미 양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미국과 일본 영토 외로 보는 영국의 견해가 엇갈린 채로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합국은 딜레스 전문이 밝힌 바와 같이 독도에 관해 아무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조약을 발효시켰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자체로부터는 독도에 관해 아무 해석도 도출할 수 없다.

결국 SCAPIN-677에 의해 잠정적으로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

90) 塚本孝, 2016, 앞의 글, 62(97)쪽.

91) 朴炳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から洩れた論争中の島々」,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3号, 2017a, 31쪽.

는 독도가 SCAPIN-677에서 일본 영역에서 분리되었던 현상을 조약 발효 후에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도서 의로 규정한 일본 법령을 강화조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새로 ‘접수 귀금속 등의 수량의 보고에 관한 법률’을 1952년 8월 5일에 제정하고, 이 시행령인 ‘대장성령 99호’에서 竹島(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공포했다.⁹²⁾ 이런 정책은 우티·포씨디티스(*uti possidetis*) 원칙에 합당한다.



그림 4 SCAP 작성 지도 「SCAP 관할 구역 일본과 남부 코리아」

우티·포씨디티스는 라틴어이며, 영역하면 ‘as you possess’인데 이 용어는 해석이 확대, 변질되어 최근에는 ‘행정구획선의 승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남미 제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당시

92) 朴炳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後の日本の竹島=独島政策」,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2号, 2016c, 22쪽.

의 행정구획선이 국경선이 되었다. 최근에는 소련이 해체하고 각국이 독립할 때 그 순간의 행정구획선이 국경선이 되었다. 각국은 독립하는 순간의 기존 행정구획선을 승계한 것이다.

박병섭은 이 원칙을 한국 및 일본의 독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⁹³⁾ 한국의 독립은 1945년 8월 15일이며, 그 순간의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은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독도를 포함한 구역이었다. 다만 이 구역은 구 일본제국의 영역이었으므로 한·일 간 경계는 최종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서 결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독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인데 그 순간의 일본의 행정관할구역은 SCAPIN-677 등에 의해 규정되었듯이 독도는 일본국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정부 자신도 대장성령 제4호(1951.2.13.),⁹⁴⁾ 총리부령 제24호(1951.6.6)⁹⁵⁾ 등으로 竹島[독도]를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독립 후에도 그 정책을 유지했다. 이처럼 일본이 독립한 순간 한·일 양국 간 행정관할경계는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독도는 한국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독립하는 순간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을 적용하면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 또한 실제로도 한국은 독도에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를 건립하는 등 행정조치를 미치고 있었다.

93) 朴炳涉, 「獨島領有權に対する歴史・國際法の學際間研究」, 2019, 32-36쪽 (아래 사이트). 이 논문은, <박병섭,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 『獨島研究』 27号, 2019, 7-72쪽>를 번역한 것이다.

<http://www.kr-jp.net/ronbun/park/park-1912j-int.pdf>

94) 「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1950.12.12]第4条第3項の規定に基づく付属の島を定める省令」.

95) 「朝鮮總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1951.3.6]の施行に関する総理府令」.

10. 맺음말

일본에서 竹島·독도에 관한 논문이나 논설을 가장 많이 쓴 연구자는 시모조 마사오다. 시모조가 쓴 논문·논설의 특징은 자기주장을 아무 설명도 없이 자주 변경하는 것이다. 시모조는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견해를 네 번이나 바꾸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石島의 비정을 네 번이나 바꾸었으므로 정견이 없다. 시모조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대로 글을 썼는지, 변경의 이유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 시모조는 ‘학문적 영위’가 의심된다.

한편,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가져왔다”고 해서 이케우치 사토시로부터 ‘학문적 영위’를 의심받고 있는 자가 쓰카모토 다카시다. 쓰카모토도 중요한 논점을 많이 바꾼 연구자이므로 그의 글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쓰카모토는, ① 당초는 竹島[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竹島[독도]는 일·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고래 영토가 아니라 국제법상은 무주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일본은 17세기에 竹島[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견해를 바꾸었다. 또한, ② 1877년 태정관 지령이 본방[일본]과 관계없다고 지령한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해 당초는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는 마쓰시마[독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주장을 바꾸어, 시마네현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는 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였으나 정부에서는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 일도’도 울릉도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③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石島에 관해 당초는 石島를 독도로 간주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칙령 제41호 원문에 있는 것은 石島이며, 이를 독도와 관련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쓰카모토는 과거의 자기주장을 바꾸어 외무성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쓰카모토가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를 하고 있다는 이케우치의 평도 일리

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쓰카모토의 자세를 이케우치 사토시가 엄히 비판했음은 이미 소개했으나 비판은 그만이 아니었다. 이케우치는 쓰카모토의 앞의 견해 ②에 대해 “오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쉬운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곱해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쓰시마(竹島[독도])가 17세기 이래 계속해서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태정관 지령은 용인할 수 없는 사료다. 이 때문에 이 사료가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외 일도’는 마쓰시마가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변한다”, “[이들의] ‘논증’에서는 확실히 체면을 돌보지 않는 필사의 각오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예를 들어 사료해석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나, 사료가 스스로 밝히는 바를 무시하여 자기 해석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료 독해의 기본을 결여한 ‘체면을 돌보지 않는 필사의 각오’다”⁹⁶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서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가져왔다”고 하는 쓰카모토에 대한 이케우치의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케우치의 비판은 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도 향했다. 이 설은 가와카미 겐조의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손질했던 것인데, 만약 이 설이 성립된다면 이는 쓰카모토 자신이 일찍이 무주지로 생각했던 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원시적 권원을 가질 수도 있으며, 외무성이 말하는 “일본은 17세기에 竹島[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주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막부의 허락·공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어이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처럼 보이는 쓰카모토의 주장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어, “역사 사실은 사료를 바탕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서도 쓰카모토의 주장은 이케우치에 의해 부정된 것이다.

게다가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은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도 향했다. 쓰카모토는 이 금지령은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케

96) 池内敏, 2016, 前掲書, 114-118항.

우치는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겐로쿠 기의 금지령을 바탕으로 했으므로 금지령은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덴포 기의 막부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오해하고 있었으며,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 약점을 박병섭이 보완했다. 덴포 기 막부는 마쓰시마도 일본 소속이 아님을 충분히 조사한 뒤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사료가 평정소 관계자가 작성한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 부속 지도 <그림 3>으로 거기에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본격적인 반론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이케우치의 주장이 차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케우치 논문의 신뢰성은 근세 및 근대 초기 일본사에 한정된다. 그 후의 일본 역사나 조선사에 관해서는 기무라 간이 비판했듯이 문제가 많다. 그 하나의 예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케우치는 한국 정부가 음운변화설을 바탕으로 石島를 독도라고 하는 주장을 유론(謬論)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박병섭이 제시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어업의 변찬』에 있는 오쿠무라 료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칙령 제41호의 石島는 독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이는 주목되는 변화다.

또한 이케우치의 광복 후에 관한 연구에도 문제가 많다. 특히 SCAPIN 조항의 해석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성립과정 등에 관한 해석에는 오해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립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해서는 쓰카모토의 논문이 많이 있으나, 쓰카모토나 이케우치는 ‘텔레스 전문’이나 ‘변영태 서한’ 등 중요한 자료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마침 ‘러스크 서한’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그대로 반영된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먼저 ‘텔레스 서한’으로 부정된다. 다음은 박병섭에 의하면, ‘변영태 서한’으로 말미암아 강화조약 조인 후에도 독도에 관한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이 명확하며, 그 사이에 미국은 독도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영국과의

협의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합국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결론도 내지 않은 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준한 것이다.

동 조약에서 독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한·일 양국이 독립한 시점의 국경은 국제법에서의 우티·포씨디티스 원칙, 즉 ‘행정구획선의 승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박병섭은 주장했다. 한·일 양국의 각각의 독립 시점에서 독도는 SCAPIN-677 관련 지도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도는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의 소속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한국은 독도에 ‘독도 조난어민위령비’를 세우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던 반면, 일본은 법령에서 독도를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했으며 실질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있었다.

최근 일본에서의 독도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일진월보로 발전하고 차차 독도/竹島 문제의 논쟁이 수렴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독도 연구도 일진월보로 발전했다. 십여 년 전 나이토 세이추는 한국의 독도 연구가 일본의 문헌을 경시한 일국주의라고 비판했으나 지금은 그런 비판이 없다. 한·일 양국에서 학술 정보의 소통이 조금씩 이루어진 결과, 칙령 제41호의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견해차도 조금씩 좁혀졌다. 장차 독도/竹島에 관한 양국 연구자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하는 날이 오면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학문적 영위’가 의문시되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제외된다.

【참고문헌】

-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多賀出版, 2000
- 内藤正中・金柄烈,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2007
-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3
-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2014
- _____,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 木村幹,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2014
- 梶村秀樹, 「竹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号, 1978
- 박병섭,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 『독도연구』 27호, 2019
- 朴炳涉,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研究』 第4号, 2008
- _____,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研究』 第7号, 2009
- _____,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
- _____,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12
- _____,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8号, 2014
- _____, 「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号, 2015
- _____,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調査」,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1号, 2016a
- _____, 「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獨島研究』 第20号, 2016b
- _____,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後の日本の竹島=独島政策」,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2号, 2016c
- _____,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から洩れた論争中の島々」,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3号, 2017a
- _____, 「【書評】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朝鮮史研究会会報』, 209号, 2017b
- _____, 「天保竹島一件における松島(独島)に対する日本の領有権論争」, 『韓日關係史研究』 67輯, 2020
- 中野徹也,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61巻 5号, 2012
- 森須和男, “天保竹島一件顛末,” 『郷土石見』 102号, 2016

- 船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II)」,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 池内敏, 「一七～一九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学研究』 756号, 2001
- _____, 「竹島/独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第733号, 2011
- _____,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 _____, 「「国境」未滿」, 『日本史研究』 630号, 2015
- _____,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 _____,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 _____, 「죽도(독도)의 활용실태와 영유권(竹島(獨島)의活用実態と領有權)」, 『獨島研究』 23호, 2017
- _____, 「日本と韓国の「固有領土」論」, 『第1回 芳村獨島研究会 國際學術會議論文集』 2018
- _____, 「17世紀竹島漁業史のために」, 『名古屋大学人文学研究論集』 第2号, 2019a
- _____, 「「老中の内意」考」, 『日本史研究』 682号, 2019b
-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 塚本孝,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 411号, 1985
- _____,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 1994(初版), 1996(第2版), 2011(第3版)
- _____,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第3号, 2000
- _____, 「元祿竹島一件をめぐる」, 『島嶼研究ジャーナル』 2巻2号, 2013
- _____, 「竹島領有權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 52号, 2016
- _____, 「國際法的見地から見た竹島問題」, 『不条理とたたかう』, 拓殖大学, 2017
- _____, 「大谷家文書「乍恐申上候口上之覚一兩島渡海禁制に關連して」」, 『第4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 2020
- 下條正男,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2005a, 7/8月号
- _____,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b
- _____, 「実事求是」 第20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愚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9年度, 島根県, 2011
- _____, 「実事求是」 第51回, 慶尚北道独島史料研究会編『竹島問題100問100答批判2』 に対する批判(1)」, 2017
- _____, 「歴史認識問題としての竹島問題を何故、解決できないのか」, 『歴史認識問題研究』 4号, 2019

<Abstract>

Historical Studies of Japanese Academia on Dokdo/Takeshima since 2000

Park, Byoung-sup

Controversy among researchers is fierce on Dokdo/Takeshima in papers written in Japanese. In particular, there is a fierce controversy between Satoshi Ikeuchi and Takashi Tsukamo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are as follows. (1) Regarding Takeshima and Dokdo sovereignty in the 17th century, Tsukamoto "recently" claims that Japan had historical title, but Ikeuchi claims that Japan has abandoned sovereignty. (2) Ikeuchi concluded that Tsukamoto's "Permission to travel Matsushima" theory was wrong. (3) Regarding the Takeshima (Ulleungdo) ban on sea travel, Tsukamoto argues that travel to Matsushima (Dokdo) is not prohibited, but Ikeuchi argues that the ban on Matsushima sea travel is implied. (4) Ikeuchi claims that the Jisha-bugyō in the 1740s recognized that both Takeshima and Matsushima were prohibited from traveling to the sea, but Tsukamoto doubts. (5) Regarding the Tenpo Takeshima ban on sea travel, Ikeuchi says that travel to Matsushima is not allowed, but Tsukamoto insists that there is no problem. (6)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Takeshima and one other island" in Dajokan order in 1877, Ikeuchi says that they are Takeshima (Ulleungdo) and Matsushima (Dokdo), but "recent" Tsukamoto says that both Takeshima and "one other island" are likely to be Ulleungdo. (7)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of

Seokdo in Imperial Decree No. 41 in 1900, "recent" Ikeuchi tries to be Dokdo, but "recent" Tsukamoto says that it is only the Korean government's interpretation to regard it as Dokdo.

In this Ikeuchi-Tsukamoto controversy, Ikeuchi's argument was sometimes insufficient, but Byoung sup Park supplemented it. Tsukamoto's counterargument was weak against Ikeuchi's criticism of Tsukamoto, and there was a sign of convergence in the dispute between the two. On the other hand, the two views agree that Dokdo/Takeshima have been established as Japanese territory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response, Byoung sup Park argued that the treaty could not interpret the affiliation of Dokdo/Takeshima in any way, and that the island became a affiliation of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Key words: The ban on Takeshima sea travel, Dajokan Dok seom, San Francisco Peace Treaty order, *uti possidetis*

이 논문은 2020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000년 이후 독도관련 역사학 분야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송 휘 영**

〈목 차〉

1. 머리말
2. 2000년 이후 독도연구 동향
3.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성과와 과제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과제는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 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을 대체로 부정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한 연구의 영향과 최근 일본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늘어난 영향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A02103036).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hysong@ynu.ac.kr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편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이전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행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연구만큼은 중언부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중언부언한다거나 원자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독도연구, 역사학 분야, 고유영토론, 무주지선점론, 실효지배의 증거

1. 머리말

지난 2017년 3월 31일 일본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확정·고시하였고, 2018년 3월 30일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발표¹⁾하여, 일본의 초·중고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명시하여 가르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미 2020년부터 독도(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면 초·중고 모두 영토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그릇된 일본의 영토교육이 본

1) 교과서의 집필 및 교수에 대한 『학습지도요령』의 세부지침서가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개정판은, 초·중학교용이 2017년 7월에, 고등학교용이 2018년 7월에 고시되었음.

격화하면서 ‘독도 영토 주권’을 둘러싼 진실 게임에서 우리 독도연구자가 밝혀내야 할 ‘독도의 진실’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무엇보다도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²⁾과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족,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게재³⁾ 이후 한일 양국의 독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독도 관련 연구의 성과도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다. 이 두 사건과 맞물려 일본 사료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가 조금씩 생겨나가 시작했고, 난해한 일본 고문서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작업도 왕성하게 늘어났다. 특히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독도를 인지했다는 근거가 없다”, “17세기 중반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고유영토론’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하면서 이러한 ‘고유영토론’을 무력화하는 역사학적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독도 연구의 역사학적 접근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과제가 지난 2000년 이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다음,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역사학 분야 독도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한 다음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당면한 과제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 약간의 지적을 덧붙이고자 한다. 독도 관련 연구 중 인문과학적 분야는 크게 역사학 분야, 지리학 분야, 국제법 분야, 독도교육 분야 등으로 대별되지만 필자에게 주어진 ‘역사학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학 분야 연구를 ① 「울릉도쟁계」 및 「죽도도해금지령」을 전후한 근세시기의 연구, ② 근대 메이지 정부의 관찬

2)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은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조례」로 제정하였음.

3) 이 ‘10의 포인트’는 2014년 3월부터 <죽도(죽도)- 왜 일본 영토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죽도문제 10의 포인트>로 개정되었음.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사료 관련 연구, ③「대한제국칙령 41호」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관련 연구, ④해도 및 수로지 관련 연구 등 쟁점이 되는 연구이슈⁴⁾를 중심으로 대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독도연구에 관해 연구사적 정리를 한 것으로는 한철호(2007^a), 2007^b), 김병우(2011^c), 이성환(2014^d), 박병섭(2014^e), 김병렬(2015^f), 송휘영(2015^g), 김영수(2016^h), 김병렬(2016ⁱ), 허영란(2005^j) 등이 있다.⁵⁾ 여기서 ^d^e^g는 일본학계의 연구동향을 다루고 있으며, ^b와 ^c는 메이지시기의 독도연구의 쟁점 및 안용복 연구의 쟁점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fⁱ^j는 주로 2009년 이전 독도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전망하고 있는데, ⁱ에서는 역사학, 국제법학, 지도학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의 업무분담과 학제 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⁶⁾ 본고와 관련된 역사학 분야의 독도 연구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a(한철호)와 ^g(김영수)가 있으나, ^a의 경우 역사학 분야의 독도 연구동향을 해방 이후 당시의 시점까지 크게 4개의

4) 여기서는 안용복 사건 이전 즉 고대에서 「울릉도쟁계」 이전의 시기에 관한 독도연구는 커다란 쟁점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전후 시기의 독도연구는 비교적 지근의 현대사적 부분이자 국제법적 쟁점이 주를 이루는 시기라는 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a한철호(2007),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40, 한국근현대학회, pp.200-221, ^b한철호(2007), 「明治期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한국사학보』28, 고려사학회, pp.319-352, ^c김병우(2011), 「安龍福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34, pp.73-116, ^d이성환(2014),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 『일본문화연구』49, 동아시아일본학회, pp.307-325, ^e박병섭(2014), 「2000년 이후 독도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일본문화연구』49, 동아시아일본학회, pp.113-146, ^f김병렬(2015), 「광복 이후 우리나라 독도 연구사 검토」, 『독도연구지널』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2-8, ^g송휘영(2015), 「광복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사 검토」, 『독도연구지널』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25-32, ^h김영수(2016), 「근대 독도 포함 해양 관련 역사분야의 성과와 한계」, 『동북아역사논총』53, 동북아역사재단, pp.291-314, ⁱ김병렬(2016), 「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제언」, 『영토해양연구』11, 동북아역사재단, pp.6-32, ^j허영란(2005),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이석우 엮음,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6) 전계, 김병렬(2016), pp.17-24.

시기(태동기, 관심기, 고조기, 확산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 ㉔는 독도를 포함한 해양탐사 관련 역사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역사학적 분야의 독도연구가 2000년 이후 양적으로 괄목하게 성장했다는 것과 특히 2010년 이후 질적으로도 상당부분 시프트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㉔와 ㉔의 연구에 유의하면서 독도연구의 주요 성과를 쟁점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2. 2000년 이후 독도연구의 동향

우선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면 전방위적 공세에서 일본 주장의 ‘일반화’를 도모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사이트의 확장⁷⁾,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개정과 독도교육 의무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죽도(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논리는 일반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⁸⁾을 보면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였다는 역사적 증거들은 없다고 한다. 이는 무릉·우산 두 섬의 기록이 나오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나타나는 우산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우산·무릉 1도설을 주장하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주장이 어떠한 거름 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⁹⁾ 일본 외무성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7) 2014년 3월부터 10개국어에서 12개국어로 하였으며, 수상관저 및 내각관방 홈페이지에서도 독도 등 영토문제를 전면적으로 게시하고 있음.

8) 日本外務省, 「竹島」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20.11.10.)

9)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저와 「죽도문제연구회」의 『제1기 최종보고서』(2007.3)을 참조할 것.

- ① 일본은 예로부터 죽도¹⁰⁾(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② 한국이 예로부터 죽도(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 ③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죽도(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한편 죽도(독도)로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⑤ 한국 측은 안용복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실에 반하는 공술을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¹¹⁾
- ⑥ 일본은 1905년 각의결정에 의해 죽도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⑦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기초할 때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죽도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 ⑧ 죽도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서 지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 ⑨ 한국은 국제법에 반하여 공해상에 소위 「이승만 라인」을 획정하여 일방적으로 죽도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 ⑩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부탁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1905년에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평화선)」에 의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부탁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17세기에 영유권이 확립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10) 에도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 명칭은 기죽도(磯竹島, 이소타케시마), 죽도(竹島, 다케시마)와 송도(松島, 마츠시마)였다. 독도가 송도, 리양코에서 ‘죽도’로 변경하는 것은 1905년의 독도편입 조치 이후의 일이다. 여기서는 일본식 발음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음독인 ‘죽도’, ‘송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

11) 전계, 日本外務省 사이트를 참조.

하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의 공식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다분히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에 대한 대응 혹은 반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①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②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관찬 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③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④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 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 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 ⑥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⑦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주장을 보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찬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인 울릉도쟁계(竹島一件)에서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이전인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여 관할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돌아왔으며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렇듯 한일 양국의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 여기서 보면 양국의 쟁점은 첫째, 역사적 인지, 둘째, 17세기 일본의 영유권 확립의 여부, 셋째, 대한제국칙령과 시마네현고시 내용의 법적 유효성, 넷째, 전후 종전처리에 서 독도의 취급 등 크게 4가지로 축약된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주장에서 ①-⑥에 해당하는 부분이 독도연구에 있어서 ‘고유영토론’ 혹은 역사적 연구와 관련된 것들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내의 독도연구가 활발히 전개된 결과, 그 성과가 외무부의 반박 논리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연구자측이 왜곡하는 일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한 사료검증과 사료발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①안용복 진술의 진위에 관한 문제, ②대한제국칙령의 ‘석도’=독도라는 입증, ③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2조(a)항의 해석을 보강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독도연구가 본격화하는 것은 1998년 이후의 일이며, 2005년 「죽도의 날」 제정이 커다란 분수령이 된다. 필자에게 주어진 분석기간이 2000년 이후이므로 우선 이 기간 독도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학술지 논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KISS(한국학술정보), RISS(한국연구정보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코리아스칼라 등의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RISS가 비교적 학술논문을 망라하여 게재하고 있어 전문분야의 폭이 넓고 논문의 검색수가 많다. 실제 각 검색 사이트별로 ‘독도’라는 검색어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해 본 결과, KISS가 528건, RISS가 2,517건, DBpia가 1,453건, 코리아스칼라가 446건 등이었다.¹²⁾

12) 2020년 11월 10일에 검색한 결과임.

<표1> 2000-2020년 독도연구 논문의 경향(RISS)

(단위: 논문 편수)

번호	저자별		학술지별		발행연도별	
	저자명	논문	학술지명	논문	연도	논문
1	최장근	94	獨島研究	334	2020	88
2	곽진오	38	日本文化學報	62	2019	123
3	김호동	30	國際法學會論叢	61	2018	136
4	송휘영	30	영토해양연구	56	2017	123
5	최홍배	30	月刊海洋韓國	47	2016	162
6	김명기	27	이사부와동해	47	2015	150
7	박병섭	24	일본문화연구	45	2014	162
8	나홍주	19	韓日關係史研究	36	2013	187
9	김수희	18	해사법연구	32	2012	164
10	김영수	16	대한지질학회	23	2011	150
11	김화경	15	한국논단	23	2010	139
12	한철호	15	동북아문화연구	21	2009	137
13	영남대독도연구소	14	역사교육논집	21	2008	145
14	이성환	14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21	2007	91
15	제성호	13	일어일문학	21	2006	93
16	김영구	11	군사논단	20	2005	123
17	유미림	11	통일한국	20	2004	29
18	호사카유지	11	일본근대학연구	18	2003	22
19	권오엽	10	한국지도학회지	18	2002	29
20	손승철	10	한일군사문화연구	18	2001	16
21	정갑용	10	Ocean and Polar Research	17	2000	31
총계	2,517					

주: 1) RISS에서 '독도'로 검색된 인문사회과학 총논문수는 2,517편이며, '독도', '역사'로 검색한 경우 776편임.

2) 검색일자는 2020. 11. 12일.

RISS에서 2000년 이후 ‘독도’라는 검색어로 독도연구의 성과를 검색한 결과를 <표1>로 정리하였다.¹³⁾ 여기서 보면 과거 20여년간 독도에 관한 논문을 20편 이상 집필한 연구자가 7명이었고, 10편 이상 집필한 연구자로 보면 21명이나 된다. 국내학술지를 검색하였으므로 한국어로 쓰여진 논문(2,063편, 82.8%)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영어 43편(1.7%), 일본어 24편(0.95%), 중국어 14편(0.56%)의 순이었다.

그리고 학술지별로 보면, 『獨島研究』(334편), 『日本文化學報』(62편), 『國際法學會論叢』(61편), 『영토해양연구』(56편), 『月刊海洋韓國』(47편), 『이사부와동해』(47편) 등으로 독도연구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학술지가 독보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일본문화학회의 학술지, 대한국제법학회의 학술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학술지, 한국이사부학회의 학술지 등이 상위에 랭크하고 있다. 이것은 10년 전 국제법 혹은 정치학 분야의 학술지가 상위권을 점했던 것과 비교할 때 역사학 등 인문과학 분야의 학술지가 많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역사적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도 관련 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년 120-180편¹⁴⁾으로 양산을 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안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 독도 관련 논문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0편 이하이던 것이 1996년 47편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¹⁵⁾하면서 현저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던 1998년 이후 20-30편 정도의 추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독도 관련 논문은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제정하고 <죽도문제연구회>를 현 총무부 총무과에 설치하면서, 이 해에는 123편으로 이

13) 자연과학, 기술과학 분야 등의 논문은 제외하였음.

14) 2008-2019년의 12년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독도논문은 연평균 148.2편으로, 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논문편수 14.25편에 비해 10.4배나 많은 것임.

15) 1996년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중간선을 긋고 자신들의 EEZ라고 주장하는 도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도로 계획된 EEZ 도발을 하였다.

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현저하게 늘었다. 그 후 90여편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일본 외무성이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제시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145편으로 늘어나 매년 120-180편 정도의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 독도 관련 논문이 불과 연간 10-20편 정도¹⁶⁾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도 논문은 양적으로만 보아도 일본의 10배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것이다.

3. 역사학 분야 연구 성과와 과제

3.1. 「울릉도쟁계」, 「죽도도해금지령」 관련 연구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관한 역사학적 연구의 효시는 신석정(1948)¹⁷⁾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1950년대 초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의 과정에서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독도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中央公論社에서 출간한 『獨島』(1965)¹⁸⁾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독도의 내력」(신석호), 「독도의 법적 지위-국제법상의 견해」(박관숙), 「독도의 명칭에 대한 사적 고찰」(이병도), 「울릉도 및 독도 탐험 소고-근세사를 중심으로」(이선근),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최남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유홍렬) 등 10편의 논문과 3편의 답사기 등이 실렸다. 이 전후의 시기에 일본국회 등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우리 측의 반박 근거로서 책자로 엮은 것이었다.

16) 본 『독도연구』 제29호의 박병섭 논문을 참조.

17) 신석호(1948), 「독도소속에 대하여」, 『史海』1.

18) 신석호 외(1965), 『獨島』, 중앙공론사.

그 이후 신용하(1998)¹⁹, 김병렬(1998)²⁰, 송병기(2004)²¹ 등에 의해 독도 관련 한국 고문서 자료는 물론 일본 고문서 자료까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1998-2001년에 출간된 신용하 교수의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료뿐만 아니라, 교토대학의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의 고문서 자료를 망라해서 신고 있다. 한편,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죽도의날」 제정과 더불어 그해 7월에 발족한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논리를 『제1기 죽도문제연구회 보고서』(2007.3.)로 정리하여 일본 외무성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일본 외무성이 2008년 2월 홈페이지에 「10포인트」로 게재하여 공식 견해로 함으로써 이들 논리의 진위와 논거를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 한국 측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에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료의 폭과 깊이 등의 한계로 일본의 원사료에 의한 연구로까지 확산시키지는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독도연구의 제2세대로서 신용하(1996)²² 교수의 『독도의 민족 영토사 연구』, 송병기(1999)²³ 교수의 『울릉도와 독도』는 후학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만한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역작이다.

일본 사료의 해독을 바탕으로 「울릉도쟁계(=竹島一件)」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보여준 것은 이훈(1996)²⁴의 연구였다. 17세기 후반 조일 간에 발생한 영속 시비(=「울릉도쟁계」)는 막부의 「죽도도해금지령」(1696)으로 울릉도·독도의 조선 영속과 어업권이 분명히 밝혀졌음을 명쾌하게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를 사이에 두고 양국 연안민들의 울릉도

19) 신용하(1998),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1권-제4권, 독도연구보전협회(제2권은 1999년, 제3권은 2000년, 제4권은 2001년에 간행)

20) 김병렬(1998),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21) 송병기(2004), 『독도 영유권자료선』, 한림대 출판부.

22)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23) 송병기(1999), 『울릉도와 독도-그 역사적 접근』, 단국대학교출판부. (뒤에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2007)가 근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증보 간행됨)

24) 이훈(1996), 「조선 후기 독도(獨島)의 영속 시비」, 한일관계사연구회 편,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샘.

오해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 1722년 이와미(石見) 주민의 죽도(울릉도)·송도(독도) 도해가 문제로 떠올랐으며, 1836년에는 같은 이와미주(石見州)의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이 죽도(울릉도)를 무대로 밀무역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번주와 하치에몽이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쓰시마의 사료를 통해, 죽도도해 금지의 시기 쓰시마는 송도가 죽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죽도와 송도를 분리시키려는 인식이 있었음을 사료를 통해 밝혀낸 것이었다. 이것을 보완하여 「울릉도쟁계」의 타결과정을 구체적으로 대마번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속에서 온건파인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의 역할을 제기한 것으로 송휘영(2011a, 2011b)²⁵⁾의 연구가 있다. 이때가 일본 고문서의 원사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때까지 「울릉도쟁계」의 타결을 두고 조선조정의 강경노선이 이를 주도했다는 논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쓰시마번의 내부에서도 에도의 명이라는 핑계로 강경하게 맞선 것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당시 2차 죽도교섭이 끝나고 에도 참근을 떠나기까지 3개월간의 변화였다. 다시 말해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과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와 같은 유학자가 ‘성신의 예’로써 외교교섭을 해야 하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를 에도 막부에 솔직히 보고하고 막부의 지시를 받기로 한 것이 온건파인 스야마(陶山)의 주도로 여론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 에도로부터 ‘조선어민의 출어를 금지하라’고 명받았을 때 죽도의 내력에 대해 막부의 인식범위를 문의하여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고, 쓰시마로서도 있는 그대로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25) 송휘영(2011a),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결착과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 『일본문화학보』49, 일본문화학회, pp.265-286, 송휘영(2011b), 「쓰시마번사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과 조일 관계」, 『일어일문학』49, 대한일어일문화회, pp.399-415.

있었다는 반성이다. 1차 교섭이 끝나고도 쓰시마의 교섭 집행관들은 대부분 강경노선으로 쉽게 죽도가 일본의 부속섬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스야마는 그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쓰시마가 일본령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검토한 13통의 문서 어디에도 죽도가 옛날부터 일본령이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릉도쟁계의 발단에서부터 에도에 보고한 내용과 쓰시마 내부에서 논의되는 내용에서도 죽도가 일본령이라는 증거로서는 불확실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즉 왕래 서간을 트집 잡아 죽도를 탈취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 측의 견강부회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쓰시마번 내부에는 죽도교섭의 왕복문서에서 외교교섭의 문서로는 적당하지 않은 언설을 쓰는 등 무례함이 엿보인다는 것과 에도의 무위로써 조선을 위협하는 등 대화 중단을 불사하는 강한 어조의 언사가 있음에 대한 자성이 있었다. 이러한 협박적인 태도로는 교섭이 되지 않으며 조선과는 성신의 예로써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판별하여 신중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섭문서에서 죽도가 80년 전부터 일본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류민을 송환할 때 조선이 보낸 서간을 트집 잡고 이유를 만들어 언쟁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무리가 있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교활한 말재주로 다투어 보아도 죽도가 일본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교섭의 잘못을 바로잡아 조선과의 인교를 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야말로 쓰시마가 안정되고 일본 전체가 안정되는 올바른 충절이라는 것이다. 또한 죽도를 일본땅에 부속시킨다는 서한을 반드시 받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교섭의 방침이었으나, 2도 2명(二島二名)의 서한으로 일본의 죽도에 향후 조선인이 건너와서는 안 된다는 서한을 받게 되면 이는 앞으로 두 나라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남구만 정권의 강경노선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조선 조정의 강경노선

이 있었기에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 두 가지 일이 어우러져 일본막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게다가 안용복의 2차도일로 말미암아 「죽도도해금지」의 사실을 조선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던 것을 조선 역관 일행을 쓰시마로 불러들여 전달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안용복의 2차도일이 울릉도쟁계의 타결을 앞당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울릉도쟁계」를 17세기 조일의 외교관계와 그 배경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장순순(2012)²⁶⁾을 들 수 있다. 당시 울릉도에는 울릉도와 주변 해역에서 나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한 조일 양국인의 도항이 이루어졌고, 조선 정부는 조선 연안에 불시에 표착한 일본인들을 문정(問情)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이러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에 대해서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조선정부의 태도는 당시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1693년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에게 납치당한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응은 달라진다. 정확히 말하면 막부(幕府)로부터 對조선교섭 업무를 명받은 쓰시마가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삼으려는 시도만 하지 않았다면 조선정부의 대응은 이전과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쓰시마번은 자신들의 방식인 ‘막부의 무위(武威)’를 배경으로 ‘위력과 공갈’을 동원한 기존의 비정상적인 외교관행으로 ‘울릉도쟁계’ 문제를 끌어냈고, 울릉도를 자국령화 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결과정을 당시의 대일관계에 대한 외교정책의 변화라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임란 후 17세기 중반기까지의 조선의 대일 외교자세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최소화하려는 조용한 외교의 구사였다고 한다면, 17세기 후반은 조정은 대일관계에서 점차 외교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대일정책에 자신감을 갖게

26) 장순순(2012),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경계』84, 부산경남사학회, pp.37-71.

된 시기였다. 현종말 숙종대 초기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대일교섭 사안들, 즉 두모포에서 초량으로의 왜관 이전, 각종 조약의 체결과 조약내용의 세분화, 통신사행을 통한 쓰시마번의 통제시도 등은 적극적인 대일정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은 울릉도 영유권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막부의 제1차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그의 연구²⁷⁾에서도 당시 조일간의 외교관계라는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용복의 피랍 및 자발적인 도일이 대마도로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매개로 진행되어 온 조일외교 교섭에 제3자가 관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절차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므로, 대마도는 예조참의가 보낸 답서의 사본을 왜관에서 수령한 이후 대마도가 왜관 난출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마도로서는 조일간의 외교교섭 창구로서의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조일교섭에서 제3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왜관 난출이라는 물리적 행동을 감행하면서까지 대마도 내지 막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계 내용을 개찬하려는 목적을 관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는 “흔히 말하는 옛날 방식과 오늘날 방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정과 시세를 분별하지 못한 그릇된 생각”으로 사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결국 대마도에게 ‘울릉도쟁계’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지적한 대로 “위력과 공갈을 써서라도 이쪽(대마도)의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한다는 분위기로 7년간 교섭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에 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마도의 평판에 지장”이 생기게 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 6월 「죽도문제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좌장 시모조 마사오 등은 『속죽실록』과 한국 사료에 나오는 안용복의 진술은 ‘거짓’이고 ‘위증’이기

27) 장순순(2013), 「17세기 후반 ‘鬱陵島爭界’의 종결과 對馬島(1696년-1699년)」, 『한일관계사연구』45, 한일관계사학회, pp.207-248.

때문에 한국 측 사료를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안용복 진술의 진위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원연희(2015)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최근 한일 간 독도에 관한 영토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안용복의 사건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1693년 안용복이 납치되었을 때, 나가사키 봉행소와 쓰시마번에서의 진술이 위증이었다고 일본 측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에도시대 쓰시마번사가 쓴 『죽도기사(竹島紀事)』에 있는 안용복의 진술을 통해 그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인식에 주목을 하여 분석하고 있다. 『죽도기사』와 조선의 사료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안용복은 일본인과 울릉도에서 만나기 이전에도 동해의 항로를 잘 알고 있었다. 동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은 6세기 우산국 때부터 시작되어 고려에서 조선의 안용복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그의 나가사키 봉행소(奉行所)의 진술에서는 울릉도의 방향을 말하지 않았지만, 쓰시마번의 진술에서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했다. 이 사실은 울릉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증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로서 들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어렵을 하였던 안용복이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기존의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익히 인식하면서 어렵을 하였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학적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울릉도쟁계」의 경과와 함께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았던 교환공문 즉 서계(書契)와 그 관련 문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박현진(2013)²⁸⁾, 박현진(2018)²⁹⁾의 연구가 주목된다. 17세기말 동래어부 안용복 등의 2차에 걸친 도일활동(1693-1696)과 대마

28) 박현진(2013),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독도 권원 확립·해상국경 묵시 합의-」, 『국제법학회논총』58(3), 한국국제법학회, pp.131-168.

29) 박현진(2018),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II): 국제재판에서의 입증책임·기준과 사서·사료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63(4), 한국국제법학회, pp.57-90.

도주의 울릉도에 대한 야심으로 촉발된 소위 ‘울릉도쟁계’ 사건으로 양국은 당시 한·일간 외교 관행에 따라 대마도주를 교섭창구로 외교교섭 과정에서 왕복 외교문서를 교환하였다. 특히 조선 조정의 1694년 8월 서한과 1697년 2월 대마도주를 통한 막부의 서한은 영토·해양경계 분쟁 관련 현대 국제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교환공문’으로서, 현대 외교관행·국제법상 ‘약식조약’에 해당한다고 그는 보고 있다. 이 교환공문은 양국간 특수관습(거리관습)에 입각, 울릉도에 대한 조선의 원시적·본원적 권원을 조약상의 권원으로 대체한 국제협정으로 해석·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 교환공문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에 묵시적으로 동의·승인하고 아울러 양국 간 해상국경 역시 독도 남쪽의 해양경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막부의 1696년 울릉도 도해면허 취소 및 독도도해 금지 조치와 함께, 일본 어부가문의 울릉도도해 신청서와 1870년 명치정부 외무성 및 1877년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의 내부분서 등 1905년까지 200년 이상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조선의 독도 영유권 및 독도남부의 해상국경에 묵중한 일본의 일관된 국가실행에서도 확인된다. 도해면허란 본질적으로 외국해역 방문허가 또는 해양자원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제판례상 영유권 관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 간 소위 독도영유권 문제는 교환공문과 함께 울릉도쟁계가 외교적으로 마무리된 1699년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며, 양국 간 해양경계 역시 묵시적으로 독도 동남쪽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를 「죽도도해금지」-「태정관지령」으로 확장하여 ‘조일국경조약체제’라는 프레임을 적용한 새로운 논리적 시도가 이성환(2017)³⁰⁾의 연구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은 1699년의 한일간의 국경조약(=「울릉도쟁계」)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었다는

30) 이성환(2017),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와 독도」, 『독도연구』23, 영남대 독도연구소, pp.191-226.

것이다. 태정관지령이 성립함으로써 일본은 조일 간의 국경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체제는 메이지헌법체제 하에서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 적어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는 1905년 2월까지 작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일국경조약체제 하에서 취해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태정관지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699년의 국경조약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무효화는 한일 간의 국경조약의 파기를 의미한다. 조약 파기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정부에 통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5년 당시에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한 일본의 각의 결정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과 연결시키고 있다. 17세기에 형성된 “조일국경조약체제”에 의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은 법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독도가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이용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3.2. 일본 메이지시대 관찬문서 관련 연구

일본 메이지시대 관찬사료로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³¹⁾, 『기죽도각서(磯竹島覺書)』³²⁾,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³³⁾, 『

죽도고증(竹島考證)³⁴⁾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상의 문서는 대부분 한국어판 번역본이나 나왔거나 부분 번역이 이루어져 상당수 연구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서는 일본의 근대화와 더불어 국가체제를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편찬된 것들로 근대국가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우선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관한 연구로는 선행연구에서 누차에 걸쳐 언급되었던 것이지만, 최근의 것으로 정태만(2014)³⁵⁾을 들 수가 있다. 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으로 이어졌다. 1870년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인도’(竹島ノ隣島)로, 또한 1870년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외일도’(竹島外一島)라고 하여 조선령임을 재확인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안용복사건 당시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 귀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의 지적에 올리지 말

31) 송휘영 역,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Ⅲ』, 동북아역사재단, 2020.

32) 김강일 역, 「기죽도각서」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Ⅲ』, 동북아역사재단, 2020.

33) 이성환·송휘영·오카다 다카시,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지성인, 2016, 정태만, 『태정관지령이 밝혀주는 독도의 진실』, 조선뉴스프레스, 2012, 유미림·박지영·심경민, 『1877년 태정관지령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김강일 역, 「태정관지령」 『울릉도·독도 일본 사료집Ⅲ』, 동북아역사재단, 2020.

34) 정영미 역, 『죽도고증(독도자료집Ⅱ)』,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35) 정태만(201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독도연구』 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7-41.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관지령』에도 공시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 부족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 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태정관지령」을 부인 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태정관지령에서 나오는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문구를 두고 ‘외일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일본 <죽도문제연구회>측은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의 원본을 찾으면서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를 발견한 우르시사키(漆崎英之) 목사³⁶⁾는 “「기죽도약도」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공문록 사료를 검토한 연구자들은 ‘외일도’가 송도(독도)라고 하는 결론을 당연히 내리고 있었다. 「기죽도약도」의 발견은 이러한 연구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 마사오 등 일본 측 연구자가 독도가 아닌 다른 섬이라고 결론지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와 결론도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송휘영(2014)³⁷⁾도 태정관지령 관련 부속문건을 검토하여 지령문을 분석하여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죽도고중에 관한 연구로는 김호동(2009)³⁸⁾의 연구가 있다. 그는 여기서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의 논리와 ‘공도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본

36) 漆崎英之(2013),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발견 경위와 그 의의」 『독도연구』14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329-342.

37) 송휘영(2014), 「「죽도외일도」의 해석과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 52호, 동아시아일본학회, pp.271-296.

38) 김호동(2009), 「「竹島考證」의 사료 왜곡: ‘한국 측 인용서’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40호, 한국일본문화학회, pp.327-348.

외무성 관원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沢正誠)의 아이디어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죽도를 조선의 땅임을 결론으로 내세우면서도 죽도고증(竹島考證)에서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은 그의 논리를 받아들여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여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런 점에서 독도에 대한 ‘무주지선점론’이나 ‘고유영토설’은 기타자와 마사노부의 『죽도고증(竹島考證)』에서 제시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사료를 번역한 정영미(2014)³⁹⁾는 『죽도고증』의 사료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중엽에 일본 외무성에서 편찬된 죽도고증이 흔히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인양 인식되고 있으나,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울릉도 영유권 관련 자료라는 것이다. 19세기 중엽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본 에도시대 이래의 문서들에서 울릉도는 항상 독도와 함께 취급되어 왔다. 죽도고증은 이러한 문서들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에도 시대 독도 관련 기록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한다. 죽도고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관계가 있다. 죽도고증에 기술되어 있는 19세기 당시의 외무성에서의 울릉도 영유권 관련 논의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때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가 울릉도가 일본 섬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후에 1950년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논리와 주장의 토대가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일차 사료인 『죽도고증』을 이용하여, 가와카미 겐조의 ‘명칭혼란론’ 현상의 경과와 원인, 그리고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⁴⁰⁾ 메이지

39) 정영미(2014),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로서의 「죽도고증(竹島考證)」의 역할과 한계」 『독도연구』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43-66.

40) 정영미(2012), 「『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 『한일관계사연구』43호, 한일관계사학회, pp.469-507.

시대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새롭게 열린 항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동해상의 섬 하나를 발견하고 외무성에 개척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⁴¹⁾에서 시작된다. 외무성은 이 섬이 옛날에는 죽도라고 불리던 조선의 울릉도라고 판단하여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관료 중에는 이 섬이 옛날의 죽도가 아니라 새로운 영토인 송도라는 섬일지도 모르니 조사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명칭변화 및 명칭혼란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 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는 일본의 논리는 울릉도가 ‘기죽도’로 불리다가 ‘죽도’로 변화하는 과정과도 흡사하며, ‘송도’라 불리던 독도를 새로 발견한 섬 ‘리양코’라 하여 편입하는 것과도 논리적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명칭전도론’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3.3. 「대한제국칙령」, 「시마네현고시」 관련 연구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불법편입과 관련해서 한일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나오는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것과, 독도 편입의 절차의 불법성 논란이다. 우선 독도편입 절차의 불법성에 관해서는 김영수(2018)⁴²⁾의 연구가 있다.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일본수로지』에 기초해서 기록하였고, 독도 불법 편입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우선,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시켰다. 또한, 일본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

41) 1870년부터 1880년까지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제출된 ‘개척원’은 8건이나 되었음.

42) 김영수(2018),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東北亞歷史論叢』62호, 동북아역사재단, pp.237-280.

(山座円次郎)는 러일전쟁의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望場)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外務省)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무성 당국자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암초”, “일본의 한국 병탄(併呑) 야심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 불법 편입이 일본의 한국 강점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자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의 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카이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라는 지리적 개념, 한국의 영토라는 영역적 개념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현재까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기준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함께 원본도 소실되었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1905년 당시 필기체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시마네현청의 고시 40호는 인쇄체 형태이다. 이것은 원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일본의 증거력도 국제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곽진오(2012)⁴³⁾는 독도 편입 청원을 한 나카이 요자부로의 관련 문서와 메이지 시대 일본 문서에서 울릉도-독도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련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일본에 의한 독도 고유영토 주장을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이 「시마네현고시 40호」에 의한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당시 독립된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려

43) 곽진오(2012), 「시마네현(島根縣) 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한일군사문화연구』13호, 한일군사문화학회, pp.149-174.

는 일본의 조급함이 낳은 역사에 대한 과오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제국칙령에 나타나는 ‘석도’가 독도임을 밝히는 연구로는 음운론적 해석에 의한 서종학(2008)⁴⁴⁾의 연구가 있다. 서종학에 의하면, ‘石’과 ‘獨’ 그리고 ‘梁’과 ‘贅’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借字로서, ‘石’과 ‘梁’은 ‘돌, 독’(<똥>*똥)을 표기하는 데 사용된 훈차자이고, ‘獨’과 ‘贅’은 ‘독’을 표기하는 데 이용된 음차자이다. ‘獨’과 ‘梁’이 표기될 자리에 한자 ‘道’가 사용됨은 이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돌, 독’을 훈차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면 ‘石, 梁’이 되고 음차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면 ‘獨, 贅’이 되는 것이다. ‘石島’가 표기된 勅令은 古文書의 敎書에 해당하는 문서인데, 교서는 한문으로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으므로 ‘돌섬, 독섬’을 표기하려면 이를 훈차한 ‘石島’를 이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獨島’가 기록된 報告書는 고문서의 牒呈에 해당하는 문서인데, 첩정은 吏讀로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으므로 ‘돌섬, 독섬’을 표기하려면 음차한 ‘獨島’로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獨島’와 ‘石島’는 동일한 지물을 가리키는 異表記인 것이다.

사료 해석상의 문제와 음운론적 유추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김영수(2019)⁴⁵⁾의 연구가 있다. 대한제국 시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살펴보면 독도는 공식적인 명칭인 ‘석도’와 함께 ‘우산도’로 표기되었다. 『황성신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에 기초하여, 장한상의 파견 이후 파악한 울릉도의 부속도서를 ‘우산도’(于山嶋)라고 지칭하였고, 울릉도와 연결되어 우산도가 존재한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문헌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의 구별이 뚜렷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황성신문』은 “본군소속독도(木郡所屬獨

44) 서종학, 「獨島·石島의 地名表記에 관한 研究」 『語文研究』36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pp.39-62.

45) 김영수(2019),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242호, 역사학회, pp.106-133.

島)”, “해군소속도(該郡所管島)는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석도’가 ‘독도’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대 일본 문헌은 돌섬을 ‘투스섬(トツセム)’과 ‘톡손(トクソン)’으로 불렀는데, 한자로 ‘투스섬’이 석도(石島)였고, ‘톡손’이 독도(獨島)로 기록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어 ‘톡손’은 한국어 발음으로 ‘독섬’이므로, 일본 문헌으로 ‘돌섬’과 ‘독섬’이 같고, ‘독섬’과 ‘독도’가 같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돌섬=독섬=독도) 결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는 ‘돌섬’을 ‘석도’라고 표기한 다양한 한국문헌들을 고려하면, ‘돌섬’과 ‘독섬’에서 유래하였고 바로 ‘독도’(獨島)였다. “돌섬=독섬=독도=석도”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음운론적 해석을 2차 자료가 아닌 당시의 1차 자료에 의해 ‘돌섬·독섬=石島=獨島’설을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유미림⁴⁶⁾의 연구가 있다. 칙령 제41호 반포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의 자료를 통해 ‘돌’과 ‘독’을 ‘석(石)’으로 혼차한 용례, ‘독(獨)’으로 혼차한 지명을 찾아 유형화함으로써 ‘독섬’으로 부르는 섬을 ‘석도(石島)’, ‘독도(獨島)’라고 적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예로부터 한자지명은 토착의 우리말을 뜻 혹은 음에 따라 한자로 표기하는 혼차(訓借) 혹은 음차(音借)방식에 의해 표기되어 왔고, ‘石島’나 ‘獨島’도 이 방식을 따른 것이다. ‘石島’는 ‘돌섬’의 방언인 ‘독섬’에서 혼을 취해 표기한 것이고, ‘獨島’는 ‘독섬’에서 ‘독’음을 취해 표기한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 유미림은 지명자료에서 ‘石’과 ‘獨’자가 들어간 지명을 조사하여, ‘돌’을 ‘石’으로 혼차한 지명은 전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임이 밝혀냈다. ‘독’을 ‘石’으로 혼차한 경우라도 ‘독’이 ‘돌’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돌’의 방언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용례는 전라도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충청도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독’을 ‘石’으로 표기한 용례는 전라남도에 가장 많이 보이고, ‘독’을 ‘獨’으로 표기한 용례는 경상도에서 주로 보였다. 그런데 개척 이후 경상도인과 강원도인의 입

46) 유미림(2012), 「차자(借字) 표기 방식에 의한 ‘석도=독도’설 입증」 『한국정치외교사논총』34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p.37-61.

도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언어방식의 영향을 받아 ‘독도’의 의미가 ‘독섬(독섬)’에서 점차 ‘외딴 섬’의 의미로 변화되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위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유미림⁴⁷⁾은 해방 후 칙령 제41호의 발굴과정과 ‘석도=독도’설을 추적하는 방식에 의해 ‘석도=독도’설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石島가 獨島라는 인식 및 논리는 칙령의 존재를 인지하기 전부터 그와 무관하게 성립해 있었으며, 칙령을 발굴하기 전부터 모든 이들이 독도가 ‘독섬’에서 온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다. 칙령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이 독도가 독섬-석도에서 온 것임을 저절로 입증해준다. 독도가 독섬-石島에서 유래한 것임은 칙령 제41호를 알기 전부터 독도를 독섬-석도에서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칙령이 발굴되고 거기 ‘석도’로 명기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독섬=석도=독도’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3.4. 해도 및 수로지 관련 연구

일본의 근대화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서양의 측량기술 등을 도입하여 해도(海圖), 수로지(水路誌) 등을 편찬하고, 지지(地志) 및 지리지(地理志) 등을 정비하게 된다. 근대국가 일본의 영역 획정과 대륙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치적 목적과 균략상의 목적으로 주변의 수로를 측량하고 분석하게 된다.

지리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유미림·최은석(2010)⁴⁸⁾의 연구는 선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근대기 일본에서 발행된 지리지와 조선 지리지, 수로지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지리지·수로

47) 유미림(2020),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발굴 계보와 ‘石島=獨島’설」 『대한제국칙령 41호 선포 12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독립기념관, pp.3-30.

48) 유미림·최은석(2010),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에 나타난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870년대부터 1945년 사이에 발간된 지리지를 망라해 분석하고 있는데, 독도의 명칭 변화와 그 상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근대기 지리지는 일본의 평창주의적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시기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상의 혼란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로서의 인식이 빈곤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리지가 적어도 1905년 편입 이전까지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묶어 그 속도(屬島)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송휘영(2012)⁴⁹⁾은 근대 일본의 수로지 속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어떻게 취급되었고, 일본 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계통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1870년 이후 근대 일본에서 발행된 수로지를 모두 취급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당시 해양경계 확정의 역할을 맡았던 해군 수로부의 독도 인식을 파악하고 있다. 근대 일본 해군의 수로지 편찬은 영토구분을 명확히 하여 발간하고 있으며, 수로지를 영해·영토 단위로 구분한 것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울릉도·독도를 『조선수로지』에 포함시키고 있음은 명백히 이를 조선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한철호(2014)⁵⁰⁾는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수로지와 해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1904년 나카이가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고자 했던 때, 독도를 일본령 혹은 무주지라고 인식한 흔적은 파악할 수 없으며, 수로부는 줄곧 한국령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보강하는 작업으로 수로지와 해도를 근거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한 독도가 인접한 일본의 오키섬의 부속섬 내지는 세트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한철호

49) 송휘영(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제106호, 대구사학회, pp.241-270.

50) 한철호(2014),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17호, pp.135-166.

(2015)⁵¹⁾는 새로 발굴한 자료를 토대로 1878년 아마기함이 울릉도를 측량한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일본은 개항 후 해안 측량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 조선 해안 측량권을 넣었고, 이를 근거로 조선 해안을 본격적으로 측량하였다. 이때 외무성에서는 松島를 개척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외무성과 해군성은 아마기함을 파견해 개항장 후보지를 찾고 松島의 실체를 파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878년 6월 아마기함은 竹島와 松島를 조사한 결과, 竹島가 존재하지 않은 아르고노트 섬이며 松島가 조선의 울릉도라고 확인하였다. 당시 아마기함은 일본육군 참모국의 「조선전도」, 영국 해도 2347, 러시아 해도 「조선동해안도」, 『중국해역 항해지침』 등을 참고로 측량하였다. 『중국해역 항해지침』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기술된 반면, 오키는 일본 서부 연안에 분류되었다. 따라서 아마기함은 ‘松島’(울릉도)뿐만 아니라 ‘리앙쿠르 록스’(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던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분류 원칙은 1904년까지 유지되었고, 일본 수로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중국해역 항해지침』의 독도와 울릉도 내용은 1880년 6월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으로 재차 확인되었고, 그 후 일본 수로부가 1907년 3월까지 간행한 모든 수로지에 거의 그대로 서술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년 아마기함의 울릉도 측량과 독도인식은 그 후 일본 수로부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윤소영(2014)⁵²⁾은 메이지 후기 일본의 지리지와 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을 통해서 지리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우선 1890년 전후 일본의 지리 인식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지리지 발간의 시대적 배경을 검토

51) 한철호(2015),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東北亞歷史論叢』50호, 동북아역사재단, pp.7-47.

52) 윤소영(2014),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p.167-200.

하고 있다. 여기서는 요시다 도고(吉田東伍, 1864-1918)의 『大日本地名辭書』와 독도의 시마네현 강제편입 후에 발간된 향토지로서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저술인 『竹島及鬱陵島』와 『隱岐島誌』를 비교 검토하여, 독도 관련 기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1883년, 일본은 무단 별목으로 울릉도에 재주한 일본인 강제송환 및 도항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이 조치 이후에 간행된 일본의 지리지에는 이 금지령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문부성에서 지리교과서 편찬을 담당할 적 있는 오쓰키 슈지의 개정일본지리지, 일본의 지질조사소를 이끈 하라다 도요키치의 『일본 군도(日本群島)』, 요시다 도고의 대일본지 명사서에는 이 조치로 인해 울릉도가 조선에 귀속한다는 것이 한일양국에 결정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요시다 도고의 『大日本地名辭書(1900)』의 「오키」 부분에는 한일양국의 지리지를 구사하면서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는 삼봉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메이지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일양국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는 자료이다. 더욱 1905년 독도의 강제편입 이전에 간행된 지리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그런데, 1905년 일본영토로 독도를 불법편입한 다음 저술된 오쿠하라 헤키운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와 『오키도지(隱岐島誌)』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독도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료에 대한 자의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915년에 저술이 완료된 『오키도지』에는 그것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4. 맺음말

우리의 독도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은 200여개 이상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수 또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많고

연구 성과도 10배정도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죽도(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일본사회에서 일반화된 논리로 확산시켜가고 있다. 이들 논리를 하나하나 무력화 시키는 매뉴얼은 있는가?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연구역량과 정보를 얼마나 결집시켜 왔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최근 매년 100편 이상이나 독도관련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러 쟁점에 걸쳐 일본의 왜곡 주장과 허구성을 명료하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 못하다.

물론 독도 영유권에 관련하여 중요한 사료 및 자료가 대부분 일본 측에 편중되어 있다. 저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일본 측 원사료를 발굴하는 작업과 이를 해독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石島)’가 독도(獨島)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1900년 이전에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어야 한다. 또한 기존 공개된 자료 가운데에서도 이들 원사료를 꼼꼼히 점검하여 일본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어찌면 우리 학계에 만연해 있는 것일지는 모르나 적어도 독도연구에서 지양해야 할 점과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도연구는 신용하(1996)⁵³⁾, 송병기(2007)⁵⁴⁾의 연구에 의해 상당부분 집대성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이후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대체로 부정되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일부 일본 국내의 양심적 학자들의 연구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일본 외무성과 시마네현 <죽도문제 연구회>가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상당부분 ‘허구성’을 밝혀냈다고 할 수

53)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54) 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여전히 선학의 재탕삼탕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은 자성해야 할 부분이며, 오히려 선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의 주장에 대해 명쾌하게 비판할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이는 일본의 논리가 점점 교묘하게 맹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으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무력화하는 논리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용복의 납치 사건과 2차도일 사건에서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관련 사료들의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블랙박스 안에 묻혀 있는 부분들이 많다. 서계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 안용복의 2차도일의 목적과 성과, 그가 잠상인가 어부인가 장군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료에 입각한 실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독도연구에서 역사학적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안용복 사건과 1905년 독도편입 시기와 같은 특정 쟁점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가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이라는 양축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시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 주장의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졌다고는 하나 일본 논리의 부당성과 「고유영토론」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를 보다 실증적인 것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많은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선행연구의 무분별한 인용과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기적 성과주의와 양적 척도로 평가하는 우리의 연구풍토의 책임도 적지 않으나 적어도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 연구만큼은 증언부인과 재탕삼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사만 바꾸어 증언부언한다거나 원사료 해석의 무분별한 인용과 추측성 분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석호 외, 『獨島』, 중앙공론사, 1965.
 김병렬, 『독도: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1998.
 박병섭,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송병기,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출판부, 2004.
 _____,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석호, 「독도소속에 대하여」, 『史海』1, 1948.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신용하 편,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 제1권~제4권, 독도연구보존협회, 1998-01.
 외무부, 『獨島』, 대한공론사, 1965.
 외교통상부, 『독도문제 개론』,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2012.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1965.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多賀出版, 2000.
 竹内猛, 『竹島=獨島問題 「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報光社, 2010. (송휘영·김수희 역 『독도=죽도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도서출판선인, 2013)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_____,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2. 논문

곽진오, 「시마네현(島根縣) 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한일군사문화연구』13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pp.149-174.
 김병렬, 「광복 이후 우리나라 독도 연구사 검토」, 『독도연구저널』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p.2-8.
 _____, 「독도 관련 문제 연구를 위한 일제언」, 『영토해양연구』11, 동북아역사재단, 2016, pp.6-32.
 김병우, 「安龍福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34, 2011, pp.73-116.
 김영수, 「근대 독도 포함 해양 관련 역사분야의 성과와 한계」, 『동북아역사논총』

- 53, 동북아역사재단, 2016, pp.291-314.
- _____,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東北亞歷史論叢』62호, 동북아역사재단, 2018, pp.237-280.
- _____,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역사학보』242호, 역사학회, 2019, pp.106-133.
- 김호동, 「『竹島考證』의 사료 왜곡: ‘한국 측 인용서’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40호, 한국일본문화학회, 2009, pp.327-348.
- _____, 「독도 영유권 공고화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II』 경인문화사, 2010, pp.448-449.
- _____, 「『竹嶋紀事』 분석 -안용복·박어둔 진술서 분석 및 ‘于山島’ 기록을 중심으로 -」, 『대구사학』122, 2016, pp.125-157.
- 박현진,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거리관습에 따른 조약상 울릉·독도 권원 확립·해상국경 묵시 합의-」, 『국제법학회논총』58(3), 한국국제법학회, 2013, pp.131-168.
- _____,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II): 국제재판에서의 입증책임·기준과 사서·사료의 증명력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63(4), 한국국제법학회, 2018, pp.57-90.
- 박병섭, 「안용복 사건과 돛토리번」, 『獨島研究』제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9, pp.281-342.
- _____, 「2000년 이후 독도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일본문화연구』4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pp.113-146.
- 서종학, 「獨島·石島의 地名 表記에 관한 研究」, 『語文研究』36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pp.39-62.
- 송병기, 「安龍福의 活動과 竹島(鬱陵島)渡海禁止令」, 『東洋學』, 제4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pp.1-14.
- 송휘영,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일본 외무성의 죽도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3, 4 비판-」, 『민족문화논총』제4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pp.35-70.
- _____, 「울릉도쟁계(竹島一件)의결착과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 『일본문화학보』49, 일본문화학회, 2011a, pp.265-286.
- _____, 「쓰시마번사 스야마 쇼에몽(陶山庄右衛門)과 조일 관계」, 『일어일문학』49, 대한일어일학회, 2011b, pp.399-415.
- _____, 「『죽도의일도』의 해석과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

- 구』52호,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pp.271-296.
- _____, 『광복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사 검토』, 『독도연구저널』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p.25-32.
- 漆崎英之,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발견 경위와 그의 의의, 『독도연구』14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pp.329-342.
- 원연희, 「일본 사료해석을 통한 울릉도·독도 연구 — 長崎奉行所·對馬藩에서의 안용복의 진술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제37호, 2013, pp.153-188.
- 윤소영, 「메이지 후기 지리지·향토지에 나타난 독도 기술」, 『독도연구』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년, pp.167-200.
- 이성환,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의 새로운 동향과 분석」, 『일본문화연구』4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pp.307-325.
- _____,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와 독도」, 『독도연구』23,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7, pp.191-226.
- 이 훈, 「조선 후기 독도(獨島)의 영속 시비」, 한일관계사연구회 편,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pp.13-54.
- 장순순, 「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경계』84, 부산경남사학회, 2012 pp.37-71.
- _____, 「17세기 후반 ‘鬱陵島 爭界’의 종결과 對馬島(1696년~1699년)」, 『한일관계사연구』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pp.207-248.
- 정영미, 「『죽도고증』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아마기함의 울릉도 조사」, 『한일관계사연구』43호, 한일관계사학회, 2012, pp.469-507.
- _____, 「독도 영유권 관련 자료로서의 『죽도고증(竹島考證)』의 역할과 한계」, 『독도연구』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년, pp.43-66.
- 정태만,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독도연구』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pp.7-41.
- 최철영, 「<원록각사>·<죽도기사>·<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 『독도연구』22, 2017, pp.69-96.
-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40, 한국근현대학회, 2007, pp.200-221.
- _____, 「明治期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 『한국사학보』28, 고려사학회, 2007, pp.319-352.
- _____,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17호, 2014, pp.135-166.

- _____,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169호, 한국사연구회, 2015.
- _____,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인식」, 『東北亞歷史論叢』50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
- _____, 「일본 농상무성의 「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79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 _____, 「1905년 2월 이전 島根縣의 관할지 내 독도 제외와 그 의미—《島根縣統計書》를 중심으로—」, 『독도연구』23호, 2017, pp.7-58.
- _____, 「일본 메이지시기 오쓰키 슈지(大槻修二)의 『日本地誌略』 편찬과 독도 인식」, 『民族文化研究』8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 허영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이석우 엮음,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
- _____, 「1905년 ‘각의결정문’ 및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와 독도 편입」, 『독도연구』1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pp.109-134.

<Abstract>

Prospects and Issues of Historic Studies in the Dokdo Research since 2000

Song, Hw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verall tendency of Dokdo research in Korea and then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Dokdo research in the field of history for about 20 years since 2000. While more than 200 research institut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Dokdo are established, Japan shows only a few research center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Korea is about 10 times than Japan the research results are remarkably high. Nevertheless, Japan has been pushing our loopholes in terms of research, spreading the distorted logic of rhetoric that "Dokdo is a unique territory of Japan that is obvious histor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hat Korea is currently illegally occupied" in Japanese society generalizing their logic. Although more than 100 studies on Dokdo have been poured out every year, Japan's distortion claims and fictions have not been clearly objectively neutralized over various issues.

First, the Dokdo study in Korea has resulted in the research result that denies the "unique territorial discuss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since 2000. This is the influence of the study by conscientious scholars in Japan and the recently increased research based on Japanese historical record. Second, there is no clear basis for criticizing the claim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0 Points to understand the Takeshima problem" in relation to the issue of Dokdo sovereignty. This is a part of Japan's logic that gradually complements the blind spot, but it is necessary to complete the logic that clearly neutralizes historical and geographical international law. Third, in the Dokdo study, it is too concentrated on specific issues such as the Ahn Yong-bok case and the time of Dokdo in 1905. In order to prove the unfairness of Japanese logic and the fiction of "unique territorial debate" and "Terra Nullius - unpreemption theory" claimed by Japan, we should find the evidence of our effective control of Dokdo as more empirical. Fourth, despite the active progress of many new studies,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problems following the existing studies and the indiscriminate citation of existing previous studies. Many studies still depend on the recopying the materials from previous or existing researchers, which is a part to be self-reliant, and, it is time to study toward a new viewpoin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is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our research climate, which is evaluated by short-term performance and quantitative scale, but at least the Dokdo study with national pride should be directed toward a new study method out of repeating past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research and analysis method only to say the same words, or to avoid indiscriminate citation and speculative analysis on raw material interpretation.

Keywords: Dokdo Research, Historic Studies, Inherent Territory, Doctrine of Terra Nullius, Evidence of Effective Possession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조선 후기 주기적 울릉도 수토와 울릉도 인식 양상에 대한 연구*

백 인 기**

〈목 차〉

1. 머리말
2. 조선시대 수토의 의미
3. 울릉도 수토 사례
4. 울릉도 특산물과 울릉도 인식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울릉도 수토에 관한 각종 사례를 종합하고 누락된 수토 사례를 추정하여 울릉도 수토의 지속성과 빈번함을 확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울릉도 수토 자료에 나타나는 울릉도 특산물 이용 형태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울릉도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확인된 사례와 추정한 사례를 통해서 1694년부터 1894년까지 최대 84회의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수토와 울릉도 특산물의 우수성 때문에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특산물을 이용하였고, 연안 백성들은 매년 울릉도로 향하여 울릉도 특산물을 배 한가득 채취하였다.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는 연안에서 출발하는 많은 배들이 울릉도로 향해함에 따라 울릉도는 이들 연안 백성들의 생활권이 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의 시각공간 안에 있

* 본 논문은 “20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영토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ikpaik@kmi.re.kr

다. 따라서 독도는 좁게는 울릉도 생활권에 속하면서, 넓게는 연안의 생활권에 속하게 된다. 앞으로는 연안 백성들과 울릉도 및 독도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울릉도 수토제도, 울릉도 인식, 주기성(週期性)

1. 머리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울릉도 수토에 관한 각종 확인된 사례를 정리하고, 윤희수토의 원리와 3년 또는 2년 주기 및 수토정지를 고려해 누락된 사례를 추정하여 울릉도 수토 전모를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울릉도 특산물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의 울릉도 인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째, 울릉도 수토 사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울릉도 수토제도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울릉도 수토제도에 대한 연구는 1948년 신석호의 논문에서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석호는 울릉도 수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삼척영장과 월송만호의 윤희수토를 평해군수 혹은 울진현령의 파견으로 잘못 기술하였지만, 한 해 건너 한 번씩 파견하고, 울릉도에서 나는 대죽(大竹), 향목(香木), 산삼(山蔘)을 채취하고 가제(可支魚)를 포획하였다고 함으로써 울릉도 수토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¹⁾ 본격적으로 독도영유권의 근거로서 울릉도 수토를 언급한 사람은 황상기였다. 황상기는 울릉도에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한 사례로서 1727년 삼척영장 이만협 울릉도 수토 보고를 인용하였다.²⁾ 이흥직은 울릉도 도동항에서 발견된 삼척영장 박석창(朴錫昌)의 1711년 각석문과 삼척영장 구억(具億)의 1735년 각석문

1) 신석호, 1948, “독도 소속에 대하여”, 『사해』 창간호, 94쪽.

2) 황상기, 1957,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제1회”, 『동아일보』 1957년 2월 28일 2면.

을 소개하였다.³⁾ 이선근은 울릉도의 역사, 울릉도쟁계, 고종 때 일본인의 울릉도 침범 사건,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울릉도 개척과 일본인 철거, 『울릉도검찰일기』 해설 등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였다.⁴⁾ 이선근은 1881년 수토관의 역할을 통해 울릉도 수토제도의 지속을 확인했으며, 부록으로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를 발굴하여 전문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말 본격적인 울릉도 수토제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송병기는 1978년 4월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독도연구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⁵⁾ 그 성과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985년에야 책으로 발표되었는데, 송병기는 “고종조의 울릉도 독도 경영”에서 울릉도 수토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였고, 1714년 강원도어사 조석명(趙錫命)의 보고, 1794년 한창국(韓昌國)의 수토 보고, 잠상(潛商)의 채삼(採蔘) 문제와 삼척영장의 처벌 및 이후 수토관들의 인삼채취, 연변민(沿邊民)들의 울릉도 출어(出漁)와 관련된 자료들을 발굴하였다.⁶⁾ 김호동은 그 이후 약 20여년 간의 연구성과를 『독도, 울릉도의 역사』에 담았다.⁷⁾ 배재홍의 『한길택 생활일기』 연구⁸⁾, 백인기의 울릉도 수토제도 주기성 연구⁹⁾ 심현

3) 이흥직, 1962, “鬱陵島搜討官關係碑 二, 『미술사학연구』 제3권 제7호, 263-265쪽. 이 논문은 매우 짧지만 기록이 누락된 이 시기의 울릉도 수토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4) 이선근, 1964,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탐험성과”, 『대동문화연구』 1, 295-335쪽.

5)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4쪽.

6) 송병기, 1985, “17세기말 이후의 울릉도 수토제도의 확립”, 『독도연구』, 191-203쪽; 송병기, 1998, “조선후기의 울릉도 경영 - 수토제도(搜討制度)의 확립”, 『진단학보』, 86호, 157-174쪽;

7)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8)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제103권, 113-148쪽. 『한길택 생활일기』는 최근 “한길택”이 실제로는 “항길고택(恒吉古宅)”이라는 사실이 이원택, 심현용 그리고 필자의 공동 조사에서 그 집안의 현판과 병풍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길고택 일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9) 백인기, 2013,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도의 주기성과 그 의의 I”, 『이사부와 동해』 6호, 149-188쪽.

용의 “대풍헌” 자료 연구¹⁰⁾, 이원택의 「강원도관초」 연구¹¹⁾ 등을 통해서 누락된 수토 사례 중 많은 부분이 채워질 수 있었다.

둘째, 수토 사례의 발굴은 누락된 수토 사례에 대해 윤희수토와 수토주기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토 자료를 발굴하고, 추정된 정보를 수정하며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쟁점시기의 구분도 이러한 누락자료 추정에 적합한 시기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1714년 월송만호 남중하의 경우, 먼저 월송만호 남중하를 추정하였고, 월송만호 남중하를 키워드로 “의령남씨단검명”, “남중하전” 등을 통해서 1714년 월송만호 남중하가 울릉도를 수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853년 월송만호 석충선과 1855년 삼척영장 이원명의 울릉도 수토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이원택(2014) 연구의 1857년 월송만호 지희상의 수토자료에서 확인한 경우이다.

셋째, 가지어피, 황죽, 자단향, 주토(朱土) 등의 수토 봉물(封物)과 잠선(潛船)의 채취 물품을 통해서 울릉도 특산물이 조선 후기 사회에 이용되는 양상도 파악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와 울릉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울릉도 수토가 3년 또는 2년마다 꾸준히 지속되었음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를 통해서 울릉도가 조선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조선시대 수토(搜討)의 의미

조선시대 수토는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로 잡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이

10) 심현용, 2013,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에 대한 고고학적 시·공간 검토”, 『영토해양연구』 6, 162-207쪽.

11) 이원택, 2014, “조선후기 강원감영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8, 184-203쪽.

문서인 경우에 책의 교정(校訂)이나 망실된 책자들을 찾아서 채워놓는 경우 등에 사용하였다. 군사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침입자나 역도(逆徒)를 토벌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였고, 범법자나 그 증거물을 찾는 경우에도 사용하였다. 울릉도 수토는 군사를 동원에서 울릉도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고 몰래 들어온 백성들을 잡아오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울릉도 수토는 왜구와 잠선에 대한 토벌이 주이고, 수토의 증거물인 수토봉물(搜討封物)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울릉도 수토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토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하기 힘들다. 울릉도 수토는 조선시대 수토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기 때문에 단순히 울릉도를 조사하거나 검찰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수토(搜討)의 의미를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엿봄”이라는 국어사전의 소략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수토의 뜻으로 제시하고 있다.¹²⁾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수토 개념과 동떨어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수토(搜討)라는 용어는 “책과 관련된 수토”와 “군사와 관련된 수토”에 사용되었다.

책과 관련된 수토로는 세종(世宗) 때 황희(黃喜) 등이 신찬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을 올리면서 세종(世宗)이 황희 등에게 다시 수토(搜討)하라고 명한 것을 새로 편찬하여 올린다고 하였고,¹³⁾ 또 중종 때 대사헌 권민수(權敏手)의 상소에 존경각(尊經閣) 화재로 소실된 ‘책을 찾아 모으는 것’을 ‘수토유서(搜討遺書)’라고 하였다.¹⁴⁾ 책이나 문서의 경우에는 ‘교정(校正)한다’는 의미와 화재 등으로 책자들이 없어진 경우에 이전의 책들을 ‘찾아서 복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2) “1694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외교부 독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영토인 근거.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2020.11.25. 검색)

13)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1월 4일.

14)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윤4월 23일.

군사적으로 사용된 수토는 세조 때 함경도체찰사(咸境道體察使) 신숙주(申叔舟)의 치계(馳啓)에 “양정, 홍윤성, 강순, 김사우가 ‘길을 나누어 수토(分道搜討)하기로 이미 정했다’고 한 것이¹⁵⁾ 처음으로 기록되었으며, 이후에 왜구수토(倭寇搜討), 해도수토(海島搜討), 야인수토(野人搜討), 범인수토(犯人搜討) 등 다양한 기록들이 나타난다. 울릉도 수토(鬱陵島搜討)는 이러한 군사적 수토 중에서도 해도수토(海島搜討)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즉 군사적 수토는 영토를 침범한 적들을 ‘찾아서 토벌한다’는 의미와 범죄자나 범죄의 증거들을 ‘수색하여 잡아들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수토(搜討)를 한마디로 한다면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로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3. 울릉도 수토 사례

3.1.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제도 개요

울릉도 수토는 1694년 안용복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울릉도쟁계”¹⁷⁾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울릉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에게 울릉도를 수토하게 하였다.¹⁸⁾ 1697년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확인된 후에 본격적인 울릉도 수토가 논의되고 삼척영장

15) 『세조실록』 세종 6년(1460) 4월 10일.

16) 백인기, 2019, “조선의 수토정책과 울릉도 수토제도: 수토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9-191쪽.

17) 이맹휴(李孟休), 1744, 「울릉도 쟁계(鬱陵島爭界)」, 『춘관지(春官志)』 3권, 107-120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00963_00 (2020.10.28. 검색);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춘관지』 3권, http://db.history.go.kr/id/jlawb_210_0030_0150_0020 (2020.10.28. 검색); 송병기, 2006,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쟁계”, 『역사학보』 192, 143-181쪽.

18)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8월 14일.

과 월송만호가 3년마다 번갈아가며 수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¹⁹⁾

1694년 삼척영장 장한상(張漢相)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1699년 월송만호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를 수토한 후에는 3년마다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돌아가며 울릉도를 수토하였다.

1735년부터 1765년까지는 울릉도 수토 기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토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1735년 1월에 전해인 1734년 정지된 수토를 다시 정지해달라는 강원감사의 장계에 대해서 영조는 연속해서 정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울릉도 수토를 시행하도록 한다. 3년에 1번 가는 수토를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²⁰⁾

1735년 이 결정은 단순히 적극적인 수토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수토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사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1735년 이후의 누락된 자료를 추정할 때 3년 주기보다는 2년 주기가 더 적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1745년 월송만호 수토와 1751년 삼척영장 수토 사이에 영조가 1746년²¹⁾과 1748년²²⁾에 근자에 울릉도 수토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1746년에는 1745년에 월송만호 박후기의 수토가 있었다고 했고, 1748년에는 그렇다고 답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3년 간격에서 2년 간격으로 수토가 빈번하게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울릉도 수토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1769년(영조 45) 흥년으로 울릉도 수토가 정지(停止)되었는데, 삼척영장 홍우보(洪雨輔)가 몰래 사람을 들여보내 울릉도 인삼 수신킨을 채취해 와서 그 인삼을 유통시켰

19)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 4월 13일.

20) 『국역비변사등록』, 97책, 영조 11년(1735) 1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bb&levelId=bb_097r_001_01_0430&types=r (2020.10.28. 검색)

21) 『승정원일기』, 영조 22년(1746) 4월 24일.

22) 『승정원일기』, 영조 24년(1748) 1월 10일.

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²³⁾ 홍우보 사건 이후 울릉도 수토는 1894년 12월 폐지될 때까지, 특별히 정지된 해(1763년 추정)를 제외하고 2년마다 꾸준히 시행되었다.

3.2. 본격적인 울릉도 수토제도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각석문

울릉도 수토에 대한 사료의 기록은 누락된 것이 많다. 이렇게 누락된 기록들은 각석문, 울릉도도형, 문집, 집안의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이 가운데 각석문은 1962년 이홍직의 연구를 통해서 울릉도 수토의 실상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 당시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인 울릉도 수토제도 연구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할 수 있다. 또 김원룡의 울릉도 고고학연구에서 이정정과 정재찬의 수토 각석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울릉도 수토제도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였다.

이홍직(1962)은 일제시대 도동항에서 발견된 삼척영장 박석창(朴錫昌) 각석문(1711)과 삼척영장 구억(具億)의 각석문(1735) 자료를 발표하여 울릉도 수토 각석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⁴⁾ 이어서 김원룡(1963)은 이홍직의 연구를 확대하여, 『울릉도 고고학』에서 하나의 바위에 새겨진 삼척영장 이정정(李慶鼎)의 각석문(1831)과 삼척영장 정재천(鄭在天) 각석문(1847)을 발견하였다.²⁵⁾ 1889년 『울릉군지』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태하리, 광암 등의 각석문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고(故) 심충성씨가 태하리 각석문을 판독한 결과를 블로그에 올려놓았는데 각석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²⁶⁾

23)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2월 9일.

24) Op. cit., 이홍직.

25) 김원룡, 1963, 『울릉도』,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4책, 64-65쪽.

26) 심충성, 2017, “울릉군 서면 태하리 바위글씨”. 다음 블로그 닷밭골, 울릉문화재, <http://blog.daum.net/simdak1993/category/%EA%B2%BD%EB%B6%81%20%EB%AC%B8%ED%99%94%EC%9E%AC/%EC%9A%B8%EB%A6%89%20%EB%AC%B8%ED%99%94%EC%9E%AC> (2019.9.24. 검색)

- 1711년 삼척영장 박석창(朴錫昌)의 “신묘명 각석문(辛卯銘刻石文)” (도동항) (이홍직)
- 1735년 삼척영장 구억(具億) 각석문(도동항) (이홍직)
- 1801년 삼척영장 김취환(金取煥) (태하리 병풍석)
- 1803년 월송만호 박수빈(朴守彬) (태하리 병풍석)
- 1805년 삼척영장 이보국(李輔國) (태하리 병풍석)
- 1831년 삼척영장 이경정(李慶鼎) (태하리 병풍석)
- 1847년 삼척영장 정재천(鄭在天) (태하리 병풍석)
- 1853년 월송만호 석충선(石忠先) (태하리 병풍석)(1857 월송만호 지희상 수토기록)
- 1855년 삼척영장 이원명(李原明) (태하리 병풍석)(1857 월송만호 지희상 수토기록)
- 1882년 울릉도감찰사 이규원(李奎遠) (학포)
- 1885년 평해군수 겸 울릉도첨사 심의완(沈宜琬) (현포리 광암)
- 1893년 평해군수 겸 울릉도첨사 조종성(趙鐘成) (태하리 안쪽 발 가운데)

울릉도에서 발견되는 울릉도 수토관들의 각석문은 태하리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박석창과 구억의 각석문처럼 울릉도 수토 초기의 각석문들이 도동에 더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3.3. 울릉도 수토사례 종합

울릉도 수토와 관련된 기록은 체계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3년 또는 2년 윤회수토의 원칙에 따라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예측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수토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쟁점 시기 구분은 필자가 연구의 편의를 위해 나눈 것으로 추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 수토사례 종합표는 손승철 교수의 2015년 수토기록 표²⁷⁾를 바탕

27) 손승철, 2015, “조선후기 수토기록의 문헌사적 연구-울릉도 수토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1, 95-136쪽; Op. cit., 김호동; Op. cit., 배재홍, 2011;

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재수정하였다.

<표 1>의 최대 차수는 울릉도 수토가 시행될 수 있는 최대 횡수를 의미한다. 현재 자료의 한계 내에서 추정하면 201년간 84회의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수록 울릉도 수토 횡수가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표 1> 울릉도 수토 기록 연구 현황과 전체 수토 기록(예상 포함)

출처: 손승철(2015), pp. 103-104(필자수정)

최대 차수	쟁점 시기	김호동 2007	배재홍 2011	손승철 2011	심현용 2013	백인기 2013	이원택 2014	본 논문	비고 ^{주)}
1	I	1694	1694	1694	1694	1694	.	1694	삼척첨사 장한상
2		1699	1699	1699	1699	1699	.	1699	월송만호 전회일
3	II	1702	1702	1702	1702	1702	.	1702	삼척영장 이준명
4		.	1705	1705	1705	1705	.	1705	월송만호
								1709	수토정지
5		1711	1711	1711	1711	1711	.	1711	삼척영장 박석창
6	III	1714	.	1714	월송만호 남중하
								1717	수토정지
								1718	수토정지
7		1719	.	1719	삼척영장
8		1724	.	1724	(월송만호 추정)
9		1727	.	1727	삼척영장 이만협
10		1731	.	1731	(월송만호 추정)
							1734	수토정지	
11	.	1735	1735	1735	1735	1735	.	1735	삼척영장 구역

손승철, 2011, “중근세 조선인의 도서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5-259쪽.; Op. cit., 심현용, 2013; Op. cit., 백인기, 2013; Op. cit., 이원택, 2014.

최대 차수	쟁점 시기	김호동 2007	배재홍 2011	손승철 2011	심현용 2013	백인기 2013	이원택 2014	본 논문	비고 ^{주)}	
12	IV	1737	.			
				1738	(월송만호??)	
		1739	.			
		1741	.	1741	(수토정지??)	
13	IV			1742	(삼척영장??)	
		1743	.			
14	.	.	1745	.	1745	1745	.	1745	월송만호 박후기	
15	V	1747	.	1747	(삼척영장 추정)	
16		1749	.	1749	(월송만호 추정)	
7	.	.	1751	.	1751	1751	.	1751	삼척영장 심의희	
18	VI	1753	.	1753	(월송만호??)	
19		1755	.	1755	(삼척영장??)	
20					1757	(수토정지??)
		1758	.	1758	(월송만호??)	
21		1760	.	1760	삼척영장 유첩	
22		1762	.	1762	월송만호 추정	
								1764	수토정지	
23	.	.	1765	1765	1765	1765	.	1765	삼척영장 조한기1	
24	VII	1767	.	1767	월송만호 추정	
		1769	.	1769	.			1769	수토정지	
25	.	.	1770	.		1770	.	1770	삼척영장 김숙	
26	.	.	1772	1772	1772	1772	.	1772	월송만호 배찬봉	
27	VIII	1774	.	1774	삼척영장 추정	
28	.	.	1776	.	1776	1776	.	1776	월송만호	
								1778	수토정지	
29	IX	.	1779	.	.	1779	.	1779	삼척영장	
30		1781	.	1781	월송만호 추정	
31		.	1783	.	1783	1783	.	1783	삼척영장	
					1785	수토정지
32		.	1786	1786	1786	1786	.	1786	월송만호 김창윤	
		.	1787	.	1787	1787	.	1787	삼척 별정교졸 적간	
33		1788	.	1788	삼척영장 추정	
34		1790	.	1790	월송만호 남종희	
35	1792	.	1792	삼척영장 추정		

최대 차수	쟁점 시기	김호동 2007	배재홍 2011	손승철 2011	심현용 2013	백인기 2013	이원택 2014	본 논문	비고 ^{주)}
36	X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월송만호 한창국
37		.	1795	.	.	1795		1795	삼척영장 이동헌
38		.	1797	.	.	1797		1797	삼척영장 이흥덕
39		.	1799	1799	1799	1799		1799	월송만호 노인소
40		1801	1801	1801	1801	1801		1801	삼척영장 김최환
41		.	1803	1803	1803	1803		1803	월송만호 박수빈
42		.	1805	.	1805	1805		1805	삼척영장 이보국
43		.	1807	.	1807	1807		1807	월송만호 이태근
44		.	1809	.	1809	1809		1809	삼척영장 이재홍
45	XI	.	1811	.	1811	1811		1811	월송만호 추정
46		.	1813	.	1813	1813		1813	삼척영장 추정
		1815		1815	수도정지 대년차거행
47		1817		1817	월송만호 추정
48		.	1819	.	1819	1819		1819	삼척영장 오재신
49		1821		1821	월송만호 추정
50		.	1823	.	1823	1823		1823	삼척영장 추정
51		1825		1825	월송만호 추정
52		1827		1827	삼척영장 하시명
53		.	1829	.	1829	1829		1829	월송만호
		1830	
54	.	.	1831	.	1831	1831		1831	삼척영장 이경정
55	XII	1833		1833	월송만호 추정
56		1835		1835	삼척영장 추정
57		1837		1837	월송만호 추정
58		1839		1839	삼척영장 추정
59	.	.	1841	1841	1841	1841		1841	월송만호 오인현
60	XIII	.	1843	.	1843	1843		1843	삼척영장
61	.	.	1845	.	1845	1845		1845	월송만호
62	.	1847	1847	.	1847	1847		1847	삼척영장 정재천

최대 차수	쟁점 시기	김호동 2007	배재홍 2011	손승철 2011	심현용 2013	백인기 2013	이원택 2014	본 논문	비고 ^{주)}
63	XIV	1849	.	1849	월송만호 이규상
64		1851	.	1851	삼척영장 추정
65		1853	1853	1853	월송만호 석충선
66		1855	1855	1855	삼척영장 이원명
67		1857	1857	1857	월송만호 지희상
68		.	1859	.	1859	1859	.	1859	삼척영장 강재의
69		1861	.	1861	(월송만호??)
70		1963	.	1963	(민란, 수토정지??)
71		1865	.	1865	(삼척영장??)
			.	.	.	1866	.	.	.
72	1867	1867	1867	월송만호 장원익
	XV	.	.	.	1868
73		1869	.	1869	삼척영장
74		1871	.	1871	월송만호 추정
		1873	1873	1873	삼척수토 월송만호
75		1875	.	1875	월송만호 추정
76		1877	.	1877	삼척영장 추정
77		1879	1879	1879	월송만호
78		.	1881	.	1881	1881	.	1881	삼척영장 추정
	XVI	.	.	1882	.	.	.	1882	이규원 검찰
79		1883	.	1883	월송만호 안영식
		.	.	1884
		1885	.	1885	평해군수 심의완
80		1887	.	1887	평해군수 박태원 수토
		.	.	.	1888	.	1888	.	월송만호 서경수 검찰
81		1889	1889	1889	월송만호 서경수 수토
		1890	.	월송만호 율령도 검찰
82		1891	1891	1891	월송만호 이종인 수토
83		1892	.	월송만호 수토 율령도검찰사의 윤시병 검찰
84	1893	1893	1893	평해군수 조종성 수토	

최대 차수	쟁점 시기	김호동 2007	배재홍 2011	손승철 2011	심현용 2013	백인기 2013	이원택 2014	본 논문	비고 ^{주)}
						1894		1894	수토제도 폐지

주) 수토차례와 수토관

- 자료가 있으나 성명이 미상인 경우 : '삼척영장', 또는 '월송만호'
- 다른 자료로부터 확실하게 추정 가능한 경우 : '삼척영장 추정', 또는 '월송만호 추정'
- 수토연도가 미상인 경우 : (월송만호 추정), 또는 (삼척영장 추정)
- 수토연도와 수토관 모두 미상인 경우 (월송만호??), (삼척영장??),

3.3.1 쟁점시기 I (1694~1699): 울릉도 수토제도 정식화(定式化)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²⁸⁾에서 1699년 월송만호 전회 일²⁹⁾의 수토까지의 시기이다. 당초 1694년 2, 3년마다 울릉도를 수토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구체화되고 실행되기까지 1696년 안용복의 도일 송사와 1697년 일본이 왜인들의 죽도(竹島, 울릉도) 왕래를 금지시킨 것을 통보한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정례적인 울릉도 수토를 논의하고 수토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던 시기이다.

일본이 울릉도와 죽도에 왜인의 왕래를 금지한 사실은 다음 해인 1697년 2월 14일에 관왜(館倭)가 동래부사에게 말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³⁰⁾ 이에 따라 4월 13일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울릉도에 간간히 사람을 들여보내 순검(巡檢)해야 한다고 하자 숙종이 간이년(間二年) 입송(入送)하라고 하였다.³¹⁾

28) 『숙종실록』 숙종 20년(1694) 8월 14일; 장한상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 박세당, 「울릉도」, 『서계잡록(西溪雜錄)』; 8월 14일 실록에 실린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시기는 9월 갑신(甲申, 19일)부터 10월 경자(庚子, 6일)까지이다. 즉 이후의 기록의 이전의 날짜에 수록된 것이다.

29) 『숙종실록』 숙종 25년(1699) 7월 15일.

30)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 2월 14일.

31) 『숙종실록』, 숙종 23년(1697) 4월 13일.

3.3.2 쟁점시기 II(1702~1711): 3년간의 수토정지

1702년 삼척영장 이준명(李浚明) 수토³²⁾, 1705년 (월송만호 수토) 울릉도에서 귀환 중에 평해군관 오흥량(吳興良) 등 익사³³⁾, 1709년 수토정지 기록³⁴⁾과 1711년 삼척영장 박석창(朴錫昌) 수토³⁵⁾에서 1708년, 1709년, 1710년 3년 동안 수토가 정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3 쟁점시기 III(1711~1735): 각석문, 검명(劍銘), 수토기(搜討記), 문집으로 밝혀진 시기

1711년 삼척영장 수토, 1719년 수토 관련 기록과 1734년 수토정지 기록 사이사이 누락된 부분을 메워줄 기록들이 발굴되었다.

1711년 박석창 수토 이후 24년 동안 사서(史書)에 나온 기록은 숙종실록의 1717년, 1718년 수토정지 기록³⁶⁾이 있고, 승정원일기의 1719년 울릉도 수토 기록³⁷⁾, 1927년 삼척영장 이만협의 수토기록(“雍正五年丁未搜討記”),³⁸⁾ 승정원일기의 1734년 수토정지 기록³⁹⁾이 있고, 1735년 삼척영장 구역의 각석문(도동항)⁴⁰⁾이 있다.

이 시기 누락된 수토를 추정하면 1724년 수토와 1731년 수토가 있다.

“의령남씨단검명(宜寧南氏短劍銘)”으로부터 1714년 월송만호 남중하(南重河) 수토기록을 발굴하면서 1711년 삼척영장 박석창, 1714년 월송만

32) 『숙종실록』, 숙종 28년(1702) 5월 28일.

33) 『숙종실록』, 숙종 31년(1705) 6월 13일.

34) 『승정원일기』, 숙종 35년(1709) 3월 9일.

35) 「신묘명각석문(辛卯銘刻石文)」(Op. cit., 이흥직);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 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78-101쪽.

36) 『숙종실록』, 숙종 43년(1717) 3월 17일; 『숙종실록』, 숙종 44년(1718) 2월 30일

37) 『승정원일기』, 숙종 45년(1719) 5월 26일. “讀江原監司李箕翊狀達。鬱陵島形止搜討事。達下”

38) Op. cit., 황상기.

39)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1월 14일.

40) Op. cit., 이흥직, 264쪽.

호 남중하, 1717년, 1718년 수토정지, 1719년 삼척영장 수토, 1727년 삼척영장 이만협까지의 3년 주기 수토기록이 만들어진다.

1719년 다음 3년 후는 1722년이고, 1727년 이전 3년 전은 1724년이다. 1719년에는 윤희수토에 따라 삼척영장의 수토가 있었고, 1722년 또는 1724년에 월송만호의 수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문집의 기록에 1724년에 쓰여진 시 중에 울릉도와 관련된 시가 2편 있어서⁴¹⁾ 아마도 1724년에 수토가 시행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1727년 다음의 수토는 1734년 수토정지가 있었고, 1735년 삼척영장의 수토가 있었기 때문에 1730년 또는 1731년 월송만호의 수토가 예상된다. 1734년 수토정지와 1735년 울릉도 수토정지 요청에 대한 울릉도 수토를 결정한 자료⁴²⁾에서 추정하면 1731년에 월송만호가 수토했을 가능성이 크다.

3.3.4 쟁점시기 IV(1735~1745): 10년의 자료 공백과 2년 간격 수토 가능성

1735년 삼척영장 구역(具億)의 각석문, 1745년 월송만호 박후기(朴厚基) 입거지사(入去之事)⁴³⁾를 통해서만 이 시기의 울릉도 수토를 검토할 수 있다.

수토가 시행됐을 가능성은 ① 10년 공백, ② 중간에 1번 수토(윤희수토 상 불가능), ③ 2번 수토(3년 주기)(1738년(월송) 1741년(삼척) 또는 1739년(월송), 1742년(삼척)), ④ 3번의 수토(윤희수토 상 불가능) ⑤ 4번의 수토(2년 주기)(1737년 월송, 1739년 삼척, 1741년 월송, 1743년 삼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1735년 울릉도 수토를 2년 연속 정지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41) 이광정(李光庭), 1724, “울릉도(鬱陵島)”, 『訥隱先生文集』 卷之一, 詩.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73A_0010_030_0510_2004_A187_XML (2020.10.28. 검색); 강박(姜穰), 1724, “노통(蘆筒)”, 『국포집(菊圃集)』, 권3.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1016A_0040_010_0410_2012_B070_XML (2020.10.28. 검색)

42) 『영조실록』, 영조 11년(1735) 1월 17일;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1월 17일; 『비변사등록』, 영조 11년(1735) 1월 19일.

43) Op. cit., 『승정원일기』, 영조 22년(1746) 4월 24일; 『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6월 4일.

영조가 강하게 울릉도 수토를 시행하라고 하면서 3년 간격의 수토가 2년 간격의 수토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745년 이후의 수토기록들이 2년 간격의 수토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3.3.5 쟁점시기 V(1745~1751): 6년의 공백과 2년 간격 수토의 증거들

1745년 월송만호 박후기 수토와 1751년 삼척영장 심의희(沈義希) 수토⁴⁴⁾가 있었다. 박후기의 수토와 심의희의 수토는 해당 수토에 대한 정식기록이 아니라 다른 논의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관련 사실이 발굴되기 전에는 수토 여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시기였다.

6년 사이에 울릉도 수토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1745년 월송만호 수토와 1751년 삼척영장 수토 사이의 기간에도 1747년 삼척영장 수토, 1749년 월송만호 수토 등 두 번의 수토가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1746년⁴⁵⁾에 이어서 1748년에 영조가 근자(近者) 울릉도 수토 사실에 대해 하문(下問)하자 영의정 김취로(金取魯)가 그렇다고 답하자, 영조가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을 책으로 만들어 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다.⁴⁶⁾

3.3.6 쟁점시기 VI(1751~1765) : 2년 주기 정착시기

1751년 삼척영장 심의희(沈義希), 1760년 삼척영장 수토예정⁴⁷⁾, 1764년 수토정지⁴⁸⁾, 1765년 삼척영장 조한기 수토⁴⁹⁾가 있었다.

44)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0월 15일; 심의희(沈義希)는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 26년(1750) 8월 10일 삼척영장에 임용되었고, 후임 삼척영장은 영조 27년(1751) 7월 3일에 임명되었는데, 심의희가 1769년 영조의 물음에 답하면서 4월에 울릉도를 수토하였음을 밝혔기 때문에 1751년 삼척영장의 수토 사실이 드러난 경우이다.

45) Op. cit., 『승정원일기』, 영조 22년(1746) 4월 24일.

46) Op. cit., 『승정원일기』, 영조 24년(1748) 1월 10일.

47)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4월 10일.

48) 『승정원일기』, 영조 40년(1764) 1월 16일; 『비변사등록』, 영조 40년(1764) 1월 18일.

49) 조한기, “울릉도수토기(鬱陵島搜討記)”, 『와유록(臥遊錄)(古4790-48)』 제4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60년 4월 4일 삼척영장 이유천(李惟天)이 파직 장계를 올린 것에 대해 의금부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보고하고⁵⁰⁾, 4월 7일에는 하천 준설(濬川)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논공(論功)으로 유첩(柳焯(火+集)을 삼척영장에 임명하였으며⁵¹⁾, 4월 10일에는 삼척영장 이유천이 울릉도 수토를 피하고자 파직을 청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760년 삼척영장 수토, 1764년 삼척영장 수토 차례로부터 1762년 월송만호의 수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51년부터 1760년까지 3년 주기 수토를 하는 경우 1754년 월송만호, 1757년 삼척영장, 1760년 삼척영장의 순서가 되어 윤희수토에 어긋난다. 따라서 2년 주기 수토의 가능성이 크다.

1751년 삼척영장 수토, 1753(또는 1754)년 월송, 1755(또는 1756)년 삼척, 1757(또는 1758)년 월송, 1760년 삼척영장 수토로 추정한다면 이 1751년에서 1760년 사이에 1번의 수토정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1756년 11월에 영동(嶺東)의 흉년에 대한 진휼을 논의하고 있어서⁵²⁾, 1757년 예정된 울릉도 수토가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764년 삼척영장의 수토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기에 수토정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7 쟁점시기 VII(1765~1770): 1769년 수토정지시 삼척영장의 울릉도잠재

1765년 삼척영장 조한기, 1769년 삼척영장 홍우보(洪雨輔) 수토차례에 수토정지⁵³⁾, 1770년 삼척영장 김숙(金壽)이 수토⁵⁴⁾하였다.

이를 통해 1767년 월송만호가 수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0)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4월 4일.

51)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4월 7일.

52) 『승정원일기』, 영조 32년(1756) 11월 27일.

53)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월 4일; 『영조실록』, 영조 45년(1769) 1월 4일자 번역문에는 울릉도 수토와 권무도시(勸武都試)를 설행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춘조는 정지하고, 삼진의 권무도시는 설행하며, 울릉도 수토는 정지하라고 하였다.

54)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윤5월 5일.

1769년에는 울릉도 수토가 정지되었는데, 삼척영장 홍우보는 사람을 모집하여 몰래 울릉도에 배를 보내 수십 근의 산삼을 캐 와서 팔다가 적발되어 파직되고, 강원감사 홍명한(洪名漢)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⁵⁵⁾

3.3.8 쟁점시기 VIII(1770~1776) : 충실한 간년 수토 자료

1770 삼척영장 김숙(金壽), 1772 월송만호 배찬봉(裴贊奉)⁵⁶⁾, 1776년 월송만호 수토⁵⁷⁾에서 1774년 삼척영장의 수토를 추정할 수 있다.

1776년은 3월 5일 영조가 승하하고 3월 10일 정조가 즉위한 해이며, 5월 울릉도 수토 보고 내용이 장황해서 정책(警策)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부터 월송만호의 수토사실이 확인된다.

3.3.9 쟁점시기 IX(1776~1800) : 정조대의 수토

1776년 월송만호 수토, 1778년 수토정지⁵⁸⁾, 1779 삼척영장 수토(1778년 12월 수토거행 결정⁵⁹⁾), 1783년 삼척영장 수토⁶⁰⁾, 1785년 수토정지⁶¹⁾, 1786년 월송만호 김창윤(金昌胤) 수토⁶²⁾, 1787년 삼척 별정교줄 적간⁶³⁾, 1790년 월송만호 남종희(南宗禧) 수토⁶⁴⁾, 1794년 월송만호 한창국(韓昌國) 수토⁶⁵⁾, 1795년 삼척영장 이동헌(李東憲) 수토⁶⁶⁾, 1797년 삼척영장 이흥덕

55)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2월 9일; 『영조실록』, 영조 46년(1769) 12월 9일.

56) 『승정원일기』, 영조 48년(1772) 5월 6일.

57) 『승정원일기』, 정조 즉위년(1776) 5월 22일.

58)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1월 10일; 『일성록』, 정조 2년(1778) 1월 10일.

59) 『승정원일기』, 정조 2년(1778) 12월 20일; 『일성록』, 정조 2년(1778) 12월 20일.

60)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1월 10일.

61) Ibid.

62) 『일성록』, 정조 10년(1786) 6월 4일.

63) 『일성록』, 정조 11년(1787) 7월 25일.

64) 『일성록』, 정조 14년(1790) 10월 10일.

65)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6월 3일.

66) 『승정원일기』, 정조 19년(1795) 6월 24일.

(李鴻德) 수토⁶⁷⁾, 1799년 월송만호 노인소(盧仁素) 수토⁶⁸⁾ 기록이 있다.

1783년 수토는 1785년 수토정지를 논의하면서 재작년에 이미 수토가 있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781년은 월송만호의 수토는 1779년과 1783년 삼척영장의 수토에서 추정할 수 있다. 1786년과 1790년 월송만호 수토로부터 1788년 삼척영장의 수토를 추정할 수 있다. 1790년 월송만호 수토와 1794년 월송만호 수토에서 1792년 삼척영장 수토를 추정할 수 있다.

1787년 양력 5월에는 라페루즈 탐험대가 우리나라를 조사하고, 울릉도를 Dagelet로 명명하였으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인 두 집단을 기록하였다.⁶⁹⁾ 1787년에는 울산 해척이 울릉도에서 잠채(潛槩)하다 적발되어 교졸(校卒)을 보내 적간(摘奸)하였고, 다음해인 1788년에 삼척영장이 울릉도를 수토하였다. 또 배재홍의 연구에도 『항길고택일기』 기록에 1787년 삼척 강릉이 단독으로 울릉도를 수토하였는데 8월 11일 출발하여 8월 16일에 돌아왔는데 특이한 일이라 기록하였다.⁷⁰⁾

정조 때에는 울릉도 수토가 2년 간격으로 꾸준히 거행되었으며, 1795년 울릉도 산삼 채취를 위하여 1년 만에 삼척영장 이동현에게 울릉도를 수토하도록 했고, 다음 수토차례인 1797년에도 울릉도 산삼 채취를 위해 월송만호가 아닌 삼척영장 이흥덕이 수토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월송만호 김창윤과 한창국의 수토보고는 매우 상세하여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한편 정조 때에는 울릉도에 대한 지식이 급격히 팽창하고 울릉도는 조선의 보물섬이 되어 사대부들이 울릉도 복숭아를 이야기하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삼척부사에게 쓴 편지⁷¹⁾에 울릉도 죽순

67) 『일성록』, 정조 21년(1797) 7월 18일; 『비변사등록』, 정조 21년(1797) 7월 18일.

68) 『일성록』, 정조 23년(1799) 10월 2일.

69)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선인, 48-57쪽.

70) Op. cit., 배재홍,

71) 정약용, “척주도호부사이광도가부쳐 온 시에 화답하여 부치대(和寄陟州都護李廣度見寄之作)”, 『다산시문집』 제6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

(竹筍)을 실컷 먹을 것이라고 하는 등 울릉도 인식이 확대된 시기이다.

3.3.10 쟁점시기 X(1801~1809) : 울릉도 잠선(潛船) 기록이 가장 상세한 시기

1801년 삼척영장 김취환(金取煥) 수토(태하리 각석문, 항길고택일기)⁷², 1803년 월송만호 박수빈(朴守彬) 수토⁷³, 1805년 삼척영장 이보국(李輔國) 수토(태하리 각석문), 1807년 월송만호 이태근(李泰根) 수토⁷⁴, 1809년 삼척영장 이재홍(李載弘) 수토(『항길고택일기』)⁷⁵

1803년 월송만호 박수빈의 보고와 1807년 월송만호 이태근의 보고에는 전라도 순천, 흥양, 장흥 등의 상선이 울릉도에 왔다가 적발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1882년 울릉도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의 검찰일기(檢察日記) 내용과 비교할 수 있다. 울릉도 서면 태하리 각석문은 고심충성씨가 서명한 사진과 함께 분석한 내용이 큰 참고가 되었다.⁷⁶

3.3.11 쟁점시기 XI(1811~1831) : 『항길고택일기』로 밝혀진 수토①

1811년 월송만호 수토(『항길고택일기』)⁷⁷, 1813년 삼척영장 수토(『항길고택일기』)⁷⁸, 1815년 수토정지⁷⁹, 1819년 삼척영장 오재신(吳在臣) 수토(『항길고택일기』)⁸⁰, 1823년 삼척영장 수토(『항길고택일기』)⁸¹, 1825년 월송

r.kr/inLink?DCI=ITKC_BT_1260A_0060_010_1170_2000_003_XML (2020. 12. 15. 검색)

72) 울릉군지편찬위원회, 2007, 『울릉군지』, 1042쪽, 배재홍, Op. cit., 117쪽.

73) 『일성록』, 순조 3년(1803) 5월 22일.

74) 『일성록』, 순조 7년(1807) 5월 12일.

75) Op. cit., 118쪽.

76) 심충성, 2017, “울릉군 서면 태하리 바위글씨 ‘영장 김취환(營將 金取煥)’”. 다음 블로그, 달밭골, 울릉문화재, <http://blog.daum.net/simdak1993/3103116> (2020.10.28. 검색)

77) Ibid.

78) Ibid.

79) 『일성록』, 순조 15년(1815) 1월 13일.

80) Op. cit., 배재홍, 126쪽; 『승정원일기』, 순조 19년(1819) 7월 18일; 『일성록』, 순조 19년(1819) 7월 18일.

81) Op. cit., 배재홍, 118쪽.

만호 수토(『항길고택일기』⁸²), 1827년 삼척영장 하시명(河始明) 수토⁸³, 1829년 월송만호 수토(『항길고택일기』⁸⁴), 1831년 삼척영장이경정(李慶鼎) 수토(태하리 각석문)⁸⁵).

1813년 삼척영장, 1815년 수토정지, 1819년 삼척영장 수토로부터 1817년 월송만호 수토를 추정할 수 있고, 이같은 방식으로 1821년 월송만호 수토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827년 삼척영장 하시명의 수토와 1831년 삼척영장 이경정의 수토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토는 오로지 배재홍 교수(2014)가 발굴한 『항길고택일기』⁸⁶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수토 기록이다.

3.3.12 쟁점시기 XII(1831~1841) : 일상화된 수토와 수토기록 누락

1831년 삼척영장 이경정(李慶鼎)이 수토와 1841년 월송만호 오인현(吳仁顯)의 수토⁸⁷ 사이에 수토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2년 윤희수토를 통해 이를 복원하면, 1831년 삼척영장 이경정(李慶鼎) 수토로부터 ① 1833년 월송만호 수토 추정, ② 1835년 삼척영장 수토 추정, ③ 1837년 월송만호 수토 추정, ④ 1839년 삼척영장 수토 추정, 그리고 1841년 월송만호 오인현(吳仁顯) 수토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따라서 일상화된 울릉도 수토로 2년마다 삼척영장과 월송만호의 윤희수토가 지속되었지만, 수토기록을 찾지 못하여 마치 수토가 없었던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시기이다.

82) Ibid. 139쪽.

83) 『일성록』, 순조 27년(1827) 5월 19일.

84) Op. cit., 배재홍, 118쪽.

85) Op. cit., 김원룡, 65쪽.

86) Ibid., 113-148쪽.

87) 『비변사등록』, 현종 7년(1841) 6월 10일; 『일성록』, 현종 7년(1841) 6월 10일.

3.3.13 쟁점시기 XIII(1841~1847): 『항길고택일기』로 밝혀진 수토②

1841년 월송만호 오인현 수토, 1843년 삼척영장 수토(『항길고택일기』⁸⁸), 1845년 월송만호 수토(『항길고택일기』⁸⁹), 1847년 삼척영장 정재천(鄭在天) 수토(태하리 각석문, 망실)⁹⁰

3.3.14 쟁점시기 XIV(1847~1859): 수토 첩정(牒呈) 속에서 발굴한 수토 기록

1847년 삼척영장 정재천 수토, 1849년 월송만호 이규상(李圭祥) 수토⁹¹), 1853년 월송만호 석충선(石忠先) 수토(이원택(2014) 발굴 기록 속의 각석문 기록 수토관), 1855년 삼척영장 이원명(李原明) 수토(이원택(2014) 발굴 기록 속의 각석문 기록 수토관), 1857년 월송만호 지희상(池熙祥) 수토⁹²), 1859년 삼척영장 강재의(姜在毅) 수토(『항길고택일기』⁹³) 기록이 있다.

월송만호 석충선, 삼척영장 이원명이 울릉도를 수토한 사실은 월송만호 지희상의 수토첩정 속에 태하리 바위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택(2014)과 배재홍(2011)의 발굴을 통해 이 시기의 수토기록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들 기록으로부터 1851년 삼척영장 수토를 확인 할 수 있다.

3.3.15 쟁점시기 XV(1859~1867) : 진주민란의 여파(?)

1859년 삼척영장 수토와 1867년 월송만호 수토 사이에 1861년, 1863년, 1865년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록이 없다.

1859년 삼척영장 강재의(姜在毅)의 수토로부터 간년 윤희수토의 원칙을 적용하면, 1861년 월송만호, 1863년 삼척영장, 1865년 월송만호, 1867년

88) Op. cit., 118쪽.

89) Ibid.

90) Op. cit., 김원룡; Op. cit., 김호동, 115-118쪽.

91) 『일성록』, 헌종 15년(1849) 5월 4일.

92) Op. cit., 이원택, 2014, 188-190쪽.

93) Op. cit., 배재홍, 127-128쪽.

삼척영장의 순서가 되어서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다. 1867년에는 월송만호 장원익(張源翼)이 수토⁹⁴⁾하였기 때문에 윤희수토의 원칙이 맞으려면 한번의 수토가 정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진주민란으로 대표되는 임술민란(1862년)의 여파로 1863년 울릉도 수토가 정지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1861년 월송만호, 1863년 수토정지, 1865년 삼척영장, 1867년 월송만호 장원익(張源翼)의 순서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16 쟁점시기 XV(1867~1881): 대풍헌과 강원도관초

이 시기는 대풍헌 자료와 강원도관초에서 1867년 월송만호 장원익의 수토와 1881년 울릉도 수토를 통해서 울릉도 수토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이다.

1867년 월송만호 장원익(張源翼)의 수토는 대풍헌 현판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대풍헌을 발굴한 심현용이 장원익의 수토시기를 1866년 및 1868년으로 추정한 바가 있지만⁹⁵⁾, 이원택(2014)이 강원도관초 연구를 통해서 그 시기를 1867년으로 확인한 바 있다.

1869년 삼척영장의 수토가 추정된다. 이는 역시 대풍헌 현판의 하나인 가칭 “영찰 황공지해 몰세불망지판(營察黃公之海沒世不忘之板)”의 내용 중 삼척진영의 영찰(營察) 황지해(黃之海)가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에서 추정하였다.

1873년 삼척영장 수토 차례에 삼척영장이 수토 직전 병을 얻어 월송만호가 삼척영장 수토를 대신하였다.⁹⁶⁾ 이로부터 1871년 월송만호 수토와 1875년 월송만호 수토를 추정할 수 있다. 즉, 1767년 월송만호 장원익, 1769년

94) Op. cit., 이원택, 192쪽.

95) Op. cit., 심현용, 2013, 178-179쪽.

96) Op. cit., 이원택, 192-193쪽, 『각사등록』, 고종 10년(1873) 5월 29일. 한국고전번역원, 각사등록, 통제영계록,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53A_0670_040_0460_2016_052_XML (2020.10.28. 검색)

삼척영장(추정), 1771년 월송만호(추정), 1773년 삼척(월송만호), 1775년 월송만호(추정)의 수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79년에는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의 금강산유람 때 쓴 시(詩)에 “망견 수토선 자율릉도 회항(望見搜討船自鬱陵島回港)”⁹⁷⁾이 있는데, 이 시가 망양정(望洋亭)과 소공대(召公臺) 사이에 쓰여 있어서 망양정이나 소공대에서 울릉도 수토선(搜討船)이 돌아오는 것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월송만호가 수토하고 월송진(越松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일본의 울릉도 침탈사에 대한 박병섭의 연구에 보면 1879년에 에노모토 다카시(榎本武揚) 무리가 울릉도에 왔다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1880년에 울릉도에 올 때는 일본 군함을 타고 울릉도 왔다고 했는데⁹⁸⁾, 이는 1879년 울릉도 수토의 여파로 생각한다.

이로부터 1877년 삼척영장의 수토와 1881년 삼척영장의 수토를 추정할 수 있다.

3.3.17 쟁점시기 XVI(1881~1894)

1881년 울릉도 수토관(삼척영장 추정)이 울릉도에 불법침입 한 일본인들을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일본 외무성에 서계를 보내 항의하고,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정하여 울릉도를 검찰하게 한다.⁹⁹⁾

1882년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하였는데¹⁰⁰⁾, 다시 일본인들을 적발하였

97) 이진상(李震相), “望見搜討船自鬱陵島回港”, 『한주선생문집(寒洲先生文集)』 제2권.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640A_0020_010_1030_2009_A317_X ML (2020.10.28. 검색)

98)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3-96쪽, 235-238.

99) 『고종실록』, 고종 18년(1881) 5월 22일.

100)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6월 5일; 이선근, 1964,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이 규원의 탐험성과”, 『대동문화연구』 1, 295-335쪽; 이혜은, 이형근, 2006,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 재차 항의¹⁰¹⁾를 받은 일본 외무성은 1883년 외무성 관리와 선박을 보내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을 소환해간다.¹⁰²⁾

1883년에는 울릉도개척을 시작하였고¹⁰³⁾, 월송만호 안영식(安永植)은 울릉도 개척과 울릉도 수토¹⁰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1885년에는 평해군수겸울릉도첨사 심의완(沈宜琬)이 수토하였다.¹⁰⁵⁾

1887년에는 평해군수 박태원(朴泰遠)이 수토하였다.¹⁰⁶⁾

1888년에는 월송만호겸울릉도도장 서경수(徐敬秀)가 검찰(檢察)하였다.¹⁰⁷⁾

1889년에는 송만호겸울릉도도장 서경수(徐敬秀)가 수토(搜討)하였다.¹⁰⁸⁾

1891년에는 월송만호겸울릉도도장 이종인(李種仁)이 수토하였다.¹⁰⁹⁾

1892년에는 월송만호겸울릉도도장 박지영(朴之榮)이 수토하였다.¹¹⁰⁾

1893년에는 평해군수 조종성(趙鐘成)이 구례(舊例)에 따라 울릉도를 수토하였다.¹¹¹⁾

101)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7월 10일.

102) 박지영, 2018, 『독도관계 일본고문서 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103) 『강원감영관첩』, 고종 20년(1883) 4월 3일; 강원도관찰사 남정익(南廷益), 1883년 4월, 『강원도 울릉도 신입민호인구성명년세금전도기간수효성책(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冊)』; 강원도관찰사 남정익(南廷益), 1883년 4월, 『광서구년사월일울릉도개척시선격량미잡물용입가량성책(光緒九年四月日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104) 『강원감영관첩』, 고종 20년(1883) 12월 29일.

105) 『일성록』, 고종 22년(1885) 3월 26일; 울릉군, 1989, 「광암(光岩) 각석문」, 『울릉군지』, 490쪽.

106) “東伯狀啓”, 『한성주보』 제54호, 1887년 7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 “동백장계(東伯狀啓)”, ‘초록내용/해제내용’ 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NTS-00093232551&topF1=title_author&kwd=&dan=&yon=&disabled=&media=&web=&map=&music=&etc=null&archive=&cip=&kolisNet=&korcis=#none (2020.10.28. 검색); 이원택, 2019,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5, 121-124쪽.

107) 『강원도관초』, 고종 25년(1888) 7월 10일.

108) 『강원도관초』, 고종 26년(1889) 7월 17일; 7월 26일.

109) 『강원도관초』, 고종 28년(1891) 8월 16일.

110) “동영보(東營報)”, 『강원도관초』, 고종 29년(1892) 7월 14일.

111) 『강원도관초』, 고종 30년(1893) 9월 20일.

1894년 12월 27일(양력 1895년 1월 22일) 울릉도 수토제도를 폐지하였다.¹¹²⁾

4. 울릉도 특산물과 울릉도 인식

지난 10여 년간 발굴된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울릉도가 가깝게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규칙적인 울릉도 수토를 통해서 조선 사람들의 삶 속에 울릉도가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산 정약용은 1801년 경상도 장기(長鬐) 유배 시에 울릉도에서 배 한 가득 대나무를 싣고 오는 것을 보았고,¹¹³⁾ 전라도 강진에서는 어민들이 큰 홍합을 먹고 싶으면 울릉도에 간다고 하였으며,¹¹⁴⁾ 삼척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울릉도 수토선이 돌아오면 죽순을 싣것 먹을 것이라고 하였다.¹¹⁵⁾

장한상(張漢相)이 울릉도에서 가져온 대나무(鬱陵島蘆筍)로 어진(御眞) 3개 정도가 들어가는 흑장통(黑長筒)을 만들었는데, 영조 때에는 새로 어진을 만들어야 해서 흑장통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¹¹⁶⁾

112) 『고종실록』, 고종 31년(1894) 12월 27일.

113) 정약용, 1801, “기성잡시(鬐城雜詩) 27수”, 『다산시문집』 제4권.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60A_0040_010_0230_2000_002_XML (2020.11.25. 검색)

114) 정약용, “탐진어가(耽津漁歌)”, 『다산시문집』 제4권.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60A_0040_010_0960_2000_002_XML (2020.11.25. 검색)

115) 정약용, “척주 도호부사 이광도가 부쳐 온 시에 화답하여 부치다[和寄陟州都護李廣度 見寄之作]”, 『다산시문집』 제6권.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60A_0060_010_1170_2000_003_XML (2020.11.25. 검색)

116)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1월 17일 진시(辰時).

한편, 세종실록에 기록된 큰 대나무와 함께 큰 복숭아가 있었는데, 울릉도 복숭아를 서울에 심었더니 그 크기가 많이 크지 않았다고 하였다(『오주연문장전산고』). 가장 주목을 끌만 한 사건은 정조 때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원인이 된 신진학자들의 글 중에 김려(金鑣)의 “울도(鬱桃)”라는 시를 보면, 안암동 복숭아, 나주 복숭아, 장성 복숭아, 장호원 복숭아 등 복숭아의 크기 순서로 언급한 후 울릉도 복숭아가 가장 크다고 묘사하고 있다.¹¹⁷⁾ 무엇보다 이 시집의 다른 제목과 비교하면 다들 과일의 보통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숭아만 유독 울릉도 복숭아라는 이름을 쓰고, 시에 주를 달아서 울도(鬱桃)는 울릉도 복숭아(鬱陵桃)이며 아주 크다고 부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¹¹⁸⁾

울릉도에 상선(商船)과 어선(漁船)들이 드나들면서 울릉도 나무로 배를 만들고, 미역을 따고, 전복을 채취하던 전라도 순천 지역(순천, 낙안, 홍양 등)에서 온 배들을 울릉도 수토관이 적발하여 지방관도 함께 처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수토 때에 다시 똑같은 지역의 배들이 계속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이러한 상태는 18세기 말부터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할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영조 후반에는 울릉도의 향나무, 대나무, 가지어피(可支魚皮) 등뿐만 아니라 울릉도 산삼(山蔘)이 주목을 받으면서 1769년 삼척영장 홍우보(洪雨輔)가 수토를 정지했음에도 사사로이 울릉도에 배를 들여보내 산삼을 캐와서 팔다가 발각되어 조정에서 친척인 강원감사 홍명한(洪名漢)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울릉도가 더 이상 수토 기피지역이 아니라 수토 선호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 수토관들에게 울릉도 수토는 조정에 큰 공을 세우는 일로써 영전(榮轉)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길 기회가 된 것이다.

117) 김려(金鑣), “鬱桃”, 『담정유고(潭庭遺藁)』 4권, 만선와잉고(萬蟬窩臆藁); 김려 지음, 오희복 옮김, 2006,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118) Ibid. “鬱桃鬱陵桃。桃之佳者。漢上苑。有紫文金城諸種”

조선 후기 울릉도는 단순히 수토하는 곳이 아닌 왕실과 서민들에게 중요 한 특산물을 제공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울릉도 특산물과 관련하여 첫째,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 중에서 과장된 듯 보이는 내용이 실제로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조선 후기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둘째, 울릉도 특산물이 왕실과 사대부 및 서민들에게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대나무, 복숭아, 잠선(潛船)의 채취 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울릉도 특산물로 본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의 정확성

울릉도 특산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둘러싼 심각한 학술적인 논의가 없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대한 설명은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¹¹⁹⁾ 그 내용 중에 대나무, 복숭아, 쥐를 언급한 부분은 과장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오늘날 울릉도에 왕대가 있고, 복사 나무도 있고, 쥐도 있지만, 사료에 전하는 큰 대나무, 큰 복숭아, 큰 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에는 이전 기록들의 큰 쥐와 큰 고양이에 대한 것을 의식해서인지 울릉도의 산물에서 고양이와 쥐를 특별히 “보통 고양이(常貓), 보통 쥐(常鼠)”로 기술하였다.¹²⁰⁾ 그러나 『울릉도검찰일기』에 포함된 「계초본」에서는 울릉도 산물로 “고양이, 쥐(猫鼠)”로 기술하였다.¹²¹⁾

1924년 도리이류조(鳥居龍藏)도 “인류고고학 상에서 본 울릉도”에서 큰 고양이와 큰 쥐가 없다고 하였다.¹²²⁾ 또 이마무라 도모(今村鞞)의 『역사민

119)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강원도 울진현(蔚珍縣). “

120) Op. cit., 이해은, 이형근, 153쪽.

121) Ibid. 199쪽.

122) 도리이류조(鳥居龍藏), 2007, “인류고고학 상에서 본 울릉도”(번역), 『독도연구』 제3호, 117-118쪽.

속 조선만담(歷史民俗 朝鮮漫談』(1928) 중 “울릉도기사(鬱陵島紀事)”에서 도 큰 고양이, 큰 쥐, 큰 복숭아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¹²³⁾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사료에 전하는 울릉도 대나무와 복숭아는 매우 컸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큰 쥐와 관련해서, 1769년 10월 15일 영조가 심의희와 문답한 내용에 쥐가 고양이만큼 크다고 하였다.¹²⁴⁾ 또 1882년 『울릉도검찰일기』와는 다르게 1906년 독도와 울릉도를 조사한 오쿠라 헤키운(奧原碧雲)의 기록에는 울릉도 동물로 대서(大鼠)를 기록하고 있다.¹²⁵⁾

동남아시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에는 큰 쥐들이 남아 있고, 일본의 류큐긴꼬리자이언트쥐는 일본 천연기념물 및 절멸위기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즉, 과거 울릉도에는 큰 쥐가 살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보면서 과장되었다고 느낄 수 있었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됨에 따라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의 정확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4.2. 조선 후기 울릉도 특산물 관련 기록

1694년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를 시작으로 1894년 12월(양력 1895년 1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에 의해 들어선 김홍집 내각이 울릉도 수토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시행된 울릉도 수토제도는 다양한 울릉도 특산물을 육지로 가져왔다.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가져온 큰 대나무는 왕의 어진(御眞)을 담은 흑장통(黑長筒)으로 만들어지고, 선비들은 울릉도 대나무(蘆筒)¹²⁶⁾에 시권(詩

123) 이마무라 토모에(今村鞠), 2007, “울릉도 기사”(번역), 『독도연구』 제3호, 165쪽.

124) 『승정원일기』, 영조 45년(1769) 10월 15일.

125) 奧原碧雲, 권오엽 역, 2011, 『죽도 및 울릉도』, 154쪽.

126) 영조 때에 장한상의 울릉도 대나무 자체를 울릉도 노통(蘆筒)이라 기록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년) 9월 2일)

卷)과 문방구를 담아서 시회(詩會)로 가기도 하였다. 울릉도 대나무를 자랑하고자 이에 대한 시를 짓기도 하였다.¹²⁷⁾

고려 인종 때(1141년) 이양실(李陽實)이 울릉도를 조사하고 바쳤다는 이상한 과일(果核)의 씨(木葉)¹²⁸⁾은 뒷박만큰 큰 복숭아씨와 큰 대나무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나 고려 의종 때(1157년) 명주도(溟州道) 감창(監倉) 김유립(金柔立)의 기록에는 복숭아나 대나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¹²⁹⁾ 고려사에 복숭아, 쥐, 산묘(山猫) 등이 아주 컸다는 일제강점기 의 글은¹³⁰⁾ 『고려사』가 아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에도 울릉도 특산 대나무, 복숭아, 쥐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울릉도 수토관(搜討官)은 수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울릉도 특산물을 바쳤다. 이를 수토 봉물(封物)이라 한다. 수토 봉물은 자단향(紫檀香), 대나무[篔竹, 靑竹, 蘆筒], 주토(朱土), 가지어피(可支魚皮),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지도) 등이다.

4.2.1 대나무

울릉도의 특산물 중 하나는 대나무이다. 울릉도 대나무는 큰 대나무[篔竹, 靑竹, 蘆筒]와 해장죽[海藏竹, 烟竹]으로 나눌 수 있다.

울릉도 큰 대나무는 그 크기가 서까래만하다고 알려져 있다. 울릉도 수토관들은 자신들이 울릉도에 다녀왔다는 증거 중의 하나로 이 큰 대나무를 바쳤다.

그렇다면 울릉도 대나무는 실제로 얼마나 컸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27) “貯詩吾得荻爲筒。可但題詩葉剪桐。長吉錦囊還較俗。鬱陵秋色一竿中。(蘆從鬱陵島得)”. 「蘆筒」, 한국고전종합DB, 『菊圃先生集』卷之三.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1016A_0040_010_0410_2012_B070_XML (2020. 10.28. 검색)

128) “溟州道監倉使李陽實遣人入蔚陵島，取菓核木葉異常者，以獻.” 『고려사』, 인종 19년(1141) 7월 3일.

129) 『고려사』, 의종 11년(1157) 5월 12일; 『고려사 지리지』, 동계, 울진현.

130) Op. cit., 도리이류조.

삼척영장 장한상이 1694년 울릉도를 조사하고 가져온 대나무(蘆筒)로 왕의 어진 3개를 담는 흑장통(黑長筒)을 만들 만큼 컸다.¹³¹⁾ 국립고궁박물관의 흑장통은 원형이지만 대나무가 아닌 오동나무로 만든 것이고, 전주의 어진박물관에 있는 흑장통 역시 대나무가 아닌 나무로 만들었는데 직경이 22cm이며, 흑장궤(黑長櫃)는 너비가 18cm이다.¹³²⁾ 따라서 선원전 흑장통으로 쓰인 대나무의 직경은 20c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조 19년(1795) 삼척영장 이동헌이 인삼채취를 위해 울릉도를 다녀온 후 강원감사 장계에서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 어채(漁採)뿐만 아니라 조선(造船), 작죽(斫竹), 채삼(採蔘)한 자취가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강원도와 경상, 전라, 함경 삼도의 연해 상선 중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소행이 분명하며, 울릉도 대나무[筴竹]가 쉽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울릉도 대나무를 찾으면 조선(造船) 채약(採藥)하는 무리를 차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¹³³⁾ 이처럼 울릉도 잠입자를 찾는 수단으로 울릉도 대나무 소지자를 찾을 정도로 울릉도 대나무는 크고 굵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이 1801년 포항 장기(長鬚)로 유배 갔을 때 쓴 기성잡시(鬚城雜詩)에는 울릉도에서 대나무를 배 한가득 싣고 온다고 하였다.¹³⁴⁾ 장기

131) 영조때 선원전(璿源殿)의 어진 4개를 새로 그리면서, 이를 옮길 때 쓰는 가마인 연여(輦輿)도 함께 제작하고, 가마에 들어갈 어진을 담는 통(桶)인 흑장통(黑長桶)에 대해 논의하면서 당시 선원전에 있던 흑장통이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가져온 대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한다.

“上曰, 輦輿, 既以四坐奉安爲定, 則黑長桶, 何以造成耶? 卽今闕內眞殿所在黑長桶, 則乃張漢相所得來鬱陵島蘆筒耳. 移安廳所在黑長桶, 則奉安四坐, 似爲不足耳. ...”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년) 9월 2일)

132) 어진박물관 유물검색. “흑장통”, “흑장궤”. <http://www.eojinmuseum.org> (2019.5.31. 검색). 백인기, 2019, “사라진 울릉도 특산 동식물: 울릉도 대나무, 울릉도 복숭아, 울릉도 쥐를 중심으로”, 『2019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5쪽에서 재인용.

133)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8월 21일 기사. 『2019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5쪽에서 재인용.

134) “구름 바다 사이의 한 조각 외로운 돛 / 一片孤帆雲海間, 울릉도 갔던 배가 이제 막 돌아왔더니 / 藁碇新自鬱陵還, 만나자 험한 파도 어떻던가는 묻지 않고 / 相逢不問風濤

사람들이 울릉도에서 베어온 대나무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1882년 이규원의 『검찰일기』에는 현재 포항시에 해당하는 연일현(延日縣) 사람 2명이 바닷가에서 연죽(烟竹)을 베기 위해 바닷가에 움막을 치고 있었다고 하였다.¹³⁵⁾ 대나무를 베는 사람 2명은 울릉도에서 계속 연죽을 채취하고, 베는 먼저 벤 대나무를 싣고 가서 내린 후에 다시 울릉도로 와서 대나무를 싣고 갈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마치 연일-울릉도 항로를 셔틀처럼 배가 다니는 동안 대나무를 베는 사람 2명이 계속 대나무를 베는 형태로 보인다. 포항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포항과 울릉도 사이에 있는 울릉분지를 둘러싸고 선회하듯 흐르는 해류와 바람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약용이 보았던 때와 이규원이 검찰한 때가 81년의 차이가 있는데, 포항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대나무 벌채를 그 이상으로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산 정약용이 삼척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울릉도에서 배가 오면 죽순을 싣것 먹을 것이라고 한 것¹³⁶⁾을 보면 울릉도 큰 대나무는 또한 맹종죽(孟宗竹) 계통의 대나무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울릉도 대나무는 왕실과 사대부들 사이에 귀한 물건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안의 뱃사람들에게는 큰 대나무와 함께 연죽 또한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險, 가득 실은 대쪽만 보고 웃으면서 기뻐한다 / 荊竹盈船便解顏”. 한국고전종합DB, 다산시문집 제4권. 「기성잡시(鬻城雜詩)».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60A_0040_010_0230_2000_002_XML (2020.10.28. 검색)

135) Op. cit., 이해은. 이형근, 171쪽.

136) “울릉도서 배가 오면 열심히 죽순을 먹을 계고 / 鬱島船歸癡噉筍, 무릉에 봄이 오면 야단스레 꽃구경을 하겠지 / 武陵春入鬧看花”. 「척주 도호부사 이광도가 부쳐 온 시에 화답하여 부치다[和寄陟州都護李 廣度 見寄之作]», 한국고전종합DB, 다산시문집 제6권. 시(詩) 송파수작(松坡酬酢).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60A_0060_010_1170_2000_003_XML (2020.10.28. 검색)

4.3.2 사라진 울릉도 복숭아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원산지로 관리하는 재래종 및 야생종 복숭아는 야생종 1종과 재래종 10종 등이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울릉도 복숭아는 이제 없다.

<표 10> 2015년 우리나라 야생종 및 재래종 복숭아 유전자원

번호	품종	자원구분	보존기관
1	남경도	야생종	전남구례군 농업기술센터
2	보리따래기	재래종	청도복숭아시험장,과수과
3	상도	재래종	청도복숭아시험장,과수과
4	중금도	재래종	청도복숭아시험장,과수과
5	조생혈도	재래종	원예원 과수과
6	올기도	재래종	원예원 과수과
7	갈천백도	재래종	원예원 과수과
8	월등1호	재래종	원예원 과수과
9	홍백도	재래종	원예원 과수과
10	붉은백도	재래종	원예원 과수과
11	복숭아	재래종	경북 봉화약초시험장
12	유월도	재래종	원예원 과수과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2015년 국가등록 영양체 유전자원 목록』

조선 후기 사람들은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복숭아는 서유기의 제천대성 손오공이 먹은 천상의 복숭아, 삼천갑자 동방삭(東方朔)이 먹은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 동해의 도삭산(度索山)에 있다는 상하 가지가 삼천리에 뻗어 있다는 반도(蟠桃) 등은 조선 후기 복숭아 인식에 자주 나타난다.

1850년 전후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울릉도사실변증설(鬱陵島事實辨證說)에는 “『여지승람』에 복숭아

씨가 되만큼 크다(輿地勝覺…桃核大如升)이라 하고 주(註)에 “살펴보니 지금 복숭아 중에 울릉도(鬱陵桃)가 있는데, 씨를 옮겨 심으면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하였다.¹³⁷⁾

1800년대 초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의 “울릉도”에도 “지금 조선의 복숭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울릉도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울릉도 복숭아(鬱陵桃)’라 한다(今朝鮮桃種絕大者° 自是島來° 故名曰鬱陵桃)”고 하였다.¹³⁸⁾

김려(金鑪, 1766-1821)의 『담정유고(潭庭遺藁)』에는 울도(鬱桃)라는 오언고시(五言古詩)에서 주(註)에 울도는 울릉도(鬱陵桃)이고, 복숭아 중에서 아주 큰 것이며, 중국 황실 정원에는 자문(紫文), 금성(金城) 등 여러 품종이 있다고 하였다. 김려는 울릉도 복숭아가 중국 황실 정원의 것보다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의 울릉도 인식을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김려의 “울도(鬱桃)”를 미숙하지만 전문을 번역하여 신는다.¹³⁹⁾

“울릉도 복숭아

팔강의 쏘가리 살이 오르고/ 복사꽃 가지에 활짝 피었네/
 동쪽 성문 밖 심리 길에는/ 맑은 날 붉은 비 쏟아지겠지/
 신흥동 골짜기 서쪽으로는/ 드문드문 과수원 몇 개가 있네/
 안암(安巖)은 금성(金城)의 아래이겠고/ 죽탄(竹灘)은 장가(張家)에 못

137) 이규경, “울릉도사실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經史篇, 經史類, 論史.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grpId=&itemId=GO&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GO_1301A_0190_02_0_0120 (2019.5.31. 검색)

138) 성해응, “울릉도”,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권63, 고적류(古蹟類),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grpId=&itemId=MO&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MO_0594A_1240_010_010 (2019.5.31. 검색)

139) 앞의 참고문헌에 밝힌 오희복의 번역문을 참조.

미치겠지/
 진품의 이름이 자못 많은데/ 울릉도 복숭아가 으뜸이라네/
 주렁주렁 달린 열매 예쁜데/ 꽃가루 꽃부리 수정을 했네/
 햇볕에 탄 듯 연분홍 꽃부리/ 바람에 갈라진 파란 배막지
 천태의 시내에 가득한 향기/ 뿌리는 서려서 흙을 덮었네
 어여쁨은 막을 필요 없는데/ 어찌 일부러 앵무를 막으랴
 신묘하다 신묘해 그 급한 성질/ 오히려 뱃병을 낮게 하누나

鬱桃

八江鰈魚肥° 桃花開滿樹° 靑門十里道° 白日漲紅雨° 神興洞口西° 菓
 林畧可數° 安巖錦城第° 竹灘張家塢° 珍品名頗衆° 蔚陵最爲主° 有黃
 垂嘉實° 精英孕木五° 日烘紅軟嘴° 風坼碧鮮肚° 香鎖天台溪° 根蟠度
 素土° 不必防曼倩° 何煩護鸚鵡° 妙哉急性者° 猶足癩癩蟲°

[鬱桃蔚陵桃° 桃之佳者° 漢上苑° 有紫文金城諸種]

조선의 사대부들이 울릉도 복숭아를 육지에 심기도 하고, 그 크기를
 바탕으로 시를 지을 만큼 울릉도 특산물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3 울릉도 잠선(潛船) 관련 기록

왕실과 사대부뿐만 아니라 조선 연안의 백성들도 울릉도 특산물을 이용
 하였다. 특히 울릉도에 몰래 들어갔다가 울릉도 수토관에게 적발된 기록을
 통해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1769년에는 수토관인 삼척영장 홍우보가 울릉도에 잠선을 들여보내 인
 삼을 채취해와서 적발되어 벌을 받았다. 1787년에는 울산의 해척들이 채복
 공문(採鰈公文)을 가지고 울릉도에서 물고기, 전복, 향나무, 대나무 등을
 채취해와다가 적발되었다.¹⁴⁰⁾ 1799년에는 월송만호 노인소(盧仁素)는 울
 릉도 수토에서 울산 사공 등을 적발하였는데, 기상악화로 울릉도에 갇혀
 지내면서 잠선자(潛船者)들이 채취한 기상악화로 체류하면서 전복 250여

140) 『정조실록』, 정조 11년(1787) 7월 25일; 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7월 25일.

첩(帖), 즉 2만 5천여 개를 먹었고, 이들이 채취한 대나무 8개와 향나무 5덩이를 가져다 수토봉물로 바쳤다는 경상감사의 장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¹⁴¹⁾ 1803년 월송만호 박수빈은 울릉도에서 순천, 홍양, 삼도의 잠선(潛船)을 적발했지만, 잠선의 무리와 왜학 서성신(徐成臣) 등의 교사를 받고 제멋대로 놓아주었다가 강원감사의 장계를 통해 밝혀져 처벌받는다.¹⁴²⁾ 1807년 월송만호 이태근(李泰根)은 울진, 홍해 등의 사격(沙格) 150여 명이 배 14척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향나무, 가지어피, 전복 등을 채취하는 것을 적발했는데, 왜학과 사격들의 위세에 잡아오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장계하였다.¹⁴³⁾ 1841년 월송만호 오인현은 잠선을 적발했지만, 뇌물을 받고 풀어준 것이 밝혀져 처벌을 받는다.¹⁴⁴⁾ 1849년 월송만호 이규상은 전라도 잠선 12척, 경상도 잠선 2척, 강원도 잠선 2척을 적발하였으나, 수토선과 잠선들이 파선하자 남은 선재(船材)로 배를 만들어 선주(船主) 18명만 잡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을 울릉도에 버려두고 온 것이 적발되어 처벌되었다.¹⁴⁵⁾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시에는 전라도 홍양 배 5척, 낙안 배 1척, 강원도 평해 배 1척에 129명 사격이 있었으며, 그 외에 채약(採藥) 9명, 벌연죽(伐烟竹) 2명, 왜인 78명 등을 적발하였다. 전라도 배들은 조선(造船), 채곽(採藿)을 주로 하고, 채약(採藥)을 위해 울릉도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자들과 연죽을 베기 위해 머무르는 연일(延日) 사람 2명, 그리고 벌목하러 온 왜인들이 있었다.

141) 『승정원일기』, 정조 23년(1799) 10월 2일.

142) 『승정원일기』, 순조 3년(1803) 5월 22일.

143) 『국역 일성록』, 순조 7년(1807) 5월 12일.

144) 『국역 비변사등록』, 현종 7년(1841) 6월 10일.

145) 『일성록』, 철종 즉위년(1849) 5월 4일.

4.3. 생활권으로서 울릉도: 왕실에서 서민까지 울릉도에 열광하다

공적인 울릉도 수토와 사적인 잠선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조선 후기 울릉도는 함경, 강원, 경상, 전라도 연해 백성들의 생활권으로 자리를 잡았다.

왕실에서는 울릉도에서만 생산되는 큰 대나무로 어진 담는 흑장통을 만들고, 왕실의 제사에는 울릉도 향나무로 향을 피우고, 가지어피는 궁중용으로 사용되었다. 왕실의 물품들은 사대부들의 일상에서도 노통(蘆筒), 죽순(竹筍), 향나무 목침(木枕), 울릉도 전복, 울릉도 복숭아 등을 애용하였다.

사대부들의 욕구와 연안 백성들의 공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채복공문과 같이 지방관의 은밀한 허락을 받은 잠선들이 표류를 이유로 매년 십여 척 이상의 배와 100여 명 이상의 인원이 울릉도를 드나들었다.

삼척영장 홍우보는 몰래 배를 들여보내 배 한 가득 울릉도 인삼을 캐오기도 하였고, 장기의 뱃사람은 배 한가득 울릉도 대나무를 싣고 와서 기뻐하기도 하였다.

기록에는 일부만 남아있지만, 연안의 뱃사람들에게 울릉도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보물섬과 같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는 이들 연안 백성들의 생활권 속에 굳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울릉도 수토제도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서 울릉도 수토사례 전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최대 84회의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갈 예정이다.

울릉도 수토제도의 시행은 조선 왕실의 울릉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특산물이 왕실의 주요한 소비

물품이 됨으로써 울릉도 수토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왕실의 울릉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대부들의 생활 속에도 다양한 울릉도 특산물이 퍼져 나가면서 울릉도에 대한 조선 후기 사회의 관심이 급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래부터 울릉도 특산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연안의 백성들은 지방관들의 은밀한 비호 속에서 더욱 빈번하게 울릉도를 드나들 수 있었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관심으로 울릉도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있지만, 조선 후기 사회의 관심도 이에 못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의 특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울릉도로 향해하는 사람들은 향해가 목적이 아니라 특산물의 채취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또 살살이 울릉도를 뒤졌을 것이다. 1882년에는 울릉도에서 산삼 등 약초를 캐기위해 움막을 짓고 장기 거주하는 약초꾼들이 수십 명이 있기도 하였다.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는 연안에서 출발하는 많은 배들이 울릉도로 향함에 따라 울릉도는 이들 연안 백성들의 생활권이 되었으며, 울릉도의 시각공간 안에 있는 독도는 울릉도 생활권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일본의 독도 침탈 사실을 듣고 “본군 소속 독도에”라고 다급하게 보고한 것은 이러한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 온 울릉도, 독도에 대한 인식이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울릉도 수토제도의 지속성과 조선 후기 사회의 울릉도 이용실태는 독도 영유권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 연안의 생활권으로서 울릉도와 울릉도의 시각공간, 항해공간에 속해 있는 독도의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강원도관초(江原道關草)』

『강원도 울릉도 신입민호인구성명년세급전토기간수효성책(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爰成冊)』

『고려사(高麗史)』

『광서구년사월일울릉도개척시선격량미잡물용입가량성책(光緒九年四月日鬱陵島開拓時船格糧米雜物容入假量成冊)』

『국역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국포집(菊圃集)』

『눌은선생문집(訥隱先生文集)』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담정유고(潭庭遺藁)』

『동계집(東谿集)』

『만기요람(萬機要覽)』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오주 연문 장전 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와유록(臥遊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울릉군지』(1989, 2007)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춘관지(春官志)』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

『한주선생문집(寒州先生文集)』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동백장계(東伯狀啓)”, 『한성주보』 제54호, 1887년7월25일.

“울릉도장수본(鬱陵島長手本)”, 『한성주보』 제23호, 1886년 6월 4일.

- 국립산림과학원, 2005, 『대나무의 모든 것』
- 국사편찬위원회, 1990, 『각사등록』 평안도편13 v.41, 「중산수토록(中山搜討錄)」, 717-721쪽.
- 김수희, 2015, “동해상에서의 무주지 선점 법리를 이용한 섬 ‘발견’과 ‘명칭 변경’”, 『영토해양연구』 10, 64-85쪽.
- _____, 2015,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오키도(隱岐島) 어민들의 독도 진출”, 『한일관계사연구』 51, 483-511쪽.
- 김려 지음, 오희복 옮김, 2006,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 김영진, 2015, “조선후기 ‘와유록(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8집, 221-257쪽.
- 김원룡, 1963, 『울릉도』(부 영암군 내동리 옹관묘), 국립박물관.
- 김태원, 2018, 『울릉도 독도 식물도감』, 자연과생태.
- 김호동, 2007, 『독도, 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 독도박물관, 『신묘명(辛卯銘) 각석문(刻石文)』
- 李圭景, “울릉도사실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 李乙, 1923, “동해의 一點碧인 鬱陵島를 찾고서”, 『개벽』 제41호, 1923.11.1., 74-84쪽.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_____, 2010,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범”, 『한일관계사연구』 35, 199-223쪽.
- 박지영, 2018, 『독도관계 일본고문서 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제103권, 113-148쪽.
- 백인기, 2012, “삼척 울릉도도형의 해석에 대한 일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4(1), 33-55쪽.
- _____, 2013,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도의 주기성과 그 의의 I”, 『이사부와 동해』 6호, 149-188쪽.
- _____, 2019, “조선의 수토정책과 울릉도 수토제도: 수토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9-191쪽.
- _____, 2019, “사라진 울릉도 특산 동식물: 울릉도 대나무, 울릉도 복숭아, 울릉도 쥐를 중심으로”, 『2019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145-147쪽.
- 법제처, 1976, 『춘관지 하』, 법제처자료 제86집.
- 徐敬秀, “울릉도장 수본(鬱陵島長手本)”, 『漢城週報』 1886.7.5.
- 成海應, “울릉도”,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권63
- 손승철, 2011, “중근세 조선인의 도서 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 39, 205-259쪽.
- _____, 2015, “조선후기 수토기록의 문헌사적 연구 - 울릉도 수토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1, 95-136쪽.
- 송병기, 1985, “울릉도·독도 영유의 역사적 배경”, 『독도연구』,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47-286쪽.
- _____, 1998, “조선후기의 울릉도 경영 - 수토제도(搜討制度)의 확립”, 『진단학보』, 86호, 157-174쪽.
- _____,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 송휘영, 2015,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 『독도연구』 제19호, 81-107쪽.
- 신석호, 1948, “독도 소속에 대하여”, 『사해』 창간호, 89-100쪽.
- 신현철 등, 2009, 『중국 대나무 도감』, 국립산림과학원
- _____, 2011, 『중국 대나무 도감 2』, 국립산림과학원
- 심익승(沈宜昇) 편, 1916, 『삼척근지』
- 심현용, 2008, “조선시대 울릉도·독도 搜討관련 ‘蔚珍 待風軒’ 소장자료 考察”, 『강원문화사연구』 13, 73-118쪽.
- _____, 2010, “울진 대풍헌 현판”, 『대구사학』 98, 337-373쪽.
- _____, 2013,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에 대한 고고학적 시·공간 검토”, 『영토해양연구』 6, 162-207쪽.
- _____, 2015, “울진 대풍헌의 울릉도·독도 수토 자료와 그 역사적 의미”, 영남대 독도연구소 편, 『울진 대풍헌과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수토사』, 선인.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 2015, 『울진 대풍헌과 조선시대 울릉도 독도의 수토사』, 선인
-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8(1), 78-101쪽.
- 유미림, 2007, 『「울릉도」와 「울릉도사적」 역주 및 관련기록의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유병오 등, 2016, 『우리나라 대나무 산림자원』, 국립산림과학원
- 윤명희, 2004, 『야생동물』, 대원사
- 윤소영, 2016, “울릉도민 홍재현(洪在現)의 시마내현 방문(1898)과 그의 삶에 대한 재검토”, 『독도연구』 20, 37-65쪽.
- 이상태, 1995, “역사 문헌상의 동해 표기에 대하여”, 『사학연구』 제50호, 473-486쪽
- 이선근, 1964,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탐험성과”, 『대동문화연구』 1,

295-335쪽.

이원택, 2014, “조선후기 강원감영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8, 184-203쪽.

_____, 2018,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 6-28쪽.

_____, 2019, “19세기 울릉도 수토 사료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5, 114-129쪽.

_____, 2019, “울진 대풍헌 현판 기문류(記文類) 자료의 해제 및 번역”, 『영토해양연구』 17, 174-213쪽.

이혜은, 이형근, 2006, 『만은(晩隱)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선인.

이홍직, 1962, “鬱陵島搜討官關係碑 二”, 『미술사학연구』 제3권 제7호, 263-265쪽.

조혁상, 2009, “朝鮮後期 士人の 日本刀 認識에 대한 考察”, 한문학보 20, 515-544쪽

홍순권, “일제시기의 지방통치와 조선인 관리에 관한 일고찰”, 국사관논총 제64집, 37-64.

황상기, 1957,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제1회”, 『동아일보』 1957년 2월 28일 2면.

3. 국외 문헌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도라이류조(鳥居龍藏), 2007, “인류고고학 상에서 본 울릉도”(번역), 『독도연구』 제3호, 13-134쪽.

奥原碧雲, 권오엽 역, 2011, 『죽도 및 울릉도』, 한국학술정보(주).

이마무라 토모에(今村鞆), 2007, “울릉도 기사”(번역), 『독도연구』 제3호, 135-166쪽.

4. 인터넷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https://www.nahf.or.kr/gnb07/snb03.do>

산림청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forest.go.kr/>

심충성, “닥발골, 울릉문화재”,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imdak1993>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index.jsp>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Periodic Military Missions to Ulleungdo and on the Geographical Perception of Ulleungdo in the Later Joseon Dynasty

Paik, In-Ky(Korea Maritime Institute)

This study has so far sought to sum up cases of “Military mission to Ulleungdo(Ulleungdo Suto, 鬱陵島 搜討)” and to grasp the perception of Ulleung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Ulleung Island's special products, which were found in the data on “Military mission to Ulleungdo”.

In the discovered and the estimated cases, it was suggested that up to 84 times of missions were carried out from 1694 to 1894. Not only the royal family but also the common people used unique and excellent Ulleung Island specialties in their daily lives. The coastal people sailed to Ulleung Island every year to collect a full boat of Ulleungdo's specialties.

As many ships on the coast of Hamgyeong-do, Gangwon-do, Gyeongsang-do, and Jeolla-do sailed to Ulleung-do, this Island became a living zone for these coastal people. Dokdo is in the visible space of Ulleungdo. Narrowly Dokdo belongs to the living zone of Ulleung Island and widely to that of the coast people.

The further study is need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stal area, Ulleungdo and Dokdo.

Keyword: Ulleungdo, Dokdo, Military missions to Ulleungdo(鬱陵島 搜討制度), Geographical perception of Ulleungdo, Periodicity

이 논문은 2020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에 관한 연구*

김 명 기**

〈목 차〉

1. 머리말
2. 역사적 권원의 대체
3.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승인한 판례
4.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5.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6. 맺음말

〈국문초록〉

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A02103036)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주제어 : 역사적 권원, 권원의 대체, 이사부, 우산국, 우산도, 칙령 제41호

1. 머리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기본입장이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근거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그 때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귀속된 것이므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주장이다. 한국정부가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할 경우 예외 없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한 독도영토주권의 취득에 의한 신라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을 제시한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현대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관례와 학설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법상 독도영토주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한국이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제시하지만 이 역사적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여 현대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 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여 국제법상 효력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역사적 권원의 대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정책 대안을 제의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 연구의 법사상적 기초는 “법실증주의”이며 연구의 방법은 “법해석론적 접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lex ferenda*가 아니라 *lex lata*인 것이다.

이하 (i) 역사적 권원의 대체, (ii)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승인한 판례, (iii)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iv)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순으로 논술하고 (v) 결론에서 몇 가지 대정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2. 역사적 권원의 대체

2.1. 역사적 권원의 개념

2.1.1 권원의 의의

영토주권의 권원(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이란 타 국가에 대한 영토주권의 주장 근거 (the validity of claims to territorial sovereignty against other states)를 의미한다.¹⁾

2.1.2 역사적 권원의 의의

영토에 대한 주권의 현시(display of sovereignty), 즉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1)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121.

가 요구되는 것은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 ‘권원의 취득’(acquisition of title) 또는 ‘권원의 유지’(maintenance of title)를 위해서 이다.

영토주권의 권원은 시간의 경과의 축에서 구분해 볼 때, ‘현대국제법상 권원’과 그 이전의 ‘역사적 권원’으로 구분된다. 그 중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은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봉건적 권원(feudal title) 등 현대국제법 이전의 영토주권의 타당 근거를 말한다.

역사적 권원은 전법적 주권(pre-legal sovereignty)의 권원 즉, 국제법 이전의 권원을 뜻한다.²⁾ 따라서 역사적 권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권원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역사적 권원이 성립할 당시에 타당한 현대국제법 이전의 규범도 국제법으로 관련하면 역사적 권원도 법적 권원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현대국제법상 권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현대국제법은 1648년의 ‘웨스트파리아 조약’(Treaty of Westphalia)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³⁾ 결국 역사적 권원은 1648년 이전 근대국가성립 이

2) G. Schwarzenberger and E. D. 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lton: Professional Book, 1972), p.96; ICJ, Reports, 1953, p.56; David H. Ott, Public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orld (London: Pitman, 1987), p. 109.

3) Stephan Verosta, "History of Law of Nations, 1648 to 181" EPIL, Vol.7, 1984, pp. 160-62; B. S. Chimni,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London: Sage, 1993), p.226 ; John Westlake, International Law(Cambridge:CUP, 1895), p.59; Gillan D. Triggs, International Law(Australia: Butterworth, 2006), p.10; D. P. O'Connell, "A Cause Celebre in the History of Treaty Making," BYIL, Vol.42, 1967, pp.71-90. ;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19.; John O'Brien, International Law(London : Cavendish, 2001), p.15 ;Turan Kayaglu, Legal Imperialism(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14,27 ; Steven Wheatley,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Oxford : Hart, 2010), p. 124 ; Leo Gross,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 AAIL, Vol.42, 1948, pp.20, 29 ; J. R. Strayer, On the Medieval Origins of Modern State(Princeton : PUP, 1979), pp.9-10 ; Mark W. Zocher,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 B. A. Simmons and R. H. Steinberg(ed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260 ; Alind Kaczorowska,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Routledge, 2011), pp. 11-12 ; Recharad Joyce, "Westphalia : Event, Memory, Myth," in F. Johns, R. Joyce and S. Papahuja (eds.), Events : The Force of International

전의 권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가 국가로서 성립한 이후에 후속적으로 증가된(subsequent increase) 권원과 구별된다.⁴⁾

2.2.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개념

2.2.1 권원의 대체의 의의

시제법(時際法, intertemporal law)상 권리 획득 시의 법과 권리 존재 시의 법은 다른 것이다.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는 그 취득 당시에 타당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권리의 존재에 관해서는 오늘 평가 시에 타당한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권원의 대체’란 역사적 권원을 현대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다른 권원(another title valid by modern International law)으로 대체(replacement)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역사적 권원이 그 후의 역사적 발전의 효과에 의해 대체(superseded)되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고전적 권원, 본원적 권원, 봉건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을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새로운 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역사적 권원의 대체라 한다. 이를 ‘권원의 교체’(supersede of title), ‘권원의 변경’(change of title) 또는 ‘권원의 변형’(transformation of title) 이라고도 한다.

2.2.2 권원의 대체와 구별되는 개념

권원의 대체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는 ‘권원의 취득’과 구별되고, 기 취득한 권원의 현상을 유지하는 ‘권원의 유지’와 구별된다.

Law(London : Routledge, 2011), pp.55-56 ; Paul F. Diehl and Charlatte Ku, The Dynamic of International Law(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28.

4) Antonio Tores Bernordez,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 10, 1987, p.498.

3.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승인한 판례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법이론을 승인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3.1. The Island of Palmas Case (1928)

The Island of Palmas Case (1928)에서 Huber 중재관은 권리의 창조와 권리의 존속에 적용되는 법은 각기 다르다고 전제한 다음 법의 존재에 적용되는 법은 법의 발전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역사적 권원의 대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했으나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역사적 권원의 대체 필요성을 판시했다.

법적 사실은 그 사실과 같이 이는 현재의 법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권리의 창조행위가 권리가 발생되는 때에 효력이 있는 법을 따라야 한다는 동일한 원칙은 권리의 존속, 다시 말해 권리의 계속적인 현시는 법의 발전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⁵⁾

3.2.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봉건적 권원은 대체 당시의 법에 따라 유효한 권원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5) ...a judici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right of the law contemporary with it, ...the same principle which subjects the act creative of a right to the law in force at the time the right arises, demands that existence of the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

UN, RIAA, Vol.2, 1949, p.839.

재판소의 의견으로는 본 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그러한 역사적 논쟁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not necessary to solve these historical controversies). ...프랑스 왕이 Channel Island에도 고유의 봉건적 권원을 가졌었다 할 지라도 그러한 권원은 1204년 및 그 이후의 사건의 결과 실효(失效)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주장된 고유의 봉건적 권원은 대체 당시의 법에 따라 다른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면 오늘에 어떤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대체의 입증 책임은 프랑스 정부에 있다.⁶⁾

3.3. Western Sahara Case (1975)

Western Sahara Case(1975)의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권원의 전환 (transforming title)에 있어서 합의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승인했다. 종전까지는 "권원의 대체"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의 기능을 인정해 온 것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동 권고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영토의 사건에 있어서 주권의 취득은 무주지의 본원적 권원에 의한 무주지의 선점을 통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아니했다. 그러나 지방적 지배자와 체결된 합의서를 통해 ...그러한 합의서는 권원의 파생적 근거로서 인정되었고 무주지의 선점에 의해 취득된 본원적 권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⁷⁾

6) such an alleged original feudal title could today produce no legal effect, unless it had been replaced by another title vali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time of replacement. It is for the French Government to establish that it was so replaced.

ICJ, Reports, 1953, p.56.

7) in the case of such territories the acquisition of sovereignty was not generally considered as effected unilaterally through the occupation of terra nullius by original title but through agreements concluded with local readers ... such agreements ... were regarded as derivative roots of title, and not original titles obtained by occupation of terra nullius.

ICJ, Reports, 1975, p. 39.

3.4.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992)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992)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의 판결을 인용하여 동 판결은 모든 고전적 권원이 단순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지 아니한 권원이 무시되고 대체된 최근의 권원에 기초하여 재판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고전적 권원을 단순히 무시하지 아니했고, 더 최근의 주권의 현시에 기초하여 재판한 것이다.⁸⁾

3.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ibbean Sea Case (2007)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ibbean Sea Case (2007)에서 온두라스는 역사적 기초(historical basis)에 근거한 전통적 경계선(traditional boundary line)의 확인을 요구했다. 재판소는 전통적 경계선을 용인하지 아니했다.⁹⁾ 전통적 경계선은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것이다.

3.6. Pedra Branca Case (2008)

Pedra Branca Case (2008)에서 말레이시아는 "태고로부터"(former time immemorial) *Pedra Branca*는 조오르왕국의 주권하에 있었다고 주장했고¹⁰⁾ 재판소는 역사적 권원 (historical title)은 말레이시아에 귀속되나 실효적 지

8) the Court in this case did not simply disregard the ancient titles and decide on a basis of more recent display of sovereignty.

ICJ, Reports, 1992, paras. 343-44.

9) ICJ, Reports, 2007, para.259.

10) ICJ, Reports, 2008, para.48.

배를 해온 싱가포르에 권원이 이전되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역사적 권원(historical title)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가 역사적 권원을 대체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말레이시아는 동 도서들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시할 수 있다. ...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말레이시아는 그의 역사적 권원은 분명히 하지 아니했다.¹¹⁾

위의 판결에서 역사적 권원을 분명히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현대 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하지 아니했다는 의미이다.

이상 이외에 역사적 권원은 Rann of Kuch Arbitration Case (1968)사건 판결에서 인정되었다.¹²⁾

이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유효한 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 하면 효력이 없고, 대체된 이후에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실효되게 된다고 판시했다.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대체된 이후에 역사적 권원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으로¹³⁾ 설명된다. 국제법상 일반원칙은 국제관습법상 일반원칙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로 한다.

11) Malaysia could somehow show an historic title over the island, ...whole Malaysia has done nothing ... Malaysia had not made out its historic title.

ICJ, Reports, 2008, para.123.

12) ILR, Vol.50, p.94.

13) Peter, Malanczuk(ed.),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London Routledge, 1987), p.155.

4.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4.1.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요건

역사적 권원의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 되는 것이므로 현대국제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1648년 이후”의 권원이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 정부에 의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될 수 있는 권원이어야 한다.

셋째로, 가능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실효적 지배 일자(1905년 시마네현 고시)보다 앞선 권원이어야 한다.

4.2.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권원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했다고 고려될 수 있는 권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 (i) 1425년 세종의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김인우를 임명하여 파견
- (ii)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 (iii) 1808년 순조의 『만기요람』 편찬
- (iv) 1882년 고종의 검찰사 이규원에 대한 지시
- (v) 1883년 고종의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임명·파견
- (vi) 1900년 고종의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의 제정·반포
- (vii) 1905년 심홍택 보고서
- (viii) 1952년 평화선 선언
- (ix)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수호

- (x) 1945년 항복문서
- (xi)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
- (xii) 1951년 대일평화조약

상기 (i)과 (ii)는 첫째 요건(1648년 이후)을 구비하지 못했고, (iii), (iv), (v) 그리고 (vi)은 첫째 요건(1948년 이후), 둘째요건(실효적지배) 그리고 세 번째 요건(1905년 이전)을 모두 구비했다.

(vii), (viii) 그리고 (ix)는 첫 번째 요건(1648년 이후)과 둘째 요건(실효적 지배)를 구비했으나 셋째 요건(1905년 이전)을 구비하지 못했다.

(x), (xi) 그리고 (xii)는 한국에 의한 실효적 지배가 아니므로 두 번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세 개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iii), (iv), (v) 그리고 (vi) 중 (vi)는 법령을 제정한 실효적 지배이고, 동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여 세계 만방에 공시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근대국제법상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한 권원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5.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 내용에 대한 비판

5.1. 역사적 권원주장의 내용

한국정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어 있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를 수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한국정부는 독도의 권원에 관해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현대국제법상 효력이 없으며,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대체된 이후 현대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국제관습법을 수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국정부는 일반적으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면서 그의 대체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한 바 없다. 이는 한국정부의 정책당국에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기 아니하여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국제관습법의 부지의 소치로 본다. 물론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주장이 없어도 독도의 권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기술 주장으로서의 의미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 효력이 부인될 뿐인 것이다.

한국정부가 신라의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해온 선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5.1.1 외무부, 『독도문제 개론』, 1955

외무부가 간행한 『독도문제 개론』에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을 항복시켜 독도는 우리나라의 섬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신라 제23대 지증왕 131년 (서기512년)의 기록에 목우사자로서 우산국인을 항복시켰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최초에는 국명으로 우산 도명으로 울릉이라고 『삼국사기』에 재록되어 있다가 고려시대에 내려와서 울능, 의능, 우능, 익능 또는 무릉 등의 별칭이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속한 섬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¹⁴⁾

위의 기술에는 “역사적 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의 기술의 의미 내용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항복하여 독도의 영토 주권의 역사적 권원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역사적 권원의 주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다.

14) 외무부, 『독도문제 개론』(서울:외무부 정무국, 1955), 7-8쪽.

따라서 신라에 의해 취득된 역사적 권원은 오늘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요컨대 위의 기술은 신라가 취득한 역사적 권원을 명확히 기록하지 아니했고 또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아무런 논급이 없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의 국제법상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2 한국외무부의 공식 견해인 한국정부의 견해3, 1959

“한국정부의 견해3”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미 신라 지증왕 당시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과 그 우산국을 조선초기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울릉 우산 양도를 포괄적으로 인지되어 관찬지리지를 비롯한 기타 공적기록에 수록되었고, 따라서 울릉도의 독도와 우산도 즉 독도도 영역의 일부로 분명히 간주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추호의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다.¹⁵⁾

5.1.3 Establishment of Right History Corp., Dokdo: Korean Territory Since the Sixth Century, 2005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신인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 간행한 Dokdo: Korean Territory Since the Sixth Century는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dates back to the 6th century. According to the records of Samguk Sagi -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Korean sovereignty over the island was established with the incorporation of Usanguk

15)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Korean Government's Views Repu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Version of the Ownership of Dokdo (September 24, 1956) (January 7, 1959).

- (“guk” means “state”) into the Kingdom of Silla, one of the three ancient kingdoms of Korea, in 512 A.D. Samguk Sagi records that in 512 A.D., Yi Sa-bu, a Silla government official subjugated the island state in that year. The territory of Usanguk comprised the islands of Ulleungdo and Usando - (present-day Dokdo). Historical facts surrounding this event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title to Dokdo are further buttressed by medieval Korean records: Sejong Sillok Jiriji - (Geographical Appendix to the Annals of King Sejong) and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 (Revised and Augmented Version of the Survey of the National Geography of Korea), published in 1454.¹⁶⁾

위와 같이 Dokdo: Korean Territory Since the Sixth Century에서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의 독도에 의한 영토주권이 성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독도의 역사적 권한의 대체에 관해서는 위 언급한 제 자료와 같이 언급이 전혀 없다.

5.1.4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2006

국립중앙박물관이 출간한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에도 신라 이사부 장군에 의한 우산국의 정복에 의해 신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성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사부異斯夫(생몰년 모름)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성은 김씨이며 신라 지증왕智證王(500~514)과 법흥왕法興王(514~540), 진흥왕眞興王(540~576) 대에 활약한 장군이자 정치가이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역사에 등장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하슬라주何瑟羅州(지금의 강릉) 군주였던 이사부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배에 나무로 만든 사자를 많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만일

16) The Establishment of Right History Corp, Dokdo: Korean Territory Since the Sixth Century (Seoul: ERHC, 2005), p.4.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겠다고 위협하는 계책을 써서 우산국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맹수인 줄 알고 항복하였다 한다. 울릉도에서 발견되는 유적유물들만 보아서는 이사부 정복 이전의 우산국이 어느 정도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산국왕 우해于海가 쓰시마를 공격하여 쓰시마도주의 딸을 데려왔다는 전설이나 신라군의 우산국 정벌시 힘만을 앞세운 공격이 아닌 교묘한 계략을 구상했어야 했다는 것을 볼 때 우산국 사람들은 오늘날의 울릉도, 독도 등지를 포함한 도서 지역과 그를 둘러싼 바다 및 동해안 일대를 기반으로 한 해상세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위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술도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신라 이사부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역사적 권원이 현재 국제법상 권원의 대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역사적인 오늘날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5 일본외무성의 독도홍보팸플렛 반박문, 2008

동북아역사재단이 공간한 “일본외무성의 독도홍보팸플렛 반박문” (2008년)은 다음과 같이 신라의 독도에 대한 권원이 기록된 관찬문헌을 열거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교(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교(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외아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¹⁸⁾

17)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2006, 128쪽.

1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문제연구소, “일본외무성의 독도홍보팸플렛 반박문”(2008),

위의 기술 중 한국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성립되었다고 직설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열거된 관찬문헌의 내용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역사적 권원”이란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독도의 권원이 신라시대에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독도의 역사적 권원 자체는 오늘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6 경상북도, 『독도총서』, 2008

경상북도가 출간한 「독도총서」에는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하여 우리나라의 독도에 의한 역사적 권원이 취득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가 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512년(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돼 그 일부가 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 이사부조에 두 차례나 기록되어 있다.¹⁹⁾

위의 경상북도가 출간한 『독도총서』에도 신라 이사부장군의 우산국을 속복하여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성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역사적인 권원이 현재 국제법에 의해 권원의 대체를 이루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견해에도 오늘날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제2항.

19) 경상북도, 『독도총서』, (대구:경상북도,2008). 76쪽.

5.1.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지』, 2009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출간한 「독도지리지」에는 512년 신라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인 권원이 성립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512년이다.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1145) 신라본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복하여 신라의 일부가 되었다는 기록에서이다. 『삼국사기』열전과 『삼국유사』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²⁰⁾

위의 기술 역시 신라 이사부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독도의 역사적인 권원이 성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권원의 유지와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특히, 권원의 대체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역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인 권원은 오늘의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8 교육과학기술부, 『지켜야 할 우리땅 독도』, 2009

『지켜야 할 우리땅 독도』에는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영토로 편입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 때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증왕 13년 6월 신라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하여 신라에 귀복시켰고 해마다 토산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사부는 내물왕의 4대 손으로 지증왕 13년에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복하려고 하였다. 이사부는 우산국 사람들이 사납고 거칠었으므로 힘으로 굴복시키기 어렵게 되자 피를 생각해 냈다. 그는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에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면, “너

20)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지』, (서울:국토지리정보원,2009). 32쪽.

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곧 이 사나운 사자들을 풀어 모조리 밟혀 죽게 하리라.”하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가 생각했던 대로 순순히 항복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여지지』를 비롯한 여러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모두 우산국 땅이다.’ 라고 하여 우산국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¹⁾

위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신라 이사부 장군에 의한 우산국의 정복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것을 상술하고 있으나 역시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기술에 의하면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국제법상 오늘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9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바로알기』, 2011

동북아역사재단이 출간한 『독도 바로알기』에는 『삼국사기』의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가 해마다 토산물을 받아왔다는 기록을 인용하여 정확히는 아니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이 신라시대에 성립했음을 기술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1145년)이다. 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시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본래 삼국시대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으로 불렸다. 삼국시대에 우산국 사람들이 신라 대륙까지 들어와 노략질을 벌이자, 신라의 이찬(伊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게 되었다. … 이사부가 계략을 써서 우산국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²²⁾ … 512년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은 918년 고려가 세워진 이

21) 교육과학기술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 (서울:교육과학기술부, 2009). 44쪽.

22)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바로알기』(서울:동북아역사재단, 2011). 24쪽.

후 고려의 지배를 받았다.²³⁾

위의 기술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의미 내용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기술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의 기술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현대국제법에 의한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역사적 권원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오늘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요컨대, 『독도 바로알기』는 신라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의 성립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나 그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논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 권원은 오늘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10 동북아역사재단,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 2011

동북아역사재단이 출간한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에는 한국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주장되어 있다.

『삼국사기』(1145년 고려인종 23년) 권4의 지증왕조에는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지역)의 군주인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지지(輿地志)』 등에서는 “울릉도 외 우산도(독도)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하여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이로서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한 6세기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기술 중 “...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한 6세기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기술은 역사적 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23) 상계서, 25쪽.

그러나 『우리땅 독도를 만나다』에는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여 오늘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11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문제연구소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지』, 2013

동북아역사재단이 출간한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지』는 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가 우산국의 항복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산국은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 하는데, 사방 백리의 땅이다.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군주가 되어 ...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두 항복하였다. (삼국사기 지증왕 13년)²⁴⁾

위의 기술 역시 “역사적 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기술의 전체의 의미 내용으로 보아 신라의 우산국 항복으로 신라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역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12 울릉군 독도 박물관, 「한국땅 독도」, 2015

울릉군 독도 박물관에서 간행한 「한국땅 독도」에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취득되었다고 다음하고 기술하고, 특히 동국여지승람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24)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문제연구소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지』(서울:동북아역사재단, 2013). 15쪽.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의 사회적·지리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수정·보완하여 간행한 지리지(地誌)이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지리지(地理志)의 경우 국가의 지배체제 확립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의 지리적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군사, 행정, 경제 등의 실용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편찬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원리를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리지의 내용에 인물, 고적 등의 사항을 추가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총 목판본 5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권 45 강원도 편』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강원도 지도를 삽입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주요 산과 하천, 고개 등을 표기하고 있으며, 각 군현에는 수도에서 군현까지 걸리는 시간을 별도로 부기하기도 하였다. 지도상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동저대해(東抵大海)로 표기된 조선의 동쪽바다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도에 해당되는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와 차리를 보이지만, 조선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위의 울릉군 독도 박물관의 기술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역사적 권원의 현재 국제법상 권원의 대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오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13 경상북도, 「독도 올바른 알기」, 발행연도 불표시

경상북도 출간한 「독도 올바른 알기」에 신라의 우산국 복속에 의해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권원이 취득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된 명확한 역사적 권원은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여 우산국에는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역사적 근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명확히 표시 되어있다.²⁶⁾

25) 울릉군 독도 박물관, 『한국땅 독도』(울릉군·독도 박물관, 2015). 17쪽.

경상북도가 출간한 「독도 올바로 알기」에도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성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역사적인 권원이 현재 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위의 견해에 따르면 독도의 역사적인 권원은 국제법상 오늘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14 외교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발행연도 불표시

외무부가 간행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에는 “세종실록지리지”를 인용하고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여 독도에 대한 통치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섬이 멀지 아니하여 청명한 날 바라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시킨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²⁷⁾

위의 기술에 “역사적 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의 의미 내용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으므로, 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의 현대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1.15 Dokdo, 발행연도 불표시

동북아역사재단이 영문본으로 출간한 Dokdo에는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신라가 독도를 병합하였다고 다음과

26) 경상북도, 『독도바로알기』, (대구:경상북도, 발행연도불표시). 21-22쪽.

27)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서울: 외교부, 발행연도 불표시), 6쪽.

같이 기술하고 있다.

Korean title to Dokdo dates back to the 6th century. According to the records of SamgukSagi, Korean sovereignty over the island was established with the incorporation of Usanguk into the Silla Kingdom, one of the three ancient kingdoms of Korea, in 512 A.D. SamgukSagi records that Isabu, a Silla government official, subjugated the island state in that year.²⁸⁾

위의 기술 중 “역사적 권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그 의미 내용은 이사부가 우산도를 정복하여 신라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사적 권원의 현대국제법에 의한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다.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에 기술된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성립된 독도에 관한 역사적 권원은 오늘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5.2. 역사적 권원 주장에 대한 비판

5.2.1 역사적 권원 주장의 실제 사례

5.2.1.1 독도박물관, 『아름다운 섬, 독도 그리고 울릉도』, 2005년

독도박물관이 발간한 『아름다운 섬, 독도 그리고 울릉도』에는 우산국이 한민족의 영토가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약 1500년 전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고대 해상왕국 우산국이 서

28) North East Asian Historic Foundation, Dokdo (Seoul:NEAHF, Published date non indicated), p.16.

기 512년 신라에 복속됨으로써, 두 섬은 한민족의 영토가 되었다. 우산국의 영역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료와 논리로 입증하기 이전에 상식의 영역이며 사실의 영역이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바라 볼 수 있으며, 바다로 조금만 나가면 두 섬이 동시에 보인다. 독도에서는 울릉도가 뒷산만큼 크게 보인다.

이와 같이 우산국이 민족의 영토라고 기재하여 우산국이 한민족의 역사적 권원이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역사적 권원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루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논급이 없다.²⁹⁾

5.2.1.2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2000년

동북아역사재단이 출간한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에는 서기 511년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산국은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서기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서기 512년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이 기록을 가지고 512년(지증왕 13)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울진현조에 실려 있는 울릉도·독도에 관한 기록이다.

512년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를 제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³⁰⁾

29) 독도박물관, 『아름다운 섬, 독도 그리고 울릉도』(울릉군:독도박물관,2005), 22쪽.

30)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서울:동북아역사재단,2000), 40쪽.

5.2.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 2000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에는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로 되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되었다고 역사적인 권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언제부터 우산국이라는 국호로 국가를 건설하였는지도 정확하지 않지만, 신라에 복속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찬 이사부의 정벌이 있었던 6세기 초부터였다. 이에 대한 기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한다. 이들은 모두 울릉도에 대한 신라의 정복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512년에 있었던 울릉도 복속 기사이다.

이는 해양수산개발원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에 관해 특수연구를 한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³¹⁾

5.2.2 비판

5.2.2.1 비판1 : 역사적 권원 주장의 불명확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면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의 이사부에 의한 우산국 정복에 의해 한국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고 기술하고 그 근거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서 독도를 청명한 날 바라볼 수 있다고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만기요람』에 우

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서울: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5). 57쪽.

산국의 땅은 우산도와 송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하여 대부분 신라의 우산국 정복에 의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을 직접적으로 명백히 기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비록 “역사적 권원”의 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신라는 512년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인 권원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5.2.2.2 비판2 : 역사적 권원의 대체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오늘 국제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역사적 권원의 주장을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이 대체되었음을 논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의 주장에는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논급이 없다. 그러므로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고 만다.

6. 맺음말

전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영토주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국제관습법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 (ii)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신라의 역사적 권원이 성립되었다.
- (iii) 한국정부는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00년 10월 25

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거,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했다.

- (iv) 한국정부가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수립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의한 것이라고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면서 그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한 바 없다.
- (v)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권원인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하지 아니하면 역사적인 권원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도의 역사적인 권원은 역사적으로 타당하지만은 국제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얘기는 역사적인 권원에 의해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틀린 주장이다. 이점에 관해서 역사학자들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아니한다. 역사적인 권원에 관해서는 사학자와 국제법학자의 긴밀한 학제연구가 요구된다.

정부관계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의하기로 한다.

- (i)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거 대체되었음을 명백히 선언한다.
- (ii)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이 역사적 권원의 주장임을 명백히 표시한다. 특히 지리적 근거의 제시와 혼동하지 아니한다.
- (iii) 역사적 권원을 주장할 경우에는 필히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논급한다.
- (iv)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법학계와 사학계의 학제연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외무부, 『독도문제 개론』, 서울: 외무부 정무국, 1955.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서울: 외교부, 발행년도 불표시.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문제연구소, “일본외무성의 독도홍보팸플렛 반박문“, 2008.
-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지』,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 『독도 바로알기』,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경상북도, 『독도총서』, 2008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지』, 2009
- 교육과학기술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 2009
-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2006
- 울릉군 독도 박물관, 『한국 땅 독도』, 2015
- 경상북도, 『독도바로알기』, 발행연도 불표시
- Bernordez, Antonio Tores, "Territory, Acquisition," EPIL, Vol. 10, 1987.
- Brownlie, Ian,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Cassese, Antonio, International Law,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Chimni, B. S., International Law and World Order, London : Sage, 1993.
- Diehl, Paul F. and Charlatte Ku, The Dynamic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The Establishment of Right History Corp, Dokdo: Korean Territory Since the Sixth Century, Seoul: ERHC, 2005.
- Gross, Leo, "The Peace of Westphalia 1648-1948, " AAIL, Vol.42, 1948.
- Joyce, Rechar, "Westphalia : Event, Memory, Myth," in F. Johns, R. Joyce and S. Papahuja (eds.), Events : The Force of International Law, London : Routledge, 2011.
- Kaczorowska, Alind,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Routledge, 2011.
- Kayaglu, Turan, Legal Imper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Korean Government's Views Repu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Version of the Ownership of Dokdo (September 24, 1956) (January 7, 1959)

- Malanczuk, Peter,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London Routledge, 1987.
- North East Asian Historic Foundation, *Dokdo*, Seoul:NEAHF, Published date non indicated.
- O'Brien, John, *International Law*, London : Cavendish, 2001.
- O'Connell, D. P., "A Cause Celebre in the History of Treaty Making," *BYIL*, Vol.42, 1967.
- Schwarzenberger, G. and E. D. Brown,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6th ed, Miton: Professional Book, 1972.
- Strayer, J. R., *On the Medieval Origins of Modern State*, Princeton : Princenton University Press, 1979.
- Triggs, Gillan D., *International Law*, Australia: Butterworth, 2006.
- UN, *RIAA*, Vol.2, 1949.
- Verosta, Stephan, "History of Law of Nations, 1648 to 181" *EPIL*, Vol.7, 1984.
- Westlake, John, *International Law*,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5.
- Wheatley, Stev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Oxford : Hart, 2010.
- Zocher, Mark W., "The Territorial Integrity Norm," in B. A. Simmons and R. H. Steinberg(ed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ICJ, *Reports*, 1953.
- , *Reports*, 1975.
- , *Reports*, 1992..
- , *Reports*, 2007.
- , *Reports*, 2008.
- ILR, Vol.50.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Assertion of the
Historic Title to the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Myung-Ki Kim
Honorary Professor, Myu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Dokdo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We analyzed how the Dokdo educational content system is reflected in textbooks important for Dokdo learning. Through thi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Dokdo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were grasped, and future-oriented measures to conduct interesting and in-depth Dokdo education at appropriate levels were sought.

The 10 categories of the system of Dokdo Education contents are location, territory, topography, climate, ecology, resources, geographical name changes, Dokdo guardian data, Japan's territorial claims, and responses, and Efforts to protect territorial sovereignty.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lassification items covered in the textbooks of the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ll of the 10 categories are not described. Also in the continuous Dokdo education, it seems that the amount and difficulty of classification items to be dealt within each of the lower and upper grades are not properly classified or systematically organiz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divided, and the suggested content elements are ignored. In elementary school, the content elements to be address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are being described.

Currently, the system of Dokdo education contents that reflect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n front-line schools and has been pursuing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relatively well. In particular, as the education centered on student activities is strengthened, Dokdo education is pursuing changes so that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centered on experience and activities can be guaranteed.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are writte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along with these, Dokdo's nature, Dokdo's historical records, stickers on animals and plants of Dokdo, Dokdo crosswords, Dokdo board games, and Dokdo bookmarks are created to help Dokdo-related experiences and activities. The development of Dokdo textbooks focusing on student participation is also required.

Key words: historic title, replacement of title, Isabu, Usanguk, Usando, Ulleungdo, Imperial Ordinance No.41.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권원을 중심으로-

도 시 환*

〈목 차〉

1. 머리말
2. 독도 관련 일본 국제법 권원 연구의 계보
3. 국제법사관의 비식민지화 법리론과 독도영유론
4. 국제법사관의 국제법적 권원의 문제점 검토
5. 맺음말

〈국문초록〉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drdoh@nahf.or.kr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澂)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 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과 1935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하버드 초안’의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인 1905년 을사늑약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일본 국제법사관의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독도주권, 국제법적 권원, 국제법사관, 일제식민주의, 식민지배합법론, 카이로 선언, 평화공동체, 국제법적 책무

1. 머리말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에 이어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더욱이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하겠다는 역사인식을 극명하게 표출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함으로써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한일간 독도 이슈를 포함한 동북아 영토문제의 발단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8·15 패전이 아니라,¹⁾ 그러한 결과를 배태한 일본 근대화의 출발로서의 1868년 메이지유신이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국가로 귀결된 데 기인하고 있다. 그것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이 도발한 1875년 운요호사건(1876년 강화도조약), 1894년 청일전쟁(1895년 시모노세키조약), 1904년 러일전쟁(1905년 포츠머스조약) 등 동아시아의 전역에 걸친 전쟁으로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이래 식민지국화한 일본은 러일전쟁 중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며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조약(1905년)을 체결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국주의 열강간의 방조와 묵인이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1905년 한국에 대한 을사늑약을 강제한 후 1910년 강제병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 변화 과정은 집권국가형성기(1867-1873년), 국민국가로서의 국경확정기(1874-1881년)를 경유한 이후, 청일전쟁을 기점으로²⁾

1) 와다 하루키(2013),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대립에서 화해로』, 사계절, 26쪽.

2) 청일전쟁 후 청일간에 체결된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일본에 할양된 요동반도와 대만 및 팽호도와 관련하여,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도취(盜取)하여 반환해야

대외팽창기(제국 형성; 1882-1945년), 대외축소기(제국 붕괴; 1945-현재)로 구분되고 있다.³⁾ 러일전쟁 개전 직후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은 제국형성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후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에서 핵심적인 결정인 카이로 선언(1943. 12. 1)⁴⁾과 포츠담 선언(1945. 7. 26)⁵⁾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을 통한 팽창된 영토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개관한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이 영토 인식을 보여주는 역사자료를 배제한 채 1905년 독도침탈 이후 행정관할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의 법리로서 ‘실효적 점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착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일본정부가 고유영토론에 입각한 역사적 권원화의 한계로부터 전면적인 국제법 권원 강화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함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연구의 계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계보상의 권원 연구가 국제법 법리상으로 타당성을 구비하여 발전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하는 지역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b)항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역으로 대만과 팽호도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청일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영토팽창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 3) 名嘉憲夫(2013), 『領土問題から国境劃定問題へ』, 明石書店, 62-63쪽.
- 4) 카이로 선언(1943)은 4가지 내용으로, “첫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를 박탈한다, 둘째 만주대만·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취(盜取)한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셋째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略取)한 기타 일체의 지역에서 구축된다, 넷째 한국인들의 노예상태에 주목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하고 독립시킬 것이다” 등이다.
- 5) 포츠담 선언(1945) 제8조는 카이로 선언의 이행과 일본의 영토에 대해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島), 큐슈(九州), 시코쿠(四國)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모든 작은 섬에 국한”한다고 규정하여, 4개의 주요 섬 외의 ‘작은 섬’에 대한 결정권은 연합국의 권한으로 명시하였다.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 권원 연구의 기점으로서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1963)’을 시작으로, 연구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가 독도영유권 관련 국제법 권원 논의에 앞서 주장하는 ‘국제법사관’은 국제법상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론(non-colonization)을 전제로,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화에 더하여 이를 독도침탈과 분리해 무주지 선점 법리를 제시함으로써⁶⁾ 일본정부가 역사왜곡과 병행하여 주장하는 독도주권 침탈을 위한 총체적인 국제법 법리적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요컨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기존의 국제법 권원 연구가 무주지 선점론, 고유영토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을 전제로 한 본원적, 역사적, 조약적 권원 등 개별적이고 미시적 영역에 대한 대중적 권원 연구였다면, 비식민지화론의 ‘식민지배합법론’을 전제로 한 국제법사관은 독도주권 침탈을 이와 분리하여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국제법상 권원 법리의 레짐을 구축하는 합법화의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카이로 선언이 주시하는 당시의 국제법이 침략적 국가실행에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퇴조하고 보편적 국제규범의 규범성이 제고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⁷⁾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 권원 연구자로서도 이러한 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국제법 권원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사관의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히로세 요시오의 ‘독도영유론’은 역설적으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식민지배 불법론’에 입

6) 広瀬善男(2007), 「国際法からみた日韓併合と竹島の領有権」, 『明治学院大学法学研究』 81, 288쪽.

7) 아라이 신이치(2009), 「일본의 대한외교와 국제법 실천」, 『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342-353쪽.

각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온 직후 시마네현 지사의 일본정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요구와, 내각부(內閣府) 부대신이 참석한 독도영유권 주장 집회와 접촉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이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토대인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독도 관련 일본 국제법 권원 연구의 계보

2.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 권원 연구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권원 연구의 계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1963)’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1965)’,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1966)’,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2006)’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2007)’이 존재한다.

물론 상기 계보의 학자군을 전후로 다수의 권원 연구자가 존재하지만 국제법 법리상의 ‘역사적 권원’, ‘본원적 권원’, ‘조약적 권원’ 등의 주요 권원을 중심으로 추적하여 계보로 분류하였다. 미나가와 다케시 이전의 이리에 케이시(入江啓四郎),⁸⁾ 마츠쿠마 키요시(松隈清)⁹⁾ 등은 국제법상 법리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권원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히로세

8) 入江啓四郎(1959), 「竹島の領有問題」, 『領土・基地』, 三一書房, 20-24쪽.

9) 松隈清(1962), 「国際法より見た李ライン問題と竹島の帰属」, 『八幡大学論集』第12巻第2号, 83-116쪽.

요시오 이후의 츠카모토 다카시(塚本孝),¹⁰⁾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¹¹⁾ 등의 국제법학자들은 모두 본원적 권원론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별도의 계보로 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론으로 통합해서 분류되기도 하는 미나가와 다케시와 다이쥬도 가나에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을 복합하여 역사적 권원론에서 본원적 권원론으로의 대체라는 논의구조도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나, 전자는 17세기 발견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현대 국제법상의 요청에 부합하는 권원으로 대체된 측면을 강조하는 점에서 구분하였다.

아울러 본원적 권원론을 대표하는 우에다 도시오는 역사적 권원론자인 미나가와 다케시와 다이쥬도 가나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이한기 교수는 당시까지 만해도 소수설인 우에다 도시오의 주장에 대해 “독도를 무주지로 보는 동시에 독도의 편입을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 침략의 도구로서 실효적 점유를 원칙으로 하는¹²⁾ 이른바 ‘무주지의 선점’이라는 국제법상의 이론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¹³⁾

2.2. 미나가와 다케시의 ‘역사적 권원론’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는 국제법 학계에서 일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른 최초의 견해로, 영토분쟁을 둘러싼 각종 국제판례를 예시하면서, “일본은 17세기 초 독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적 점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시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

10)塚本孝(2011), 「韓國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竹島をめぐる」, 『東アジア近代史』 第14号, 52-67쪽.

11)中野徹也(2012),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第61卷 第5号, 113-166쪽.

12)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93쪽.

13)이한기(1969), 앞의 책, 271쪽.

은 1905년 이 섬의 정식적인 영토 편입을 통해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됨으로써, 분명히 일본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⁴⁾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05년 일본의 편입조치 이전 실효적 점유에 바탕을 둔 권원으로 대체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17세기 초 독도 발견과 현실적인 이용을 원시적 권원이자 역사적 권원으로 주장하며, 후속적인 1905년 영토편입으로 확정적 권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⁵⁾ 미나가와 다케시의 역사적 권원론은 1928년 팔마스 사건의 판결을 인용하며,¹⁶⁾ 국제법상 불완전한 권원(an inchoate title of discovery)으로서 17세기 일본의 독도 발견¹⁷⁾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인 점유(effective occupation)로서 현실적인 이용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05년 독도침탈의 국제법적 법리로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본원적 권원을 주장한 일본정부가 국제법상 흠결을 대체하기 위해 제기한 17세기 일본의 고유영토론은¹⁸⁾ 1693년 안용복 피납 이래 시작된 울릉

-
- 14) 皆川洗(1963), 「竹島紛争と国際判例」, 『国際法学の諸問題－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 慶應通信, 347-372쪽.
- 15) 皆川洗(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続-日韓条約の批判的検討」, 『法律時報』 37(10), 38-44쪽.
- 16) The Island of Palmas case(Netherlands and U.S.), 4 April 1928, (1928) 2 RIAA 829, (1928) 22 AJIL 867.
- 17) 발견(discovery)이란 점유취득을 위한 그 어떤 상징적 행위조차도 없이 단지 육지가 보였다는 사실 혹은 섬이 목격되었다는 사실로 정의하고 있다. 김대순(2015), 『국제법론』 제18판, 1091쪽.
- 18) 아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는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신청을 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유영토론을 부정하였다. “1881년 울릉도의 소속이 한국령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지금의 독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협정도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본은 당시 독도도 포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울릉도만큼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독도의 귀속문제의 역사를 생각하는 경우, 에도막부 시대에 이 섬이 일본인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등의 의문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독도의 귀속이 그때까지 결정되어 있었다면 새삼스럽게 1905년 2월 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일본의 외무성 등이 최근 이 독도의 영유에 관하여 논하면서 이 섬이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말하고

도쟁계 이후, 에도막부의 1696년 도해금지령과 이를 위반한 1837년 하치에몽의 처형¹⁹⁾ 및 메이지정부 외무성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전제로 한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해 역사적 권원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²⁰⁾ 특히 당시 일본 조정에서 국무를 총괄하던 태정관 지령의 1877년 3월 29일 결정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본이 근린국가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국경획정을 추진한 과정에서 1876년 2월에 체결한 조일수호조약에 국경획정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²¹⁾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하는 ‘다케시마 외 1도’는 “조선령이며 일본령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²²⁾ 아울러 미나가와 다케시가 팔마스 사건을 인용하며 강조하고 있는 발견의 권원성과 관련하여, 발견의 권원은 가장 유리하고 확장된 해석하에서도 미완성 권원으로서 존재할 뿐이며, 계속적으로 평온한 주권의 발현에 기초를 둔 확정적 권원에 우선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²³⁾

있으나 ‘고유’라는 말의 정의는 하지 않고 있다. 나는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조사하는 중에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 문서 속에 ‘제국판도’라는 문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제국헌법’의 제정시에 시행될 지역에 관하여 조사한 것인데, 이 중에 ‘고유의 영토’의 정의가 있었다. 이것에 의하면 ‘고유의 영토는 신화에 있는 바와 같이 本州九州.四國.淡路島이다’라고 명백히 쓰여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독도·고유영토’설이 근거가 없음을 알 것이다.” 山辺健太郎(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コリア評論』 7(2), 4쪽; 이한기(1969), 앞의 책, 48-49쪽.

19) 이계황(2017),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의 울릉도·독도 도해사건」, 『학림』 제39집, 121-160쪽.

20) 와다 하루키(2013), 앞의 책, 221-225쪽.

21) 堀和生(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24號, 97-125쪽.

22) 1876년 10월 일본 내무성 지리료(地理寮) 관원이 시마네현에 ‘다케시마(울릉도)’의 건에 대해 문의하자, 시마네현은 조사를 하여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권찬방 문의’를 지도와 함께 제출했다.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라는 제목의 그 지도에는 ‘이소다케시마(울릉도)’가 그려져 있고, 그 섬의 남동쪽 오키와의 사이에 작은 ‘송도’가 그려져 있다. ‘다케시마 외 1도’란 울릉도와 독도(다케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무성도 독자적으로 조사해 시마네현의 보고와 때를 맞춰 “이 두 섬은 조선령이며 일본령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國立公文書館(1877. 3),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何い」, 『公文録』.

2.3. 우에다 도시오의 '본원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는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와 동일한 논법으로 일본 측의 사료, 특히 1905년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입각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의 의사표시는 국제법상 어떠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래 무주의 땅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이것을 영토로 하는 명확한 국가적 의사를 표시하고, 현실의 점유 및 효과적인 지배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선점’의 법리에 따라 다케시마에 있어서 일본의 영토권은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⁴⁾ 더하여 우에다 도시오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는 각의 결정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으로 이는 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 된다. 둘째,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은 당시의 신문에 도 발표되었다. 셋째, 무인도인 독도의 선점에 대해서 일본이 외국에 통보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²⁵⁾

국제법상 선점(occupation)이란 무주의 토지(terra nullius)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성립되는 영역취득의 권원이다.²⁶⁾ 선점이 본원적 권원을 취득하는 적법한 영토취득 방식으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는 대상 영역이 무주지라야 한다.²⁷⁾ 또한 선점은 국가의 영유의사라는 주관적 요소와 국가권력에 의한 실효적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를 성립요건으로 한다.²⁸⁾

23) 이한기(1969), 앞의 책, 289-290쪽.

24) 植田捷雄(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第54巻 第1号, 19-34쪽.

25) 植田捷雄(1965), 앞의 논문, 30쪽.

26) 이한기(2007),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307쪽.

27)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Norway v. Denmark), PCIJ, Series A/B, No. 53(5 April, 1933), p. 22, 44 & 63;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 1975, p.12, 39, para. 79.

28) Ian Brownli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일본의 1905년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은 일본이 근대법제를 시행한 이후 제정 법규의 방식으로 영토획득을 표현한 것이나 중대한 국제법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한제국의 근대적 입법으로써 독도를 대한제국 울도군의 관할로 명시한 1900년 칙령 제41호²⁹⁾가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완성된 권원에 입각한 독도에 대해 일본이 1905년 각의 결정하에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주지로 규정하여 선점 및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완성된 권원에 입각하여 확립된 타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이다.³⁰⁾ 둘째, 일본정부의 독도 편입은 칙령 제41호로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대한제국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경우 대한제국의 반대로 인해 실패할 것을 인식하여 각의 결정의 형식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보게재 부담을 회피하고, 시마네현의 고시로 독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에 불과하며,³¹⁾ 국제판례는 지방정부의 행위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다.³²⁾ 셋째, 영역주권의 취득인 선점의 통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국이 있다면 승인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점 자체가 원시취득이므로 통고가 불필요

p. 133

- 29)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무단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법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기로 하였고(제1조),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온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 30) 이한기(1969), 앞의 책, 293쪽.
- 31) 최철영(2017), 「1905년 일본정부 ‘각의 결정’ 등의 국제법적 검토」, 『근대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 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100쪽.
- 32) Sovereignty over Certain Frontier Land(Belgium v. 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 1959, p. 209, 229.

하다는 설도 있으나, 당사국 또는 제3국의 승인 또는 거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통고는 영역취득의 불가결한 요소이다.³³⁾ 독도의 편입에 대한 이해관계국인 대한제국에 사실을 통고하지 않은 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후 그 이듬해에 오키섬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통지한 것은 통고요건의 위반이다.³⁴⁾

2.4. 다이주도 가나에의 ‘대체적 권원론’

다이주도 가나에(太壽堂鼎)는 당시로서는 다수의 한일 및 여러 나라들의 사료와 사례를 활용하면서 ‘선점 법리’를 적용하였다. 첫째, ‘역사적 근거’라는 관점, 즉 주로 에도시대의 사실을 열거하면서 일본 주장의 상대적 우위성을 주장하고, 둘째, ‘근대 국제법상의 영토취득의 요건’에 관해서 “일본정부에 의한 1905년 영토편입조치와 그에 이은 국가권능의 계속된 발현은 17세기에 당시의 국제법에도 거의 합치되도록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권원을 현대적인 요청에 따라 충분히 대체”한 것으로 평가하며,³⁵⁾ 셋째, 제2차 대전 후의 연합국에 의한 조치들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규정을 근거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이것은 한일병합 전의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을 인정한 것이며, 병합 전부터 일본 영토였던 지역을 새롭게 독립한 조선에 할양한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독도는 고래로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였으며 카이로 선언에서 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된 지역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³⁶⁾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국제법상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33) 이한기(2007), 앞의 책, 308-309쪽.

34) 박현진(2017), 『독도영토주권』, 경인문화사, 361-362쪽.

35) 太壽堂鼎(1998), 『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143쪽.

36) 太壽堂鼎(1966), 「竹島紛争」, 『國際法外交雜誌』 第64卷 第4·5号, 129쪽.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는 다수의 섬들을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다이주도의 권원 대체론은 국제법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³⁷⁾ 더욱이 독도에 대해 한일병합 전부터 일본 영토였던 지역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명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킴으로써 그 조항을 위반하였던 불법행위로 강제병합 이전의 영토주권에 대한 논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³⁸⁾ 이와 관련하여 강제병합 이전 1905년 을사늑약 제4조를 근거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 사이의 현존 조약과 약속은 이 협약규정과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절대무효인 을사늑약을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을 주장하고³⁹⁾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의문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냉전체제를 활용한 일본의 주도하에 한국의 당사국 지위가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일본에 편입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은⁴⁰⁾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는 카이로 선언이 천명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된 도서이자 광복과 동시에 완전한 영토주권 회복의 상징임을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반증인 것이다.⁴¹⁾

37) 박배근(200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 주장에 관한 일고」, 『국제법학회논총』 제50집 제3호, 105쪽.

38) 호사가 유지(2009), 「한일협약과 고종의 밀서로 본 독도영유권」, 『한일군사문화연구』 제8호, 191쪽.

39) 坂元茂樹(1995), 「日韓保護條約の效力-強制による條約の観点から」, 『法学論集』(関西大学, 第44卷 第四·五合併号), 350쪽.

40) 이한기(1969), 앞의 책, 270쪽.

41) See-hwan Doh (2017),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okdo’s Sovereignty,”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 pp. 67-69.

2.5. 세리타 겐타로의 ‘공유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는 국제법학자 중에서도 해양관계법 전문가로, 국제해양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분석한 후, 독도가 한국에 속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100평 토지 구석의, 엄지손가락 정도 크기의 돌밭을 이웃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간에 새로운 조약을 맺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965년 국교정상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았으므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2002년 북일 평양선언과 같이 솔직하게 한국민에게 반성과 마음으로 부터의 사죄를 표명해야 하며, 장래세대를 위해 일본은 독도를 한국에 양도 또는 포기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²⁾

한편 세리타 겐타로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을 약속하고, 독도를 자연보호구역으로 한 다음 12해리의 어업금지수역을 설정하여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에게 이를 개방한다는 것으로⁴³⁾ 독도의 권원에 대한 일종의 공유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리타의 제안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도를 국제적으로 개방하여 자연보호구역화하는 대신, 그에 대한 관리는 한국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식민지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은 묵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익 보장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⁴⁴⁾

42) 芹田健太郎(2006), 『日本の国境』, 中央公論社, 185, 187쪽.

43) 芹田健太郎(2006), 308, 312-313쪽.

44) 도시환(2018), 「한국의 독도주권과 일제식민주의의 주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52쪽.

3. 국제법사관의 비식민지화 법리론과 독도영유론

3.1. 국제법사관의 비식민지화 법리론

국제법 권원 연구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는 독도영유권 관련 국제법 권원의 논의에 앞서 ‘국제법사관’의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법사관이란 메이지기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 관련 외교 조치(일련의 조약, 협정의 체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법의 역사인식을 의미한다.⁴⁵⁾ 히로세 요시오는 국제법상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론(non-colonization)을 전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화에 더하여 이를 독도침탈과 분리해 국제법 권원상 무주지 선점 법리를 제시한다.

히로세 요시오는 을사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으로 병합시키는 ‘식민지화’ 행위였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당시의 ‘식민지제도’라는 국제법의 전개 과정속에 위치시켜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평가하며,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 합법이라는 전제하의 국제법 인식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의정서(1904년)부터 한일병합조약(1910년)에 이르는 일련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정책상의 한일조약 관계를 전체적으로 당시부터 무효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20세기에 들어서 제1차 대전을 경험하기까지는 국제사회는 유감스럽게도 ‘전쟁의 자유’를 전제로 한 국제법(jus ad bellum) 관념의 지배와 그러한 법 기반 위에서 한일병합조치가 구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⁶⁾

45)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도시환(2010),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 13-47쪽 참조.

46)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88쪽.

3.2. 히로세 요시오의 ‘독도영유론’과 선점 법리

히로세 요시오는 독도영유권 관련 국제법 권원 법리의 논의에 앞서 제시한 국제법사관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론을 통해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성을 부여한 다음 무주지 선점의 법리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독도의 영유권 결정과 관련하여 선점에서의 ‘실효적 점유’ 요건의 구체적 적용 문제를 비롯하여, 특히 ‘실효적 점유’라는 사실관계의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문제도 강조한다. 더하여 영역 취득의 요건으로서 ‘실효적 점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국가가 해당 영역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와 그에 따라서 국가 권능의 일정한 실제적 행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Norway v. Denmark, PCIJ Report, 1933).⁴⁷⁾ 그러한 경우, 국가권능의 행사로는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의 행사가 필요하며(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France v. United Kingdom, 1953 ICJ Report 47),⁴⁸⁾ 사람이 정주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의 행사는 상시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한다(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 1933).⁴⁹⁾

그런데 히로세 요시오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 권원 법리와 관련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보다 먼저 1900년에 칙령을 선포해서 자국 영토로 편입조치를 강구하고 있고(‘실효적 선점’ 주장), 그에 비해서 일본정부는 1905년(메이지 38년)에 비로소 독도에 대한 일본령 편입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히로세 요시오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국제법을 앞세운 법리적 왜곡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독도주권 침탈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47)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2쪽.

48)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2쪽.

49)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2쪽.

히로세 요시오는 당사국간 해당 영역의 영유에 대해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점유’라고 인정되는 국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영토주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과 관련하여 양자의 간접적인 ‘군사적 지배력’에 입각한 상대적인 권력관계와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의 결정에서 평가상 중시되는 것이 당시의 국제법 법리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었는가의 문제로 보고 있다(Minquiers and Ecrehos Case, 1953).⁵⁰⁾

또한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¹⁾. 이렇게 보면 영토편입조치의 선행국인 대한제국의 ‘실효적 점유’는 일시적, 경과적인 사실로서는 인정되지만,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critical date 결정상에서의 우위성).

특히 독도가 무인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서 자체에 대한 실제상의 행정적 조치(예를 들면 경비역의 상주 등)의 존재 여부보다도 배후의 국가적 정치·군사력의 존재 여부라는 권력관계가 주권관할권의 행사 상황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해라고 주장한다.⁵²⁾

50)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3쪽.

51)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3, 302쪽;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Norway v. Denmark), PCIJ(1933); Minquiers and Ecrehos(France v. United Kingdom), ICJ(1953); The Island of Palmas case(Netherlands and U.S.), 2 RIAA 829 참조. 太壽堂鼎(1977), 「領土問題 - 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の歸屬」, 『ジュリス』, 第647号, 59쪽.

52)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3, 302-303쪽, 메이지기에 들어 일본은 1870년대부터 조선 진출 계획(식민지화정책)을 군사력을 배경으로 전개했다. 즉 1875년에는 강화도사건을 일으켜서 1876년 한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을 대한제국 정부와 체결하고, 개국을 강요했다. 페리 포함(砲艦) 외교를 반면교사로 한 메이지 정부의 대한(對韓) 정책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일본의 압력에 굴하는 형태로 대한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발언력은 급속히 감퇴되었다.

더하여 분쟁을 발생시키면서도 1904년-05년의 시기(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시기)에 소규모라도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이 섬에 대한 일본(메이지) 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⁵³⁾

요컨대 히로세 요시오가 주장하는 ‘독도영유론’의 토대인 선점 법리의 핵심요소인 실효적 점유의 요건으로서 첫째,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관계의 승인, 둘째, 국력을 배경으로 한 최종적인 법적 효과의 귀속, 셋째, 일본의 영역편입조치에 대한 조선의 묵인 등을 통해 국제법상 본원적 권원 취득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히로세 요시오의 권원론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전형일 뿐만 아니라⁵⁴⁾ 1910년 한일병합을 건인한 불법적인 팽창주의의 시작에 다름아닌 것으로⁵⁵⁾ 국제법상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점령의 방식으로 형성된 선점과 관련하여, 실효적 점유라는 이름으로 상대적 우위성의 힘을 행사함으로써 약소국의 확립된 권원을 배척하고 강자의 권력 확립을 정당화하여 영토권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아울러, 대한제국의 묵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종래 제국주의국가들이 후진국의 영토를 취득할 때 법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동원하던 자발적 동의라는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동意的 의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로부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 포고에 대해서 효과적인 항의는 외교적·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히로세 요시오의 서술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제식민주의의 침략과 폭력적 역사인식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53)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3쪽.

54) Jon M. Van Dyke(2007),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 p. 179.

55) Jon M. Van Dyke(2009), “Disputes over islands and maritime boundaries in east asia,” *Maritime Boundary Disputes, Settlement Processes, and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p. 46-47.

56) 이한기(1969), 앞의 책, 135-136쪽.

터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⁵⁷⁾

4. 국제법사관의 국제법적 권원의 문제점 검토

4.1. 히로세 요시오의 ‘비식민지화 법리론’의 문제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는 지금까지 국제법적 논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국제법사관에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의 개념을 동원하여 한일병합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제기하는 주장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히로세 요시오의 주장의 본질은 국제법상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론(non-colonization)을 전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화에 더하여 이를 독도침탈과 분리해 국제법 권원상 무주지 선점 법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그 이전을 식민지화 시대, 그 이후를 비식민지화 시대라 규정한 다음 비식민지화의 법리에 따라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도입된 일본 등 후발식민국가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에 대한 합법화와 동시에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독도영유권의 문제는 실효적 점유, 간접적인 군사적 지배력에 입각한 상대적인 권력관계, 해당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 등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제법사관에 입각한 히로세 요시오의 “비식민지화 법리론”은

57) 이한기(1969), 앞의 책, 135쪽.

일본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제 식민지화 활동에 의한 일본의 실효적 점유 행위로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유효한 국제법 법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데에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해 간 시기의 국제법은 국가실행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가 주류였던 19세기의 국제법과 달리,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구미의 국제법에도 법의 규범성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던 지점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899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는 전시(戰時) 군대의 행동을 제한하는 「육전에서의 법규와 관례에 관한 협약」을 성립시켰다. 협약의 전문을 작성한 러시아의 법학자 Fyodor F. Martens⁵⁸⁾는 국제법의 미성숙에 따른 법규의 미비를 전제로 인해 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군사령관의 자의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 및 교전자는 “의연히 문명국간 존립하는 관습, 인도의 법칙 및 공공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른 국제법 원칙의 보호 및 지배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누른베르그 국제재판에서 실제 인용됨으로써 국제관습법으로 규범화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⁵⁹⁾

58) 사사가와 노리가츠(2009), 「하버드초안이 받아들인 그로티우스와 마르텐스-대표자에 대한 조약강제 무효법리의 특징을 알리기 위하여-」, 『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615-656쪽 참조.

59)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스의 전쟁범죄를 심판한 누른베르크 재판은 종래의 국제인도법 위반인 ‘통상의 전쟁범죄’이외에 새롭게 ‘평화에 대한 죄’를 규정하자 변호인측은 법의 불소급주의의 입장에서 ‘당시의 국제법’이 아니라 사후법으로 범죄의 범주를 만들어 재판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마르텐스 조항을 인용하여 “그것은 고결한 선언 이상의 것”으로 전쟁법의 특정한 조항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사례에 적용되어야 할 법적인 판단기준을 만들어낸 일반규정이라고 하여 변호인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 전법재판에 관한 법적 보고서(1949)의 편자 라이트 경도 마르텐스 조항을 “짧은 문장으로 전쟁법과 실제, 모든 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했다” 것이라 평가하여 전쟁법에 그치지 않는 마르텐스 조항의 보편적 의의를 강조했다(Throdor Meron(2000), "The Martens Claus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i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4, No. 1., pp. 78-89). ‘당시의 국제법’에도 마르텐스 조항과 같이 규범주의적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대전을

4.2. 을사늑약에 대한 강박의 효력

히로세 요시오는 을사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으로 병합시키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화’ 행위였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당시의 ‘식민지제도’라는 국제법의 전개 과정속에 위치시켜서 합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을사늑약의 효력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국제연맹규약, 부전조약, 국제연합헌장 등에 의해 무력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늘날에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도 무효사유로 조약법협약에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 제기하는 을사늑약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국가와 국가대표에 가해진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 유효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법리를 검토하기로 한다.⁶⁰⁾

4.2.1 백충현의 국가·대표 강박구분설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의 효력은 당시의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시제법 원칙의 전제하에 전통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⁶¹⁾ 따라서 1905년 을사늑약은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하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평화조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점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조약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일본 학자들이 강조

거치면서 오히려 이러한 측면이 발전해 갔다. ‘당시의 국제법’을 보는 관점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실증주의라는 퇴행적인 면이 아니라 이러한 발전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평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荒井信一(2000), “歴史における合法論、不法論を考ふる,” 『世界』 제681호, 270-284쪽.

60) 도시환(2015),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125-149쪽.

61) 백충현(2003),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233쪽.

하는 강대국들의 승인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절대무효’인 조약이 제3국의 승인으로 법적 유효성 여부가 변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제3국의 승인은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못한다.

4.2.2 사가가와 노리가츠(笹川紀勝)의 국가·대표 강박입증설

국가와 국가대표자에 대한 두 가지 강제는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으나 각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논거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에서는 개별적으로 폭력이나 강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에 대한 강제에서는 무력이나 협박을 행하는 당사국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혹은 ‘권리보장’의 증명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⁶²⁾

전통국제법 시대에 대표자에 대한 강제의 관점에서 을사늑약이 1904년 예비적 조약으로서 한일의정서 제3조상의 독립과 영토 보존에 대한 위반에 더하여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통해서 한국을 강제했다⁶³⁾는 지적과 더불어 을사늑약 무효론의 법리는 주권국가 대표자의 의사의 자유에 의거하고, 동시에 모든 국가의 주권적 평등성으로부터 정당하게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나,⁶⁴⁾ 일본 국제법학자들은 을사늑약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⁶⁵⁾

62) 사가가와 노리가츠(2001), 「일한의 법적 ‘대화’를 목표로하며-제2차일한협약> 강제 문제를 보는 관점-」,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144쪽.

63) Francis Rey,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ée," *Revue Général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XIII, 1906, pp. 40-58; 최종고·한창희 역(1986),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 『법학』 제27권 2.3호, 188-201쪽.

64) 笹川紀勝(2009), 위의 책, 604-605쪽.

65) 레이의 무효설을 비판한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어떤 의미에서 강제는 모두 이런 종류의 조약의 성립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침해받는 일은 없다.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사정의 강제와 육체의 강제를 구별하여 후자만이 무효일 뿐이며 1905년 11월 17일 건에 한국 대신을 협박하여 조인하지 않는 자는 구금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을사늑약의 유효설을 주장했다. 有賀長雄(1906), 『保護國論』, (東京, 早稲田大学出版部), 205-208쪽.

4.2.3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의 국가·대표 강박일체설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이 법리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으나, 국가는 단체인격이므로 국가에 대한 강제라고 할 경우 구체적으로 국가원수나 대신이라고 하는 직무상의 기관에 강제가 가해졌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원인으로 승인되어 있던 국가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제와 구별의 문제는 실제로 용이하지 않으며, 을사늑약이 바로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 사례라는 견해이다.⁶⁶⁾ 그러나 권한있는 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완전한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박이 국가 자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 또는 국가의 의사 자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그 결과 강박을 당한 국가가 자신보다 강력한 국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그 조약은 유효하다는 반론이 있으며,⁶⁷⁾ 따라서 1905년 을사늑약은 권한있는 기관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완전한 자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4.2.4 소결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론을 전제로,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화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은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35년 UN (ILC)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된 하버드법대가 기초한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사례로서, 1773년 폴란드 의회 포위, 1905년 을사늑약, 1915년 미국의 하이티 국회 포위의 3개 사례 제시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⁶⁸⁾ 한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

66) 坂元茂樹 (1995), 앞의 논문, 342쪽.

67) Fernand de Visser(1931), "Des traités imposés par la violence," *Recueil de droit international et législation comparée*, p.515.

68) Harvard Law School(1935), "Draft convention, with comment, prepared by the Research

에서 대한제국이 국가간 외교행위인 조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약체결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언급하면서도 강제에 의한 조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조약체결의 자유가 강제된 상황은 국가의 합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강박에 의한 조약은 유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20세기 초반의 법실증주의적 사고하에서 국제법적 근거조차 없음에도 절대주의가 풍미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강대국의 일방적 주장을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던 당시 학자들의 오류에 다름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⁹⁾

4.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식민지화와 독도영유권

히로세 요시오가 제기한 국제법사관의 궁극적인 의도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론을 전제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화에 더하여 이를 독도 침탈과 분리한 다음 국제법 권원상 무주지 선점 법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앞서 분석하였다. 그런데 히로세 요시오는 결론부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식민지화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국의 독도주권을 승인할 것을 주장하고

in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ith supplement, Vol. 29, p. 1157; UN Doc. A/5509, REPORT OF THE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overing the work of its fifteenth session, 6 May - 12 July 1963, Draft articles on the law of treaties, Para. 17. Article 35; UN Doc.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 II Documents of the fifteenth session including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p. 197; UN Doc. 1902(XVIII),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EIGHTEEN SESSION, 1258th plenary meeting, 18 November 1963.

69) 20세기 초반 보편적 국제법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민제국의 강변이나 소속국적 학자들의 견해만으로 국가에 대한 강제는 유효라는 논리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재호(2010),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29호, 258-259쪽.

있다. 그 이유로 히로세 요시오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합헌장하에서⁷⁰⁾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확립된 비식민지화 원칙’과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확립(유엔헌장 1조 2항, 11, 12, 13장, 그리고 1960년의 식민지독립부여선언을 거쳐)에 의해 그러한 후발식민국가가 행한 국제연맹시대(戰間期)에서의 새로운 식민지화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급적 무효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¹⁾

일견 일제식민지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식민지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연합헌장하에 형성된 비식민지화의 법리 효과는 원초적 무효가 아닌 유효성을 인정한 위에 청산의 효과에 한정한다는 것으로, 한일병합에 이르는 메이지기의 일련의 한일협약의 국제법상의 효과는 이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⁷²⁾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독도는 19세기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까지 유효한 국제법리였던 강대국 일본의 식민지화 활동에 의해 일본의 실효적 점유 행위의 결과가 법적으로 긍정되어 일본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새로운 비식민지화 법리의 전면적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⁷³⁾

히로세 요시오의 주장을 검토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사관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히로세 요시오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이후 한국 정부의 이승만 라인의 설정(1952년), 경비병 상주(1954년) 등의 ‘실효적 점유’의 축적과 일본의 ICJ제소 제의에 대한 불응 등의 상황을 전제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비식민지화 조치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대만과 사할린을 원소유국에게 반환한 연장선상에서

70) UN헌장과 영토 불확대 원칙과 관련해서는, 廣瀬善男(2006), 『戰後日本の再構築』, 信山社, 12-19쪽 참조.

71) 廣瀬善男(2007), 위의 논문. 294쪽.

72) 廣瀬善男(2007), 위의 논문. 288쪽.

73) 廣瀬善男(2007), 위의 논문. 295쪽.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⁴⁾ 그러나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의 대외팽창과 제국형성의 출발이자 영토 도취 문제의 기점으로 보는 청일전쟁을 ‘합법’이라는 전제로 제기하는 주장 자체의 타당성이 의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히로세 요시오의 주장은 한일 간의 우호적 관계를 생각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를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현재의 잠정수역을 계속 인정함과 아울러 주변해역의 공동자원 관할권의 설정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일종의 ‘독도공유론’까지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에 입각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화에 더하여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국제법 권원상 무주지 선점 법리의 합법화에서 변경된 주장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을사늑약’, ‘한일병합’ 모두 합법이라는 것이며,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독도영유론’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일간 우호관계라는 명목하에 독도공유론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토대인 국제법적 권원 연구의 계보상 귀결점에 위치한 히로세 요시오가 제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독도영유론’의 근거로서의 선점 법리와 핵심요소로서의 실효적 점유 요건으로, 군사적 지배력의 상대적인 권력관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 유효한 항의가 배제된 실효적 관리라는 것은⁷⁵⁾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에 의한 일제식민주의의 본질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이 제시한 ‘을사늑약 유효론’,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무주지 선점의 권원에 입각한 ‘독도영유론’이라는 것은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왜곡의 한계를 대체하는 국제법적 권원의 법리적 왜곡에 다름아닌 것이다.

74) 広瀬善男(2007), 위의 논문, 294-295쪽.

75) 広瀬善男(2007), 앞의 논문, 293쪽.

5. 맺음말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대한 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인 올해 일본은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영토인식을 보여주는 역사자료를 배제한 채 1905년 독도침탈 이후 행정관할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권원 강화정책에 입각한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인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범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은 국제법상 불완전한 권원인 17세기 일본의 독도 발견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현실적인 이용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이나, 1693년 안용복 피납 이래 시작된 울릉도쟁계 이후, 에도막부의 1696년 도해금지령과 이를 위반한 1837년 하치에몽의 처형 및 메이지정부 외무성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를 전제로 한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해 역사적 권원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반증

하고 있다.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은 무주지인 독도에 대한 1905년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입각한 국가의사 표시, 현실적 점유, 효과적 지배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완성된 독도의 권원에 대한 불법 침탈이자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의 국내법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은 1905년 영토편입조치와 국가권능의 계속된 발현은 17세기 국제법에도 거의 합치되도록 유효하게 설정된 일본의 권원을 현대적인 요청에 따라 충분히 대체하였다는 주장이나,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국제법상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관련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은 식민지배를 받은 한국의 최초 약탈당한 영토에 대해 한일간 새로운 조약을 통해 자연보호구역화한 후 국제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나,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침탈에는 묵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합법화에 더하여 이를 독도침탈과 분리하여 국제법 권원상 무주지 선점 법리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한다. 셋째, 일본이 영역평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과 독도영유론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전형일 뿐만 아니라 1910년 한일병합을 전인한 불법적인 팽창주의의 시작에 다름아닌 것으로 국제법상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점령의 방식으로 형성된 선점과 관련하여, 실효적 점유라는 이름으로 상대적 우위성의 힘을 행사함으로써 약소국의 확립된 권원을 배척하고 강자의 권력 확립을 정당화하여 영토권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제국의 묵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종래 제국주의국가들이 후진국의 영토를 취득할 때 법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동원하던 자발적 동의라는 형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나, 동의의 의무란 힘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로부터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더하여 일본의 독도주권 침탈 당시의 국제법도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과 을사늑약과 관련하여 1935년 UN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하버드 초안’의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따른 무효조약의 대표사례로 제시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권원 관련 계보의 주장들은 카이로 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이 제시하는 ‘을사늑약 유효론’, ‘한일병합 합법론’을 전제로 이와 분리를 시도한 ‘독도영유론’이라는

것은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왜곡의 한계를 대체하는 국제법적 권원의 법리적 왜곡이자, 역설적으로 실체를 은폐해온 일제식민주의의 총체적인 합법화 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배 합법론’을 전제로 한 일본 국제법사관의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법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순(2015), 『국제법론』 제18판, 삼영사.
- 도시환(2010),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강제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국제법적 조 명」,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4호.
- 도시환(2015), 「을사늑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4호.
- 도시환(2018), 「한국의 독도주권과 일제식민주의의 주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 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 박배근(200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 주장에 관한 일고」, 『국제법학회논 총』 제50집 제3호.
- 박현진(2017), 『독도영토주권』, 경인문화사.
- 백충현(2003),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 사사카와 노리카즈(2001), 「일한의 법적 ‘대화’를 목표로하며-〈제2차일한협약〉 강제문 제를 보는 관점-」,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태학사.
- 사사카와 노리카즈(2009), 「하버드초안이 받아들인 그로티우스와 마르텐스-대표 자에 대한 조약강제 무효법리의 특징을 알리기 위하여-」, 『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 성재호(2010),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 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29호.
- 아라이 신이치(2009), 「일본의 대한외교와 국제법 실천」, 『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 와다 하루키(2013),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대립에서 화해 로』, 사계절.
- 이계황(2017),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의 울릉도·독도 도해사건」, 『학림』 제39집.
-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영토취득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한기(2007),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 최종고·한창희 역(1986),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 『법학』 제27권 2·3호.
- 최철영(2017), 「1905년 일본정부 ‘각의 결정’ 등의 국제법적 검토」, 『근대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자료와 지도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 학술회 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 호사카 유지(2009), 「한일협약과 고종의 밀서로 본 독도영유권」, 『한일군사문화연 구』 제8호.

皆川洸(1963), 「竹島紛争と国際判例」, 『国際法学の諸問題－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 慶應通信.

皆川洸(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続-日韓条約の批判的検討」, 『法律時報』 37(10).

広瀬善男(2006), 『戦後日本の再構築』, 信山社.

広瀬善男(2007), 「国際法からみた日韓併合と竹島の領有権」, 『明治学院大学法学研究』 81.

国立公文書館(1877.3),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何い」, 『公文録』.

堀和生(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4號.

芹田健太郎(2006), 『日本の国境』, 中央公論社.

名嘉憲夫(2013), 『領土問題から国境劃定問題へ』, 明石書店.

山辺健太郎(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コリア評論』 第7巻 第2号.

松隈清(1962), 「国際法より観た李ライン問題と竹島の帰属」, 『八幡大学論集』 第12巻 第2号.

植田捷雄(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叢』 第54巻 第1号.

有賀長雄(1906), 『保護國論』, (東京, 早稲田大学出版部).

入江啓四郎(1959), 「竹島の領有問題」, 『領土・基地』, 三一書房.

中野徹也(2012),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第61巻 第5号.

塚本孝(2011), 「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竹島をめぐる」, 『東アジア近代史』 第14号.

太壽堂鼎(1966), 「竹島紛争」, 『国際法外交雑誌』 第64巻 第4・5号.

太壽堂鼎(1977), 「領土問題-北方領土・竹島・尖閣諸島の歸屬」, 『ジュリス』 第647号.

太壽堂鼎(1998), 『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坂元茂樹(1995), 「日韓保護条約の効力-強制による条約の観点から」, 『法学論集』 (関西大学, 第44巻 第四・五合併号).

荒井信一(2000), “歴史における合法論、不法論を考える,” 『世界』 第681号.

Brownlie, Ian,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de Visscher, Fernand(1931), “Des traités imposés par la violence,” *Recueil de droit international et legislation comparée*.

Doh, See-hwan(2017),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okdo's Sovereignty,”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4.

- Rey, Francis(1906),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ée," *Revue Général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XIII, 1906.
- Harvard Law School(1935), "Draft convention, with comment, prepared by the Research in Interna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ith supplement, Vol. 29.
- Meron, Throdor(2000), "The Martens Claus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ctates of Public Conscienc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4, No. 1.
- Van Dyke, Jon M.(2007),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8.
- Van Dyke, Jon M.(2009), "Disputes over islands and maritime boundaries in east asia," *Maritime Boundary Disputes, Settlement Processes, and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case(Norway v. Denmark), PCIJ, Series A/B, No. 53(5 April, 1933).
- Minquiers and Ecrehos(France v. United Kingdom), ICJ(1953)
- Sovereignty over Certain Frontier Land(Belgium v. 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 1959.
- The Island of Palmas case(Netherlands and U.S.), 4 April 1928, (1928) 2 RIAA 829, (1928) 22 AJIL 867.
- Western Sahara, Advisory Opinion, ICJ Report, 1975.
- UN Doc. 1902(XVIII),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DURING ITS EIGHTEEN SESSION, 1258th plenary meeting, 18 November 1963.
- UN Doc. A/5509, REPORT OF THE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overing the work of its fifteenth session, 6 May - 12 July 1963.
- UN Doc.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63, Vol. II, Documents of the fifteenth session including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to the General Assembly.

<Abstract>

A Study on Dokdo's Sovereignty and Genealogy of Titles in International Law

- Focus on the international legal titles in Japan's claim to Dokdo -

Doh, See-Hwan

This year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Empire's declar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n Dokdo under Edict No. 41, and is a historic year that overlaps the 115 years of the forced protectorate Treaty of Korea by Japan and 110 years of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Dakeshima Day through Shimane Prefecture in 2005 and commemorated the history of the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in Korea,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which was reopened in 2020, is notable, in that it emphasizes legal control of Japan and illegal occupation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1905. It should be reviewed again on the historical task given to us today, since the history of Japan's continued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which is the basi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line is still ongoing.

Despite Dokdo being a symbol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is inherent territory, Japan's provocations against Dokdo continue.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Edo Shogunate's Prohibition on the crossing the seas of 1696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 1877. Nevertheless, there is a seriousness of the problem in that it not only intentionally conceals it but also converts it into a polic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legal titles. The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a concept that includes all forms of evidence and sources of rights that can establish the existence of rights beyond documentary evidence in relation to territorial sovereignty. Japan's claim to Dokdo itself is an illegal invasion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because it cannot be established a title lacking legitimate and legitimate rights.

In this premise, as a policy basis for Japan's claim to Dokdo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I traced the genealogy of the research on international legal titles and examined the legal problems behind her claims. The genealogy of claim of title to Dokdo in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s 'the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 'the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 theory of subst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the theory of common occupancy title' by Gentaro Serita and at the peak of the genealogy of the title of Dokdo's sovereignty, there is 'the theory of effecti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by Yoshio Hirose.

Yoshio Hirose, the epitome of Japan's genealogy of legal scholars based on international law on Dokdo, analyzes the issue of colonial rule and Dokdo sovereignty by differentiating of 'colonization' and 'non-colonization' with the context of World War I. Noncolonialization is the formation a new colony or the forced protection of foreign country or an illegal incorporation of territory is completely illegal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League Law. However, the essence of, concerning Noncolonialization is a claim of legality concerning Japan's formation of a Protection and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prior to World War I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egregate the issue of Dokdo sovereignty to secure Japan's title as follows.

First, Japan took measures to incorporate Dokdo in 1905 after the declaration of Dokdo sovereignty of the Korean Empire. Japan's validity of the claim of sovereignty follow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ational activities, power relations based on comparative military strengths of the two were generally approved by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Second, 'effective occupancy' refers to the social occupation or control over the area rather than the actual use of land or physical occupation of a territory, and the situation of Japanese occupation attributable to the final legal effect against the background of national power. Third, the small-scale Japanese fishing was carried out in 1904-05 when Japan took the measures to incorporate the territory, and the fact Joseon did not effectively protest or take additional measures or exclusion measures from the Joseon side served as evidenc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effective management of Dokdo.

However,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becoming more normative by appealing to universal international norms rather than Japanese legal positivism, in the process of codification of the treaty law convention of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1963.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treaty of 1905, which is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invalid treaty due to the coercion of a representative of a state in the 'Harvard draft in 1935,' is

overlooked. Moreover, Japan's claims to Dokdo exposed the the fact that Japan had occupied it by violence and out of greed. In short, the "theory of Dokdo's title" by on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on the premise of "legitimate theory of colonial rule" is a serious legal violation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erefore, Japan ought to fulfill - her genuin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wards building a peaceful glob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Dokdo's sovereignty, International legal titles,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Japanese colonialism, Universal International Norms, Japanese legal positivism, legitimate theory of colonial rule, Cairo Declaration, Peaceful community,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이 논문은 2020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일본정부의 안용복 공적 날조에 대한 비판

-외무성과 내각관방부의 '안용복 폼페이'를 중심으로-*

최 장 근*

〈목 차〉

1. 머리말
2. 안용복 공적의 실체
3. 일본정부의 안용복 공적에 대한 날조
4. 일본정부의 안용복 진술에 대한 신뢰성 부정
5. '죽도도해금지령'과 안용복과의 관계성 날조
6.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폼페이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돛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

*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교내연구과제(20200143), 2020년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교수 / nihonbu@daegu.ac.kr

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주제어: 울릉도 영토분쟁, 독도 영토분쟁, 대마도, 도해금지령, 안용복

1. 머리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논쟁은 역사적으로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1693-1696년 안용복 월경사건으로 1차도일로 1696년 막부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도록 했고, 2차도일로 1697년 정식 외교 루터로 대마도가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이 러시아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1905년 전쟁 중에 국제법을 가장하여 독도를 몰래 침탈하기 위해 함부로 무주지라고 하여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한국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1900년 칙령41호로 울도(鬱島)군을 설치하여 행정적으로 독도를 관할 통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동시에 독도 편입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다. 세 번째는, 일제 36년간의 불법 식민지 통치를 거쳐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하여 1951년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친일파 미국문성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이용하여 독도를 탈취하려고 했다, 이때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영연방국가의 반대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넘어가지 못했다. 그것은 독도의 영유권은 1696년 안용복 월경사건 때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사실, 1877년 메이지정부가 이를 계승하여 태정관지령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 1946년 1월 연합국군 최고사령부 사령관이 S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무성의 정치고문인 시볼

드의 친일적인 정치적 행위 때문에 영미중심의 연합국은 독도 영유권을 명확히 처리하지 않았다. 이승만대통령이 연합국의 조치에 대하여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바탕으로 평화선 선언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날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정부는 안용복 월경사건으로 막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무시하고, 1905년 독도를 도취하려고 했던 시마네현 고시40호의 침략행위를 영토취득 행위라고 사실을 왜곡한 친일파 시보들의 정치적 행위를 바탕으로 1965년 한일협정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안용복의 1차도일의 성과와 2차도일의 성과에 대해 논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안용복의 독도 영유권 활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용복의 1차도일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 어부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2차도일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¹⁾ 안용복의 2차도일로 재차 막부에 고발당함으로써 대마도가 최종적으로 막부의 도해금지령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공문서를 조선정부에 보냈던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안용복 공적에 대한 일본정부의 날조 사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안용복과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안용복사건에 관한 선행연구²⁾를 바탕으

1) 『竹島紀事』 元祿 9年(1696) 6月 23日

2) 송휘영,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 일본에서의 행적」, 『일본문화학보』 第72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17.02, pp. 29-42. 김화경, 「안용복의 정문에 대한 연구」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2012, 송휘영,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와 독도 영유권』 『日本思想』 한국일본사상학회, 2019. 권혁성, 『長生竹島記』가 전하는 竹島丸선상의 문답문—안용복의 일본도해 경험에 관하여— 『日本語教育』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8, 남상권, 박영식, 「안용복 형상화에 대한 구전적 상상력」, 『독도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 권오엽편역, 『죽도기사(竹島紀事)』 한국학술정보, 2013, 최영성, 『조선의 밀사 안용복』 문사철, 2019, 손승철, 「17세기말 안용복 사건을 통해 본 조일간의 해륙경계

로 재구성하여 본고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논고를 정리한 것이다.

2. 안용복 공적의 실체

2.1. 1차도일의 공적

울릉도에는 고대의 신라, 고려시대에 사람이 살았고, 조선시대에는 쇠퇴 정책으로 거주민을 쇠퇴하여 정책적으로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하였다. 이때까지의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평온한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사람들이 울릉도가 비워진 사실을 알고 대나무가 많은 섬이라고 하여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렀고, 급기야 1614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동래부에 사신을 보내어, “경상도와 강원도 중간 해상에 있는 울릉도는 일본영토 같으므로 조사하겠다.”라고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다.³⁾ 이에 대해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불법 침입하면 적으로 단정하여 쫓아내겠다.”⁴⁾고 경고한 후, 대마도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은 잠잠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호키주(伯耆州) 출신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의 어부는 조선조정 몰래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1625년부터 70여 년간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왕래하고 있었다.⁵⁾ 그러다가 1693년 봄 울릉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제42집, 한일관계사학회, 2012.08, pp.229-265. 손승철 「1696년 安龍福의 제2차 渡日 공술자료」, 『한일관계사 자료집』 24집, 경인문화사, 2006.4, pp.251-300.

3) “6월 對馬島主가 울릉도를 의죽도(磯竹島)라 칭하며 섬의 지형을 살피고자 하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청하였기에 이를 거부함.”(1614년 (3947, 甲寅) 조선 광해군 6), 「울릉도, 독도 연표」, <http://blog.daum.net/hwccafe/16488690>(검색일 : 2020년 10월 15일)

4) 상동

5) 内藤正中, 「竹島渡海免許の不法性」, 『史的檢証 独島・竹島』 岩波書店, pp.135-141. 권오엽, 『dot토리번의 태도』, 『독도와 안용복』 충남대학교출판부, pp.315-319. 울릉도 도해면허는 울릉도의 영토 취득의 요건과 무관함.

도에서 안용복 일행과 조우하여 어부들 간에 영유권 다툼이 발생하고 급기야 양국 간의 외교분쟁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측 고문헌에 의하면 1692년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조선인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⁶⁾ 이듬해 1693년 일본어부(大谷家)들이 총을 구입하여 울릉도에 도항했는데,⁷⁾ 그때 안용복 일행을 만났다. 안용복 일행은 4척의 배로 40여명이 울릉도에 들어왔다.⁸⁾ 무리들 중에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은 술로 일본인들에게 유인당하여 총칼의 위협으로 일본의 오키섬에 납치당했다.⁹⁾ 안용복은 오키(隱岐)섬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호키주 태수에게 인도되었다. 호키주(伯耆州) 태수는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안용복 일행의 도일 사실을 막부에 보고하였다. 1695년 12월 막부는 돗토리번(鳥取藩)으로부터 보고받은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독도 도해를 금지시켰다.¹⁰⁾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정식 외교루트는 대마도였다. 그래서 안용복은 막부의 지시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호키주 태수의 서계를 받아들고 일본측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동래로의 귀환을 위해 나가사키를 거쳐 대마도에 도착했다.¹¹⁾ 이처럼 안용복의 제1차 도일은 비정식 외교루트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

6) 박병섭,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해양수산개발원 2007.12, p.7.(『竹島之書附』「竹島之書附三通、その二」; 『竹島考』).

7) 독도사료연구회편, 「도해준비의 물산」, 『竹島考(上下)』 경상북도, 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성과물1, 2010, pp.105-124.

8) 「죽도일건발서」,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ud.k_0001_0010(검색일 : 2020년10월15일)

9) 독도사료연구회편, 「도해준비의 물산」, 『竹島考(上下)』 경상북도, 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성과물1, 2010, pp.105-124.

10) 「일본 스스로 부정한 독도 영유권」(돗토리번 답변서), https://dokdo.mofa.go.kr/kor/pds/part05_view01.jsp(검색일 : 2020년10월15일)

11) 신용하, 「제6장 안용복(安龍福)의 활동과 조선 조정의 대응」, 『월간조선 뉴스룸』(독도, 130문 130답), 2011.6,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6100070&ctcd=N>(검색일 : 2020년10월15일)

임을 인정받았다.¹²⁾ 그런데, 조선과 정식외교를 담당하고 있던 대마도는 여전히 울릉도에 대한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울릉도를 갈취하기 위해 비정식 외교루터로 울릉도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은 안용복이 지참한 막부의 지시에 의한 호키주 태수의 서계를 빼앗고 대마도에 억류시켰다.¹³⁾ 대마도는 조선조정에 대해 안용복을 볼모로 일본령 “다케시마(竹島)” 표류자를 송환한다고 하여 “다케시마(울릉도의 일본명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¹⁴⁾ 이에 대응하여 조선조정은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을 피하면서 울릉도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령은 “다케시마”이지만, 안용복은 조선령 울릉도에 표류한 것이라고 했다.¹⁵⁾ 대마도는 울릉도가 바로 일본령 “다케시마”라고 하여 조선조정이 울릉도 영유권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¹⁶⁾ 대마도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조정과 대마도 사이에 영유권 논란은 좀처럼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1차도일로 인한 안용복의 업적은 일본어부 오야, 무라카와 가문이 3대에 걸쳐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항하여 울릉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간주하고 있던 것¹⁷⁾을 한일 양국의 정부들 간에 영토협상을 하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12) 상동

13) 상동

14) 「접위관·동래(동래부사)의 회답」, 『울릉도·독도 일본사료집』,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ud.k_0001_0030(검색일 : 2020년10월16일)

15) 「참판사(參判使)의 구상(口上)」, http://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ud.k_0001_0040(검색일 : 2020년10월17일)

16) 「참판사(參判使)의 구상(口上)」, 상동

17) 内藤正中、「竹島渡海免許の不法性」, 『史的檢証獨島·竹島』岩波書店, pp.135-141. 도해면허는 불법임.

2.2. 2차도일의 공적

안용복은 대마도 억류 9개월 만에 동래로 귀국 조치되었다. 안용복은 비변사의 조사를 받고 불법 월경죄로 2년간 옥살이를 했다. 안용복은 정식 외교 루터인 대마도가 여전히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¹⁸⁾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마도의 행태를 막부에 고발하기 위해 1696년 6월 안용복은 관복을 입고 “조울양도감세장 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驕)”라는 직함을 단 깃발을 달고 뇌헌 등 5명의 승려, 글을 잘하는 이인성과 함께 11명이 울릉도에 들어가 일본인들을 조우하고,¹⁹⁾ 다음날 독도에서도 이들을 만났다. 안용복은 일본인들이 “송도(松島)”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조선의 “자산도(子山島)라고 꾸짖고 이들을 뒤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원래 안용복은 어부이었지만, 왜관을 드나드는 통역관으로서 일본어에 능하였고, 전선(戰船)에서 노를 젓는 일을 맡은 경상좌수영 소속 능로군이였다.²⁰⁾ 흥국사 주지 뇌헌은 전라좌수영 소속의 승장이었고, 나머지 4명의 승려들도 모두 의승수군이였다.²¹⁾ 이처럼 안용복은 국가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도일하여 호키주 태수를 통해 막부에 대마도에 서계를 빼앗긴 사실과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주장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비정식 외교루터로 일본행을 감행했던 것이다. 안용복 일행은 호키주 태수를 만나 “안용복, 뇌헌, 김가과 3인을 재번인(在番人)이 입회했을 때, 소지했던 8매로 한 조선팔도지도를 내보이며, 팔도의 이름을 조선말

18) 최영성, 「안용복 제2차 도일의 성격」, 『조선밀사 안용복』 도서출판 문사철, 2019, pp.56-97. 권오엽, 「대마도주의 간청」, 『문헌상의 독도』 박문사, p.406.

19) “배 13척에 사람은 1척에 9인, 10인, 11인, 12-3인, 15인 정도씩 타고 죽도까지 갔는데, 사람 수를 물으니 전혀 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https://blog.naver.com/cms1530/10015417351>(검색일 : 2020년10월15일)

20) 이태우, 「1696년 안용복 뇌헌 일행의 도일과 의승수군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독도연구』 제28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0.6, pp.139-168.

21) 상동.

로 썼다. 3인 가운데 안용복을 통사(通詞)로 하여 사정을 문답했습니다.”²²⁾ “안용복이 말하기를 죽도(竹嶋)를 대나무섬이라고 하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내의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²³⁾ 이것을 대나무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팔도의 지도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송도(松嶋)는 같은 강원도 내의 자산(子山)이라는 섬입니다. 이것을 송도(松嶋)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팔도의 지도에 쓰여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이라고 하는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²⁴⁾라는 지도를 보여주며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호키주 태수는 이미 막부가 1696년 1월 정식으로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도항을 금지시킨 사실을 언급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확인서를 주었다. 안용복은 2차 도일에서 대마도주의 행태를 막부에 고발하였고,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대마도에 알렸다. 그렇지만 대마도는 그 사실을 조선에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대마도를 중재로 정식외교루터를 통한 조선조정과 막부간의 울릉도 영유권 담판도 이미 끝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안용복 일행은 막부의 지시에 따라 2개월가량 체재한 후, 호키주 태수로부터 대마도를 거쳐 정식외교루터로 귀국을 요청받았지만, 그것을 정중히 사양하고 1696년 8월 비정식외교루터로 강원도 양양으로 귀향하였다. 1696년 9월 안용복은 비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사헌부는 월경죄와 관직 사칭죄로 처형을 요청했다. 1697년 2월에 대마도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에도

22)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https://blog.naver.com/cms1530/10015417351>(검색일 : 2020년10월15일)

23) “竹嶋는 강원도 동래부에 속해 있고, 조선국왕의 어명을 받는 東萊府殿의 이름은 一方伯으로, 竹嶋를 지배하는 사람의 이름은 동래부사라고 합니다.”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https://blog.naver.com/cms1530/10015417351>(검색일 : 2020년10월15일)

24) “朝鮮之八道: 경기도, 강원도(이 도 가운데 竹嶋 松嶋가 있다),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상도”,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https://blog.naver.com/cms1530/10015417351>(검색일 : 2020년10월15일)

막부의 결정을 받았다. 영의정 유상운이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해결한 공적을 인정하여 처형을 반대해서 1697년 3월 안용복의 죄는 감형되어 유배형을 받고 1697년 4월 유배를 떠났다. 조선과 막부 사이에 정식외교 루터로 울릉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1699년의 일이었다.

안용복의 1차도일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안용복의 2차도일(1696년 5월-8월)은 막부를 통해 정식외교 루터인 대마도가 울릉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은 1차도일 때는 일본에 건너간 불법 월경죄로 곤장100대, 박어둔은 곤장80대를 맞고 2년간의 옥살이를 당했다.²⁶⁾ 2차도일 때는 불법 월경죄와 관직 사칭죄에 의해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영유권과 어업권을 확보한 공로자로 인정받아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숙종실록 등 조선왕조의 관찬문헌에 기록된 안용복 진술은 문화적 차이로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존재할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사실과 일치한다. 왕조시대에 죽을죄를 지은 죄인이 거짓말로 잘못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3. 일본정부의 안용복 공적에 대한 날조

3.1. 일본외무성의 안용복 공적의 날조

안용복이 1693년 1차 도일과 1696년 2차 도일로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항의하여 17세기 일본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답받았다. 만일 그때 안용복이 일본에 항의하

25) 최영성, 『안용복 제2차 도일의 성격』, 『조선밀사 안용복』 도서출판 문사철, 2019, pp.56-97. 권오엽, 「대마도주의 간청」, 『문헌상의 독도』 박문사, p.406.

26) 상동

지 않았다면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막부는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²⁷⁾에 안용복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2차 도일 때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면서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을 고발했다.²⁸⁾ 막부가 이미 돛토리번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이후였지만, 대마도에게 명하여 조선조정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한국영토임을 인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도록 했다.

이처럼 안용복 사건의 본질은 안용복의 활약으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안용복이 불법으로 월경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안용복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정된 것은 무효²⁹⁾가 아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말하는 “안용복이 조선의 대표가 아니었다.” “안용복이 관직을 사칭했다”라는 주장은 안용복의 공적을 폄훼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3.1.1 관직 사칭에 대해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①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의 도일(渡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즉, ‘동래부사 이세재가 왕에게 말하기를, 쓰시마의 사신(조선과 일본의 외교창구)이 지난해(1693년) 귀국인

27) 장순순, 「조선 후기 對馬藩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동북아역사논총』 제37호, p.190

28) 최영성,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격」 『독도연구』 2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6, pp.89-128. 유미림, 「안용복 밀사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도연구』 제2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12, pp.123-164.

29)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일본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검색일 : 2020년10월15일) 이하 인용문은 외무성 인식이다.

(안용복)이 진정서를 내려고 했는데,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去秋貴國人有單事出於朝令耶)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세재가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역관을 예도로 보내지, 무엇을 꺼려 우매한 어민을 보내겠는가(若有可弁送一訊於江戶 顧何所憚而乃送狂蠢浦民耶)’라고 말했다. 비변사는 ‘바람에 떠도는 어리석은 백성이 설령 뭔가 했더라도 조정이 알 바는 아니다(…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為 亦非朝家所知)’라고 말했다. 이렇게 쓰시마의 사신에게 말해도 되는지 묻자 왕이 이를 윤허했다(請以此言及館倭允之)(숙종 23년 정축 2월 을미조). “② 이건에 대해 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이 쓰시마 번주 앞으로 보낸 서한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에 전달되었습니다. ‘작년에 표착한 사람의 일입니다만. 바닷가 사람들은 배를 짓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으며, 큰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풍랑에 휩쓸려 월경하여 귀국에 도달합니다(昨年漂氓事濱海之人率以舟楫為業 颿風焱忽易及飄盪以至冒越重溟轉入貴國). …만약 진정서를 냈다면 참으로 그것은 무지망작의 죄에 해당합니다(…若其呈書誠有妄作之罪). 그래서 이미 법에 따라 유형에 처했습니다(故已施 幽殛之典以為懲戢之地).’” “③ 안용복이 타고 있던 배에는 ‘조선이 울릉도 두섬의 감세장 신하 안동지의 말(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驕)’라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또한 안용복은 ‘울릉도 우산도 두섬의 감세장(鬱陵于山兩島監稅將)’이라고 자신을 밝혔다고 하지만, 이 관명은 가공의 것이며 안용복 자신이 사칭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감세’나 ‘감세장’이라고 칭한 것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징세관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안용복은 우산도를 큰 섬으로서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① 동래부사가 쓰시마번으로부터 1693년 안용복의 1차 도일 때 안용복이 진정서를 내려고 한 것은 조선정부의 뜻인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외교는 역관을 보내어 하는 것이라 했고, 비변사는 어부들의 행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답한 것을 임금도 윤허하였다. 그래서 조선조정은 대마도번주에게 일본에 표류한 민간인 어부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내었던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형벌로 월경죄를 다스렸다고 했다. ② 안용복이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여 막부가 안용복에게 서계를 주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한다고 하여 안용복의 서계를 빼앗고, 정식 외교담판을 요구하여 조선조정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③ 일본정부는 안용복이 2차도일에서 ‘울릉도 우산도 두 섬의 감세장’이라고 관직을 사칭했고, 독도를 사람이 사는 큰 섬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직을 사칭한 것은 1차 도일에서의 막부 서계와 같이 확실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안용복은 2차도일 때에 독도를 사람이 사는 큰 섬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독도(송도)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독도도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막부가 안용복의 활약으로 인해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정식으로 조선조정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이다.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은 안용복이 관직을 사칭했기 때문이 아니고, 안용복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돛토리번을 통해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3.1.2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일본정부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³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①안용복은 2번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1693년에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할 수

30) 「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일본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qa.html#q3>(검색일 : 2020년10월15일)

없었던 증거로서 일본에 끌려 왔었고, 두 번째는 1696년에 돗토리번에 호소할 일이 있다며 밀항해 돗토리번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증언은, 추방된 안용복이 귀환 후 비변사에서 취조에 대해 진술한 조서의 초록입니다. 그에 따르면 안용복은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쓰시마번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쓰시마번을 경유하여 조선에 송환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교섭이 시작되기 전인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는 문서를 부여할 리가 없습니다.”³¹⁾ “②1696년 5월에 도입했을 때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1월에는 이미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실시하고, 그 지시가 돗토리번에 전달되었으며, 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게 부여했던 ‘도항면허’는 반납되었습니다. 한국측에는 이 안용복의 진술을 토대로 마치 1696년 안용복의 도입에 의해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논의도 있지만, 안용복이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4개월 후입니다. 안용복은 귀국 후 조사에서 일본인을 향해 ‘송도(松島)는 즉 자산도(子山島=于山島)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다.³²⁾ 너는 왜 이곳에 사느냐(松島即子山島 此亦我国地 汝敢住此耶)’라며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 일본인은 울릉도로 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³³⁾ “③안용복은 우산도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 동료들로부터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 우산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다케시마기사

31) 상동

32) 이훈, 「조선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한일관계사편,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PP.13-54.

33) 「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일본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qa.html#q3>(검색일 : 2020년10월15일)

(竹島紀事)), 일본에 끌려왔을 때는 ‘울릉도보다 매우 큰 섬’을 목격했다고 합니다(‘변례집요(辺例集要)’. 안용복이 ‘송도는 자산도이다’라고 한 것은, 1693년에 일본에 끌려 온 시기에 알게 된 송도(오늘날의 다케시마)의 이름을, 조선이 전통적인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던 우산도에 적용시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송도는 자산도이다’라는 것도 명칭상의 것으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³⁴⁾

① 1693년 안용복의 1차도일 때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것은 1667년 돛토리번사가 집필한 『은주시청합기』 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기술되어있는 것처럼, 당시 돛토리번에서는 일반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조선의 관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부정하고 과학적인 논증없이 안용복의 1차도일 때 “막부가 영유권을 인정했을 리가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② 안용복은 2차도일 때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들을 만난 사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일본정부가 조선왕조실록을 부정하고 논리를 날조하여 추측성으로 “안용복이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독도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③ 안용복이 2차도일 때 ‘조선의 팔도(朝鮮之八道)’를 지참하였는데, “강원도에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소속되어있다”라고 명확히 기록되어있다. 그런데 안용복이 말하는 ‘우산도=자산도(조선시대 명칭)=송도(松島; 일본식 명칭)’³⁵⁾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34) 상동

35) “5월 15일 竹嶋를 출선하여 동일 松嶋에 도착했고, 동 16일 松嶋를 떠나 18일 아침에 隱岐嶋 内の 西村 해안에 도착, 동 20일 大久村 나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西村의 해안은 거친 해안이어서, 동일 中村의 나루로 들어갔는데, 다음날인 19일에 떠나 동일 저녁 大久村안의 가요이浦라는 곳에 배를 묶어두고, 20일에 大久村으로 갔다고 합니다.” 「원록9명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https://blog.naver.com/cms1530/10015417351>(검색일 : 2020년10월15일)

날조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17세기 안용복의 활약에 의해 너무나도 명백하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정부가 비과학적인 논리를 날조하여 안용복의 활약상을 폄훼하면서까지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라는 입장으로 일본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안용복 공적 날조

오늘날 일본정부는 안용복 월경사건에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고, 대마도가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성과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 1905년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내각관방부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홈페이지³⁶⁾에 안용복의 공적에 대해 “조선조정과 막부 간의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그러나 “1696년 1월에 막부(幕府)가 도해금지를 결정한 이유는 이웃나라와 우의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우호관계를 배려하여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주장한다. 또한 막부의 “도해금지는 울릉도에 한한 것이고, 다케시마(竹島, 독도)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안용복은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고, 안용복의 언동, 행동은 사적인 것일 뿐이다. 당시 조선국은 안용복의 언행에 대해 조정(王朝)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추인을 하지 않았다.” “안용복이 조선에 귀국하여 왕조의 관리에 대해 행한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여 안용복이 공적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36) 「안용복 도일」(일본 내각관방부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https://www.cas.go.jp/jp/ryodo_kr/ryodo/takeshima01-04.html(검색일 : 2020년10월15일). 이하 인용문은 내각관방부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696년 1월에 막부(幕府)가 도해금지를 결정한 이유는 이웃나라와 우의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자국의 영토인 울릉도를 우호관계를 위해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 “dot토리변답변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둘째, “조선조정과 막부 간의 양국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고 주장한다. 안용복의 1차도일로 1696년 막부는 영유권을 조사한 후 스스로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였고, 안용복의 2차도일로 1697년 대마도가 막부의 지시에 따라 정식외교 루터로 조선에 통보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셋째, 막부의 “도해금지는 울릉도에 한한 것이고, 다케시마(竹島, 1905년 이후의 독도)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막부는 안용복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dot토리변에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dot토리변답변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했다.

넷째, “안용복은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고, 안용복의 언사와 행동은 사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안용복의 월경사건으로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막부가 “dot토리변답변서”를 통해 소속을 확인하고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던 것이다.

다섯째, “안용복이 조선에 귀국하여 왕조의 관리에 대해 행한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즉 안용복의 1차도일 때에 서계를 받았고 대마도에 빼앗겼다고 하는 진술내용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2차도일로 대마도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때 안용복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임이 밝혀졌다.

4. 일본정부의 안용복 진술에 대한 신뢰성 부정

17세기 일본인 어부 무라카와(村川), 오야(大谷) 가문 사람들이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허가서를 받아 1620년대부터 70여 년간 매년 번갈아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에 들어가 노략질을 했다. 가문대대로 노략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기야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안용복이 국법을 어겼지만, 만일 그 당시 쇄환정책으로 거주를 금지한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일본인들을 만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100년 이상의 세월동안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더라면 한일 간의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³⁷⁾

안용복은 1692년 울릉도에 들어가 도해한 일본인들을 발견하고,³⁸⁾ 이듬해 1693년 일본인들을 내쫓기 위해 계획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재차 울릉도 들어가 일본인을 만났다. 일본인들은 많은 조선인들 중에 안용복과 박어둔을 유인하여 일본으로 인질로 데려갔다. 1차 도일에서 안용복은 일본에서 강력히 영유권을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받았다. 안용복은 대마도를 거쳐 귀향하는 길에 대마도주가 영유권을 인정한 막부의 서계를 빼앗고 정식으로 조선조정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귀향 후 안용복은 대마도주가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스스로 직접 울릉도, 독도를 경유하여 2차 도일을 감행하여 대마도주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을 막부에 고발하였다. 결국은 막부가 대마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조선에 알리도록 명령하여

37) 국제법의 시효취득은 타국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평온상태에서 장기간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 영토로서 취득하게 된다는 것.

38) 실제로 일본인들과 조우하여 영유권 분쟁을 한 것은 1693년이지만, 1692년에 조선인을 조우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안용복은 이미 1692년에 울릉도 도향한 것으로 짐작된다.

17세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종결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한 안용복의 공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안용복의 공적을 부정하는 논리를 날조했다.

첫째, 일본정부는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왔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때의 안용복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³⁹⁾

① 안용복이 1차도일로 일본 막부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막부가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도록 한 장본인은 바로 부산 어부출신 안용복이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마도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을 야기했다. 이때 막부는 스스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돛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하고 안용복의 2차도일 직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마도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안용복의 2차도일은 막부로 하여금 대마도에게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② 막부는 중앙정부의 관직을 사칭하여 2차도일한 안용복을 월경자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대우했다. 월경자로 취급하였다면 대마토를 통해 귀국조치 하였을 것이다. 막부는 이미 안용복의 2차도일 직전에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교적 논쟁거리를 들지 않기 위해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강원도 양양으로 귀국하도록 하였다. ③ 안용복은 조선의 국법에 의하면 월경한 범법자로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일본

39) 『안용복진술의 그 의문점』(일본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검색일: 2020년10월15일). 이하 인용문은 동일하게 외무성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한 공적을 인정받아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감형되었다. 안용복이 2차례에 걸친 도일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받아온 것으로 볼 때, 대체로 안용복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이 월경하고 관직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나 안용복은 타국의 영토를 함부로 노략질한 일본 어부들을 은밀히 두둔한 막부의 탐욕을 고발하고 국가의 영토를 수호해낸 당대의 탁월한 전략가로서 위대한 영웅이었다.

둘째, 일본정부는 “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독도)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① 안용복이 1차도일후 진술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돛토리번과 막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기술한 조선왕조의 기록은 모두 사실이다. 막부가 돛토리번에 요청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던 사실과 일치한다. ② 대마도가 예전부터 울릉도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안용복을 월경범법자로 몰아 세워 막부가 인정한 영유권 서계를 압수하고, 조선조정에 대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③ 조선조정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대마도의 농간에 의한 것이었다. 막부는 한 번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돛토리번에 조회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셋째,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① 안용복이 2차 도일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고 속종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논리를 날조하였다. 이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기 위해 관찬문헌인 조선왕조 기록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② 안용복의 1차도일에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고, 2차도일 이후 조선조정에 정식적으로 통보하여 영유권을 인정한 것과 안용복의 2차도일후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안용복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넷째, 일본정부는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① 안용복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공신력을 갖고 있는 관찬문헌인 조선왕조실록조차도 부정한다. ② 비록 안용복이 국법어긴 월경한 범법자이긴 하지만, 조선조정은 영토를 수호한 공적을 인정하여 월경범법자로서 사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배형으로 감형했다. ③ 일본이 날조한 논리와 달리 안용복의 진술은 대체로 정확하다. 다만 1,2차 도일로 처음 접하는 이국문화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소한 것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안용복의 1,2차 도일후의 진술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아온 안용복의 공적이 너무

나 명확했기 때문에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안용복의 공적을 인정한 상태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용복의 공적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방식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5. ‘죽도도해금지령’과 안용복과의 관계성 날조

안용복은 2차에 걸쳐 도일함으로써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부는 돗토리번 답변서를 근거로 독도를 포함해서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울릉도의 도해금지는 인정하면서도 독도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1905년 국제법에 의해 무주지인 섬을 편입하여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다고도 주장한다.⁴⁰⁾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05년 이전에 일본정부가 독도를 영토로서 인식했다는 기록은 없다. 사실 전근대시대 일본에서 대마도주와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의 어부가 영토적으로 탐욕했던 섬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였다.⁴¹⁾

조선조정은 1403년부터 울릉도에 거주민을 쇄환하고 섬을 비워서 관리하였다.⁴²⁾ 마침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서 일본인들을 조우했고, 그때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인들에게 납치되어 제1차 도일이 이루어졌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비변사 심문에서 안용복은 돗토리번과 막부로

40)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일본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검색일 : 2020년10월 15일)

41) 울릉도도해면허, 울릉도도해금지령 등으로 알 수 있음.

42) 「강원도의 무릉도(武陵島) 거민(居民)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령하다」, 『태종실록』, 1403년 8월 11일, <http://dokdohistory.com/kor/gnb02/sub05.do?mode=view&page=29&cid=40552>(검색일 : 2020년10월15일)

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을 받았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를 담당했던 대마도를 통해 귀국하는 길에 대마도주가 안용복이 갖고 있던 서계를 빼앗고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오히려 막부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근접한 돛토리번에 대해 소속을 확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⁴³⁾ 막부는 돛토리번 답변서에 의거하여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왜 막부는 독도의 도해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독도는 무인고도로서 울릉도 도해상에 위치하여 이정표로서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돛토리번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도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⁴⁴⁾ 울릉도의 도해금지령에는 독도의 도해금지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는 막부가 도해금지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영토이라고 영유권을 날조하고 있다.

첫째, 일본정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를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⁴⁵⁾

① 울릉도는 조선시대 한때 섬을 비우고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한 것을 제외하고, 고대 신라의 우산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초까지 울릉도에 거주민이 살았던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타국영토인 울릉도에 “막부가 도해면허를 허가했기 때문에 일본영토”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이다. ②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허락한 것은 타국과의 무역을 허가한 것으로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③ 70년간 타국 영토에 들어가 노략질한 행위를 “독점적으

43) 「일본스스로 부정한 독도 영유권」(돛토리번 답변서), https://dokdo.mofa.go.kr/kor/pds/part05_view01.jsp(검색일 : 2020년10월15일)

44) 상동

45) 「울릉도도해금지», 일본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kinshi.html(검색일 : 2020년10월15일), 이하 인용한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일본외무성의 인식이다.

로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1692년 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에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다음 해 오야 집안 역시 많은 수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① 1692년에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서로 조우했고, 1693년 더 많은 조선인들이 울릉도에 내왕했다. ② 일본어부들은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하여 안용복과 박어둔을 월경자로 취급하여 일본으로 납치했다. ③ 조선조정이 울릉도 거주민을 쇠환하여 도항을 금지한 것은 백성들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울릉도를 영토로서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일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對馬藩, 에도시대에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의 창구 역할을 하였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한다.

① 막부는 임진왜란을 통해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를 일본영토로서 도해를 허가한 것이 아니다. 막부는 일본어부에게 납치되어 1차 도일한 안용복과 박어둔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정식외교를 담당했던 대마도를 통해 귀국을 허가했다. ② 안용복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대마도는 막부가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안용복의 증언대로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③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조선인들을 울릉도에 도항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막부가 아니고 대마도가 스스로 주장한 것이었다. ④ 막부는 울릉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대마도 요구에 대해 단지 그 진위

를 확인하는 입장이었다. ⑤ 대마도가 1693-95년 2년간 조선에 대해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했고, 그 사이에 막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넷째, 일본정부는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伯耆)에서는 멀다. 쓸모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① 대마도는 2년간 조선과의 교섭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음을 막부에 알렸다. ② 막부는 “대마도에 대해 울릉도에 일본인이 정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는 거리적으로 조선에 가깝다. 일본이 무리해서 탐낼 정도로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섬이 아니다”라고 하여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 ③ 막부는 영토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것과 거주민의 국적을 지적했다. ④ 막부는 조선영토인 울릉도를 탐하여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잃으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⑤ 막부는 원래부터 울릉도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릉도는 일본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도해만 금지하면 된다”라고 했다. ⑥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울릉도가 조선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울릉도를 빼앗게 되면 임진왜란 때와 같이 우호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⑦ 막부는 울릉도 독도분쟁의 주무대였던 돗토리번에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최종적으로 알렸고, 조선과 정식외교를 담당하고있던 대

마도에 대해서는 조선에 정식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볼 때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한다.

① 막부는 돗토리번의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돗토리번과 막부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② 죽도(울릉도)도해면허를 허가했기 때문에 도해를 취소한 것이고, 독도 도해면허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의 도해면허를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③ 지리적으로 독도는 무인도로서 일본에서 울릉도에 도해할 때 이정표로서 경유하는 바위섬이고,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육안으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로 취급될 수 없는 섬이다. 그래서 울릉도는 조선영토이고, 독도는 일본영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④ 일본어부들이 독도를 최종목표로 도해한 적이 없고, 모두 울릉도 도해를 최종목표로 할 때, 독도는 이정표로 활용되는 섬이었다.

이처럼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로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도 영유권을 날조했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일본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어떠한 형식으로 날조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증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용복의 업적은 1차도일은 일본어부 오야, 무라카와 가문인 3대에 걸쳐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항하여 울릉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간주

하고 있던 것을 한일 양국의 정부들 간에 영토협상을 하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국간의 협상을 통해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2차도일은 안용복이 대마도주의 행태를 막부에 고발하였고,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대마도에 알렸다. 막부를 통해 정식외교 루터인 대마도가 울릉도(독도 포함)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일본 내각관방부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이와 같은 안용복의 공적에 대해 사실을 날조하여 부정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둘째 일본정부는 안용복의 공적에 대해 “안용복이 조선의 대표가 아니었다”, “안용복이 관직을 사칭했다”고 주장하여 안용복의 공적을 폄훼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독도의 영유권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안용복 사건의 본질은 안용복의 활약으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안용복이 불법으로 월경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안용복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정된 것은 무효⁴⁶⁾라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

셋째, 일본정부는 안용복 진술에 대해,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2차 도일을 했고, 안용복은 조선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겨서 조선조정으로부터 문초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다. 또한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싸고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주장이 날조된 것임을 비판했다.

넷째, 현재 일본정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막부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근접한 돛토리번에 대해 소속을 확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46) 상동

일본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막부는 돗토리번 답변서에 의거하여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막부가 독도의 도해금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독도가 무인고도이고 울릉도 도해상에 위치하여 이정표로서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돗토리번 답변서에서 독도도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울릉도의 도해금지령에는 독도의 도해금지도 포함되어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조정의 관찬문헌과 일본측의 관찬문헌에 기록된 안용복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안용복에 관한 양측의 관찬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조선조정의 관찬문헌을 폄훼하여 안용복의 진술은 허위라고 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엽, 『대마도주의 간청』, 『문헌상의 독도』, 박문사, p.406.
- 권오엽편역, 『죽도기사(竹島紀事)』, 한국학술정보, 2013,
- 권혁성, 「『長生竹島記』가 전하는 竹島丸선상의 문답문— 안용복의 일본도해 경험에 관하여 —」, 『日本語教育』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8,
- 남상권, 박영식, 「안용복 형상화에 대한 구전적 상상력」, 『독도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 pp.359-396.
- 독도사료연구회편, 『도해준비의 물산』, 『竹島考 (上下)』경상북도, 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성과물1,2010, pp.105-124.
- 박병섭,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12, p.7.
- 박지영, 「돛토리번사료를 통해본 울릉도 쟁계 -도해금지령과 태정과지령을 중심으로-」, 『독도연구』제25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12, pp.213-250.
- 손승철, 「1696년 安龍福의 제2차 渡日 공술자료」, 『한일관계사 자료집』24집, 경인문화사, pp.251~300.
- 송휘영,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 일본에서의 행적」, 『일본문화학보』第72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06.4, pp. 29-42.
- 유미림, 「안용복 밀사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도연구』제27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12, pp.123-164.
- 이태우, 「1696년 안용복 뇌헌 일행의 도일과 의승수군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독도연구』제28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0.6, pp.139-168.
- 이 훈, 「조선후기의 독도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한일관계사연구회편, 지성의 샘, 2005, pp.13-54.
- 최영성,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격」, 『독도연구』26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6, pp.89-128.
- _____,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격」, 『조선밀사 안용복』, 도서출판 문사철, 2019, pp.56-97.
- 内藤正中, 『竹島渡海免許の不法性』, 『史的検証独島 竹島』, 岩波書店, pp.135-141. 「원록9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https://blog.naver.com/cms1530/10015417351>
- 「죽도」(일본외무성),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검색일 : 2020년10월10일)

<Abstract>

Criticism on Japanese Government's Fabrication of Ahn Yong-bok's Achievement

Choi, Jang Keu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achievements of Ahn Yong-bok's visit to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fabrication of Ahn Yong-bok's achievements. Ahn Yong-bok visited Japan twice. And Ahn Yong-bok filed a complaint with Hokki Joo Tae-soo against Japanese language departments. Japan's shogunate the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However,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pretended to be an official, and Ahn Yong-bok was a criminal who crossed the border and was not a representative of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falsely accused Ahn's statement of being unreliable. Limited ban was also an illustration in Ulleungdo and Dokdo for the illustrations is not a ban. An Yong-bok of the first to Japan that Japanese Ulleungdo and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 ban an illustration of the cattails to sovereignty over the negotiations. And finally by the shogunate, Japanese cattails admitted that it banned passage and Ulleungdo and Dokdo is Korean territory. Because Tottori Domain admitted the two-million-year-ol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The second trip to Japan was not accepted by Tsushima Island in January 1696 even though the government recognized Ulleungdo as Joseon territory. An Yong-bok of Tsushima is second to Japan to the two-million-year-ol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Joseon

Dynasty, it had to notify. An Yong-bok That's why this study is the two-million-year-old Ulleungdo and Dokdo as Korean territory from the shogunate in the first to Japan and Tsushima Island in the second to Japan to be recognized. Ulleungdo and Dokdo did that do to abandon its argument.

Key words: A dispute over sovereignty of Ulleungdo, A dispute over sovereignty of Dokdo, Tsushima Island, a ban on the departure for Ulleungdo Island, An Yong-bok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독도 관련 고지도의 현황과 특징 분석*

- 영남대 소장 고지도를 중심으로 -

김도은** · 이태우*** · 최재목****

〈목 차〉

1. 머리말
2. 독도 관련 조선지도의 현황과 특징
3. 독도 관련 일본 발행 지도의 현황과 특징
4. 독도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된 이유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자료 중 총 48점의 울릉도·독도 관련 지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 자료를 통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하고,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독도 연구의 중심점으로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8세기 이후 한국의 고지도, 특히 강원도 폭상에 나타난 ‘독도’의 위치는 ‘독도’가 울릉도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A02103036)

** (제1저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 연수연구원 / kim30ms@hanmail.net

*** (교신저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 twæ62@ynu.ac.kr

**** (교신저자)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chojim@ynu.ac.kr

오른쪽(동쪽) 또는 왼쪽(서쪽), 아래쪽(남쪽), 아래왼쪽(남서쪽), 아래오른쪽(남동쪽)에 각기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각기 다른 위치로 표시된 독도가 현재의 독도위치와 같은 곳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지도의 현황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도 가운데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지도 제작법의 유형에 따른 현상으로 당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후대 시대로 오면서 지도로 나타난 증거자료가 되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이 동해 바다에는 두 개의 큰 섬(울릉도·독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로활동 등을 통해 두 섬과 인근해역을 이용해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영남대학교 소장 고지도, 울릉도, 독도, 조선지도

1. 머리말

지도는 한 국가의 일정한 지역의 위치에 관하여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독도영유권’은 지도 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위치의 문제와 접하게 될 때에는 역사적인 사실의 문헌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독도’가 그려진 지도는 영유권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은 150여종 800여점에 이르는 지도를 소장하고 있고, 세계지도·조선전도·도별전도·분도(군현지도)·관방지도·외국지도·산도 등 한국 고지도의 발달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도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국가적 차원의 관찬지도에서부터 민간에서 만든 민간지도, 일본인이 만든 조선지도 등 지도제작 주체에 따른 다양한 지도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¹⁾ 또한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고지도의 유형과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많은

고지도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점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挿圖1)²⁾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의 고지도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세계지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세계지도로 널리 알려진 자랑스러운 지도이다.

이 연구는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上記의 많은 고지도 자료 가운데 총 48점의 「울릉도·독도 관련 지도」³⁾를 통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도 자료를 통해 독도의 영토 주권을 재확인하고,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독도연구의 중심점으로서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8세기 이후 한국의 고지도, 특히 강원도 폭상에 나타난 ‘독도’의 위치는 ‘독도’가 울릉도의 오른쪽(동쪽) 또는 왼쪽(서쪽), 아래쪽(남쪽), 아래왼쪽(남서쪽), 아래오른쪽(남동쪽)에 각기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각기 다른 위치로 표시된 독도가 현재의 독도위치와 같은 곳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 1) 양보경, 『嶺南大 博物館 所藏 韓國의 옛 地圖(資料篇)』, 114쪽.
- 2) 양보경, 같은 책, 114-115쪽: 전통적 동양식 세계지도는 중국을 지도의 중앙에 두고, 구대륙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나타낸 중국 중심의 세계지도이다. 당시 알고 있던 구대륙 세계 전체를 그린 지도이고, 조선 초인 1402년에 대사성 權讜, 좌정승 金士衡, 우정승 李茂, 李訢가 만든 세계지도이다. 조선 초기 지도제작 기술의 수준, 국가의 지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 동양 및 아랍지역의 지도에 대한 관심,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공간인식을 알려주는 자료로도 의의가 크다.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는 현재 한국에 전하지 않고, 일본에 유출되어 전하고 있는데, 일본 京都市 龍谷大, 九州의 本光寺, 天理市の 天理大, 九州의 本妙寺등에 사본이 남아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동양적 세계지도가 영남대학교 박물관에는 지도책 또는 지도첩 중에 포함된 소형 세계지도로 남아 있다.
- 3) 지금까지 독도 관련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울릉도와 함께 연구된 자료가 당연히 많았으며, 본 연구의 지도 관련에 있어서도 울릉도는 독도연구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함께 독도 관련 지도 현황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인 『韓國의 옛 地圖』(圖版編⁴)과 資料編⁵)의 자료와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일부 지도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독도에 관한 지도를 조사, 분석대상으로 한다.

2. 독도 관련 조선지도의 현황과 특징

2.1. 鬱陵島(左)·于山(右)으로 표시된 조선지도

「鬱陵島(左)·于山(右)」으로 표시된 조선지도는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韓國의 옛 地圖』에 나타나는 朝鮮全圖 및 道別圖에 관한 독도 관련 지도 현황을 표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현재의 지도와 같이 울릉도가 왼쪽에 그려져 있고, 우산(독도)은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표1) 「울릉도(左)·우산(右)」 표시 지도

번호	지도명	크기	연도	작자/형태	소장	쪽
1	37.江原道(《與地圖》) ⁶⁾	28.5×88.5cm	19世紀前半	작자미상	영남대 박물관	36
2	55.八道全圖(《八道地圖》) ⁷⁾	98.3×61.5cm	18世紀前半	작자미상	영남대 박물관	51
3	75.朝鮮全圖(《各道地圖》)	98.3×61.5cm	18世紀後半	작자미상	영남대 박물관	59
4	80.大朝鮮國全圖(《東與圖》)	21.0×80.5cm	18世紀末	작자미상 銅版本	영남대 박물관	64
5	81.海左全圖(《海左全圖 歷代總圖 聖賢統圖》)	98.3×66.0cm	19世紀 中葉	작자미상 木版本	영남대 박물관	65
6	89.八道全圖(《道里圖表》)	135.0×68.0cm	19世紀後半	작자미상	영남대	72

4) 영남대학교 박물관, 『韓國의 옛 地圖』(圖版編), 9-222쪽.

5) 영남대학교 박물관, 『韓國의 옛 地圖』(資料編), 7-199쪽.

				木版本(加彩)	박물관	
7	116.大韓全圖(《大韓全圖》)	33.5×23.9cm	1899(光武3)	작자미상 印刷本(加彩)	영남대 박물관	104
8	124.江原道(《大韓全圖》)	23.0×24.6cm	1899(光武3)	작자미상 印刷本(加彩)	영남대 박물관	109



그림1 55.八道全圖



그림2 81.海左全圖

즉上記의 「울릉도(左)·우산(右)」 표시관련 지도는 18세기 초에 그려진 圖版55.八道全圖(《八道地圖》)부터 圖版124.江原道(《大韓全圖》)까지 울릉도·독도가 현재와 같은 순서로 배열되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지도 제

-
- 6) 표1)에서 1번의 지도명인 「37. 江原道(《輿地圖》)」은 『嶺南大 博物館 所藏 韓國의 옛 地圖』 圖版篇에 따른 표기이다. 이하의 표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번호와 지도명을 기술한다.
 - 7) 양보경 외, 「圖版解説」, 『嶺南大 博物館 所藏 韓國의 옛 地圖(資料篇)』, 169쪽 : 「55.八道全圖」에서는 울릉도와 지금의 독도인 우산도가 제 위치에 표시되어 있고, 동해에는 五寸으로 구분된 百里尺이 표시되어 있어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임을 알 수 있다.

작의 기술 향상으로 볼 수 있고 독도 관련 지도 현황의 시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圖版81.海左全圖(《海左全圖 歷代總圖 聖賢統圖》)는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후로 축적된 성과가 잘 반영된 지도이며, 木版本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 지도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을 반영하는 지도이다. 지도 여백에는 지지에 관련된 내용을 빹빹하게 기록해 놓아 지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주기 중에 “순조 22년 置厚州”라 쓰여 있기 때문에 純宗의 묘호가 純祖로 승격된 1857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산맥·하천·군현 등이 있으며, 육로·해로·도경계 등도 비교적 소상하게 표시되어 있다. 18世紀以後 지도의 전통에 따라 울릉도와 우산도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⁸⁾고 한 점을 楊普景의 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2. 于山(左)·鬱陵島(右) 로 표시된 조선지도

「于山(左)·鬱陵島(右)」로 표시된 조선지도의 현황은 영남대학교 所藏『韓國의 옛 地圖』⁹⁾에 나타나는 朝鮮全圖 및 道別圖에 관한 독도 관련 지도 표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현재의 지도와는 달리 우산(독도)은 왼쪽에 그려져 있으며, 울릉도는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표2) 「우산(左)·울릉도(右)」 표시 지도

번호	지도명	크기	연도	작자/형태	소장	쪽
1	10.八道總圖(『東藍圖』)	26.0×34.6cm	16世紀後半	작자미상 木版本(加刷)	영남대 박물관	21
2	12.江原道(『東藍圖』)	26.0×34.6cm	16世紀後半	작자미상	영남대	22

8) 양보경 외, 같은 쪽, 170쪽: 표로 엮어 놓은 <華洞歷代帝王傳授總圖> 와 <聖賢道華總圖>, 조선전도인 <海左全圖> 로 구성된 지도첩이다.

9) 양보경 외, 같은 책, 21-70쪽.

				木版本(加採)	박물관	
3	25.江原道(『地圖』)	28.8×35.5cm	18世紀中葉	작자미상 木版本	영남대 박물관	29
4	27.八道總圖(『東藍圖』)	28.0×34.7cm	16世紀後半	작자미상 木版本	영남대 박물관	30
5	32.江原道(《天下地圖》)	29.0×31.5cm	18世紀後半	작자미상 木版本	영남대 박물관	33
6	43.朝鮮總圖(《天下地圖》)	36.5×30.0cm	18世紀前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40
7	54.輿圖	153.7×65.0cm	18世紀前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50
8	64.東國圖(《天下圖》)	111.8×67.1cm	18世紀後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54
9	88.銅版袖珍日用方	7.4×7.4cm	1871年(同治幸未)	작자미상 銅版本	영남대 박물관	70

上記의 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圖版10.八道總圖(『東藍圖』)는 地志를 보완하는 부도로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소략하다¹⁰⁾고 한다. 「우산도(왼쪽), 울릉도(오른쪽)」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 가운데 도판32번은 우산이 울릉도 왼쪽 약간 밑에 있고, 도판43번의 《조선총도》에서는 방산도(方山島)가 왼쪽, 울릉도가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우산도가 방산도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0) 양보경 외, 같은 책, 165쪽 : 10~18. 『東覽圖』 木版本(加採), 16世紀 後半, 26.0×34.6cm. 『新增東國輿地勝覽』에 附圖로 실려 있는, 판각된 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 『東覽圖』와 같은 지도이다. 판심의 문양을 비교해 보면 동일 판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 박물관 소장의 『東覽圖』와도 판본이 다르다. 그러나 지도의 형식과 내용은 『동람도』와 거의 일치한다. 『東國輿地勝覽』(1481년, 성종12년 완성)은 조선 초기 세종대 이후 官撰地志 편찬사업의 결실로 나타난 것인데,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친 改撰과 增補를 거쳐 1530년(중종 25년)에 전55권으로 증보 간행된 것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62년(天順7)에 간행된 중국의 『大明一統志』의 체제와 양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대명일통지』에는 중국지도와 13성의 지도를 부도로 삽입하고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팔도총도와 팔도의 지도를 부도로서 수록하였다.

圖版12.江原道(『東藍圖』)는 해안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우산도가 울릉도 보다 육지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 지도의 상단에는 서울에서 각 군현까지의 일정이 주기되어 있다.¹¹⁾

圖版32.朝鮮總圖(《天下地圖》)는 지도의 전반적인 형식과 내용은 『東覽圖』를 따르고 있다. 『동람도』가 『東國輿地勝覽』의 附圖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반해 여기서는 지도가 주이면서도 지지적인 내용을 지도의 하단에 수록하여 지도를 보충해 주고 있으며 地圖와 地誌가 하나로 결합된 지도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지금의 독도인 동해상의 우산도가 『동람도』에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지만, 이 지도에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독특하다.¹²⁾

圖版43.朝鮮總圖鮮總圖(《天下地圖》)는 『동람도』에서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진 우산도의 위치는 여전히 『동람도』를 따르고 있지만, 方山島로 표기되어 있고, 定平에 있는 鼻白山도 白鼻山으로 표기하여 전사상의 오류도 보이고 있다.¹³⁾

圖版64.東國圖(《天下圖》)는 울릉도를 배릉도(盃陵島), 우산도(독도)를 平山島¹⁴⁾로 독특하게 표기하였으며, 우산도를 울릉도 서쪽에 그린 점은 조선 전기 지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고 한다.

上記의 「우산(左)·울릉도(右)」로 표시한 지도는 표1)과 정반대로 배열되어 그려져 있다. 이는 현재와도 상반된 지도표시로서 이러한 지도가 자주

11) 양보경 외, 같은 책, 166쪽 : 圖版12.江原道-강원도 26개 군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지도이다. 군현의 진산과 하천, 그리고 楸池嶺·大關嶺·所坡嶺 등의 고개명도 수록되어 있다.

12) 양보경 외, 같은 책, 167쪽 : 32.江原道(《天下地圖》)木版本, 18世紀後半, 29.0×31.5cm. 木版本 지도책에 수록된 강원도지도이다. 지도의 제작 시기는 경상도의 安陰과 山陰이 安義와 山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명이 변경된 1767년(영조 43)이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지도도 군현명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13) 양보경 외, 같은 책, 168쪽 : 43·44. 朝鮮總圖(《天下地圖》)彩色筆寫本, 18世紀前半, 36.5×30.0cm. 제작 시기는 북한산성이 축조된 1712년 이후, 경상도 安陰·山陰이 개칭된 1767년(영조 43) 이전으로 추정된다.

14) 독도를 '平山島'라고 표기한 것은 다른 문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이한 명칭이다.

15) 양보경 외, 같은 책, 169쪽.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당시의 지도 제작자의 제작법에 따른 상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황조사로 살펴보고 있다. 차후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연구로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 또한 지도제작법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도가 영남대가 소장한 지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하여 「우산(左)·울릉도(右)」로 표시한 지도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鬱陵島만 표시된 조선지도

현재 독도 관련 지도 현황을 조사하다 보면 울릉도와 관련짓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표3의 「울릉도(鬱陵島)」¹⁶⁾만 나타나는 지도 현황들을 볼 수 있다.

(표3) 「울릉도(鬱陵島)」 표시 지도

번호	지도명	크기	연도	작자/형태	소장	쪽
1	47.江原道(《古地圖帖》)	94.3×65.5cm	19世紀 前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43
2	57.江原道(《八道地圖》)	71.0×71.0cm	18世紀 前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52
3	65.靑丘全圖(《八道全圖》)	107.3×62.7cm	19世紀 前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55
4	74.朝鮮全圖(《古地圖帖》)	70.0×44.5cm	18世紀 後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58
5	91. 圖書館 所藏 靑丘全圖	31.2×20.2cm	1861年	金正浩 木版本(加硃) 23帖中13~15 層. 帖	영남대 도서관	75- 76
6	103.江原道(《海左勝覽》)	30.6×28.8cm	19世紀 後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93

16) 양보경 외, 같은 책, 43-93쪽.



그림5 47.江原道



그림6 65.靑丘全圖

위와 같이 울릉도만 표시한 지도는 당시 울릉도에 대한 자세한 지도가 필요하고 동해 바다의 가장 큰 섬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하나로만 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도에서 당시 동해바다에는 독도를 포함한 여러 개의 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울릉도라는 하나의 큰 섬으로 포괄하여 그렸을 수 있다. 고대 시대부터 어로 및 채집 활동 등을 통한 사례들이 주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알려져 온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래서 독도지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2.4. 蔚島 및 于山島 표시뿐인 조선지도

앞에서 서술한 「울릉도(鬱陵島)」만 표시된 지도에 비해 이 장에서는 「울도(蔚島)」 표시¹⁷⁾, 또는 「우산도(于山島)」 표시라는 각각 하나로만 표시된

17) 양보경 외, 같은 책, 101-103쪽.

지도가 보인다. 표4)의 「우산도(于山島)(左)·섬이름 없음(右)」 표시 지도와 「섬표시 1개뿐이고 섬이름 없음」 표시 지도도 찾아볼 수 있다.

(표4)蔚島 및 于山島 표시뿐인 지도

번호	지도명	크기	연도	작자/형태	소장	쪽	비고
1	67.江原道(《八道全圖》)	81.0×61.0cm	19世紀 前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56	于山島 뿐인 지도
2	112.朝鮮遊覽圖(蔚島)	102.5×66.5cm	20世紀 前半	작자미상 木版本	영남대 박물관	101	蔚島뿐인 지도
3	113.大韓全圖(『大韓新地志 附地圖』)	31.5×19.5cm	1907年1: 350萬	작자미상 鐵板本 玄聖運鐵板 造刻	영남대 박물관	103	
4	106.團箕以後諸古國(《沿革 圖七幅》)	110.4×82.3cm	19世紀以後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95	于山島 (左), 무명섬 (右) 지도
5	109.新羅(《沿革圖七幅》)	82.5×63.3cm	19世紀以後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98	섬표시 1개, 무명섬 지도
6	110.新羅 景德王 九州(《沿革圖七幅》)	79.0×63.8cm	18世紀前半	작자미상 彩色筆寫本	영남대 박물관	99	

圖版67.江原道(《八道全圖》)에는 우산도(于山島)만 그려져 있다. 당시 19세기 전기에 지도의 제작 크기에 따라 우산도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에 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장의 圖版65.靑丘全圖(《八道全圖》)(鬱陵島)에서 보면 알 수 있다.

蔚島뿐인 지도는 20세기 전기의 지도인 圖版112.朝鮮遊覽圖(蔚島)와 圖版113.大韓全圖(『大韓新地志附地圖』)이다. 圖版113.大韓全圖(『大韓新地志附地圖』)를 보면,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남의 北間島를 우리의 영토로 표시하였고 동해를 대한해(大韓海)로 표기하여 독립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¹⁸⁾고 전하기도 한다.



그림7 67.江原道



그림8 113.大韓全圖

圖版106.團箕以後諸古國(《沿革圖七幅》)는 于山島가 왼쪽(左)에 있고, 無名 섬이 오른쪽(右)에 그려져 있다. 이 지도가 無名 섬으로 표시된 것은 제작자가 섬 이름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당시 주민들이 섬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 하나로 지정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넣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 제작자가 섬의 존재 위치를 그려 넣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동해 바다에 섬표시는 1개뿐인 圖版109.新羅(《沿革圖七幅》) 지도가 있고, 무명 섬으로 표시한 지도로서는 圖版110.新羅 景德王 九州(《沿革圖七幅》) 지도이다. 이들의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해 바다에는 여러 개의 섬

18) 양보경 외, 같은 책, 173쪽 : 113~115. 大韓新地志 附 地圖(10180) 鐵板本, 玄聖運鐵板造刻, 1907년, 17.0×17.3cm~31.5×19.5cm. 1907년(光武11) 6월 張志淵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저술한 『大韓新地志』에 수록된 附圖만을 모아 만든 지도책이다. 여기에는 <대한전도> 와 1896년 이후 13도로 행정구역이 바뀐 상황을 반영하는 각 도별도가 수록되어 있다.

圖版 113 大韓全圖 : 축척 250만분의 1지도로서 근대적 경위선망이 사용되었고, 방위·법례 등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특히 경선은 19世紀 後半에 제작된 지도에서 자주 보이는 영국을 기준선으로 사용하였다. 전통적 기법보다는 서양식 근대적 기법에 의해 만든 지도로 볼 수 있다.

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섬을 크게 하나의 섬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독도 관련 일본 발행 지도의 현황과 특징¹⁹⁾

일본에서 발행한 조선지도 가운데는 「울릉도(左)·우산(右)」 지도, 「우산(左)·울릉도(右)」 지도, 「松島(左)·울릉도(右)」 지도, 「우산(도)(左)·울릉도(中)·다케시마(竹島)(右)」 지도, 「죽도(竹島)(左)·송도(松島)(右)」 지도, 「울릉도(松島)(左)·죽서(竹嶼)(右)」 지도, 「울릉도」 표시뿐인 지도, 「죽도(竹島)」 표시뿐인 지도 등 다양하게 표시되는 독도 관련 지도현황을 찾아볼 수 있다.

(표5) 일본에서 발행한 독도 관련 지도

번호	지도명	크기	연도	작자	소장	쪽	비고
1	246.朝鮮世表并全圖	132.0×49.5cm 1:1萬	1806年	田中宣	영남대 박물관	188	울릉도(左)· 우산(右) 표시 지도
2	247.朝鮮八道之圖(圖246 〈朝鮮世表并全圖〉의 部分)				영남대 박물관	188	
3	248.增補改正 朝鮮國全圖	49.5×72.5cm	1873년	田嶋象次 郎	영남대 박물관	189	
4	251.五畿八道 朝鮮國細見全圖	98.4×47.2cm	1874년	川口滌吉· 石田旭山	영남대 박물관	192	우산(도)(左) / 울릉도(右) 표시 지도 단 200은 울릉도가 아닌 울도
5	260.朝鮮國細圖 「于山島(左)/ 蔚島(右)」	45.5×84.3cm	1882年	福城駒多 郎	영남대 박물관	199	

19) 영남대학교 박물관편, 같은 책, 185-215쪽, 박현수, 「圖版解説」 日帝時代『嶺南大博物館 所藏 韓國의 옛 地圖 (資料篇)』, 187-199쪽.

6	272. 新纂 朝鮮全圖	62.8×46.2cm:2 50萬	1902년	日本 新聞社	영남대 박물관	205	松島(左) 울릉도(右) 지도
7	254. 銅刻 朝鮮輿地全圖	62.0×84.6cm	1875년	関口備正	영남대 박물관	194	「우산(도)(左) 울릉도(中) 다케시마(竹 島)(右)」지도
8	259. 大村 朝鮮全圖	47.2×83.6cm	1882年	大村恒七	영남대 박물관	195	죽도(竹島) (左) 송도(松島) (右) 지도
9	290. 朝鮮全岸	188.8×77.7cm	1906년	水路部	영남대 박물관	212	울릉도(松島) (左)·죽서(竹 嶼) (右)지도
10	274. Korea	66.4×87.3cm 1:200萬	19世紀 前半	B. Kato.	영남대 박물관	205	「울릉도」 표시뿐인 지도, 단 274, 277은
11	277. 黑龍會 滿韓新圖	122.0×85.0cm	1904년	黑龍會 本部	영남대 박물관	207	Uleung Island 병기
12	289. 嵩山堂 韓國大地圖	106.7×78.8cm	1906년	青木恒三 郎	영남대 박물관	211	
13	252. 亞細亞東部輿地圖	91.8×137.5cm	1874年	木村信卿	영남대 박물관	193	
14	255. 櫻原 朝鮮八道地圖	48.0×85.4cm	1876年	櫻原義長	영남대 박물관	195	
15	256. 朝鮮國之全圖(圖257 〈大日本全圖〉의 部分)				영남대 박물관	196	
16	257. 大日本全圖	26.5×70.0cm	1875년	平田繁	영남대 박물관	196	죽도(竹島) 표시뿐인 지도
17	261. 清水 朝鮮輿地地圖	105.1×77.1cm	1884년	清水光憲	영남대 박물관	200	
18	264. 參謀局 朝鮮全圖	127.1×94.1cm	1894년	陸軍參謀 局	영남대 박물관	202	
19	266. 東京地学協會 朝鮮全圖	74.7×48.3cm 1:160萬	1894년	東京地学 協會	영남대 박물관	203	
20	267. 朝鮮嶺南全圖	136.8×91.8cm	1894년	少橋助人	영남대 박물관	203	



그림9 255.樫原 朝鮮八道地圖



그림10 264.參謀局 朝鮮全圖

이처럼 일본에서 발행한 지도 圖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圖版247.朝鮮八道之圖(圖246 〈朝鮮世表并全圖〉의 部分)를 보면, 제주도에는 빠뜨린 채 울릉도가 과격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큰 漢字로 東·西·南·北을 표시하고 각 글자 옆에 서툰 한글로 동·서·남·북을 쓰려했는데, 남은 ‘담’이 되고 북은 ‘북’이 되어 있다. 또 한글 옆에는 그 발음을 일본 가타가나(片假名) 문자로 표기하려 하였으나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다²⁰⁾고 하는 기술이 있다.

圖版248.增補改正 朝鮮國全圖에서는 제주도는 도시(圖示)되지 않은 채 울릉도가 과대하게 그려져 있다. 萬里長城도 엉뚱하게 그려지는 등 동시대 일본의 조선지도들 중에서 우수한 지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도의 소략함이 정한론으로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된 조선에 대한 정보를 갈증을 응급적으로 달래주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²¹⁾ 라고 기술되어 있다.

20) 박현수, 같은 책, 188쪽 : 247. 朝鮮八道之圖 〈朝鮮世表 并 全圖〉 (圖 246의 部分).



그림11 266.東京地學協會 朝鮮全圖



그림12 267.朝鮮海陸全圖

圖版290.朝鮮全岸인 이 해도(海圖)는 露日전쟁 직후에 나온 것으로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러시아로부터 이권을 인수한 直隸海峽과 연해주 지역도 삽도로서 포함시키고 있다. 한반도 내륙의 인문적 내용은 단순하지만 해도(海圖)로서는 지면의 고저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화된 등고선에 섬세한 음영을 곁들인 것이라고 한다. 울릉도를 Utsuryo to라고 표기하였지만 다른 지명들은 알파벳 표기에 있어서 현지 발음을 따르려 하였다. 예컨대 경상남도는 일본 발음이 아닌 *Kyon shan Nam Do*가 되었는데 이는 원음을 일본 문자로 표기한 다음 이를 다시 로마字化한 결과일

21) 박현수, 같은 책, 188-189쪽 : 다색도 목판본인 이 지도는 征韓論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의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前時代의 고지도를 모사한 것이다. 〈朝鮮八道地圖〉(圖247)와 달리 이 지도는 林子平의 조선지도를 원도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다. 林子平의 조선지도란 그가 1786년에 간행한 『三國通覽圖說』에 실린 조선지도를 말한다. 이 책에는 〈琉球圖〉 〈蝦夷圖〉 〈無人島圖〉 등과 함께 〈朝鮮圖〉도 실려 있었던 것이다. 三國이라 함은 일본을 에워싼 조선 琉球 그리고 蝦夷(오늘날 北海道)를 말한다.

것이다.²²⁾라고 기술되어 있다.

圖版289.嵩山堂〈韓國大地圖〉는 대한제국이 사라지기 얼마 전인 1908년, 일본 유학생 玄公廉은 학생용 지리교과서와 지도책을 펴냈으며, 같은 해 서울의 博文館에서 〈大韓帝國地圖〉를 간행한 적이 있다. 1914년에 『姜邯贊傳』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되는 현공렴이 일본에서 인쇄해 들여온 이 지도는 당시 조선의 지도제작 기술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으로 우수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羽毛와 陰影을 동시에 사용하여 지형의 높낮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海岸線과 도시의 위치를 정확하게 도시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축척에서 一百萬分之一로 적어야 할 것을 一千萬分之一로 오기한 점이 옥의 티로 지적되었다고 한다.

이 지도는 全紙 규격의 인쇄용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수심을 기입한 동해와 서해를 수많은 삽도로 매립함으로써 지도가 주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기에 삽입된 것은 주로 개항장의 시가 지도여서 조선의 전통적 도시들, 예컨대 大邱·全州·公州 등의 지도는 실리지 않았다. 조선인이 조선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은 그 지도를 〈青木 韓國大地圖〉와 대조함으로써 풀리게 된다. 조선에 침투한 일본인이나 조선에 침투할 일본인을 위해 1905년 《分道詳密 韓國新地圖》를 발간한 바 있는 青木恒三郎은 그 1년뒤 같은 내용을 한 장의 全紙 규격 종이에 인쇄하여 1905年 〈韓國大地圖〉를 만들었던 것이다. 玄公廉의 지도보다 2년 앞서 간행된 이 지도는 그 지도의 원판이라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며, 저자와 발행자 이름을 제외하면 제목이 우선 다르다. 일본해(日本海)를 대한해(大漢海)로 바꾸는 배려도 하였다.²³⁾

圖版252.亞細亞東部輿地圖는 1874년(皇紀 2534) 10월 육군 准參謀 木村信卿 少佐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 지도는 발간시기로 보아 大原里賢 등의 활동 결과를 긴급히 정리하여 제작한 地圖로 보이며, 지도에 표현된

22) 박현수, 같은 책, 198쪽 : 290.朝鮮全岸 水路部, 1906년, 188.8×77.7cm.

23) 박현수, 같은 책, 211쪽 : 289.崇山堂 韓國大地圖 青木恒三郎, 1906년, 106.7×78.8cm.

지역은 옛부터 하나의 단위로서 지도화 되어온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일본·중국에서 그린 이 지역지도는 일본의 세계지도였다. 옛사람들이 天下 또는 世界로서 파악하던 동아시아 지역이 이제는 帝國主義國家 일본이 관심을 갖는 침략 대상으로서의 지구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기록하였으며, 독도(獨島)를 지나치게 크게 그려 놓고 거기에 송도(松島)라 써 놓았다. 동아시아를 한 장의 지도에 담은 대축척 지도이면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이토록 크게 표시된 점이 군사지도로서의 성격을 보인다.²⁴⁾고 한다.

圖版255.樫原〈朝鮮八道地圖〉에서는 강화도 앞바다에서 雲揚號로써 조선을 도발한 일본이 朝鮮派遣特命全權辦理大臣 黒田清隆의 육군 증원 파견(增派) 요청에 따라 1876년 1월19일 陸軍卿 山縣有朋을 시모노세키(下關)에 급파했다. 이 지도가 간행된 것은 1876년 2월10일이었으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수호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이 개국하고 일본이 대륙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2월26일이었다. 조선 진출은 일본 정부의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민중들의 현실 도피적 돌파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륙에 대한 관심은 조선지도에 대한 수요를 가져왔고, 이를 겨냥한 많은 지도가 간행되었는데 이 지도도 그 중의 하나였다. 울릉도는 ‘鬱陵島’라 기입하고 그 옆에 “일본에서는 죽도(竹島)라 부른다”라고 적어 놓았다. 조선식 지명을 위주로 한 것이다.²⁵⁾

圖版264.參謀局〈朝鮮全圖〉를 보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중앙 집권적 근대 국가를 수립한 일본은 北海道·小笠原諸島·琉球 등을 영토에 편입시키는데 힘쓰고, 한편으로는 조선이나 대만을 넘보게 되어 征臺論이나 征韓論을 일으킴으로써 侵略主義를 國民的合意로 몰아갔다. 구체적으로 침략주의를 실현하자면 당연히 이웃나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서둘러야 했다. 침략을 위한 전략적·전술적 정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정확한

24) 박현수, 같은 책, 190-191쪽 : 252.亞細亞東部輿地圖 木村信卿, 1874년, 91.8×137.5cm

25) 박현수, 같은 책, 190-191쪽 : 255.樫原 朝鮮八道地圖 樫原義長, 1876년, 48.0×35.4cm.

지리 정보였으며, 지리적 정보는 地圖로 표현하게 되어있다.

이 무렵 隣接國家의 지리와 군사를 중심으로 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힘썼던 것은 參謀本部였다. 조선에 대한 참모본부의 공작은 〈朝鮮全圖〉(1876)작성과 『朝鮮地誌略』(1888) 편찬으로 대표되지만, 참모본부의 활동은 조선뿐 아니라 淸國·캄차카·사할린·滿洲·中國 沿海·太平洋諸島까지 미치고 있었다.

일본에 있어서 참모조직은 1871년 兵部省에 설치된 陸軍參謀局에서 비롯한다. “機務密謀에 參劃하고, 地圖政誌를 편집하며, 아울러 間葉通報 등의 일을 관장한다”는 것을 임무로 한 참모국은 1873년 병무성이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육군성의 第六局으로 재편되었다가 1874년에는 다시 참모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육군성의 참모국은 1878년 12월 다시 參謀本部로 개편된다.

참모조직이 제6국이던 1873년, 제6국은 長白山이 國防의 第一線이라는 주장에 따라 美代淸元 중위를 淸國에 파견한 바 있으며, 1874년에는 大原里賢 대위 외 7명의 첩보장교를 청국에 파견하여 인접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874년(皇紀 2534) 10월에 육군 准參謀 木村信卿 少佐의 이름으로 간행된 이 〈亞細亞東部與地圖〉는 발간 시기로 보아 大原里賢 등의 활동 결과를 긴급히 정리하여 제작한 地圖로 보인다. 이 지도에 표현된 지역은 예로부터 하나의 단위로서 지도화되어 온 지역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天下 또는 世界로서 파악하던 이 동아시아 지역이 이제는 지구상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帝國主義 일본의 침략대상으로 하나의 단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어디까지나 편집된 지도이지 실측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지도는 아니다. 그토록 광대한 지역의 지도를 실측하여 그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지도 작성에 참고한 지도들의 오류는 여기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어서 한반도의 경우 西南海岸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참모국 역시 조선의 지도보다 서양의 해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와 서양인들이 작성한 조선 안내서에 의존하여 침략을 시작한 일본의 軍部는 이러한 자료들을 축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자료와 서양의 자료를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반영한 일본 최초의 독자적 朝鮮地圖가 나타났다. 征韓論이 일어나던 시대에는, 鄭陟과 梁誠之의 지도에서 연유하는 梁崎延房의 〈朝鮮國細見全圖〉라든가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식의 지도가 일본의 조선지도로 이제는 질적으로 진화된 지도가 나타난 것이다. 1875년 연말에 작성되어 이듬해 초에 간행된 이 〈朝鮮全圖〉는 雲陽號의 해안 측량과 密偵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 지도가 나오기 전 征韓論이 한창이던 1872년 메이지(明治) 정부는 조선에 外相격인 外務大丞·花房義質 등을 使節로 파견하는데 西鄉隆盛은 일행 속에 자기의 부하를 합류시켰다.²⁶⁾ 당시 일본 정부의 참의, 육군 元帥와 近衛都督을 겸하고 있던 西鄉隆盛은 역시 참의이던 板垣退助와 함께 花房義質 일행에 육군 中佐 北村重賴와 少佐 別府晉介²⁷⁾를 수행시킨다. 9월에 부산에 도착한 花房義質은 대마도 宗氏의 倭館을 접수하고 조선 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몇 달 만에 물러갔다. 기록(黑龍會 1966: 657)에 의하면 北村重賴는 1872년 別府晉介와 함께 조선에 파견되어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모자를 쓴 채, 당시로서는 외국인 왕래가 금지된 조선 내지에 들어가 제반의 사정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圖版266. 東京地学協會 朝鮮全圖는 戰略用 지도로서 필요 충분한 기능을 했다고 한다. 이 지도는 민간에도 전파되어 더욱 작은 축척으로 편집되어 보급되었고 여기에 수록된 범위는 한반도와 遼東半島에 이른다고 한다.

26) 박현수, 「日本の 朝鮮地圖와 植民主義」, 『嶺南大 博物館 所藏 韓國의 옛 地圖 (資料篇)』, 155쪽.

27) 別府晉介(べつぷ しんすけ, 弘化4年(1847年)-明治10年(1877年)9月24日)는 막말에서 메이지 초기의 무사(薩摩藩士), 군인

앞에서 언급한 參謀局의 1874년판 〈亞細亞東部與地圖〉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를 각각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다. ‘송도(松島)’는 오른쪽 외곽선에 닿아있어 이를 조선지도에 포함시키려 애 쓴 흔적이 보인다. 水深을 표시한 大同江·漢江口·釜山浦·영흥(コンヒン)灣 지도가 삼도로서 그려 있어 조선에 대한 침투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874년 지도에 皇紀라는 국수적 연호를 쓴 참모국이 여기서는 明治 연호를 사용하면서 輕度도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축척에 日本里尺과 朝鮮里尺을 나란히 표시하고 지명에 한자와 더불어 현지 발음을 표기한 가타가나(片仮名)를 기록한 것은 현장 중심적 실용성의 추구를 보여준다. 1:100만 축척의 이 지도는 본래의 작성 목적이 戰略 수립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 필요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이 지도는 널리 模寫되어 많은 편집 지도를 낳았다. 이 지도가 원본이 되어 보다 소축척의 조그만 지도들이 나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킨 것이다.²⁸⁾ 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를 만들었다. 그 이유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존재의 위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4. 독도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된 이유

이 연구는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자료 중 울릉도·독도 관련 지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도 자료를 통해 독도의 영토 주권을 재확인하고,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의 고지도는 지도의 크기에

28) 박현수, 같은 논문, 156쪽.

따라 크게 세 종류의 제작 유형을 볼 수 있다.

첫째, 〈대동여지도〉나 〈혼일강리역대국지도〉와 같은 초대형의 지도로 여러 개의 판본 도폭을 연결하여 제작된 지도이다.

둘째, 〈여지도〉나 〈해좌전도〉와 같이 한지(韓紙)의 전지(全紙) 크기를 한 장의 지도로 제작한 두루마리 형태의 지도이다.

셋째, 「동국여지승람」 〈천하총도13첩〉이나 〈환영지〉처럼 목판에서 서각(書刻)하여 그려진 서책 속에 인쇄된 지도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217km(540리)나 떨어진 '독도'를 한 장의 지도 안에 그려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지도 특성에 따라 각기 확연히 다른 제작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⁹⁾

독도의 지도에 대하여 이제까지 고찰해 보았듯이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나 위치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시대에 따라서 명칭, 위치가 변천하여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이유로서, 다음의 열 가지를 들 수 있다.

- 1) 우산국의 본섬을 울릉도로 보고 울릉도를 우산으로 표시하면서 독도는 울릉도로 표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우산도·울릉도의 순서로 위치를 표시한 당시 지도들의 제작 시기는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이르고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지도 즉 '우산도·울릉도'식의 순서로 그려진 지도는 조선 초기 「동람도」식의 양식이 반영된 것이다. 두 섬의 순서를 현재와 반대로 그린 지도는 실재적 위치와 지형 등에 바탕을 두고 그려진 것이 아님을 반증할 수 있다. 이 지도가 약2세기에 이르도록 장기간 지속되게 된

29) 양재룡, 『지도가 실증하는 「한국명 독도」 독도(獨島 Dokdo)도록』, 2016, 39쪽.

것은 기존의 저본을 전사과정에서 계속 베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이다.³⁰⁾

- 3) 조선시대 이전, 신라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우산도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조선중기 이후로 가면서 울릉도·독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지도 제작의 기술 향상으로 현재의 울릉도·독도와 같은 위치로 표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당시 지도 제작자의 지도제작의 상황, 즉 제작 의도 또는 방법 등에 따라 명칭이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산도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지도들이 나타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5) 지도는 중국에서 진·한 이래 명나라 시대까지 매우 중요한 자료로 나라를 건국하면 지도부터 챙겼고, 이러한 지도는 전국의 형세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통치 자료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삼국시대에도 지도가 있었고, 삼국통일이 되고 고려도(高麗圖)가 제작되면서 통치 자료로 활용했다고³¹⁾ 분석·설명하고 있다.
- 6) 東與備考의 강원도남부주현도(江原道南部州縣圖)에서처럼 독도를 울릉도의 좌측인 연안 쪽에 표시한 고지도는 동람도(東覽島)에서부터 비롯되며 조선전기에 제작되는 고지도의 표현방법이다. 안용복 사건이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져 울릉도의 우측 바다 쪽에 독도를 우산도로 표현하였다.³²⁾
- 7) 박현진(2007)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관찬 사서(地誌)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 「성종실록」(1476), 「동국여지승람」(1486),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만기요람」(1808) 등에서 독도는 우산도·삼봉도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의 첫머리에

30) 양재룡, 같은 책, 260-261쪽.

31)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학술대회』, 8쪽.

32) 이상태, 「東與備考에 關한 研究」, 『역사와실학』, 583-584쪽.

수록된 관찬 전국지도인 팔도총도(東覽島, 27×342cm)와 道別地圖 중 강원도지도에 우산도가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팔도총도와 도별지도 중 강원도 지도에 우산도를 울릉도 서쪽에 표시하여 그 위치가 반대로 바뀐 오류 내지 부정확성이 있으나, 이는 16세기 초 당시 낙후된 항해술·측량술 등 과학적·지리적 지식의 한계로 인한 것일 뿐이다.³³⁾ 라고 기술하였다.

- 8) 팔도총도의 독도에 관한 이러한 위치표시상의 오류는 약 200년 후 제작된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우산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올바르게 그린 지도로서, 조선후기 오랫동안 조선의 대표적인 지도로 자리매김한 공인지도로 추정된다.)에서 교정되어 간행되고 있는 점도 독도 영유권의 귀속 실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⁴⁾
- 9) 海左全圖는 19세기 전기부터 중기(1882년-1857년)까지 제작된 대표적 목판본 조선전도로, 독도는 '우산'이란 명칭으로 울릉도 동쪽에 비교적 정확히 그려져 있으며, 조선의 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 10)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도는 울릉도 옆에 위치해 있는 섬인데, 오랫동안 우산도로 불리다가 1900년에 울릉군을 설치하면서 '석도'라는 표기와 함께 한글로 '독도'로 표시하였다. 독도라는 명칭은 울릉도에 전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면서 이 섬을 전라도 방언으로 돌섬 또는 독섬이라고 부른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5세기부터 전라도 무안 현 앞바다에 있는 섬을 독도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실제로 17세기에 제작된 『東輿備考』에 보면 이곳의 섬을 뚜렷하게 독도로 표시하고 있었다.³⁵⁾

33) 박현진, 「獨島 領有權과 地圖·海圖의 證據能力證明力」, 『국제법학회논총』, 112-113쪽.

34) 박현진, 같은 논문, 112-113쪽.

35) 이상태, 「조선초기에 제작된 『팔도지도』에 관한 연구」, 『역사와 실학』, 121-122쪽, 125쪽.

5. 맺음말

이상으로 영남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고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한 지도 가운데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지도 제작법의 유형에 따른 현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후대로 오면서 지도로 나타난 증거자료가 되었다.

여러 지도 가운데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반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 및 지도 제작 기술의 방법적인 측면과 해양학적인 측면, 자연 지리적 측면 등을 짐작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두 개의 큰 섬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섬의 이름을 서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 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가 반대로 그려져 있다고 하여 그 섬을 모른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두 개의 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이들 지도는 역사적 자료의 증거이고 독도는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령임을 실증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도 가운데는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지도 제작법의 유형에 따른 현상으로 당시 고대시대의 사람들은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후대 시대로 오면서 지도로 나타난 증거자료가 되었다. 영남대 소장 독도 관련 지도는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당시 사람들이 동해 바다에는 두 개의 큰 섬(울릉도·독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로활동 등을 통해 두 섬과 인근해역을 이용해왔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대일 평화조약』, 우리영토, 2007.
- 김병렬, 『독도 연구 60년 평가와 향후 연구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와 한일관계 : 법·역사적 접근』,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신용하,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 16포인트와 150문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_____,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박현수, 「일본의 조선지도와 식민주의」, 『영남대 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지도 (자료편)』,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 박현진, 「독도 영유권과 지도·해도의 증거능력·증명력」, 『국제법학회논총』, 52(1), 대한 국제법학회, 2007.
- 양보경, 『영남대 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 지도 (자료편)』, 영남대학교 박물관, 1988.
- 양보경 외, 「도관해설」, 『영남대 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 지도(자료편)』, 1988.
- 양재룡, 『지도가 실증하는 「한국령 독도」, 독도(獨島·Dokdo)도록』, 출판사 한결, 2016.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엮음,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총서 3, 경인문화사, 2009.
- 영남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옛 지도』, 영남대박물관 소장(도판편) 김운한 편집 영남대 박물관, 1998.
- _____, 『한국의 옛 지도』, 영남대박물관 소장(자료편) 김운한 편집 영남대 박물관, 1998.
- 윤소영,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4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2.
- 이상태, 「東與備考에 관한 研究」 『역사와실학』, 역사실학회, 10-11, 1999.
- _____, 「조선초기에 제작된 『팔도지도』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17-18, 역사실학회, 2000.
- _____,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학술대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 of Dokdo-Related Old Maps

- Focusing on the Old Maps owned by Yeungnam University -

Kim, Do-Eun · Lee, Tae-Woo · Choi, Jae-Mok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evidence that Dokdo is a Korean territory, using 48 maps of Ulleungdo and Dokdo out of the old map materials owned by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lso aims at affirming Dokdo's territorial sovereignty using map materials and increasing the value of Dokdo-related old maps owned by Yeungnam University and at the same time, as a Hub for Dokdo Research, aims at establishing its status of Dokdo Institute of Yeungnam University. Since the 18th century, The old maps of Korea(Joseon Dynasty) have shown that "Dokdo" is located on the right side(East) or left side(West), bottom side(South) or up side(North) of Ulleungdo, especially a part of map of Gangwon-d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displayed separately on the left (southwest) and lower right (southeast). Next, the map also shows whether Dokdo is located correctly and how Dokdo displayed in different locations can be interpreted in the same location as the current Dokdo location. It can be seen through the status survey. Of the foreign maps depicting Korea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especially on the map of Japan, "Dokdo" is all drawn in "Ulleungdo". It is said that there

is also a way to fold Dokdo inside or below Ulleungdo on an old map of Korea. Foreigners at the time, who did not know how to fold the map in this way, displayed Dokdo on the left side of Ulleungdo in order to imitate the name of a place in the detailed part of Korean map Gangwon-do. The point is that Such a difference in the position of Dokdo cannot be seen without considering the viewpoint of the cartographer and at that time the geographical and oceanographic aspects. These map status surveys are important materials and are seen as evidence in that they have taught us the well-known fact that there were two large islands in the East Sea since ancient times and the clear facts that they have been engaged in fishing activities in the nearby sea of Ulleungdo and Dokdo

Key words: Dokdo-Related Maps owned by Yeungnam University, Ulleung do, Dokdo, Old Map

이 논문은 2020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연구

- 2020년도 검정통과본 내용 분석과 기술 배경 검토를 중심으로 -

엄 태 봉*

〈목 차〉

1. 머리말
2.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지리 교과와 독도 관련 기술 변화
3.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 분석
4.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배경 검토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셋째, 사진과 지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은 2015년도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넷째,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었다.

* 대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의교수 / missum1118@gmail.com

주제어: 독도, 2020년도 중학교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 일본의 교과서 문제,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1. 머리말

일본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 중, 지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 공민 교과서 등의 사회과 교과서들은 독도 관련 기술로 논란이 되었던 2017년 3월 개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6월 개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이하, 해설서)을 기준으로 처음 제작된 교과서들이었다. 2020년 3월에 검정 결과가 나올 사회과 교과서들이 한국과 관련한 내용,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내용 등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고, 한국정부는 즉각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교육부 성명을 통해서도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비판했다.¹⁾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경상북도 또한 해당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면서,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²⁾

1) 「“독도, 한번도 타국 영토인 적 없어”...일본 중학 교과서 또 ‘개악’»,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24일자.

2) 「경북도·경북도의회,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독도 왜곡' 규탄», 《경북일보》 2020년 3월 25일자.

이와 같이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독도 관련 기술과 얽히면서 한일 양국의 마찰을 초래한 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7월에 개정된 중학교 해설서에 ‘한일 양국 간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즉시 외교부 성명을 통한 항의, 권철현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의 조치³⁾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해설서는 2014년 1월 개정 때까지 교과서 제작에 적용되었다. 이후 중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개정될 때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할 때마다 독도 관련 기술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마찰은 어김없이 발생해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 공민 교과서는 2017년 3월과 6월에 각각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한일 양국의 갈등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아직 검토되지 않은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의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가 2001년에 문제시 된 이후, 한일 간의 외교적인 현안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문제는 연구주제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초·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⁴⁾ 및 초·중·고등학교 검정통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3) 「日교과서 해설서 ‘독도 명기」, 《경향신문》 2008년 7월 14일자.

4)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송휘영,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독도연구』 제28호, 2020, 103-135쪽; 임태봉,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 문제: 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일본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2019, 27-53쪽; 이우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통해 본 일본의

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⁵⁾

본고의 연구주제인 중학교 지리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져 왔는데, 해당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8년도 및 2014년도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관련 기술과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2011년도 및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⁶⁾ 분석 내용은 대체로 1차·2차 아베 정권의 영토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해설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 작성에 영향을 끼쳐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중학교 해설서와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2008년도와 2014년도

-
- 영토교육·개정 교육법'부터 '2019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독도연구』 제24호, 2019, 295-324쪽; 홍성근·서종진,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제16호, 2018, 30-57쪽 등이 있다.
- 5)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엄태봉, 「2020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 『비교일본학』 제49집, 2020a 45-62쪽; 엄태봉,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와 독도 문제-2020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제75집, 2020b, 235-262쪽; 나행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한일관계사연구』 제68집, 2020, 69-116쪽; 홍성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제14호, 2017, 6-35쪽; 김영수,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2014년 전후 한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19호, 2015, 319-346쪽; 남상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제3호, 2012, 34-159쪽; 남상구,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제1호, 2011, 176-209쪽 등이 있다.
- 6)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병연·이상균,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7호, 2019, 62-88쪽; 박지영, 「일본 중학교 독도교육의 실태교과서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독도연구』 제26호, 2019, 309-345쪽; 강창숙, 「일본 중학교 사회과 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변화와 2017년 개정 내용의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6권 3호, 2019, 19-37쪽; 황용섭, 「일본 初中學校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韓日關係史研究』 제56집, 2017, 307-358쪽; 박삼헌, 「전후 일본의 영토교육과 국가 정체성-중학교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람』 52호, 2015, 77-103쪽; 심정보,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6집 3호, 2008, 179-200쪽 등이 있다.

중학교 해설서 및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2011년도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진 상태이며,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현황과 함께 2017년도 중학교 해설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검정통과 중학교 교과서가 처음으로 나온 상황에 비추어, 새로운 지리 교과서를 통해 2021년도부터 수년 간 독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는가를 예상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문제시된 2020년도 검정통과 사회과 교과서 중, 아직 다뤄지지 않은 지리 교과서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해 2020년도 검정통과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지리 교과에서 독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2020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배경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론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요약·정리한다.

2.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지리 교과와 독도 관련 기술 변화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가정 및 외국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써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⁷⁾ 이러한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는 “사회적 견해·생각을 작동시켜,

과제를 추구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에서, 글로벌화 하는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공민으로서의 자질·능력의 기초를 육성”⁸⁾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지리, 역사, 공민 세 과목을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 공민 교과서가 사용되는데, 출판사들은 해당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학습지도요령과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해설서를 지침으로 삼아 교과서를 제작한다. 그 후 이를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검정에 신청을 하고, 합격이 되면 일선 중학교가 해당 교과서들을 채택·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과서 제작부터 사용까지의 과정은 보통 4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지리 교과서 또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하에서는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지리 교과에서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표1〉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지리 교과와 독도 관련 기술

시기	내용
2008	없음 ⁹⁾
2017	「영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다룸과 동시에, 다케시마나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인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다루도록 할 것. 그 때,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다룰 것. ¹⁰⁾

7)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2017, 11쪽.

8) 文部科学省, 위의 글, 41쪽.

9) 2008년도 학습지도요령의 지리 교과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없으며,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다룸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인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차목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기술이 있다.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 2008, 21쪽.

10)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2017, 46쪽.

먼저 2008년 7월 14일에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기술이 있었으나, 독도와 관련한 기술은 없었다. 이후 2017년 3월 31일에 개정된 현행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표1>과 같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기술을 비롯하여 영토 문제와 관련한 기술이 등장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미 2014년도 중학교 해설서에서 영토 문제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제작된 지리 교과서 모두가 영토 문제 관련 기술을 강화시켰는데, 이를 상기한다면, 2017년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영토 문제 관련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비롯한 북방 영토, 센카쿠제도 등의 영토 문제가 기술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제작과 관련하여 반드시 영토 문제를 기술하게 되었다. 이는 독도 관련 기술을 둘러싼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지리 교과와 독도 관련 기술¹¹⁾

시기	내용
2008	…(전략)… 그 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내용의 취급)이라는 것에서,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에 대해서,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함께,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 등도 다루고,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014	…(전략)… 그 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내용의 취급)이라는 것에서,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와 다케시마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지만, 각각 러시아연방과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 항의를 하고 있는 것 등에

	<p>대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p>
<p>2017</p>	<p>…(전략)… 다케시마나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하는 것(내용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영토문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취급한다」(내용의 취급)라는 것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것을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p>

한편 2008년 7월 14일에 개정된 중학교 해설서에는 한일 양국 간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북방영토와 같이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북방영토와 같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선 중학교에서는 독도 문제도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즉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취지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항의를 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후 2011년도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 교과서는 2008년도 중학교 해설서에 영향을 받았는데, 4종의 지리 교과서

11)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社会編及び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地理歴史編, 公民編(平成26年1月一部改訂前後対応表)」, 2017, 1쪽 및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解説 社会編」, 2017, 42쪽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모두가 독도 문제를 기술했다.

6년 뒤인 2014년 1월 28일, 일본정부는 이례적으로 중·고등학교 해설서를 일부 개정한다. 보통 10년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서 해설서도 함께 개정되는데,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없이 중·고등학교 해설서가 단독으로 개정이 된 것이다. 일부 개정된 내용은 영토 교육과 자연재해 관련 기관의 역할이었으나, 개정된 대부분의 내용은 영토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개정 이유를 “우리나라의 영토에 관한 교육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역할 등에 관해서 한층 더 충실한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된 해설서를 일선 학교가 “충분하게 참고한 후, 그 취지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취급”할 것과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 등이 해설서의 “개정 내용에 대한 주지와 필요한 지도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을 권했다.¹²⁾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일부 개정된 2014년도 중학교 해설서의 내용 중, 지리 교과 관련 내용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항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새롭게 등장했다. 2008년도 중학교 해설서에 비해서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독도를 기술한 것이다.¹³⁾ 이러한 해설서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4종의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독도 문제를 모두 기술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기술 분량이 확연하게 증가했고, 그 내용 또한 강화되는 등 2011년도 지리 교과서에 비해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다.¹⁴⁾

12)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及び「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の一部改訂について(通知),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youyou/1351334.htm (검색일: 2020년 11월 5일)

13) 2014년도와 2017년도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관련 기술 강화는 아베 정권의 영토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나행주, 앞의 글 및 이우진, 앞의 글을 참조.

14) 2014년도 검정통과 중학교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2011년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김병연·이상균, 앞의 글, 64-71쪽; 박지영, 앞의 글, 316-328쪽; 황용섭, 앞의 글, 339-349쪽을 참조.

한편 2017년 6월 21일에 개정된 중학교 해설서에는 2014년도의 내용에 더해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추가되었다. 2014년도 중학교 해설서 보다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및 2014년도에 개정된 해설서는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리 교과서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2017년도 중학교 해설서는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독도 관련 기술 분량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 출판(教育出版), 일본문교출판(日本文教出版), 도쿄 서적(東京書籍), 제국 서원(帝國書院) 등 4종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를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3.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 분석

3.1. 교육 출판

교육 출판의 지리 교과서는 “제1편 세계와 일본의 지역구성 ⇨ 제2장 일본의 지역구성 ⇨ ② 일본 국토의 넓이, ③ 일본의 영토를 둘러싸고”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관련 기술 분량과 내용은 2015년도와 동일하다.

〈표3〉 교육출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¹⁵⁾

시기	내용
2015	다케시마 주변에서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일본인이 어업을 해왔습니다. 1905년에 정부는, 다케시마를 국제법에 입각해서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1952년 이후,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계속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¹⁶⁾
2020	다케시마 주변에서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일본인이 어업을 해왔습니다. 1905년에 정부는, 다케시마를 국제법에 입각해서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1952년 이후,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계속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② 일본 국토의 넓이”에서는 “일본의 영토·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를 통해 해당 수역 안에 독도를 명기하고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도와 동일하다. “③ 일본의 영토를 둘러싸고”에서는 에도 시대부터의 역사적인 연관성, 1905년 시마네현 편입,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도와 동일하다.

한편 지도와 사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케시마” 사진 1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도와 동일한 것이지만, 2015년도에 있었던 “앞에 있는 동도에는 한국이 건설한 시설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없다. 다음으로 “남동쪽을 위로 하여, 일본해 주변을 그린 지도”에서 독도를 명기하고 일본의 국경선 안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동해 부분을 확대하여 다케시마의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다케시마, 센카쿠 제도의 위치” 지도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 출판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기술 분량이나 내용은 동일하며, 독도 관련 지도와 사진의 사용이 약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15) 教育出版,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的分野』, 2015, 131쪽 및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的分野』, 2020, 25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16) 2015년도에서는 “제2편 일본의 여러 지역” 제1장 일본의 지역 구성 ② 일본 국토의 넓이, ③ 일본의 영토를 둘러싸고”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3.2. 일본문교출판

일본문교출판의 지리 교과서는 “제1편 세계와 일본의 지역구성 ㉔ 2. 일본의 지역구성 ㉔ ①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자, ② 일본 영역의 특색을 파악하자, ③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파악하자”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관련 기술 분량과 내용은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

〈표4〉 일본문교출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¹⁸⁾

시기	내용
2015	<p>다케시마는 혼슈에서 약 200km 떨어진 일본해에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다케시마 주변은 풍부한 어장으로, 17세기 초에는 일본인이 어업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는, 시마네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를 취하고,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거나, 시설을 만들거나 해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몇 번이나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p> <p>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북방영토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거론하도록 한국에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¹⁷⁾</p>
2020	<p>다케시마는, 혼슈에서 약 200km 떨어진 일본해에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다케시마 주변은 풍부한 어장으로, 17세기 초에는 일본인이 어업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는 국제법에 따라서 시마네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를 취하고,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거나, 시설을 만들거나 해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몇 번이나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p> <p>제2차 세계대전 후의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내용에서도, 북방영토와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거론하도록 한국에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p>

먼저 “①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자”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를 제시 하면서, 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채 위치시키고 있다. 2015년도에서는 상기 지도와 함께 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를 명기하고 있는 “일본과 그 주변의 모습”이라는 지도가 한 장 더 있다. “② 일본 영역의 특색을 파악하자”에서는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에서 독도를 명기하고, 해당 수역 안에 일본의 영토로 위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2015년도와 동일하다.

“③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파악하자”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17세기부터의 역사적 연관성’, ‘1905년 시마네현 편입’, ‘한국의 불법점거’,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 제안’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된 것 외에 2015년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한편 지도와 사진의 사용도 흡사하다. “북방영토·다케시마·센카쿠의 위치” 사진에서 시마네현에 속한 일본의 영토로 독도를 표기한 지도와 “동도에는, 한국이 건설한 시설이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들어간 “다케시마” 사진은 2015년도와 동일하다. “마츠에시의 다케시마 자료실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현민들을 위해서, 시마네현 내 각지에 개설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은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출장 다케시마전」” 사진도 있는데, 이 사진은 2015년도에 제시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을 나타내는 지도의 전시”라는 사진과 다르지만, 독도 관련 전시회를 주제로 한 사진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일본문교출판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기술 분량은 비슷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제법에 따라서’가 새로 삽입된

17) 2015년도에서는 “제2편 일본의 여러 지역 ㉞ 제1장 일본의 모습 ㉞ ① 우리들이 생활하는 일본의 위치를 파악한다. ② 우리들이 생활하는 일본의 영역을 파악한다 ③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파악한다”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18) 日本文教出版,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の分野』, 2015, 118-119쪽 및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の分野』, 2020, 18-19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지도와 사진의 사용도 2015년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3.3. 도쿄 서적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는 “제1편 세계와 일본의 모습” 도입 부분과 하위 부분인 “제2장 일본의 모습 3. 일본의 영역의 특색, 4. 북방영토·다케시마와 센카쿠제도·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갖고 있는 섬들”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관련 기술 분량과 내용은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

〈표5〉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²⁰⁾

시기	내용
2015	<p>다케시마는, 오키 제도(隱岐諸島)의 북서 약 150km에 있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隱岐の島町)에 속하는 섬들로, 일본해 중앙의 바다 속 거대한 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화산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가 파도에 침식됨으로써, 현재와 같이 단애로 둘러싸인 지형이 되었습니다.</p> <p>다케시마는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은 표고 168m의 오지마(男島)와 표고 97m의 메지마(女島)입니다. 다케시마 주변의 바다는, 동중국해에서 흘러오는 난류인 쓰시마 해류와, 사할린에서 흘러오는 해류인 리만 해류가 마주치는 경계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게나 오징어, 전갱이 등의 회유어가, 풍부한 어업 자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¹⁹⁾</p>
2020	<p>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하여, 오키 제도의 북서 약 150km에 위치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p> <p>다케시마는, 일본해 중앙의 바다 속 거대한 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표고 168m의 오지마와 표고 97m의 메지마를 중심으로,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래된 해저화산 분화로 생긴 섬이지만, 주위가 파도에 침식되어, 현재와 같이 단애로 둘러싸인 지형이 되었습니다.</p> <p>다케시마 주변의 바다는, 동중국해에서 흘러오는 난류인 쓰시마 해류와, 사할린에서 흘러오는 해류인 리만 해류가 마주치는 경계에 가깝기 때문에, 게나 오징어, 전갱이 등의 회유어가, 풍부한 어업 자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p>

먼저 “제1편 세계와 일본의 모습”의 도입 부분에서는 “국토의 넓이와 주변 나라들”이라는 지도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며, “다케시마”라는 사진 1장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15년도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3. 일본의 영역의 특색”에서도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에서 독도를 해당 수역 안에 위치시키면서 일본의 영토로 표기했는데, 이는 2015년도와 동일하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해당 지도에 대해 “일본해의 다케시마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국제기관을 이용한 해결을 제안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다.

다음으로 “4. 북방영토·다케시마와 센카쿠제도·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갖고 있는 섬들”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²¹⁾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일본의 항의’ 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독도의 지리적인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15년도에서는 “다케시마, 북방영토, 그리고 센카쿠 제도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각각 한국과 러시아연방에게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으며,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러한 설명들은 2020년도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로 각각 분리되어 기술되고 있다. 한편 “다케시마” 사진과 “다케시마의 2만 5000분의 1 지형도” 지도는 2015년도와 같으며, 2015년도에 실렸던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와 “다케시마 주변의 지형” 지도를 대신해서 “다케시마, 센카

19) 2015년도에서는 “제2편 일본의 여러 지역” 제1장 일본의 모습 3. 일본의 영역의 특색을 살펴보자”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20) 東京書籍, 『中学校 社会(地理)』, 2015, 134쪽 및 『中学校 社会(地理)』, 2020, 26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1)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2015년도에는 “지리로 액세스”라는 특별 코너였다.

쿠 제도, 북방영토의 위치” 지도와 “단애에 둘러싸인 다케시마” 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술 분량과 내용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지도와 사진 등의 시각적인 자료는 각각 1장씩 늘어났다.

3.4. 제국 서원

제국 서원의 지리 교과서는 ‘제1부: 세계와 일본의 지역 구성 ㉞ 제2장 일본의 모습 ㉞ 3. 일본의 영역과 그 특색’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다소 강화된 경향이 나타났다.

〈표6〉 제국서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²³⁾

시기	내용
2015	<p>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는, 17세기에는 일본인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05년에 메이지정부가 국제법에 따라서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해양경찰대를 보내거나, 등대와 부두 등을 건설하거나 해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대화를 3번이나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p>
2015	<p>다케시마는, 음료수 등을 얻기 힘들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난류인 쓰시마 해류와 한류인 리만해류가 부딪히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바다는 옛날부터 다양한 어패류가 잡히는 풍족한 어장이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다케시마에서 어업이 이루어졌으며, 메이지 30년대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서는, 시마네현의 오키섬 사람들에 의해 강치잡이나 전복·미역 채취가 성행했습니다. 현재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선은 거의 어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²²⁾</p>
2020	<p>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17세기에는 현재의 돗토리현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고</p>

<p>있었으며, 1905년에 메이지 정부가 시마네현 편입을 내각에서 정하고, 자국의 영토로 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p> <p>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서 물러서게 된 한국은, 1952년에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에 해양경찰대나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대화를 누차 권하고 있지만, 한국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p>
<p>다케시마는, 난류인 쓰시마 해류와 한류인 리만해류가 부딪히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바다는 옛날부터 다양한 어패류가 잡히는 풍족한 어장이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요나고(돗토리현) 사람들이, 1900년대부터는 오키(시마네현) 사람들이, 강치잡이나 전복 채취를 하고 있었습니다.</p> <p>1905년, 오키 섬 어민의 청원을 받은 메이지정부는, 다케시마의 시마네현으로의 편입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고지한 2월 22일은, 2005년에 시마네현의회로부터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p>

먼저 “일본의 동서남북단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지도에서 독도를 명기하고, 해당 수역 과 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를 위치시켰는데, 이는 2015년도와 동일하다. 그리고 “다케시마” 사진 1장, “다케시마의 위치” 지도 1장, “오키 사람들이 행했던 다케시마에서의 고기잡이 모습” 사진 1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2015년도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독도에 대한 기술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17세기부터의 역사적인 연관성’, ‘1905년의 시마네현 편입’, ‘한국의 불법 점거’, ‘국제사법 재판소에서의 해결 제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2015년도와 동일하지

- 22) 2015년도에서는 “제2부 일본의 여러 지역 ㉞ 제1장 일본의 모습 ㉞ 1. 세계 속의 일본의 위치 및 3. 일본의 영역과 영토문제”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2015년도에는 “1. 세계 속의 일본의 위치”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바라 본 일본과 그 주변국 지도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고 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를 위치시키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이 지도가 없다.
- 23) 帝国書院, 『中学校社会科 地理的分野』, 2015, 127쪽 및 『中学校社会科 地理的分野』, 2020, 20-21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만,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에 속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독도의 위치를 강조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특히 “국제법에 기반한 일본의 영토”라는 소주제에서 “일본의 영역은, 역사적인 경위에도 입각하여, 국제법에 기반하여 정해져 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영토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영역에는, 영유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과제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그 후에 “북방영토”, “다케시마”, “센카쿠 제도”의 순서로 일본의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한편 “지리 플러스 - 어업이 성행했던 옛날의 다케시마”라는 코너에서는 독도의 지리적인 특성과 역사적인 연관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2015년도와 비교해서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메이지 시기 당시 시마네현으로 독도를 편입한 날인 1905년 2월 22일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시마네현이 이 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연관성과 더불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을 통해 되찾으려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국 서원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도에 비해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비슷하지만, 국제법과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다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배경 검토

이상과 같이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 제국 서원 등 2020년도 검정을 통과한 4종의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독도 관련 기술의 분량은 2015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제국 서원이 내용 면에서 다소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를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독도 관련 기술의 분량 증가와 내용 강화라는 확연하게 큰 변화가 있었던 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를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독도 관련 기술에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즉 2017년도 해설서에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기술의 추가되어 2014년도 해설서 보다 독도 관련 기술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분량과 내용은 2015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3월말에 지리 교과서와 함께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해진다. 2017년도 해설서의 역사 교과 및 공민 교과의 독도 관련 기술은, 2014년 해설서에 비해 각각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²⁴⁾ “도항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었으며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행해지기도 했고,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²⁵⁾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것은

24)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社会編」, 2017, 113쪽.

2020년도 검정통과 역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강화에 영향을 끼쳤다.²⁶⁾ 2017년도 해설서의 지리 교과, 역사 교과, 공민 교과에서 동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되었고, 역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는 그 영향을 받아 독도 관련 기술이 크게 강화된 반면,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본장에서는 중학교 ‘지리 교과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과 관련해서 그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 교과의 성격이다. 지리 교과는 일본의 “국토 및 세계 여러 지역에 관해서, 지역의 여러 모습이나 지역적 특색을 이해하고, 동시에 조사나 자료들을 통해 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이 학습 목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도와 경도, 대륙과 해양의 분포, 주요 국가들의 명칭과 위치”, 일본의 “위치, 세계각지와와의 시차, 지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을 통해 세계의 지역구성과 일본의 지역구성 등을 학습한다.²⁷⁾ 실제로 지리 교과서들은 일본 및 세계 각국의 위치, 기후, 인구 등 지리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회과 교과서들 보다 더 많은 지도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독도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 사용되는 지도에서도 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가 표시된 지도가 여러 장 사용되고 있다. 영토 문제로서 독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단원에서 여러 장의 지도를 사용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²⁸⁾

25) 文部科学省, 위의 글, 161쪽.

26) 2020년도 역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2015년도와 비교하여 강화되었다는 논의는 엄태봉, 앞의 글 2020a 및 2020b를 참조.

27)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2017, 41~42쪽.

28) 예를 들어,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 제국 서원의 지리 교과서 모두 일본의 각 지역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류코쿠·시코쿠(中国·四国) 지방을 학습할 때, 해당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에서 독도를 확대하여 시마네현에 속한 섬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지리 교과서는 위와 같이 지리적인 측면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2017년도 해설서의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리적인 측면의 설명 및 여러 장의 지도를 통해서, 즉 지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2015년도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다. 일본의 중학교에서는 보통 1학년 때 지리 교과서를 학습하고, 2학년 때 역사 교과서, 3학년 때 공민 교과서를 학습하거나, 1·2학년 때 지리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를 함께 학습하고, 3학년 때 공민 교과서를 학습한다.

이를 독도와 관련하여 검토한다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즉 독도의 ‘위치와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내용을 지리 교과서를 통해 먼저 학습하고, 2학년·3학년이 되면서 역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를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다. 또는 1·2학년 때 지리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를 함께 학습하면서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한 후, 3학년 때 공민 교과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독도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다. 즉 지리 교과서 학습을 통해 영토문제로서의 독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그 후 역사 교과서나 공민 교과서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이다.²⁹⁾

중학교 사회과 학습 과정과 독도 관련 학습을 정리해 본다면, 2020년도

29) 2017년도 해설서의 공민 교과에서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 국가주권에 대해서는 지리적 분야의 ‘영역의 범위와 변화 및 그 특성’, 역사적 분야의 ‘영토의 획정’ 등의 학습 성과를 전제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독도, 센카쿠 제도, 북방영토 등의 영토 문제를 다룰 것을 기술하고 있다. 즉 먼저 지리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등의 영토 문제에 대해 학습한 후, 그러한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공민 교과서에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즉 국가주권과 관련한 문제로서 영토 문제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 공민 교과서를 모두 발행한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 제국 서원은, 2017년도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내용을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에서 적극적으로 기술하지 않더라도, 지리 교과서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을 먼저 학습한 후, 역사 교과서와 공민 교과서에서 또는 공민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라는 측면을 통해 봤을 때,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에서는 2017년도 해설서의 강화된 독도 관련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2015년도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독도 관련 기술 변화를 검토하고, 2020년도와 2015년도의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본론에서 검토된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지리 교과에서, 특히 해설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점차 강화되었다. 2008년도 해설서는 ‘한일 양국 간의 독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었지만, 2014년도에 일부 개정된 해설서에서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후 2017년에 개정된 해설서에서는 2014년도 해설서의 내용에 더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정부의 입장

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독도 관련 기술이 보다 강화되었다.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과 그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교육출판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도와 동일하며,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도의 기술 분량과 대동소이했다. 둘째, 기술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가 비슷한 경향이 있었던 반면, 유일하게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도와 동일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는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것을 명기한 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법,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독도에 대한 기술을 강화한 것이다. 셋째, 지도와 사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도 2015년도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는 2015년도와 비슷했고,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만 지도와 사진 각각 1장 씩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2015년도와 비교하여 독도 관련 기술 분량과 사진 및 지도의 사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했고, 내용 면에서는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서적이 비슷했던 반면에, 제국서원이 유일하게 다소 강화되었다. 2014년도 해설서에 영향을 받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분량과 내용이 2011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지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는 지리 교과과목의 성격,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영토 문제로서의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이후 역사 교과서나 공민 교과서를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한다는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2015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당 내용으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리 교과서의 여러 단원에서 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를 위치시키고 있는 지도가 여러 장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중학생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 '시마네현에 속하는 섬'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가 있다.

2021년에는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발표된다. 2017년도에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독도를 비롯한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 등의 영토 교육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처럼 2018년도에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독도 관련 기술이 강화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수반으로 한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로 인한 마찰로 관계 개선의 불씨가 위태로워질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창숙, 「일본 중학교 사회과 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변화와 2017년 개정 내용의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제26권 3호, 2019.
- 김병연·이상균, 「일본 중등 지리교육의 독도 관련 영토교육 내용 분석-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제17호, 2019.
- 김영수,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2014년 전후 한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도연구』제19호, 2015.
- 나행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한일관계사연구』제68집, 2020.
- 남상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제3호, 2012.
- _____,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제1호, 2011.
- 박삼현, 「전후 일본의 영토교육과 국가 정체성-중학교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림』52호, 2015.
- 박지영, 「일본 중학교 독도교육의 실태-교과서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독도연구』제26호, 2019.
- 송휘영,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독도연구』제28호, 2020.
- 심정보, 「일본의 사회과에서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제16집 3호, 2008.
- 엄태봉,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 문제: 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일본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2019.
- _____, 「2020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용 분석」, 『비교일본학』제49집, 2020a.
- _____,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와 독도 문제-2020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제75집, 2020b.
- 이우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을 통해 본 일본의 영토교육-‘개정 교육법’부터

‘2019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독도연구』제24호, 2019.

홍성근·서종진,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제16호, 2018.

홍성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영토해양연구』제14호, 2017.

황용섭, 「일본 初·中學校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韓日關係史研究』, 제56집, 2017.

2. 외국문헌

教育出版,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的分野』, 2015.

_____,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的分野』, 2020.

帝国書院, 『中学校社会科 地理的分野』, 2015.

_____, 『中学校社会科 地理的分野』, 2020.

東京書籍, 『中学校 社会(地理)』, 2015.

_____, 『中学校 社会(地理)』, 2020.

日本文教出版,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的分野』, 2015.

_____, 『中学校社会科 社会 地理的分野』, 2020.

文部科学省, 「中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社会編及び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地理歴史編, 公民編(平成26年1月一部改訂前後対応表)」, 2017,

_____,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解説 社会編」, 2017.

_____, 「中学校学習指導要領」, 2008.

3. 그 외 자료

《경북일보》 2020년 3월 25일자.

《경향신문》 2008년 7월 14일자.

《한겨레 신문》 2020년 3월 24일자.

文部科学省ホームページ

<Abstract>

The Study on the Description of the Dokdo on Japanese Middle School Geography Textbooks Authorized in 2020

Um, Tae Bong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escription of Dokdo on Japanese Middle School Geography Textbooks authoriz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2020.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compared Japanese Middle School Geography Textbooks authorized in 2015 and 2020.

First, the quantity of the description of Dokdo in the new textbooks were generally similar to those 2015. Second, while the description of Dokdo in new textbooks published by 'Kyoiku Shuppan', 'Nihon Bunkyo Shuppan', 'Tokyo Syoseki' was similar to 2015 textbooks, the description of Dokdo in new textbooks published by 'Teikoku Shoin' has been solely reinforced to some extent. Third, the use of visual materials such as photos and maps on Dokdo in the new textbooks were generally similar to the 2015 textbooks. Fourth, while the description of Dokdo in Japanese Middle School Geography Textbooks Authorized in 2015 significantly was enhanc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versions, the new textbooks in 2020 show little change. This was because of the characters of 'middle school geography' and the learning proces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Key words: Dokdo, Japanese Middle School, Geography Textbook Authorized in 2020, The Issue of Japanese Textbook, Curriculum Guidelines, Commentary to the Curriculum Guidelines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전 기 석* 박 경 근**

〈목 차〉

1. 머리말
2. 영토교육의 전개 및 방향성 모색
3.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4.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5.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의 영토 도발 행위는 점점 심해지고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도발 행위는 교육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영토교육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토교육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토교육은 인지적 영역의 교육 외에 정의적·기능적 영역의 교육이 수반되어 세 가지 영역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배타적 민족주의에 비롯된 감정적인 측면의 교육에서 초국가적 차원의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의 배양과 공존과 번영을 위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셋째, 영토교육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교수-학습모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내용 체계와 2015 개정 교육

* (제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재)독도재단 연구원

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3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실제 수업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식·이해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가치·태도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 기능·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지식·가치·기능이라는 영역별 분류에 따라, 각 교수-학습 지도안마다 중점적으로 배양하고자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모든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추구하는 점은 같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한 교육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초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제어 : 영토교육, 독도교육,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지도안,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1. 머리말

영토는 국가 주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며 국가 정치체제 안에서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공간적 범위이다.¹⁾ 이처럼 국가 존립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독도, 조어도, 서사군도, 남사군도 등을 두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 동북아 각국에서 영토교육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²⁾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독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8년부터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 분야에서 영토 도발을 시작했으며, 이후 매년 교과

1) 임덕순,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영토교육의 중요성」, 11-13쪽 ; 서태열,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199쪽.

2) 박배균, 「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164쪽.

서 검정 승인 결과를 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증가하였다.³⁾ 그리고 2017년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과 2018년 고교학습지도요령으로 인해 ‘독도와 쿠릴 4개섬, 센카쿠열도(尖閣列島)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로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적 차원의 영토 도발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⁴⁾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지’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전달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독도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독도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독도교재의 개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독도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에 의거한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교수-학습 지도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영토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올바른 독도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독도교육의 인지적·정의적·기능적 영역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독도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독도교육의 주요 학습내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인지적 영역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학습과 모둠학습으로, 정의적 영역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패널 형태의 토론학습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기법으로, 기능적 영역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기능·실천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과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3개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3) 전기석·박경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독도 교육정책 및 독도 교재 분석」, 8쪽.

4) 전기석·서종철,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교육내용 분석」, 101쪽.

통해, 독도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영토문제에 대한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의 배양과 공존과 번영을 위한 의사 결정 능력 및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도록 할 것이다.

2. 영토교육의 전개 및 방향성 모색

영토교육의 방향성은 주변국가와의 관계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 그리고 그것들에 적용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토교육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영토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려 한다.

영토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영토관 확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교육은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70~80년대에 군사정부의 출현과 원조를 받기 위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잠시 축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제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1990년대부터 독도교육 내용의 기술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본격적으로 심화학습 및 탐구 주제로서 채택되어 독도나 동해 관련 내용이 1쪽 이상으로 다루어졌다.⁵⁾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 행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한국에서도 교육 분야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7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독도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 역사, 기술·가정 교과에 독도교육 내용을 확대하는 등 독도교육을 강화하였다.

5) 서태열·조경철·최수미, 「해방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 교육의 변천양상: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21쪽.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도 영토교육의 필요성, 영토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분석 등 영토교육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영토교육 접근모형을 설정한 서태열(2009)은 ‘영토에 대한 교육’은 영토 및 영토와 관련된 사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영토로부터의 교육’은 영토 속에서의 영토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 영토 환경에 대한 접촉을 통하여 국토에 대한 자각, 국토에 대한 경외감, 국토에 대한 애착 형성 등의 자아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영토를 위한 교육’은 영토 및 영토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토이용에 대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개인적인 차원이나 집단적인 차원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의 교육이 결합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모형이라고 주장하였다.⁷⁾

박선미(2010)는 영토교육이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단순한 행위의 실행을 넘어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능력까지 이끌어 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또한, 영토교육 목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민족주의적 애국심 고취’보다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진 시민의식 함양’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족주의적 애국심 교육을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영토교육 목적으로 인식해 왔던 과거의 전통이 더 이상 강력한 유인력

6) 교육부, 2017.3.24. 보도자료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교육 기본 계획 발표」, 2쪽.

7) 서태열, 같은 논문, 206-208쪽.

8) 박선미,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35쪽.

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영토문제를 보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남호엽(2011)은 외부의 침탈에 대응하는 애국주의 노선의 영토교육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양시켜서 글로벌 시대의 영토교육 방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 문식성의 형성을 지향하는 영토교육과 글로벌 시대 영토교육은 비판 문식성 함양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주체의 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⁰⁾ 이는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 영토분쟁을 바라보고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자세를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배균(2013)은 영토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관계론적 장소개념을 도입하고 국가의 틀을 넘어서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를 종합하면, 앞으로의 영토교육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영토교육은 지식·이해의 인지적 영역의 교육만이 아니라, 가치·태도의 정의적 영역의 교육과 기능·실천의 기능적 영역의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측면의 교육에서 국가적 틀을 벗어난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의 배양과 공존과 번영을 위한 의사 결정 능력 및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토교육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됨이 필요하다.

9) 박선미, 같은 논문, 33쪽

10) 남호엽, 「글로벌 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375쪽.

11) 박배균, 같은 논문, 193쪽.

3.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3.1.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단원 내용체계

독도교육 모형 개발에 앞서, 교육과정의 분석과 교과서 내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및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하여 독도교육의 학습목표와 주요학습내용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는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지형환경과 인간생활,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의 지역이해’라는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독도교육과 관련성이 큰 영역은 ‘I.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이다. 이 영역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에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표 1>. 내용 요소에서도 국토의 위치와 영토문제를 언급하고 학습 요소에서 영토문제로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취기준에서도 ‘[12한지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라고 영토문제에서 독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독도에 대한 교육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체계는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단원의 구성과 학습목표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 모두, 첫 번째 대단원을 ‘I.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로 구성하고 내용요소를 가져와서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중단원인 ‘01. 국토의 위치와 영토문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표 1〉 2015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지리 독도 관련 내용체계(교육부)

구분	2015 사회과 교육과정 한국지리
영역	I.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내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 국토 인식의 변화 • 지리 정보와 지역 조사
학습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와 영역,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 전통 지리 사상, 지리 정보 시스템, 지역 조사
영역별 내용 및 성취기 준	<p>(1)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p> <p>우리 국토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특성, 영토 관련 현안 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우리의 역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고지도와 고문헌을 통해 전통적인 국토 인식 사상 및 인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근간이 되는 지리 정보의 수집·분석·표현 방법을 이해한다.</p> <p>[성취기준]</p> <p>[12한지01-01]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도 주권,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p> <p>[성취기준 해설]</p> <p>[12한지01-01]에서는 우리 국토의 수리적·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주변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정확하고 유의미한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통해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을 모색해 본다.</p>

3.2.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

2019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지리 교과서는 천재교과서(신정엽 외 8인), 미래엔교과서(박철웅 외 7인), 비상교과서(유성종 외 12인)이다. 논문에서는 천재교과서를 A, 미래엔교과서를 B, 비상교과서를

<p>C</p>		 <p>『영해 및 영유 수역에 관한』 제3조(영해의 범위) 제1항(1)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수평하여 그 기선쪽 일측으로 일직선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영해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경우 수역의 일부를 제외하여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영해)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용량의 기선(1)에 대한 언급이 용이하도록 인정된 영해의 폭은 12海里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역의 폭은 수역이 있는 수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p>	 <p>『영해 및 영유 수역에 관한』 제4조(영해의 범위) 제1항(1)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수평하여 그 기선쪽 일측으로 일직선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영해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이 적당할 경우 수역의 일부를 제외하여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영해)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용량의 기선(1)에 대한 언급이 용이하도록 인정된 영해의 폭은 12海里를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역의 폭은 수역이 있는 수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p>
<p>주제</p>	<p>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p>	<p>우리나라의 영해범위</p>	<p>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p>

3.2.2 지형과 기후

독도의 지형은 동도와 서도의 전경사진이나 위성사진, 주변 부속도서 중 대표적인 몇 곳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도의 형성과정과 지질은 3차원 해저지형도를 보여주고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기후는 독도의 기온과 강수량, 해양성 기후 등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설명 내용이 빈약하고 C교과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표 3〉 독도의 지형과 기후 관련 기술 내용

교과서	교과서 기술 내용
<p>A</p>	<p>동도와 서도 전경사진 / 독도는 신생대 제3기 말 해저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독도 해안 대부분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독도는 동해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편이며 연평균 기온은 12℃이고, 연 강수량은 1,240mm 내외이다.</p>
<p>B</p>	<p>동도와 서도 전경 사진과 독도의 위성사진, 3차원 해저지형도 제시 / 독도는 신생대 제3기에 해저 약 2,000m에서 용암이 솟아올라 형성된</p>

B	화산섬이며 / 독도는 약 460만-250만년 전에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독도는 상부가 잘린 거대한 원뿔형 해저 화산체로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고, 일부가 수면 위로 솟아 섬을 이룬다. / -동해의 영향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C	동도와 서도 전경 사진 2개 제시 / 울릉도와 독도를 해수면 아래에서 보면 해산의 형태로 서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수심 2,000m가 넘는 평원(울릉 분지)이 있고, 그 가운데 해산(안용복 해산)이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주로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질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 기후에 대한 언급 없음

3.2.3 자원

독도의 자원에 대한 내용은 수산자원과 지하자원으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수산자원은 해류,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정수역,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서술하고, 지하자원은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간략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3.2.4 독도와 관련된 고(古) 자료들

옛 기록에 나타난 독도를 고문헌, 고지도, 옛 지명, 독도를 지킨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료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A, B, C 교과서에 제시된 고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이고, 고지도는 우리나라의 팔도총도, 일본의 삼국점양지도, 기축도약도가 사진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옛 지명에 대해서는 고문헌과 고지도 등의 사료에서 나타나는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 우산국, 우산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도를 지킨 인물인 이사부와 안용복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4〉 독도의 고(古) 자료와 관련된 교과서 기술내용

교과서	교과서 기술 내용
A	<p>팔도총도(지도 설명: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된 지도로 위치는 바뀌었지만 독도가 우산도로 표시되어 있다. 삼국점양지도(지도 설명: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그려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나타내었고, 섬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명기하였다. 기죽도약도(지도 설명: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여 두 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밝히는 근거로 첨부한 지도이다. / 우산도 / 가시성에 관한 언급은 없음. / 숙종 때 안용복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일본 정부에 항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p>
B	<p>삼국사기(자료설명: 지증왕 13년(512) 이사부는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병합하려고 계획했다.……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들을 풀어 놓아서 밭이 죽어 죽겠다.”라고 하자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즉시 항복했다.) / 세종실록지리지(자료설명: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시대에는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하였다.) / 삼국점양지도(지도 설명: 일본에서 만든 지도로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를 같은 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울릉도 부분에 일본어로 조선의 것이라고 적혀 있다.) / 울릉도와 독도 간 거리를 나타낸 지도(지도 설명: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지만, 오키섬에서는 볼 수 없다.) /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으며-</p>
C	<p>삼국사기(자료설명: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1145년)에 나온다. 여기에서 우산국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 즉 오늘날의 독도 포함된다.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자료설명: 조선 초기에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편찬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이 별개의 두 섬임을 말하고 있으며, 흐린 날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자료설명: 신경준은 관찬지리지인 『동국문헌비고』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런 내용은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군수가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 팔도총도(지도 설명: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지도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표현되어 있다. 삼국점양지도(지도 설명: 일본에서 제작한</p>

C	지도로, 동해에 위치한 두 개의 섬을 조선의 섬으로 그려 넣었다.) / 우산도, 우산국, 우산 / 독도를 중심으로 한 울릉도와 오키섬과의 거리를 비교한 지도(지도 설명: 맑은 날이면 맨눈으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세종실록지리지(자료설명: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	--

3.2.5 독도 수호 활동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것은 독도관련 법령과 독도의 시설물 현황,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개인들의 활동을 소개해줌으로써, 독도 수호 활동을 탐구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독도 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독도 수호 활동 관련 교과서 기술 내용

교과서	교과서 기술 내용
A	독도는 환경 및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하게 관리·보호되고 있다. / 독도 등대를 사진으로 제시(사진설명: 무인 등대로 운영되던 독도 등대는 1998년부터 유인 등대로 바뀌었다. 해상 46km까지 빛을 보내 독도 주변 바다를 밝힌다.) / 국토 최동단 표석과 독도 순국비 및 위령비 사진(사진 설명: 독도에 설치된 영토 표석을 보고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독도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우리 정부는 외국어로 제작된 독도 홍보 영상과 영문판으로 제작된 독도 수첩 등을 전 세계에 배부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B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독도에는 주민들, 독도 경비대원, 등대 관리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숙소, 등대, 접안 시설, 경비대 숙소 등이 있다. / 독도 봉우리의 공식 명칭(자료설명: 독도에 있는 서도와 동도의 두 봉우리 이름이 각각 ‘대한봉’과 ‘우산봉’으로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독도의 공식 명칭 확정은 우리나라의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무분별한 지명사용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B	밝혔다. / 독도를 알리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빌보드 광고판과 반크의 독도문화 대축제행사 사진 제시.
C	-1999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 / 시설물 언급 없음 /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독도 대학을 설립하여 독도 문화 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울릉군은 독도 관리 사무소와 독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도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독도 명예 주민증’도 발급해 주고 있다. 서도에는 1991년부터 주민 등록을 독도로 옮긴 김성도씨 부부가 살고 있으며, 동도에는 독도 경비대원 14명과 등대 관리원 8명 (2016년 12월 31일 기준)이 살고 있다.

3.2.6 독도의 상징성과 생태

독도의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교과서 기술내용은 A 교과서에서만 독도를 우리나라의 독립성과 민족적 정체성, 주권의 상징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서술해주고 있다. 그리고 A, B, C 교과서 모두 생태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없거나, 사진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표 6〉 독도의 상징성과 생태에 관한 교과서 기술 내용

교과서	교과서 기술 내용
A	-통신기지 구축, 기상 관측, 항공 교통, 군사적 요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성과 민족의 정체성, 주권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 생태에 관한 언급은 없음.
B	상징성에 관한 언급 없음. / 해국 사진 제시(사진설명: 생태적 가치 다양한 조류, 곤충, 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C	상징성에 관한 언급 없음. / 섬기린초, 볼락, 팽이갈매기의 사진만 제시

4.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4.1. 독도교육의 학습목표와 주요 학습내용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앞서,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와 3종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를 분석하여 독도교육의 학습 목표와 주요 학습내용을 추출하였다 <표 7>. 학습목표는 지식·이해, 가치·태도, 기능·실천의 3개의 영역에 걸쳐 설정하였다. 학습목표를 성취하고 독도에 관한 지식을 통해 독도 갈등에 대해 지리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제고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공존과 번영을 위한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학습내용은 지리적 측면에서 독도교육의 필수적 요소라고 여겨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3종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내용을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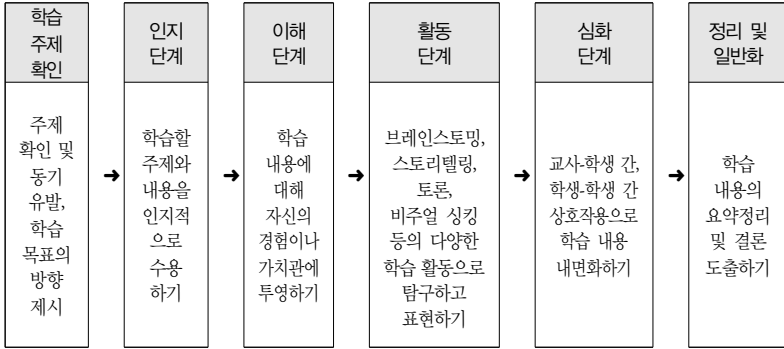
<표 7> 독도교육의 학습목표와 주요학습내용

구분	영역	성취기준
학습 목표	인지적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의 위치와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 독도의 형성과정과 독도 주변 해저지형을 설명할 수 있다. * 독도와 관련된 고문헌·고지도에서 독도 주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의적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국가와의 영역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한·일 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독도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
	기능적 (기능·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다. * 학생 수준에서 독도 수호 활동의 방안을 탐색한다. * 독도의 가치를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구분	주제	내용 요소
주요 학습 내용	위치와 영역	* 행정구역,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지형과 기후	* 독도의 모양과 부속도서, 형성과정과 형성시기, 해저 지형, 지질
	자원	* 해류, 조경수역, 하이드레이트, 해양심층수
	독도와 관련된 고(古) 자료들	*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팔도총도, 삼국집양지도, 기죽도약도, 우산도, 이사부, 안용복
	독도 수호 활동	*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 천연 보호구역(1999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5년),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2012년), 접안시설 등의 시설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독도의 상징성과 생태	* 독도의 의미, 독도의 생태

4.2.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학습의 단계와 세부 활동을 중심으로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작성하였다. 학습주제에 대해 인지적으로 지식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현 사안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의 문제를 정의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학습 활동을 통해 도출하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활동을 통해 학습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내면화가 촉진되도록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구상하였다.



〈그림 1〉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의 각 단계별 학습방법과 학습의 증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첫째, 학습주제 확인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서 학습주제와 학습목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와 함께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 인지 단계에서는 학습 주제와 학습 내용을 단순히 인지하고 단순히 이해하는 단계이다. 학습 내용의 인지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 단계에서는 단순한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학습 주제나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에 투영시켜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공감적 이해를 하는 단계이다. 넷째, 질문이나 토론, 브레인스토밍,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 주제와 학습 내용을 탐구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이 되도록 한다. 다섯째, 심화 단계에서는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에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상호작용의 결과물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심화단계를 통해 독도 갈등의 해결 방안이나 독도 수호 활동에 대한 실천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리 및 일반화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결론을

정교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를 걸쳐 지속적인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은 인지적·정의적·기능적 영역 중 각각의 영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수·학습 지도안 3개를 작성하였다. 각 교수·학습 지도안은 각 영역 중 하나의 영역만을 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다른 두 영역도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하였다.

4.2.1 지식·이해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독도의 위치와 영역은 주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독도의 위치가 갖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에 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토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은 관련 법 조항을 통해 그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4극’을 표현한 지도와 구글 어스와 같은 웹 사이트를 통해 직접 주소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학습을 한다. 이후, 독도가 언급된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독도의 옛지명과 위치를 찾아보고 그 자료들의 내용과 형성시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독도를 인식하였는지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스피드 퀴즈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독도의 위치·영역과 선인들의 독도 인식을 통한 독도 주권의 당위성’을 내면화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표 8〉 지식·이해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	I.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1.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대상	0학년 0반
학습 목표	* 독도의 위치와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 독도와 관련된 고문헌·고지도에서 독도 주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p>주제 확인</p>	<p>문 답 학 습</p>	<p>[전시학습 확인] [동기 유발] * 독도의 일출 동영상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어디인지를 질문한다.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p>
<p>인지</p>	<p>강 의 학 습</p>	<p>[학습주제 제시] * 독도의 위치와 영역을 강의식으로 설명한다. - 독도의 행정구역 - 독도의 지리적 위치 - 독도의 수리적 위치 -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의 개념 -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학습주제 제시] * 고문헌·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에 대해 강의식으로 설명한다. -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팔도총도, 삼국접양지도, 기죽도약도</p>
<p>이해</p>	<p>탐 구 학 습</p>	<p>[학습내용 활동하기] * 검색사이트로 독도경비대, 독도등대, 독도 주민숙소의 주소를 검색하도록 한다. *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법 조항을 검색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4극’ 지도를 제시하여 독도의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동도와 서도의 경·위도를 파악하게 한다. * ‘영해범위’ 지도를 제시하여 독도에 어떤 기선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게 한다.</p>
<p>활동</p>	<p>모 둠 학 습</p>	<p>[학습내용 활동하기] * 고문헌·고지도에서 독도의 위치와 옛 선인들의 독도인식에 관련된 자료들을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 모둠별로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팔도총도, 삼국접양지도, 기죽도약도의 자료를 주고 독도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다.</p>
<p>심화</p>	<p>발 표 학 습</p>	<p>[학습내용 내면화하기] * 모둠의 장을 통해, 각 고문헌과 고지도의 작성 시기를 파악하도록 하여, 언제부터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였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 독도 주권의 당위성을 내면화하도록 한다.</p>

정리	형성평가	[학습 정리하기] * 배운 내용을 스피드 퀴즈를 이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대답하도록 한다. *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한다.
	학습정리	[차시 예고하기] * 차시 예고: 패널로 토론할 주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주장 글 4가지) ② 독도 개발 VS 독도 보존 ③ 독도문제의 해결방안

4.2.2 가치·태도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가치·태도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은 패널 형태의 토론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토론은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하는 패널 4명과 그 주장을 반박하는 패널 4명으로 구성한다. 감정적인 언어나 사고는 일체 금지시키고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력과 비판력으로 토론이 되도록 주지시킨다. 다른 학생들은 방청객으로서, 두 관점의 패널에게 질문을 하면 이 논쟁에 대해 함께 사고하도록 수업을 진행시킨다. 두 번째 토론은 독도 유인도 개발로 환경 친화적인 관광지 개발과 독도 고유의 생태계 보존에 따른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존의 두 관점으로 토론한다. 첫 번째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로 두 번째 토론의 패널을 선정하여 독도의 개발과 보존 방향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토론하도록 한다. 패널의 주장 내용과 개발과 보존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과 같은 가치·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 수업이다.

마지막 주제는 교사가 사회자가 되어 독도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기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생각을 노란색 포스트지에 무기명으로 적어서 칠판에 붙이면, 교사는 의미 있는 포스트지를 선택해,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학생 전체와 토론하는 방식을 가진다. 패널 형태의 토론과 전체

토론을 하는 것은 학생-학생 간,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독도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 9〉 가치태도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	I.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1.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대상	0 학년 0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문제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이해한다. * 독도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한·일 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주제 확인	문답 학습	<p>[전시학습 확인] [동기 유발]</p> <p>“비정상회담”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도록 한다.</p> <p>* 독도문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공존함을 이해시킨다.</p> <p>[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 3가지를 확인한다.</p>		
인지	강의 학습	<p>[학습주제 제시]</p> <p>* 오늘 토론할 주제 3가지를 언급한다.</p> <p>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주장 글 4가지) ② 독도 개발 VS 독도 보존 ③ 독도문제의 해결방안</p>		
이해	탐구 학습	<p>[학습내용 활동하기 1]</p> <p>* 토론할 주제에 대해 발제할 내용과 반대 심문할 내용을 탐구한다.</p> <p>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주장 글 4가지)</p> <p>ㄱ,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1779년)에 표현된 독도 ㄴ, ‘우산도’등의 독도 명칭 불명확, 1900년 「대한민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명칭 ㄷ, 안용복에 관한 허위진술 ㄹ,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p>		

<p>이해</p>	<p>탐구 학습</p>	<p>[학습내용 활동하기 2] * 토론할 주제에 대해 발제할 내용과 반대 심문할 내용을 탐구한다. ② 독도 개발 VS 독도 보존 ㄱ, 독도 유인도 개발로 환경 친화적인 관광지 개발 ㄴ, 독도 고유의 생태계 보존에 따른 가치성</p> <p>[학습내용 활동하기 3] * 토론할 주제에 대한 내용을 탐구한다. ③ 독도문제의 해결방안 ㄱ,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같은 외교적 협력 ㄴ, 일본 우익 단체의 전략적 정치공작, 왜곡된 역사인식 등의 원인</p>
<p>활동</p>	<p>패널 형태의 토론 학습</p>	<p>[학습내용 활동하기 1] ①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주장 글 4가지) - 일본 외무성의 주장글에 찬성하는 4명의 패널과 그 주장에 반대하는 4명의 패널이 토론규칙에 맞게 토론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방청객으로서 경청을 하고 각자의 학습지에 주요내용을 필기하여, 질문시간에 패널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p> <p>[학습내용 활동하기 2] ② 독도 개발 VS 독도 보존 - 독도 개발을 주장하는 패널 4명과 독도의 보존을 주장하는 패널 4명이 토론규칙에 맞게 토론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방청객으로서 경청을 하고 각자의 학습지에 자신의 의견을 필기하다가, 질문시간에 패널에게 직접 질문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p>
<p>심화</p>	<p>브레인 스토밍</p>	<p>[학습내용 활동하기 3] ③ 독도문제의 해결방안 - 한.일간의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포스트지에 적어 칠판에 붙인다.</p> <p>[학습내용 내면화하기] * 교사는 칠판의 포스트지 중 의미가 있는 것을 선택해, 방안을 낸 학생이 부가설명을 발표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 학생 개개인의 학습지에 논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학생의 생각을 적게 하여 사고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내용을 내면화시킨다.</p>

정리	학습 정리	<p>[학습 정리하기]</p> <p>* 세 가지 토론 주제에 대한 정리된 학습내용을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지도한다.</p> <p>-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되도록 유도한다.</p> <p>[차시 예고하기]</p> <p>* 차시 예고: 3가지 주제 중 자신이 발표할 주제를 유인물이나 영상물로 작성하도록 지도한다.</p> <p>① 독도를 홍보할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p> <p>② 독도를 지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p> <p>③ 독도의 의미와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합니다.</p>
----	----------	---

4.2.3 기능·실천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기능·실천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에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해 텔러(Teller)가 되어, 독도를 홍보할 방법, 독도를 수호할 방안, 독도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시킨다. 이 수업은 독도에 관한 지식과 한·일간 독도 갈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치·태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독도에 관한 지식이나 가치·태도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배타적인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여 형성된 지식과 가치·태도를 초국가적 차원에서 방안을 제시하여 독도 갈등에 대해 올바른 문제해결력과 의사결정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0〉 기능·실천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단원	I.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1.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		대상	0학년 0반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의 가치를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학생 수준에서 독도 수호 활동의 방안을 탐색한다. * 독도의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다. 			
단계	방법	교수·학습 활동		
주제 확인	문 답 학 습	<p>[전시학습 확인]</p> <p>[동기 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홍보 스토리텔링 -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를 함께 시청한다. * 독도 홍보에 관한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p>[학습목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인지	강 의 학 습	<p>[학습주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독도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과거에서 현재까지 독도를 지킨 인물들과 활동을 설명한다. * 독도의 주권성 상징성과 우리 국민에게 주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해	탐 구 학 습	<p>[학습내용 활동하기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연구소, 독도 박물관, 외교부 독도, 반크 등의 독도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독도 홍보활동을 검색하도록 한다. * 이사부와 안용복, 이규찬의 활동, 故 최종덕 故 김성도 등의 독도 주민, 독도경비대의 활동을 조사하도록 한다. * 독도가 가지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성과 독립의 상징성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한다. 		
활동	스 토 리 텔 링	<p>[학습내용 활동하기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 1'이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신의 방법을 스토리텔링한다. * 학생수준에서 독도를 수호할 방안에 대해서, '학생 2'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신의 방안을 스토리텔링한다. * 독도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학생 3'이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스토리텔링한다. 		

심화	스토 리텔링	[학습내용 내면화하기] * 발표한 학생 1,2,3 의 발표내용을 듣고 다른 학생들도 '1분 스피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홍보방안, 독도 수호 활동, 독도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정리	동료 평가 차시 예고	[동료 평가하기] * 세 가지 주제마다 가장 우수한 방안을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동료 평가하도록 한다. [학습 정리하기] * 자신이 생각한 방안과 다른 좋은 방안에 대해 학습지에 정리한다. [차시예고] * 차시예고: 독도를 글자, 포스터, 그림,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비주얼 싱킹 수업을 예고하여 학생 각자가 아이디어와 준비물을 가져오도록 지도한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 행위에 대응한 올바른 영토교육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독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과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7개의 일반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독도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과목은 한국지리이다. 이에 2015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의 내용체계를 통해, 독도 관련 단원인 'I.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의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을 분석하였고,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3종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교과서 기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지식·이

해 영역, 가치·태도 영역, 기능·실천 영역에 관한 학습목표 9개를 설정하고 6개의 주제에서 30개의 내용요소를 추출하였다.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에 앞서, 독도교육의 학습 단계와 세부 활동을 일반화하기 위해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학습주제 확인 - 인지 단계 - 이해 단계 - 활동 단계 - 심화 단계 - 정리 및 일반화’의 단계별 학습방법과 단계별 학습 중점을 중심으로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습주제와 관련된 수업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토론, 브레인스토밍기법,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을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 심화단계에서 학생-학생 간,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도 공유하면서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도록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기준으로 첫째, 인지적 영역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독도에 대한 지식·이해를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과 모둠학습을 통해 독도의 위치와 영역, 독도와 관련된 고문헌·고지도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두 번째, 독도에 관한 가치·태도적 측면을 배양하기 위한 정의적 영역의 교수-학습 지도안에서는 ‘일본 외무성 주장 4가지’와 ‘독도의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 주제로 패널 형태의 토론학습을 실현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패널의 토론내용과 제시된 객관적 자료에 대해 패널 외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서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말미의 심화 단계에서는 ‘독도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브레인스토밍기법을 활용하여 독도 갈등에 대해 올바른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기능·실천 중심의 독도교육 교수-학습 지도안에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학생이 텔러(Teller)가 되어서 독도 홍보 방법, 독도 수호 방안, 독도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면서 내면화 된 학습내용이 현실에 적용되

어 실천되도록 설계하였다.

각 교수-학습 지도안마다 중점적으로 배양하고자 하는 영역이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으로 다르지만, 모든 교수-학습 지도안은 인지의 단계를 넘어서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이 학습자에게 내면화되어 독도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독도 갈등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더불어,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감성에 의한 교육이 아닌, 자료를 통한 지리적 분석력과 비판력을 배양하고, 초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독도교육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독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학습 효과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도교육에 관한 모형과 지도안 개발과 함께,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독도교육에 대한 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학교현장에 맞는 독도교육의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교육부.
- 교육부, 2017.3.24. 보도자료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교육 기본 계획 발표」.
- 남호엽, 「글로벌시대 지정학 비전과 영토교육의 재개념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3), 2011, pp.371-379.
- 박배균, 「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공간과 사회』, 23(2), 2013, pp.164-198.
- 박선미,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 우리나라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1), 2010, pp.23-36.
- 박철용·김진수·조성호·강은희·이강준·김지현·백승진·최재희, 「한국지리」, (주)미래엔, 2018, pp.10-31.
- 서태열,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3), 2009, pp.197-210.
- 서태열·조경철·최수미, 「해방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교육의 변천양상: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 신정엽·김명철·김봉식·김영화·양희경·유상철·이경희·최재영·홍석민, 「한국지리」, (주)천재교육, 2018, pp.12-19.
- 유성중·최병천·강성열·김덕일·우연섭·이우평·김시구·이훈정·엄주환·남길수·김차곤·이화영·이두현·강문철·윤정현·김진형·방완석, 「한국지리」, (주)비상교육, 2018, pp.10-33.
- 임덕순,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 학술대회 요약집』, 2006, pp.11-13.
- 전기석·박경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독도교육정책 및 독도 교재 검토」, 『독도연구』, 28, 2020, pp.7-24.
- 전기석·서종철,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의 독도교육내용 분석」, 『한국사지리지리학회』, 30(3), 2020, pp.100-120.
- 한동균·남경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과융합형 독도수업 모델 개발과 실천」, 『영토해양연구』, 14, 2017, pp.36-63.

<Abstract>

**Dokdo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odel
Development of Korea Geography Textbook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eon, Kiseok·Park, Kyungeun

The reality is that Japan's territorial provocation is getting worse and Korea and Japan have not still found any solutions about the issue. Territorial provocations are also appearing on an educational level. Accordingly, research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erritorial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continuousl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territorial education based on precedent research on territorial education is as follows.

Firstly, territorial education requires harmony among cognitive, affective, and functional area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geographical thinking and analytical power not from the emotional aspect of education derived from exclusive nationalism but from the transnational level. Furthermore, we need move toward fostering problem-solving skills for coexistence and prosperity.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for how and what to teach in actual classes.

In this study, the content system of Korea geography and three kinds of textbook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a teaching and learning model on Dokdo education has been proposed. According to the model, knowledge-centered,

value-centered, and function-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guidelin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actual classes are developed and proposed. When developing these guidelines, they are classified by three factors: knowledge, value, and function. Moreover, these guidelines should not be based on the emotional education from exclusive nationalism. Rather, it focuses on developing geographical analysis capacity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through objective data and improving decision-making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at a transnational level.

Key words: territorial education, Dokdo education, Dokdo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odel, Teaching and learning guidelines,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Korea geography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심 정보**

〈목 차〉

1. 머리말
2. 시기별 연구 동향
3. 주제별 연구 성과
4. 맺음말

〈국문초록〉

전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학자들은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전개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동·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도 연구의 성과를 고찰하고, 나아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1980년 전후의 여명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 공백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관심기, 그리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초기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소개하는 거시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주제 중심의 미시적 연구가 증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중복이나 유사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향후 새로운 사료 발굴에 따른 심층적 연구와 학제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독도, 고지도, 영유권, 연구 동향, 연구 방향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A02103036)

** 서원대학교 교수 / ktxgut@naver.com

1. 머리말

전후 일본의 독도 도발은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대응은 항상 단호했다. 1990년대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소위 독도(竹島)의 날 제정, 그리고 2008년 7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지리적 분야에 독도(竹島) 명기는 한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 9월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도영유권을 체계적으로 대응 및 연구하도록 했다. 지방 정부에서는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독도재단을 설립하고, 울릉군이 독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이 독도 및 영토 관련 연구소를 만들었으며, 독도 관련 민간단체도 다수 생겨났다.

학계에서는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독도 관련 학술대회가 단독 또는 독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거의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개별 혹은 공동 학술대회에서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의 학자들은 독도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의 독도 관련 선행 연구의 동향도 각 학문 분야에서 발표되었다(박경근·황상일, 2007; 한철호, 2007; 오일환·이연식, 2015). 그리고 우리나라 고지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도 나왔다(김기혁, 2007; 2018), 그러나 독도 관련 고지도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고찰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2005년 시마네현의 독도(竹島)의 날 제정과 2008년 7월 이래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교육 도발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 독도교육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 대한 동향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일 간에 독도 논쟁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한국에서 동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도 연구의 성과를 중

합적,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향후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산출된 독도 관련 고지도 논문 및 단행본(도록 포함)으로 시기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독도 관련 고지도의 학술논문 선정은 여러 검색 사이트에서 독도와 지도를 키워드로 검색이 이루어졌다.

2. 시기별 연구 동향

해방 이후 독도 연구는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들 분야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는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전후부터 현재까지 산출된 학술논문 54편과 단행본(도록 포함) 28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이 여명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가 공백기,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가 관심기, 2006년 이후 현재까지를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표 1>). 시기별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 성과(1976-2020)

시기 성과	여명기		공백기		관심기		확산기		
	1976 -80	1981 -85	1986 -90	1991 -95	1996 -00	2001 -05	2006 -10	2011 -15	2016 -20
논 문	1	1	-	-	2	5	10	19	16
단행본	-	-	-	-	1	3	8	7	9
합 계	1	1	-	-	3	8	18	26	25

자료: 필자 작성

2.1. 여명기(1980년 전후)

근대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는 1945년 8월 독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까지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독도를 주목한 계기는 1947년 6월 19일 경상북도가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중앙에 보고했고, 『대구시보』가 이를 보도한 것이다(정병준, 2010). 이에 민정장관 안재홍의 명령으로 당시 국사관장 신석호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1947년 8월 16일부터 약 2주간 독도를 실지 답사했다. 그리고 신석호(1948)는 독도의 현지답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독도의 소속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독도는 본래부터 한국의 영토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고지도와 독도영유권과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독도를 고지도에서 최초로 다룬 것은 지리학자 이찬(1923-2003)이다. 그는 역사학자, 국제법학자와 함께 1978년 문교부 지원으로 한국사학회(1979)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연구』라는 보고서에 “한국고지도에서 본 독도”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직후인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한 것으로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가 대거 참여했다. 이 책은 1996년에 몇몇 연구가 보완되어 『독도연구』로 공개 및 배포되었다(한철호, 2007). 이찬은 조선 초기의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를 비롯하여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동람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조선 후기의 조선전도와 도별분도 등을 고찰하면서 지도에서 독도가 제외된 이유,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관계, 독도의 명칭 등을 다뤘다.

1980년대 전반에 최서면(1983)은 “지도로 본 독도”라는 논문을 『영토문제연구』 창간호에 게재했다. 그는 전후 한일 간의 독도문제 발생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많은 학술논문과 3권의 단행본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룬 책이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특히 일본에서 간행된 3권의 저서는 모두 독도를 일본령으로 결론지었는

데, 그 방법의 하나로 지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리하여 그는 시론으로 한국 지도, 일본지도, 서양지도에 나타난 독도를 3각도에서 고찰했다. 특히 서양 지도의 독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 연구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시기에 이찬(1979)과 최서면(1983)의 연구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소개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2. 관심기(2000년 전후)

한일 간에 독도 이슈가 비교적 조용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의 공백기를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에 관심을 갖게 된 연구자들이 등장하여 소수의 논문과 단행본이 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 계기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과 마찰의 영향이다.

1995년 일본 문부성이 검·인정의 초·중등학교 지리부도에 일본의 국경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표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1996년 2월 20일에는 일본 의회가 독도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를 선포하기로 의결했다(김병렬, 1996). 1996년에 접어들면서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를 허용하는 유엔의 신해양법이 발표되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한철호, 2007). 1998년 11월에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파문이 있었고, 나아가 2005년 3월에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한국인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한일 양국 사이에 독도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와 독도 논쟁을 펼쳤던 김병렬(1996)은 반론문에서 연합군 훈령, 평화선, 강화조약, 안용복의 도일 활동, 한국 고문헌의 우산도 등을 언급하면서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로정전도(1773),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1875)를 들어 일본 고지도

에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일본이 조용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에는 한국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성과물로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프랑스 리옹3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재직했던 이민명(1998)은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이라는 전문서를 집필하여 간행했다. 이 책은 2005년에 개정증보판, 2010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영문판으로 나왔다. 그는 오랫동안 수집했던 독도 관련 서양의 고문헌과 고지도 등을 중심으로 서양인의 동해 탐사에 의한 울릉도와 독도 발견, 서양 해군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서양과 일본 지도상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의 변화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결론을 내렸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어 및 지리 전공자에 의해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성과물로 학술논문과 단행본이 나와 독도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김문길(2001)은 일본에 소장된 일본해산조륙도, 남침부주만국장과지도, 조선팔도총도, 조선팔도지도, 일본번계약도 등의 고지도를 소개하면서 독도를 언급하였다. 양보경(2005)은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간행된 세계지도, 조선전도, 도별지도,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고찰했다. 호사카 유지(2005, 2005a, 2005b, 2005c)는 일본의 관찬지도, 서양에서 간행된 일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증명했다. 같은 해에 간행된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는 독도 관련 고지도를 최초로 다룬 단행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사카 유지는 이 시기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새롭게 발굴한 독도 관련 일본의 고지도를 TV 및 신문에 자주 소개하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역설하여 독도 관련 고지도 전문가로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의 학술논문과 단행본 출간, 언론 활동 등은 이후 한국의 독도 관련 고지도 수집가 및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수집 및 연구에 유행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신문 기사에 잘 드러나 있다.

3.3. 확산기(2006년 이후)

2005년 이후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더욱 격화되었고, 이에 한국의 반발 및 반일감정은 계속되었다. 그 계기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편입 100년을 기념하여 2005년 3월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2월 22일에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사회편 지리적 분야에 다케시마(竹島) 명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중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학습지도요령해설』, 그리고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대응의 일환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를 수집하는 기관 및 박물관(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박물관, 독도재단,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생겨나고, 연구의 성과물은 이전에 비해 더욱 증가하여 확산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총 성과물은 현재까지 총 82건(학술논문 54, 단행본 28)으로 2005년까지 총 13건(15.9%)에 불과했지만, 2006년부터 2020년까지는 69건(84.1%)으로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 늘어났다(<표 1>). 연구자 수도 2005년까지는 7명에 머물렀지만, 2006년 이후에는 역사, 지리, 국제법, 국제정치, 일본어, 서지학 등의 분야에서 3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의 연구 동향에서 주목할 사항은 미시적 관점의 주제별 연구가 등장한 점이다. 즉 종래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 고지도를 통사(통시)적으로 소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주제 중심 또는 하나의 독도 관련 고지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독도의 측량과 해도 연구, 독도 관련 고지도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비판, 독도 관련 고지도의 제작자(인물) 연구 등의 주제별 연구, 기타 삼국접양지도,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이다.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가 유행하는 시기에 학술논문의 증가와 함께 단행

본도 다수 간행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지도가 수록된 단행본은 학술논문보다 독도 관련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 시기에 출간된 단행본은 김동욱 등(2014), 심정보 등(2010), 양재룡(2010), 이돈수 등(2015), 이돈수 등(2018), 정각(2018), 정동훈 등(2015), 정인철(2015) 등의 성과물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해 관련 고지도와 함께 다루어진 경우가 많다. 반면 순수하게 독도 관련 고지도를 다룬 전문서 형태의 단행본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도록, 문헌목록, 지리지, 사전 등의 단행본으로 다른 분야의 내용과 혼용되고,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을 지향하고 있다.

게다가 단행본의 편집 및 집필 주체는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독도박물관, 독도재단, 해양수산개발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한국국토정보공사, 호야지리박물관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가 19건(67.9%), 개인이 9건(32.1%)로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각 기관 및 단체는 독도 및 동해 관련 고지도를 경쟁적으로 수집하고, 독도영유권 주장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이들 고지도를 도록 형태로 간행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여 성과물을 공유하는 등 독도 지식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독도 지식에 대한 관심 및 홍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도록 형태의 독도 관련 고지도 단행본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민간이 집필한 소수의 독도 관련 고지도 단행본은 전문적 지식을 담고 있다. 이들 단행본 가운데, 일본인 쿠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2014)가 일본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소개한 일본어 도서가 2017년 한국어로 번역 및 간행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주제별 연구 성과

3.1. 연구 대상 고지도

1970년대 후반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가 처음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연구 성과는 양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동서양의 독도 관련 고지도를 인용한 횟수는 대략 총 369회로 집계되었다(<표 2>). 그 중에서 일본의 고지도가 206회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의 고지도 118회, 서양의 고지도 41회, 중국의 고지도 4회 순이다. 중국은 단지 1인의 연구자에 의해 황여전람도를 비롯하여 이후에 만들어진 건륭십삼배도, 대지전구 일람지도, 만국대지전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독도를 고찰한 것이다. 이들 독도 관련 대상 고지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독도 관련 연구 대상 고지도는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가 간행된 조선 전기부터 『대한신지지』의 대한전도가 완성된 1900년대 초까지 여러 고지도이다. 팔도총도를 비롯한 조선전도 계통의 지도와 강원도 지도에서 주로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거리, 형상, 크기, 명칭 등을 고찰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 대상 고지도는 종류와 활용 빈도가 높아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된 고지도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와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이다. 이들 지도는 글귀와 채색 등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들 지도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한국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기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일본의 고지도는 내무성, 육군성, 농상공부, 수로부 등 일본 정부가 제작한 것이다. 그 이유는 영유권 논쟁에서 개인보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 및 인식이 반영된 공문서와 고지도가 증거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표 2> 학술논문에서 사용된 동서양의 독도 관련 고지도(1976-2020)

제작국 (비율)	연구 대상 고지도
한국 (31.9%)	강원도(31), 조선전도(18), 팔도총도(8), 대동여지도(6), 해동지도(5), 청구도(5), 대한전도(5), 이규원의 울릉도 내도와 외도(5), 팔도지도(4), 동여비고(4), 안용복의 지도(4), 장항상의 수도지도(4), 박석창의 소위 우산도(4), 정상기의 동국지도(3), 조선지도(3), 광여도(2), 해좌전도(2), 대조선국전도(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1), 대한여지도(1)
일본 (55.8%)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3), 삼국점양지도(13), 도근현지도(11), 일본변계약도(8), 육군성의 조선전도(7), 조선여지전도(7), 조선팔도지도(5), 대일본연해여지도(5),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5), 강호대절용의 조선국도(5), 정보일본도(5), 원록일본도(5), 조선국세견전도(5),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5), 개정신전조선전도(5), 장중일본전도(5), 대일본해륙전도(5), 행기도(4), 해군수로국의 조선동해안도(4), 동판조선국전도(4), 청조일통도(4), 청십팔성여지전도(4), 오무라 쓰네시치의 조선전도(4), 신찬 조선여지전도(5), 실측조선전도(4), 신찬조선국전도(4), 가와카미 히사요시의 조선도(4), 박문국의 한국전도(4), 형보일본도(3), 관판 실측일본지도(3), 경장일본도(3), 본방서북변경수륙약도(3), 기죽도약도(2), 죽도지회도(2), 일본해산조록도(2), 남침부주만국장과지도(2), 내무성지리국의 대일본국전도(2), 육군성의 아세아동부여지도(2), 대일본부현분현지도(2), 일본분야도(1), 일본약도(1), 하야시 시헤이의 팔도총도(1), 변계분요도고(1), 농상무성의 일본제국전도(1), 해군수로국의 조선전도(1), 육군참모국의 대일본국전도(1), 육지측량부의 동아여지도(1), 육지측량부의 서향(1), 육지측량부의 지도구역일람도(1), 수로부의 조선전안(1), 조선팔도총도(1), 죽도지도(1), 천보국회도(1), 해좌전도(1), 청국여지전도(1), 조선국세도(1), 상밀대일본신지도(1), 대일본연해약도(1), 극동전요지도(1), 극동일로청한사국대지도(1)
중국 (1.1%)	황여전람도(1), 건륭십삼배도(1), 대지전구일람지도(1), 만국대지전도(1)
서양 (11.1%)	당빌의 조선왕국도(7), 지볼트의 일본전도(5), 클라프로트의 삼국점양지도(4), 프랑스 해군성의 태평양전도(4), 러시아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4), 레지의 조선왕국도(3), 콜넛의 지도(3), 영국 해군 수로부의 일본(2), 캠페리의 일본도(2), 김대건의 조선전도(2), 황여전람도(2), 지볼트의 일본변계약도(2), 벨랭의 조선왕국도(1), 보곤디의 일본제국도(1), 지볼트의 조선전도(1)

* () 안의 수는 연구에 인용된 빈도

셋째, 서양의 독도 관련 연구 대상 고지도는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에 비해 연구의 인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언어의 한계와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서양에서 간행된 독도 관련 고지도는 제3국에서 독도를 바라보고, 지도에 표현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주목한 서양의 독도 관련 고지도는 당빌의 조선왕국도, 클라프로트의 불어판 삼국점양지도, 지볼트의 일본전도 등이다. 당빌의 지도는 19세기 전반 서양에서 한반도의 형상을 현실에 가장 가깝게 그렸고,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여 후대의 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클라프로트의 불어판 번역 지도는 일본에서 간행된 삼국점양지도와 동일하게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일본학의 권위자로서 지볼트가 완성한 일본전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잘못 표현하는 오류를 범하여 이후 서양과 일본에서 독도 명칭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독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도에 나타낸 프랑스 해군성의 태평양전도, 그리고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러시아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가 연구자들로부터 다소 주목을 받았다.

3.2. 거시적 연구

독도 관련 동서양의 고지도 연구는 양적 성장과 함께 주제별 성과도 다양하다. 한국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논문 54편을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를 거시적, 미시적 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성과물은 거시적 연구가 27편(50%), 미시적 연구가 27편(50%)로 나타났다.

거시적 연구는 연구 초기에 해당하는 1980년 전후부터 시작되어 2005년 무렵까지 주로 이 방법에 의존했고, 그 후에는 다소 감소했다. 반면 미시적 연구는 2006년 이후 시작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대 전반에 유난히 거시적 연구의 성과물이 많은 것은 2013년 영남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

<표 3> 독도 관련 고지도의 거시적 연구

시기 주제	여명기		공백기		관심기		확산기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한국(7)	1	-	-	-	-	1	1	3	1
일본(8)	-	-	-	-	1	2	-	2	3
중국(1)	-	-	-	-	-	-	-	1	-
서양(3)	-	-	-	-	1	-	1	1	-
동서양(6)	-	1	-	-	-	1	1	2	1
기타(2)	-	-	-	-	-	-	-	1	1
합계(27)	1	1	-	-	2	4	3	10	6

자료: 필자 작성

하는 『독도연구』에 특집으로 독도 관련 한국, 일본, 중국, 서양 고지도 논문이 실렸기 때문이다(<표 3>). 거시적 연구는 주로 국가별로 다양한 고지도에 표현된 독도를 통사(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이다. 이찬(1979)이 최초로 한국의 고지도에서 독도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실시한 이래 양보경(2005), 김호동(2013), 오상학(2014), 이상태(2014) 등에 의해 조선 시대의 울릉도와 독도의 인식 변화를 폭넓게 고찰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둘째, 일본의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이다. 김병렬(1996)이 일본의 여러 고지도를 사례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주장한 이래, 김문길(2001)은 일본의 고지도로 본 독도문제, 호사카 유지(2005)와 정태만(2017)의 일본 관찬 고지도와 독도영유권, 이상태(2013)의 고대부터 에도막부, 근대까지의 고지도와 독도영유권, 이상균(2015)의 19세기 일본의 세계지도에 반영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문상명(2017)의 외방도와 독도 연구 등이 있다.

셋째, 중국의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이명희(2013)가 유일하다. 그는

명대 이전과 명대의 중국 지도에 나타나는 한반도의 특징을 고찰했으며, 청대에는 황여전람도를 비롯하여 이후의 중국지도에 표현된 울릉도와 독도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넷째, 서양의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이다. 이진명(1999)은 서양인들에 의한 울릉도와 독도 발견을 수로지와 고지도를 중심으로, 서정철(2013)은 동해 탐사 항해와 관련된 각종 고지도를 중심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혜경(2010)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에 있는 서양의 고지도를 대상으로 제작 시기별, 국가별로 울릉도와 독도 표기의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동서양의 독도 관련 고지도를 함께 다룬 연구이다. 일찍이 최서면(1983)은 한국지도, 일본지도, 서양지도에 나타나는 독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호사가 유지(2005a)는 일본과 프랑스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이상태(2009, 2011a, 2011b)는 한국, 일본, 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서인원(2020a)은 북한의 연구 동향으로 조선, 일본,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를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고지도 보도 기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독도 관련 국내 언론 기사를 분석한 오상학(2014)의 연구, 독도 관련 고지도의 기술요소 개선 방안에 관한 유종연·정연경(2020)의 연구가 있다.

이들 거시적 연구의 특징은 주로 통사(통시)적 접근 방법으로 과거에서 특정 기간까지 시간의 흐름 순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를 고찰한 것이다. 국가별로 독도 관련 다양한 고지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의 심층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3.3. 미시적 연구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 초기에 거시적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미시적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부터는

<표 4> 독도 관련 고지도의 미시적 연구

시기 주제	여명기		공백기		관심기		확산기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개별지도(10)	-	-	-	-	-	-	3	2	5
인물(5)	-	-	-	-	-	1	1	-	3
발견측량(7)	-	-	-	-	-	-	-	5	2
일본비판(3)	-	-	-	-	-	1	1	1	-
기타(2)	-	-	-	-	-	-	1	1	-
합 계(27)	-	-	-	-	-	2	6	9	10

자료: 필자 작성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 방법은 독도와 관련된 여러 고지도를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독도를 집중적,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의 개별지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지도를 제작하거나 관여한 인물 연구, 독도의 발견 및 측량과 고지도 제작 과정 연구, 고지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논리를 비판하는 연구, 기타 등이다(<표 4>). 이들 주제별 연구 성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도와 관련된 하나의 고지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경우이다. 최초의 연구는 호사카 유지(2006)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지도와 독도로 이 지도에 대한 일본 측의 비판은 무엇이며, 한국 측의 비판과 대응 및 해결책을 논했다. 또한 호사카 유지(2008)는 막부가 국제법상으로 활용한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화경(2010)은 1903년 제국 육해측량부의 일로청한명세신도에 그려진 한국의 국경선 내측의 독도와 관련하여 귀속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 2013)는 태정관지령에 부속된 기죽도약도의 발견 경위와 그 의의를 정리하

였다. 한철호(2015, 2016)는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농상무성의 일본제국 전도의 편찬과 독도 인식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한편 개별 지도로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이다. 최영성(2016)은 독도 관련 은주시청합기와 이 지도에 기재된 글귀의 해석을, 최선웅(2018)은 이 지도의 지도사적 위치와 제작자의 생애 및 제작 과정, 내용과 특징 등을, 최재영·이상균(2018)은 제작자의 생애와 제작 과정, 가치 등을 고찰했다.

둘째, 인물 연구로서 독도 관련 고지도 제작자와 고지도와의 관계를 고찰한 경우이다. 김문길(2001)은 고지도와 고문서를 통해 안용복과 박어둔의 업적을 검토했다. 남영우(2016, 2019)는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클라프로트가 프랑스 번역본 삼국점양지도 간행에 기여한 신조의 역할을 고찰했다. 게다가 남영우·김부성(2009, 2018)은 울릉도와 독도 명칭의 혼란을 초래한 독일인 지볼트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클라프로트가 『삼국통람도설』을 프랑스 번역본으로 출간하게 된 경위 등을 고찰했다.

셋째, 서양인과 일본인에 의한 독도의 발견 및 측량에 대한 연구이다. 정인철·Pierre-Emmanuel Roux(2014)는 서양인으로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명칭을 따서 태평양전도에 독도가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되기까지의 과정을, 최선웅(2020)은 19세기 서양의 독도 측량과 해도 제작 등을, 남영우(2014)는 18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일본의 독도 관련 지도 제작과 측량을, 서인원(2017)은 근대 일본 육지측량부의 지도 제작을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그리고 한철호(2013, 2014, 2015)는 메이지 시대에 해군 수로부의 울릉도 및 오키 측량과 해도에 나타난 독도 인식을 다루었다.

넷째,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모든 연구자에게 볼 수 있지만, 특히 연구 주제에 증명, 비판 등의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흥미롭다. 호사가 유지(2005c)는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김화경(2008)은 후나스기 리키

노부의 한국 고지도 분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왜곡된 해석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최장근(2012, 2014)은 일본이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독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상과 같은 특정 주제 중심의 미시적 연구는 통사(통시)적 접근 방법과 달리 전체적인 흐름과 종합적 특성을 파악하기는 불리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이라는 장점이 이있다. 향후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가 상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고지도 발굴과 함께 미시적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일본의 집요한 독도 도발은 한국으로부터 강한 반발과 반일 감정을 초래했으며, 독도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 일본의 독도 도발에 따른 독도 연구는 주로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 독도교육 연구가 학제적 연구로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영유권 주장에서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독도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가 최초로 시작된 1970년 후반부터 현재 까지 약 40년 동안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그동안 간행된 학술논문과 단행본 등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여명기(1976년-1985년), 공백기(1986년-1995년), 관심기(1996년-2005년), 확산기(2006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별 연구는 한일 간의 정치적 상황이 민감하게 반영되어 있다.

여명기는 주로 여러 고지도에서 독도를 통사(통시)적으로 고찰하는 거시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관심기는 여러 연구자가 등장하여 독도 관련 고

지도 연구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확산기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층이 형성되어 학술논문과 단행본 간행이 증가하고, 심층적인 미시적 연구가 다수 나타나는 시기이다. 즉 확산기에는 종래의 거시적 연구와 함께 개별 고지도 연구, 고지도 제작 관련 인물 연구, 독도의 발견 및 측량과 해도 연구,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비판적 연구 등과 같은 주제 중심의 미시적 연구도 증가하여 다양한 성과물이 나왔다.

하지만 독도 연구가 보다 발전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 그것은 첫째, 연구의 전문성이다. 여전히 독도 관련 고지도 연구는 고지도에 표현된 사실적 현상이나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여 선행 연구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 입장에서 왜 그러한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이 잘 드러나야 할 것이다. 둘째, 비교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해에 위치한 독도는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오랫동안 한국, 일본, 서양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간행된 고지도와 고문헌에는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정보와 교류했던 활동의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의 관점에서 연구가 전개된다면, 성과물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셋째, 고지도 소장 기관과 연구자 사이에 교류 및 협력이 요구된다. 독도 관련 기관은 새로운 고지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수집하고, 연구자는 연구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입장이다. 가치있는 고지도 발굴과 활용 방안 등을 둘러싸고,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소장기관과 연구자가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도록)

- 고윤정·김경도·정명훈, 『독도박물관 소장 자료로 보는 한국땅 독도』, 독도박물관, 2015.
- 고인철·김정란·장지은·박찬홍·송지향, 『독도문헌정보총목록』, 국회도서관, 2012.
-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중앙문화인쇄, 2006.
-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지』, (주)푸른길, 2009.
- 김동욱·이상균·유수진·최재영·고아라·박은경,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동해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4.
- 김화경,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 아카이브 도록』, 영광기획, 2010.
-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독도관련자료 해제집-고문헌편-』, 국립중앙도서관, 2009.
- 독도사건편찬위원회, 『독도사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 독도재단, 『지도 위의 진실』, 뉴스원, 2016.
- 심정보·이상태·정인철·호사카유지,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양재룡, 『호야선생님의 지리세상II 지도이야기』, 한결, 2009.
- _____, 『우리 땅 독도 동해바다 한국해』, 호야지리박물관, 2010.
- _____, 『지도가 실증하는 한국령 독도』, 한결, 2016.
- 우리문화가꾸기회, 『日本古地圖選集II』, 세가, 2016.
- 이기봉, 『우산도는 왜 독도인가』, 소수출판사, 2020.
- 이돈수·심정보·한상호, 『지도박물관 옛 지도집』, 국토지리정보원, 2015.
- 이돈수·심정보·한상호, 『지도박물관 옛 지도집(제2권)』, 국토지리정보원, 2018.
- 이상균,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2016.
- 이상태,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땅』, 경세월, 2007.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
- _____, 『개정정보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 정 각, 『고지도로 본 한국 동해, 독도 지도 108선(選)』, 대한불교 조계종 원각사, 2018.
- 정동훈·김정옥·김건태, 『동해와 독도 고지도 속에서 진실 찾기』, 한국국토정보공

사, 2015.

정인철, 『한반도 서양고지도로 만나다』, 푸른길, 2015.

이장우 역, 『지도 해설 독도의 진실』, 부산민족학교 독도학당, 2017(久保井規夫, 『図説 竹島=独島問題の解決 竹島=独島は、領土問題でなく歴史問題である』, 柘植書房新社, 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편, 2011, 『독도사전』, (주)푸른길, 2011.

호사카 유지, 2005,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 (주)자음과모음, 2005.

LI Jin-mieung, 2005, Dokdo A Korean Island Rediscovered,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논문

김기혁,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7.

_____, 「한국 고지도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한국고지도연구』 제10권 제2호, 2018.

김도현, 「삼척 관련 지리지와 고지도를 통해 본 울릉도와 독도」, 『이사부와 동해』 제6호, 2013.

김문길, 「일본의 고지도로 본 독도문제」, 『일본학보』 제49호, 2001.

_____, 「고지도 고문서를 통해 본 독도와 안용복 박어둔의 업적」, 『외국어연구』 제24호, 2010.

김병렬, 「5월호 죽도가 한국명이라는 근거는 왜곡돼 있다에 대한 반론문 :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명이라 명시」, 『한국논단』 제82권 제1호, 1996.

김부성·남영우, 「Klaproth의 삼국통람도설 프랑스 번역본의 출간 경위」, 『한국지도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8.

김호동, 「한국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제15호, 2013.

김화경, 「특집: 죽도문제(竹島問題)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研究) 최종보고서(最終報告書) 비판; 한국의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후나스기 리키노부의 한국 고지도(古地圖) 분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55호, 2008.

_____,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일로청한명세신도에 그려진 국경과 독도의 귀속을 중심으로 한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제10권 제1호, 2010.

남영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영토해양연구』 제7호, 2014.

- _____,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 『三國通覽圖說』과 부도의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1호, 2016.
- _____, 「클라프로트(Klaproth)의 프랑스 번역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간행에 기여한 신조[新藏]의 역할」, 『영토해양연구』 제17호, 2019.
- 남영우·김부성,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제9호 제1권, 2009.
- 문상명, 「Gaihōzu 지도에 나타나는 독도-미 스탠퍼드 대학 소장 지도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72집, 2017.
- 박경근·황상일, 「독도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지리학논구』 제27호, 2007.
- 서인원, 「일본 육지측량부 지도제작과 독도영유권 인식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제14호, 2017.
- _____, 「북한의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 자료 연구에 대한 고찰」, 『독도연구』 제28호, 2020a.
- _____, 「일본 막부 편찬 국회도에 표현된 국경과 독도영유권 인식」, 『영토해양연구』 제20호, 2020b.
- 서정철, 「서양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제15호, 2013.
- 신석호, 「독도의 소속에 대하여」, 사해 제1호, 1948.
- 양보경,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제7호, 2005.
-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2006.
- _____, 「독도 관련 국내 언론기사의 분석-고지도 보도기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2호, 2014.
- 오일환·이연식, 「국내 독도 관련 연구의 동향과 경향-학술논문에 관한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0호, 2015.
- 유종연·정연경, 「독도 관련 고지도의 기술요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제1호, 2020.
- 이명희, 「중국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제15호, 2013.
- 이상균,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된 19세기 일본의 울릉도 독도 인식」, 『문화역사지리』 제27권 제1호, 2015.
- _____, 「시볼트의 한국전도 속 독도 명칭이 독도영유권 논거에 주는 함의」, 『한국지도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7.
- _____, 「17-19세기 조선의 독도 인식과 지도표현의 변천사」, 『한국지도학회지』

- 제19권 제2호, 2019.
- 이상태,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한국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 _____,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독도연구』 제10호, 2011a.
- _____, 「고지도에 나타난 삼척과 우산국」, 『이사부와 동해』 제3호, 2011b.
- _____,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제15호, 2013.
- _____,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이사부와 동해』 제7호, 2014.
- 이진명, 「서양 자료에 나타난 독도」, 『인문과학연구』 제19호, 1999.
- 이 찬, 「한국고지도에서 본 독도」,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연구』, 한국사학회, 1979.
-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 정인철·Pierre-Emmanuel Roux,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독도 발견에 관한 연구」, 『영토해양연구』 제7호, 2014.
- 정태만,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제22호, 2017.
- 최서면, 「지도로 본 독도」,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1983.
- 최선웅,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지도학적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제18권 제3호, 2018.
- _____, 「19세기 서양의 독도 측량과 해도 제작」, 『한국고지도연구』 제12권 제1호, 2020.
- 최영성, 「일본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문화』 제84집, 2016.
- 최재영·이상균,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 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한국지리학회지』 제7권 제3호, 2018.
- 최장근,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6집, 2012.
- _____, 「일본 고지도 고문현상의 우산도=석도=독도 부정에 대한 비판」, 『일본문화학보』 제62집, 2014.
- 최혜경,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울릉도와 독도-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제2권 제1호, 2010.
-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2007.
- _____,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5

- 집, 2013.
- _____,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독도연구』 제17호, 2014.
- _____, 「일본 수로국 아마기함[天城艦]의 울릉도 최초 측량과 독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제50호, 2015a.
- _____,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 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제169집, 2015b.
- _____, 「일본 농상무성의 「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 『한국근대사연구』 제79집, 2016.
- 호사카 유지, 「일본·프랑스 고지도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 『독도연구』 제1호, 2005a.
- _____, 「일본의 관인 고지도와 울릉도 외도(外圖)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일어일문학연구』 제55권 제2호, 2005b.
- _____,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북방사논총』 제7호, 2005c.
- _____, 「林子平圖와 獨島」, 『일어일문학연구』 제58권 제2호, 2006.
- 保坂祐二, 「三国通覽輿地路程全圖と伊能図の中の独島」, 『일본문화연구』 제28호, 2008.
- _____, 「독도 산봉우리를 표시한 우산도가 그려진 조선지도」, 『일본문화연구』 제32호, 2009.
- 漆崎英之,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발견 경위와 그 의의」, 『독도연구』 제14호, 2013.

<Abstract>

Research Trends and Task of Old Maps Related to Dokdo

Shim, Jeongbo

While the post-war Japanese aggression on Dokdo continued, Korean scholars have conducted research on Dokdo in various fields to consolidate their sovereig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hievements of Dokdo research, focusing on the ancient maps of the East and the West in Korea, and to suggest the research direction.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research on Dokdo-related ancient maps in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he dawning period around 1980, the inactive period from the late 1980s to 1995, the period of interest from the late 1990s to 2005, and the diffusion period from 2006 to the present. In the early stages of the study, macroscopic studies introducing old maps related to Dokdo became mainstream, but recently, microscopic studies have been increased, focusing more on specific them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overlapping and similar studies on Dokdo-related old maps. We look forward to in-depth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based on the discovery of new historical materials.

Key words: dokdo, old maps, territorial sovereignty, research trend, research direction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독도연구』 제29호 편집위원회

□ 제1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3일(목) 15:00~16: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운영위원4, 편집위원 5인(온라인 참석), 총 11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19편
 - 2) 『獨島研究』 제29호 투고 논문 19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3) 논문 심사 기간: 2020년 12월 4일 ~ 12월 17일

□ 제2차 편집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8일(금) 15:00~16:00, 영남대 독도연구소
2. 참석위원: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운영위원5, 총 7인(불참자 위임장)
3. 안건
 - 1) 심사 대상 논문: 19편
 - 2) 『獨島研究』 제29호에 투고한 논문 19편을 심사결과에 따라 11편을 게재하기로 결정
 - 3) 각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결과>발송 의결
 - 4)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의 경우 해당자에게 ‘수정요구사항’ 발송 의결
 - 5) 이번 호 게재율: 57.9% (총 19편 가운데 11편 게재됨)

논문투고 규정

I. 투고 방법

1. 『독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영남대학교 독도 연구소 홈페이지(<http://dokdo.yu.ac.kr/>) 오른쪽 중단의 논문 투고 사이트’ 또는 ‘<http://dokdo.dothome.co.kr/>’로 직접 들어가 투고하도록 한다.
2. 투고한 원고는 수령여부를 투고자가 확인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투고 논문은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 1) 필자의 소속, 직위, 전공분야,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 2) 필자 이름의 한자 및 영문 표기
 - 3) 논문제목의 영문표기
 - 4) 한글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
(요약문에 관한 사항은 원고 작성 지침의 6항 참조)
5.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해제를 비롯한 그 밖의 경우는 원고의 성격에 따라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0매를 초과할 경우, 투고자가 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비용은 원고지 한 매당(소수점에서 반올림) 3,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II. 원고 작성 방법

1. 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문
 - 1)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지명·사건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만 한자와 병기한다.
 - 2) 한자의 경우 괄호 없이 한글음에 이어서 쓴다(併記). 단, 한자의 의미를 한글로 풀어썼거나, 의미는 같되 음이 같지 않을 때는 해당 한자를 한글 뒤에 괄호로 묶는다.
 - 독도獨島,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울진蔚珍
 - ‘죽도(竹島) 이나바와 호키(因伯) 상하이(上海), 가와카미 (川上), “천이 명한 성을 따른다(率性).”
 - ☞ 단, 다음에서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 ① 본문에서 불가피하게 한문원전을 그대로 인용해야 할 경우.
 - ② 본문의 괄호 속.
 - 이황李滉(號 退溪)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서…
 - ③ 각주 속.
 - ④ 참고문헌란.
 - 3)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① “ ” : 인용
 - ②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③ 『 』 : 문헌이나 저서 이름
 - ④ ≪ ≫ : 신문 이름
 - ⑤ 「 」 : 논문이나 작품 이름
 - ⑥ . : 동일사항의 나열
 - 백두산·한라산·지리산
 - 4)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부기한다. 단 중국·일본 인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자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은 본문보다 두 칸 들여 쓰되(왼쪽 2, 오른쪽 0), 첫 문장 들여 쓰기는 하지 않는다(들여쓰기 0).

4. 각주

- 1) 단행본인 경우 동양서는 저자명(편찬주체), 역자명, 서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沈興澤, 『鬱島報告書』, 1쪽.

李能和, 김상억 옮김, 『朝鮮女俗考』, 250쪽.

Judy Van Zile,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pp.125-133.

- 2)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쪽수 순으로 표기하고, 서양어로 된 논문의 경우 순서는 같이 하되, 논문명은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 홍길동, 「조선시대 서얼제도의 연구」, xxx쪽.

Edward J. Shultz, “The Early History of Andong: Central or Peripheral”, p.6.

- 3) 세부적인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란에 일괄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않는다.

- 4) 신문·잡지인 경우에는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형식으로 표기한다.

→ 「미주한인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 《共立新報》 1907년 11월 29일자; 安自山, 「三國時代의 文學」, 《朝鮮日報》 1931년 4월 11일자.

- 5) 각주에서 같은 인용문헌이 연속되어 나올 경우, 동양서는 ‘저(편)자, 같은 책(같은 논문),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서양서는 ‘같은 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Ibid’로 표기한다. 단, 인용문헌이 연속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될 때마다 제목을 표기한다.

→ 홍길동, 같은 책, xxx쪽.

→ 홍길동, 같은 논문, xxx쪽.

→ Kant, Ibid, p.xxx.

5. 참고문헌

1) 논문 뒤에는 반드시 참고문헌란을 붙인다.

2) 참고문헌란에는 각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만 표기한다.

3)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저(편)자, 역자, 서명, 총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 역자, 논문명, 게재지 (간행처, 간행년도)

6. 요약문

1) 언어 :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주제 분야 3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표 참조), 주제어 5개를 명기한다.

2) 분량 : 한글의 경우, 200자 원고지 2-3매로 하고, 영문은 이 한글 요약문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7. 기타

1) 괄호가 따옴표나 낫쇠와 같은 문장부호와 쓰일 때는 괄호를 이들 부호 밖에 둔다.

→ ‘자연과 인간’(天人), 『말의 문화와 배의 문화』(馬の文化と船の文化)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도연구소에서 간행되는 [독도연구]의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1. 간행시기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0일의 년 2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간행 시 필수기재 사항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재한다.

대상		기재내용
대학소속	대학소속(전임/비전임)	성명/○○대학/ 교수*
	대학소속 강사	성명/○○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연락처

* 교수 :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등

** 학생 : 학부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석.박사과정생 등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간행 목적에 맞는 학술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국내외 독도 연구자로 근래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총인원은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또한 투고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혔는지를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집적, 관리하여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4)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5)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수정 후 게재’²와 ‘게재 불가’¹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수정 후 게재’¹과 ‘게재 불가’²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²와 ‘게재 불가’¹로 나눌 경우, 편집

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간주하고,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나눌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3. 그 외,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독도연구] 간행 및 심사 규정

제5조 (게재료)

1.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모든 논문은 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하되, 연구비 지원 논문은 25만원을 청구한다.
3. 특별기고 형식으로 투고한 논문인 경우 게재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 (부칙)

1. 이 시행규칙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獨島研究』 연구윤리 규정

2008년 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獨島研究』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여 건전한 연구활동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의무)

- ① 연구자는 학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타인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⑦ 연구자는 표절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연구소에 보고해야 한다.
- ⑧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이사, 연구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 ①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② 제소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소 당사자와 혐의 해당자에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케 하고, 15일 이내에 그 답변과 상호 화해를 권장한다.
- ③ 제소자와 혐의 해당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④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연구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종결하고,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③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 (연구윤리 협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①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한 때 연구윤리 협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확정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최재목(영남대)

편집위원 : 김명기(명지대)

김영수(동북아역사재단)

손승철(강원대)

송희영(영남대)

심정보(서원대)

오상혁(제주대)

이성환(계명대)

정갑용(영산대)

제성호(중앙대)

정성일(광주여자대)

최장근(대구대)

편집간사 : 박지영(영남대)

獨島研究

제 29 호

2020년 12월 28일 인쇄

202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서 길 수

편집인 최 재 목

발행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3686

FAX (053) 810-4704

인쇄처 정문사

주소 : 대구시 중구 명륜로 23길 48

TEL : (053) 422-2180

FAX : (053) 422-2186
